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201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장차법 개정안 수렴 토론회

일 시 : 2017. 4. 4.(화) 14:00~17:00
장 소 : 이룸센터(이룸홀)
주 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수렴
토론회



보건복지부



사)장애인법연구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최혜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님과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매년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에는 사법기관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있었고, 2014년에는 시각장애인의 교육, 국립중앙도서관 도서자료,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 관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하루가 다르게 전자정보 및 정보통신기기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환경에서 법이 그러한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이 되는 올해, 그동안 논의되어 온 다양한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여 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곳 서울을 비롯하여 대전(7일), 부산(13일), 대구(17일), 전주(18일) 지역을 순회하며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비롯하여 앞으로 개최될 순회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개정을 이루어내는 데 우리 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법,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차별받지 않고 완전한 사회 참여를 이룰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마련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데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는 오늘 이 자리는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확장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기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자주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최혜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어느덧 제정 1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만들어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법이라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지만,
한편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차별이라는 의제의 법제화는
그 반발의 힘 역시 너무나 컸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당사자와 그 곁을 지키던 활동가들의 땀으로 눈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총 36번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이후에도 정부 국회, 경제계와의 끊임없는 힘겨루기를 해야했습니다.
국회의원 모두 장애인차별에는 반대한다고 하면서 결국 70명만이 겨우 직접 서명할 정도로
이 법에 합의를 만들어가는 일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국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없는 노숙과 전국순회간담회를 거치며,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쳤던 그 순간들 속에서,
그렇게 눈물과 땀으로 범벅된 시간을 보내면서도 다시는 차별받는 존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인권법입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사회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장애인의 삶 역시 다양한 보장구와 기기의 발달, 제도의 발전 속에서 변화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차별이 존재하고 우리에게 이 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법에 새로운 옷을 좀 입히려고 합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우리에게 쌓인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더 든든한 인권법으로 만들어가고
합니다. 처음에도 그랬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길을 함께 걸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을 맞이하는 자리에

바쁘신중에도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늘 함께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해마다 이 토론회가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4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박 김 영 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입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을 맞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를 우리 부와 함께 주최해 주신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인법연구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지난 10년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크게 해소되었으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부는 매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차별이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5%를 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으며, 법 시행 이후 총 9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에 따라 ‘수화’를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보아 ‘한국수어’로 개정하였고, 교육 인쇄물 및 도서자료에 점자뿐만 아니라, 음성변환용코드를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작년 6월부터 시행되어,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제대로 된 인식개선 교육교재를 보급하고, 전문 강사

를 양성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그 하위법령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장애인 차별이 효과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들이 향후 법령 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장애인 차별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4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조 남 권**

지난 연말 박현이라는 친구를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음성꽃동네에서 16년을 지내다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운동가로 살았던 친구. 저는 2009년 탈시설 자립생활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공익 소송’의 원고로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원고 박현은 피고 음성군수에게 “불쌍한 장애인이 아니라 당연한 시민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자립을 시작한 그는 정말로 당연한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자립생활운동의 맨 앞에서 가장 열심히 싸우던 그는 시인이었고, 예술가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폐렴 합병증으로 갑자기 너무나 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자립을 도왔던 저는 허무한 죽음 앞에서 깊은 자책을 벗기 어려웠습니다. 아직 이 땅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차별없이 살기 쉽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장애인이 살아낸 지난 10년의 강산은 어떠한지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물론 상당한 성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지요. 우리는 고용, 교육, 서비스, 이동권, 정보와 문화생활 등 많은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을 쉽게 마주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직 대부분의 가게에 휠체어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은 여전히 영화를 볼 수 없습니다. 고속 및 시외버스에는 단 한 대의 저상 버스도 없습니다. 국가기관조차도 겨우 3%대인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도 똑같이 ‘존엄’한 인간이고 ‘가치’있는 존재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우리 입법역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 법의 제정 10주년을 기념하기 모였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좀 더 실효성을 가지고, 더 많은 영역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선과 보완(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그런 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박현이 남긴 이야기로 제 기념사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약자가 없어야 강자가 없다! 이것이 지켜질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2017년 4월 4일

장애인법연구회 회장 **임 성 태**

- 일 시 : 2017. 4. 4.(화) 14:00~17:00
- 장 소 : 이룸센터(이룸홀)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장애인법연구회
- 주 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수렴 토론회

시 간	내 용
13:30~14:00	○ 등록 및 접수
14:00~14:20	○ 개회식 【사회 : 이용근 장애차별조사과장】 ✧ 기념사 최혜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조남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임성택 (장애인법연구회 회장)
본 행사	【좌장 :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애현안발표 14:20~30	장애현안 발표 -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선 3대 핵심 요구안
발제 14:30 ~ 15:15 (45분)	✧ 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 박종운 (장애인법연구회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 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가야 할 길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10주년 진정사건 현황 및 분석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정책팀장)
토론 15:15 ~ 15:55 (40분)	- 토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이 필요한 때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 토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문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토론문 김정환 (한동대학교 법학과 강사) - 토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수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15:55~16:20 (25분)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청중 및 참여자 토론 (진행: 좌장)
16:50	○ 폐회 : 장애차별조사과장

- ◆ **장애현안 발표**
 -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선 3대 핵심 요구안 1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 ◆ **발제문**
 -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 13
박종운 (장애인법연구회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가야 할 길 65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10주년 진정사건 현황 및 분석 79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정책팀장)
- ◆ **토론문**
 -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이 필요한 때 103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문 119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토론문 125
김정환 (한동대학교 법학과 강사)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문 135
김수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 ◆ **부록**
 - 부록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41
 - 부록 2 2017년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201



2017장애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장차법 개정안 수렴 토론회

장애현안 발표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선 3대 핵심 요구안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선 3대 핵심 요구안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1. 장애등급제 폐지

- 장애등급제는 1989년 장애등록제의 도입과 함께 시행되고 있다. 즉, 장애인이 국가가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병의원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장애인의 몸에 등급이 매겨져 관정받는 체계이다. 장애등급에 따라 모든 장애인사회복지서비스가 결정되고 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장애인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살인적인 제도이다.

세부정책과제 1 장애인복지예산 OECD 평균수준증액

- 2014년 기준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4%로 28개 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이며, OECD 평균 21.6%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장애인복지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은 0.49%로 2011년 OECD 34개국 중에서 멕시코 (0.06%)와 터키 (0.28%) 다음으로 GDP대비 복지예산이 가장 낮은 국가다. OECD 평균 1.79%의 1/4수준이다.
- OECD 평균으로 장애인복지예산이 맞춰진다면 2011년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 약 8000억원의 4배인 3조 2000억원은 돼야한다. 2015년 기준으로 각각 5000억원 수준인 장애인연금 예산과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최소 2배 가까이 인상된다면 OECD 평균(12.9%)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장애인가구의 빈곤율(33.1%)도 낮아질 것이다.

① 국가장애보험제도 도입

- 국민건강보험 중 장애보험료, 기존 장애인 복지 예산 및 각종 기금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등을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국가재정법 개정), 이와 같은 기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행정청 설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장애인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② 사회복지세 도입

- 사회복지세에 대한 개념 혹은 정의는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에 누진적으로 부과되는 복지 목적세를 일컫는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의 분들은 더 내지 않게 설계될 수 있다. 중상위계층부터 누진적으로 사회복지세를 더 내게 된다.

세부정책과제 2 개인별지원체계 마련

- 국가가 미리 복지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정해 놓고 장애등급제도 등 일정 기준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한 후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요구, 선택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개인별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① 장애인욕구기반 서비스예산 결정

- 장애인은 자신의 서비스 목표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개인에게 제공하고, 장애인이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인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율권 보장한다.
- 기존의 장애인 등록 및 장애 등급 심사 제도는 폐기하고, 장애서비스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를 갖고 있거나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모든 사람이 서비스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적격성 심사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이 개인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② 개인별서비스계획수립에 따른 공적복지지원체계 구축

- 개인별서비스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는 공적 복지 지원 체계 구축한다.
- 서비스 사정을 통해 개인의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복지 환경에 기반해 개인별서비스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부정책과제 3 장애인소득보장

- 2014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34.5%로 전체 가구 빈곤율(16.3%)의 두 배를 상회하며, 2009년 OECD국가 평균 장애인가구 빈곤율(12.9%)와 비교할 때는 세 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전 및 추가비용 지급 급여 수준을 OECD 국가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및 장애인연금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소득 보장 제도를 하나의 단일 소득보장 제도로 통합하여, 사회보험상(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와 함께 제2의 공적 소득 보장 제도로써 그 보장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① 장애표준소득 도입

- 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중 소득보전에 관한 사항은 장애표준소득(비기여 연금)으로 통합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에 관한 사항은 장애수당으로 통합한다.
- 장애표준소득의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을 현재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의 2배 이상까지 인상하여, 최저생계비의 80%까지 보장하고, 개인소득(근로소득)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가입 대상 인원을 현재의 2배 이상 확대(수급률 현재 26.4% → 5년 후 50%)한다.
- 장애표준소득은 매년 고시되는 최저생계비의 80%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 금액을 설정한 후, 개인 소득과 연동하여 소득 보장 지원한다.
- 임금이 낮은 장애인도 장애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소득과 연계된 연금 지급 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 총소득이 모두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

② 장애수당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중 소득보전에 관한 사항은 장애표준소득(비기여 연금)으로 통합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에 관한 사항은 장애수당으로 통합한다.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받고자 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한다.

세부정책과제 4 공적전달체계 마련

- 장애 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과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장애 서비스를 총괄 지원하는 국가장애인청(독립적인 준정부기관) 및 광역장애인청을 설치하고, 장애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한다.

① 국가장애인청 신설

- 장애 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과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장애 서비스를 총괄 지원하는 국가장애인청(독립적인 준정부기관) 및 광역장애인청을 설치하고, 장애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한다.
- 기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활동지원 서비스 인정 조사 등을 국가장애인청을 중심으로 통합 조정하고, 기존 장애인 복지 및 일반 사회복지 행정 지원 체계와 연계 및 협력 구축한다.

② 전달체계 공공성 강화

- 민간의 약점을 보완하고,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공공부분이 최소한의 시설을 직영하고 이를 통해 기관운영과 서비스제공의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민간에 전파해야 하는데 이 기능을 ‘사회서비스재단’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즉, ‘사회서비스재단’의 기능은 단순히 공공사회서비스기관을 확충하여 직영하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사회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사회서비스기관의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의 직영이 필요하다.

세부정책과제 5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등급제 폐지’의 대안으로서 장애인복지구조의 변화를 법적·제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법률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그 법률은 「장애인복지법」의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넘어서 ‘UN장애인권리협약’의 협약정신에 부합되는 총체적인 대안을 담은 법률이어야 한다.
- ‘장애의 새로운 정의’, ‘개인별지원체계’, ‘권리옹호체계 도입’, ‘소득보장제도의 변화’, ‘탈시설 명문화’ 등을 원칙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

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2015년 조사¹⁾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0.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67.59%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탈락자 중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친지, 이웃에게 도움 받는 가구는 24.38%에 불과했다.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인원은 37,999명에 달한다. 이들은 실제 본인의 소득·재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다.
-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다.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수급신청 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크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에게 연락이 가는 것조차 부담스럽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류를 받을 수 없어 신청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빈곤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이미 해체되거나 복잡한 가족관계를 갖고 있는 이들에겐 수급신청조차 포기하게 하는 높은 장벽이다.
-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매해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급탈락을 비판해, 혹은 수급조차 받을 수 없는 빈곤상황에 좌절해 목숨을 잃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이며, 50%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 하루 몇 천원 벌기도 힘든 폐지 수집 노동에 노인들을 내 몬 한국 사회의 잔인한 단면이다.

1)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보건사회연구원

세부정책과제 ①

-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를 ‘1촌 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이를 삭제하면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 현 20대 국회 뿐 아니라 19대, 18대, 17대 계속해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 급여별 폐지를 계단삼아 완전 폐지로 나아가면 폐지에 따른 충격을 없애고, 사회적 통합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 폐지를 선언하고, 3년의 시기별로 3단계(1단계 주거급여, 2단계 의료급여, 3단계 생계급여, 3년 뒤 전체 급여에서의 완전 폐지)에 걸쳐 폐지하는 것이다.

3. 탈시설-자립생활권리보장

- 박근혜 정부 하에 발생한 시설범죄사태는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벅차다. ‘인강원’, ‘송전원’, ‘해비라기’, ‘자립원’, ‘한우리의집’, ‘구미SOL복지재단’,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 ‘마음건강복지재단’, ‘향림원’, ‘마리스타의집’, ‘남원평화의집’, ‘금장학원’, ‘대구시립희망원’... 시설명만 다를 뿐, 폭력, 체벌, 감금, 노동착취, 장애수당과 정부보조금 횡령이라는 죄목은 항상 같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은 본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들이 다른 이들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장애인들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 통합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가인 우리나라는 범세계적인 장애정책의 흐름을 주시하고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다. 중간 공급자 역할의 축소와 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에 따른 장애인복지정책의 핵심은 바로 장애인수용시설 폐기와 장애당사자 주거선택의 권한 확대이며 이것이 바로 ‘탈시설’이다. ‘탈시설’의 핵심은 수용시설예산의 축소와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가 핵심이다.

세부정책과제 ① 수용시설정책폐지! 탈시설-자립생활정책 명문화

- 법률상에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명문화하고 공식화하여, 중앙정부가 수용시설정책 폐지,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세부정책과제 ②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국가계획 수립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권고(2013. 11. 7)'를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상에 자립생활 원칙 명문화 및 탈시설 전환 관련 정보고지 의무화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계획 수립 ▲초기 자립정착금 지원 ▲임시거주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초기정착 주거공간 확대를 각 권고했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가로서 가지는 당사국의 의무를 다하고,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입법과 행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부정책과제 ③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산하 탈시설자립전환과 설치 운영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협약에는 장애인의 시설 수용은 최후의 선택이며 자립생활의 보장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지만, 시설거주인이 시설 수용을 거부하고 나왔을 때 길거리에 나왔거나 시설에 재입소하는 길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하고 살 수 있도록 기존에 민간 중심으로 진행하던 탈시설 지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책임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탈시설전환 체계는 중앙 단위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내 탈시설전환환과를 설치하여야 한다.
- 탈시설자립전환과의 역할은, 시설거주 장애인의 정기적인 상담, 자립 계획 수립, 지역사회 자립 정보 제공, 주거공간 연계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하는 기관임. 탈시설 자립생활을 상담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로서 필요하다.

세부정책과제 ④ 전환주거정책 수립 시행

-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공간은 시설에서 나오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일차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시설에서 나오기가 어렵다. 시설에서 곧장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

기관 현실적으로 힘들고, 시설거주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 후 곧바로 자립생활을 위한 거주지를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집을 구해서 지역사회로 자립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중간단계로서 임시 거주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체험홈이나 자립주택과 같은 ‘전환주거’²⁾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환주거’로서 수용시설장애인이 시설을 퇴소한 뒤, 무상으로 공적주택을 제공하고 이후 지역사회의 개인주택으로 이전하는 완전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거주 지원 기능을 한다. 또한, LH공사와의 연계를 통한 임대주택 등 국가의 매입, 당사자와 각 지자체 직접 거주지계약, 1가구 3인 이하, 1인 1실 활동지원서비스제도 이용, 장애인자립생활 이념과 비전이 명확한 운영사업자 위탁이 핵심이다.

세부정책과제 ⑤ 탈시설 정착금(지역사회 정착금) 제도화 및 현실화

- 시설퇴소 후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할 시 임대료부터 세간 구입까지 많은 초기비용 필요하다. 하지만 시설거주인이 시설생활 중 모은 연금만으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이 안정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임대료, 물가를 비롯한 장애인의 소득구조 현실을 고려한 탈시설 정착금 지원이 절실하다.

세부정책과제 ⑥ 장애인수용시설 해체를 위한 국가계획 수립

- 기존 장애인수용시설은 지역사회에 크게 동떨어져 폐쇄적이고 고립된 모습을 띄고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의 세계적 추세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당사자의 자립지원이 우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에 대한 폐쇄추진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스웨덴은 국가정책으로 ‘시설폐쇄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시설을 폐쇄하고, 시설에 투입되던 예산을 지역사회 인프라구축에 투자하고 있다.
- 우리나라 또한 탈시설정책수립과 동시에 장애인수용시설폐쇄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예산을 축소하고 장애인지원체계와 지역사회인프라 구축으로 예산을 전환하여야 한다.

2)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자립 전환을 위해 필요한 주거공간이라는 의미로 ‘전환주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역마다 체험홈, 자립홈, 자립주택, 자립생활가정 등 그 쓰이는 형태와 의미 등은 각기 조금씩 다르다.

세부정책과제 ⑦ 범죄시설 폐쇄 및 거주인 탈시설자립생활전환 시범사업 실시

-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시설폐쇄와 이후 수용인들에게 대한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 인프라 부족등을 이유로 사건 해결에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수용인들을 다시 타시설로 전원조치 해버리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과거 인권침해범죄시설의 경우 거주인 대다수가 본인의 욕구와 상관없이 원가정으로 보내지거나 타시설로 전원되어 버렸다. 이에 중앙정부에서 대구시립희망원을 대상으로 시설폐쇄 및 거주인탈시설자립전환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범죄시설에 대한 모범적인 해결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2017장애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장차법 개정안 수렴 토론회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

박종운

장애인법연구회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

박종운 (장애인법연구회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I. 들어가는 말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경과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차별과 인권 침해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도, 장애인 운동은 꾸준히 발전해 왔다. 1990년대 말, 몇몇 선각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시혜에서 인권으로’ 장애인 운동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함께 그에 걸맞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2002년경 열린네트워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장애차별금지법(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그동안의 크고 작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2003. 4. 15. 마침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이하, ‘장총련’), 그리고 제3그룹 등 장애인 단체가 총 결집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연대’(이하, ‘장추련’)의 역사적인 출범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법제정위원회와 투쟁위원회를 쌍두마차로 하여, 장추련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한 지 4년 후, 마침내 2007. 3. 6. 17:30경 출석 국회의원 197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역사적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같은 해 4. 4. 노무현 대통령이 서명하였고, 4. 10.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08. 4. 11.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시혜’가 아닌 ‘인권’적 관점의 장애인 관련 법률이 시행된 것이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시행의 의의

약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시행된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아래에서는 제정 및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의의(意義)에 대해 살펴본다.¹⁾

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법 제정운동을 펼쳐서 쟁취해 낸 성과물이라는 점이다(당사자주의).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작부터 법률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주도하였다. 정부가 일부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외국의 입법 사례를 도입해 오고, 장애인들은 그에 대해 의견만 제시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스스로 법안에 담아내고 그것을 입법화하는데 성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훈련된 장애인 운동 진영은 당사자들의 역량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아래로부터의 운동이요, 당사자 운동의 결실인 것이다. 법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 국회 등과 협상하였다. 그로 인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차별에 대한 감수성, 차별을 금지하고 권익을 구제받고자 하는 정당한 주장, 사회 참여와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농축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② 진정한 의미의 연대 운동의 결실이라는 점이다(연대주의). 그동안 장애인 운동은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왔었고, 그 때문에 몇몇 단체들이 주도하거나 연대한 적은 있어도 장추련처럼 범장애계(최종적으로 247개의 전국/지방 단체)가 함께 모여 연대 투쟁을 벌인 기억은 사실상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여기에는 이미 존재하던 단체들도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연대 조직도 있다. 한국장총이나 장총련과 같은 거대 단체가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소규모 단체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똑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면서 지난 몇 년을 지탱해 왔다. 장추련의 힘은 여기로부터 출발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계의 숙원이던 범장애계의 연대를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의 공통성과 보편성의 결과물이라 할 장애계 내부 단체들 간의 결합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뜻을 함께 하는 노동, 교육, 여성, 인권, 종교, 문화 등 수많은 시민단체

1) ‘장애인 법률, 그 비관과 전망’(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엮음, 2010. 12. 31.) 중 박종운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들이 장추련의 활동을 지지하고 장추련과 결합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장애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평화 등 근본적이고 보편적이며 보다 세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연대할 수 있다는 전조(前兆)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시혜에서 인권으로’, 장애인 운동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증거라는 점이다. 그동안 장애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뭔가를 물질적으로 지원받는 복지의 시혜 대상, 일방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취급받아왔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시행은 장애인 또한 국민이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그러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침해받은 권리가 구제되도록 하는 인권적 패러다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④ 이제 장애인 인권 운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토대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시행은 장애인 인권 운동의 종착역은 아니지만, 지나간 세월 장애인 인권을 위한 투쟁의 산물이요 중간 결산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와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가고 있음을 웅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비롯하여 이주노동자, 외국인, 혼혈인, 성적 소수자, 여성, 비정규직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 가운데 하나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이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문화에 대한 담론을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반인권적인 차별을 시정하고 다수자들의 인식을 전화(轉化)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시행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 기준을 법률적으로 제시해 줄 것이다. 대륙법계의 전통 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수많은 차별 행위들을 모두 포섭해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차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차별의 유형을 상세히 적시함으로써 차별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와 장애인, 차별, 차별행위 등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권위 뿐만 아니라 각 행정청과 법원의 차별판단 기준 또한 달라져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에 관한 한 보다 확고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인권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장애인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⑥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시행은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장애 여성 규정을 별도로 삽입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⑦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 각종 법령의 제정 및 정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차별시정(소)위원회를 통해 차별을 해소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정부에 입법권고를 하였고, 지난 노무현 정부 말기에 법무부(안)도 나왔지만, 제17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새 정부 들어 와서는 국내법 검토, 외국 입법사례 연구, TFT 운영 등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시행은 각 차별 당사자로 하여금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촉발시킬 것이고, 차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이 담아내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개별적이고 각론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도모하게 될 것이며, 각종 법령에 잔존하고 있는 차별적 조항들을 개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⑧ 지금까지는 장애인 운동의 관점에서 의미를 찾아보았다면, 이제는 좀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법 제정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법 제정 절차 및 방식에 있어서 바람직한 모델을 창출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최근에 당사자(혹은 수요자) 중심의 법률 제정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에는 그동안 장애인 정책의 핵을 담당해 왔던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인권위와 법무부 등 인권 담당 기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가 너무 많아 도대체 어느 부처와 협상을 해야 하는지조차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러한 특성이 입법을 지연시킨 사유 중 하나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본격적인 입법 가능성의 전환점이 된 것은 2006년 5월이었다. 장추련의 인권위 접거 농성 과정에서 5. 21.경 인권위에서는 인권위 차원에서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과는 별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고, 마치 이를 곧바로 받아주기라도 하듯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이하, '차별시정위')가 중재 혹은 조정기관을 자처하고 나서 주었다. 그리하여 차별시정위 주도로 장애인 당사자 측에서는 장추련(주로 법제정위원들이), 정부 측에서는 관련 행정 각 부처와 인권위 실무자들이 마침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다. 2006. 8.

16. 첫 모임이 시작되었지만, 모임의 명칭을 정하는 것만 가지고도 침례하게 대답하였다. 장추련 측에서는 당연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모임이 되기를 원했고, 행정 각 부처는 난색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차별시정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으로 하자고 제안함으로써 비로소 협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12. 12.까지 전체 회의 7차례, 소위원회 5차례 등 총 12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상호간에 이해와 협력의 틀은 높아졌으나, 중요한 쟁점에서 여전히 합의를 이룰 수가 없었다. 이때 차별시정위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밤새워 조정안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안으로 제출함으로써 자신들의 공로나 치적으로 삼으려 하지 아니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넘겨서 여당안(대표발의 : 장향숙)으로 발의하도록 함으로써 신속 입법의 대들보를 놓았다. 이처럼 장애인 당사자 및 활동가를 중심으로 시민운동, 법률가 등 지원그룹이 결합한 장추련의 법 제정을 향한 불굴의 의지와 투쟁은 말할 것도 없고, 인권위의 결단, 청와대의 굳건한 법제정 의지²⁾, 위원장을 비롯하여 담당 비서관과 행정관 등 차별시정위 관계자들의 열정과 인내 그리고 노력, 행정 각 부처 담당 실무자들의 열린 마음과 협력,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회원의원 등 장애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관련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추진력... 이 모든 것 중 하나라도 부족하였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찬 바람 부는 거리에서 나부끼는 깃발, 도심 광장을 울리는 메아리 없는 함성으로만 남아 있을 수도 있었다. 이 점에서 당사자(수요자), 관련 부처, 청와대, 국회 등 법 제정에 책임 있는 각 부문들이 법 제정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협력해야 하는지, 그 모델을 보여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종합 예술, 법제정 운동의 결정판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시행의 역사인 것이다.

⑨ 법제도가 변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법 제도의 개선과 인식/의식의 변화가 동반되어야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 땅에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시행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차별 감수성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로 하여금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특히, 시혜에서 인권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계는 물론이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함께 이일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세미나,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관련자들과 만나야 하고, 각종 학교, 직장 등의 교육을 통해 국민들과 만나야 하며,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을 통해 대중들과 만나야 한다. 그 밖에 여러 방법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공유하고 큰 문제 없이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대통령 후보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의 의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고, 2008년에 시행되었다. 제정을 기준으로 하면 2017년이, 시행을 기준으로 하면 2018년이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10'주년의 의미는 무엇일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 속담이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어제와 오늘이 다를 정도로 급속하게 모든 것이 변화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환경 또한 마찬가지이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

①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여 미흡하다고 평가했던 부분 중, 주로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법령이 제정·시행되거나 개정되었다.

② 과거에는 시혜적인 복지 중심의 법률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비롯하여 여러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인권적 복지', '복지적 인권'과 같은 복지와 인권이 결합된 용어와 개념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복지 없는 인권'이나 '인권 없는 복지'는 생각할 수 없다. '복지'와 '인권'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개념 자체로는 바람직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인권적 요소가 강화될수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듯이,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법령 간에 간섭, 혼선 혹은 혼합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어떤 개별 법령은 각개 약진(躍進)하고 있는 반면 각종 편의증진법과 같이 어떤 법률이나 시행령들은 정체 혹은 시대적 상황이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④ 이러한 결과로 장애인 인권과 복지 관련 전체 법령 간에 법률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못하고 서로 간섭하게 되거나 중복되거나, 서로 미루거나, 혼선을 빚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⑤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인권단체들의 욕구와 인권의식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반면에, 실제 법령의 내용이나 그에 대한 해석 및 적용,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법무부의 시정명령, 법원의 구제조치 등을 볼 때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대한 태도와 인식 수준, 장애인차별시정기구나 권리구제수단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뒷받침 해주지도 못하고 있다. 여전히 '장애인 인권 옹호적 태도',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

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홍보와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실정이다³⁾. ⑥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시행 당시에도 지적되었지만, 국회에서 정치적인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원래 장추련이 제안했던 법안의 주요 내용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고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실효성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한편, 현재까지도 인권법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존재를 모르는 장애인이나 일반 시민도 존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및 적용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시대적, 내용적, 실질적, 인권법적 한계 등을 지적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았다. 10주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권법으로서의 위치와 역할, 효용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업을 시작 혹은 계속해야 한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이고 장애인 인권단체에서도 매년 그래왔겠지만,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시행 당시의 정신과 의

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당시 필자는 “장추련이 2008. 12. 22. 발표한 ‘장추련의 향후 나아갈 길’이란 글에서 잘 나타나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은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첫 발걸음을 땀 것일 뿐이다. 진정이나 소송을 통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질적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법원, 인권위, 법무부 등이 차별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장애인 차별, 정당한 편의, 간접 차별, 직접 차별 등의 개념과 이론적, 철학적 논거를 개발하고 정립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률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빈틈을 메워줄 법률의 제정,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시스템을 갖추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권리구제를 넘어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장애인차별금지 문화를 확산해야 하는 점 등의 산적한 문제가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로 남아있다. 인권위의 기구축소와 인력감소는 장애인들을 더욱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가게 될 것이므로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확충되어야 한다. 진보든 보수든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차별금지’를 규제하려고 들 것이 아니라 ‘차별’을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인데, 교육 및 문화향수에 있어서 필수적인 출판물과 영상물에 대한 정보접근권, 의사소통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편의증진법을 신속하게 개정함으로써 정당한 편의가 보다 폭넓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이 개별 법령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차별적 태도’를 ‘장애인 인권 옹호적 태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사고를 전환시키기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당사자들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차별적인지 정당한지 고민하고 문제 해결에 스스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들의 관심과 협력, 적극적인 지지와 옹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옹호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성 차별 철폐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우리 사회의 차별과 인권의 지평이 장애까지 확대되었고, 다른 차별 사유에까지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제정됨으로써 운동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제정됨으로써 더욱 확산되고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바 있다.

의를 오늘에 되살릴 뿐만 아니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 ②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차별 금지법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숙고(熟考)가 필요하다. ③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관련 법령 체계 전체를 재정립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현실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인권 옹호 및 보장 무기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장추련의 법제정위원장이었던 법률가로서, 오늘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을 발제하게 된 것을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II. 주요 개정 사항 작성 경과

3장(Ⅲ)에서 기술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은 어느 한 사람의 수고의 결과물이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사)장애인법연구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안 등을 만들고 있거나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준비하고 있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토론회에 결합하게 되었다. 여러 법률가 회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과 절, 조문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해당 조문에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 국내 적용 사례 및 판결례, 외국의 입법례, 개정방향, 개정안 등을 고민하여 작성하였다. 모든 부분을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인권단체와 협의하지는 못하였지만, 부분적으로는 개정의 필요성 및 시급성, 중요도, 개정 방향 및 개정안 등을 협의 하였다.

따라서, 현재 자료집에 실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은 고정되고 완성된 작품이 아니다. 앞으로 토론회를 통하여,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인권단체의 요청 혹은 협의를 통하여 계속하여 수정 보완되고 진화되어 나가야 하는 운명을 지닌 현재진행형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발제문에 포함된 내용은, ‘주요 개정 사항’인 만큼 나름대로 중요도에 따져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된 내용만 개정의 대상 및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에라도 중요도나 내용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오늘 발제를 진행하려고 한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다음 토론회에서는 좀 더 나은 내용으로 발제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Ⅲ.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

〈개관〉

장	절	조
제1장 총칙		제01조 목적 제02조 장애와 장애인 제03조 정의 제04조 차별행위 제05조 차별판단 제06조 차별금지 제0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0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0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 차별금지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2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
	제2절 교육	제13조 차별금지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2조 개인정보보호 제23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7조 참정권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제34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제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	절	조
제4장 장애인차별 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 진정 제39조 직권조사 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제41조 준용규정 제42조 권고의 통보 제43조 시정명령 제44조 시정명령의 확정 제4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 손해배상 제47조 입증책임의 배분 제48조 법원의 구제조치
제6장 벌칙		제49조 차별행위 제50조 과태료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총칙 - 차별금지 -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 등 -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 벌칙의 순서로 총 6개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문언상 금지하는 장애 차별이 직접차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차별이 포함되도록 해당 문구를 장애 차별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애와 장애인)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란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이러한 정의는 장애를 손상 중심적이고 의료적인 모델로 다루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생활 제약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손상중심적’, ‘의료적 모델’, ‘기능적 제한 접근법’에서 ‘인권적’, ‘사회적 모델’, ‘사회정치적 접근법’으로 한 걸음 전진한 장애의 정의를 규정해야 함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의 개념을 “진화하는 개념(evolutionary concept)”으로 이해하면서, 장애인과 사회적 환경 혹은 비장애인들의 태도가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장애가 발생한다고 봄
-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의에 부합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애의 개념을 인권적·사회적 모델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 다만, 장애를 의학적 측면에서 기능의 손상으로 이해한다면 정의를 내리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으나, 현대 장애학이나 장애인법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모델에 의하면,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은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음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
<p>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심적 건강에 있어 제한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p> <p>1. 제한이란 일반적으로 일상적 생활과 평등한 사회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6개월 이상 영향을 줄 경우 제한이라 말한다.</p> <p>2.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심적 건강의 제한으로 인해 장애로부터 위협 받을 경우도 장애인으로 간주한다.</p> <hr/> <p>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장애라 함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심적 건강에 있어 제한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p> <p>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1. 제한이란 일상적 생활과 평등한 사회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6개월 이상 영향을 줄 경우 제한이라 말한다.</p> <p>2.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심적 건강의 제한으로 인해 장애로부터 위협 받을 경우도 장애인으로 간주한다.</p> <hr/> <p>3)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란 <u>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하여</u>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p>

* 제3조(정의) 제1호 : 광고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p> <p>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p>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이 금지되는 광고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표시 및 광고로만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장추련 법제정위원회(안) 등을 보면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4호에는 ‘광고’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타인에게 차별행위를 부추기는 문서, 도화, 영상, 음반, 전기전자 매체를 통한 표현물, 기타 물건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포괄적인 정의가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충돌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최종적으로 ‘광고’로만 제한하게 된 것임.

-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광고는 최소한 “상업적 목적의 상품 및 용역 광고”를 포괄해야 함.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광고</u>”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광고</u>”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u>옥외광고물 등 상업적 목적의 상품 및 용역광고</u>를 말한다.</p>

* 제3조(정의) 제3호 : 장애인보조기구 등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p> <p>3. “<u>장애인보조기구 등</u>”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⁴⁾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작업보조공학기기</u>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p>
--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장애인 보조기구를 정의하면서 ‘자동차 기타 기구’라는 문구를 사용했는데, ‘기타 기구’라는 것이 자동차의 기타 기구로 좁게 읽힐 소지가 있고 ‘기구’라는 용어도 좁은 의미를 지니기

- 4) 시행령 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1., 2013.3.23.>
1. 장애인이 승·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

때문에, 이를 '자동차, 기타 기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 참고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부분을 삭제.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기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p>

* 제3조(정의) 제5호 : 사용자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p> <p>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p>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사용자의 범위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주(예컨대, 4호의 '공공기관') 등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그 밖에 공공기관 을 말한다.

* 제3조(정의) 제6호 : 교육기관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교육기관에 사설학원 추가의 필요성

- 장애인의 사설학원 이용과 관련된 불편 및 차별문제 꾸준히 이슈화됨.
 - 국내 사례 : ① 교재마련 및 시각화된 콘텐츠 설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 학원 다니기 어려움. ②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지체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학원. ③ 수어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이 수업내용 이해에 어려움 겪음.
- 사설학원에 다니는 대신 온라인강의를 수강하거나 교육방송 시청하는 장애인들 많지만, 웹 접근성 문제, 교재제공의 지연, 교육콘텐츠의 자막 미제공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음.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 제3조 제6항의 ‘교육기관’의 정의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관련된 내용 추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영세한 보습학원 운영자가 바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단계적으로 의무를 확대하거나 초기 시행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함

개정안(예시)

기존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 <u>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학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정의) 제10호 : 문화예술활동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5)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

- 5)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위 조항에 “여행, 관광, 레저 등”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조항으로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위 조항을 개정하면서,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혹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등 관련 조항을 함께 개정해야 할 것임.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⁶⁾

개정안(예시)

<p>제3조(정의)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p>	<p>제3조(정의) 12. “관광”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제1호의 관광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의 이용을 말한다. 13.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p>
<p>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문화·예술활동 및 관광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사업자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 및 관광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사업자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 및 관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 및 관광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 및 관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 및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제3조(정의) 제14호 : 복지시설 등

6) 국회 노회찬 의원이 2017. 1. 12.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과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 등 참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제3조 제14호 ‘복지시설 등’의 정의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7.5.30 시행 예정임) 제3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제3조(정의) 제20호 : 괴롭힘 등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제3조 제20호, 제4조 제1항, 제32조가 모두 연관이 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제1항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직접차별, 제2호에서 간접차별, 제3호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제4호에서 광고를 통한 차별, 제5호에서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 제6호에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차별을 규정하고 있을 뿐 ‘괴롭힘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괴롭힘 등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 아니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해석상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음).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개정안(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장애인, 장애인 관련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제4조(차별행위) 제2항 : 정당한 편의

제4조(차별행위)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 개념은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즉 물리적 수단만을 가리키고 있어 정책과 같은 비물리적인 편의를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개정안(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차별행위) ① (생 략)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u>정책·절차·관행</u> 등 인적·물적· <u>비물리적</u>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장애인인권교육 의무화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최근 장애인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하면서 장애인인권교육을 확대해 가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장애인차별금지교육이나 장애인인권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장애인인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장애인차별금지교육 및 장애인인권교육이 추가되어야 함.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
<p>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p> <p>① ② 동일</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추가)</p>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근거 조항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에 대해 실태조사 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없어 대상 기관의 조사 협조를 받기 어려웠고, 두 기관의 당해 사업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두 기관의 실태조사의 중복 문제를 정리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 실태조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조사 협조를 얻거나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 주관 기관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해 제출하도록

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출 요구 자료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자료, 장애인 채용, 승진 및 해고 등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 장애학생 입학 및 전학 자료, 수화통역 등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입증 자료 등이 있을 수 있음.

개정안(예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1(법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 행	시행령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1(실태조사) ① 법 제8조의1에 따라 실태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등 장애 차별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 2. 사회영역별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이행 상황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4.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규칙, 관행 등의 실태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 이행 실태 6. 장애를 가진 근로자, 학생, 고객, 민원인 등 장애인 당사자의 차별 경험 및 관련 욕구 7. 이 법의 이행과 관련한 기타 사항 ②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실태조사의 방법은 표본조사로 하되 조사 내용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이 규정에 대하여 혹자는 위 법조문의 해석상,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만 적용되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기타 다른 법령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반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의 위반이 되는 차별행위가 존재할 수 있는바, 장애 차별과 관련해서 이 두 법은 양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법 제9조가 「국가인권위원회법」, 나아가 다른 법상의 장애 차별 금지 조항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는 이 법률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다른 법령에 장애인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2. 제2장 차별금지

-1. 제1절 고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 제1절(고용)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

-1.1.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규정(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내용이 없음.
- 사용자가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편의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고용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쉬운 그림, 쉬운 설명, 의사소통 조력인과 같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1.2. 비물리적 편의에 대한 편의제공 규정(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는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외에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같은 비물리적 편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반면, 미국 장애인법은 공적인 직위로의 재배치, 직무재편성, 일반적인 근로시간의 변경이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과 같은 편의제공을 명시하고 있음.
- 그 밖에 외국의 여러 장애차별금지법은 편의 개념에 정책과 같은 비물리적 편의를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정당한 편의 개념에 비 물리적 편의를 의미하는 ‘정책’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1.3. 직장보육에 대한 편의제공 내용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

- 직장 보육에 대한 내용은 장애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여성 조항인 제33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였음.
- 임신, 출산, 양육, 보육 등은 장애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나, 이에 대한 내용이 장애여성 조항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 문제가 마치 장애여성만의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게 하였음.
-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직장보육에 대한 편의제공 내용을 고용 조항에 옮겨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제2절 교육

-2.1.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입학지원과 입학 및 전학 관련 내용 추가 (개정안 제14조 제1항)

- 차별금지 조항인 제13조 제1항에는 장애인의 입학 및 전학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조항인 제14조에서는 ‘재학 중’인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정하고 있어 의무범위가 일치하지 않음
- 개정방향 : 제14조 제1항에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 전학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

현행	개정안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입학지원 및 입학하거나,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거나,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2.2. 교내 이동 (개정안 제14조 제1항 제1호)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통학과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통학과 관련하여 편의제공의 내용으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통학차량이나 통학비 지원 등 의무는 부과하지 아니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5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 편의를 위한 내용이 제한적임. 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자는 이동을 위하여 이동용 보장구 외에도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과 설비가 필요하고, 시각장애인은 이동을 위하여 이동용 보장구 외에도 점자블록, 점자안내표지판, 음성안내 시스템 등의 시설과 설비가 필요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들이 지하 1층, 지상 3~4층으로 된 대학건물을 이용함에 주출입구에는 경사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승강기 등의 이동편의시설이 없어 외국어교육센터, 전공실험실습실, 학과학회실 등이 위치한 2층 이상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하여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학 총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시설의 재배치 또는 이동시설의 마련을 권고하였음(2012. 6. 13.10진정0175100, 10진정0180600, 10진정0181100)
- 법원은 대학이 장애인의 입학을 허가한 경우에 부담하는 배려의무와 관련하여, “○○대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하여 입학 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 장애인인 학생은 등록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대학은 장애인인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대학은 장애인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으로서는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주고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충분하고도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대학이 장애인인 학생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위자료(300만 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바 있음 (창원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가단27413 판결).

- 미국장애인법(ADA) 시행규칙(Regulations) 28 C.F.R. §36.304에서는 학교 및 각종 교육기관 등의 교육기관 내 이동 및 접근과 관련된 배리어(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교육기관은 불편을 제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커뮤니케이션상 불편을 포함하는 건축적 불편을 제거하여야 함을 명시. 경사로 설치, 각종 물건 및 기구의 재배치, 엘리베이터 버튼에 점자 표기, 출입문 넓히기, 사용하기 쉬운 문 손잡이 설치 등 다양한 불편 제거의 예를 제시하고 있음.
- 개정방향
 - 통학과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을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통학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학과 관련한 교통편의를 예시규정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편의 내용은 시행령에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현행	개정안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시행령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u>통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차량 제공,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등 교통편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u> 1의2. <u>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u>

-2.3. 발달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명시 (개정안 제14조 제1항 제4호의2)

-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과정에서 차별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발달장애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적 용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미국장애인법(ADA) 시행규칙(Regulations) 28 C.F.R. §36.303(c)(1)에서는 학교 및 각종 교육기관 등의 의사소통 관련 규정 명시. 발달장애인도 이 규정에 의하여 의사소통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교육기관의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및 장애가 있는 동반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
 -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은 적절한 보조기구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
 -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구 및 서비스의 종류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 관련 의사소통의 특징·길이와 복잡한 정도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구 및 서비스를 결정할 때에는 장애인의 요청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
 -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보조기구 및 서비스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필요한 시간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
- 개정방향
 -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필요
 - 교육책임자 등의 편의제공의무에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자료의 제공과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구의 제공, 의사소통 보조인력의 제공 등 의사소통지원 관련 의무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예: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음성으로 녹음된 자료, 동영상 자료 등).
 - 이는 제4호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별도로 명시한 것처럼 별개의 호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4의2. 발달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자료,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구, 의사소통 보조인력 및 이에 상응하는 수단 또는 지원의 제공

-2.4. 교육에 필요한 수어 통역의 확대 (개정안 제14조 제1항 제4호)

- 학교에서는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음. 이러한 외국어 교육에서 청각장애인이 예외가 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조항에서 수어통역을 “한국수어통역”에만 국한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됨.
-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법령에 쓰인 ‘수화통역’이 일괄적으로 ‘한국수어통역’으로 개정됨. 이 과정에서 각 법령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역과 상황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지않음. ‘수어’는 언어별로 다르므로 법령에서 ‘한국수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문체부 국어정책과 확인).
- ‘수어’는 ‘한국수어’를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
- ‘한국수어통역’을 ‘수어통역’으로 개정할 경우, 외국어 학습 측면에서의 교육기회는 물론 향후 수어통역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제14조 제1항 제4호는 교육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어통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한국농아인협회 의견).
- ‘한국수어통역’을 ‘수어통역’으로 개정하면, 교육에 있어 한국어는 물론 알파벳지화, 나아가 외국어까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4.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통역, 문자 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 보조기구 등 의사소통수단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4.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어통역, 문자 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 보조기구 등 의사소통수단

-2.5. 교육방법 및 시험(평가)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조항 (개정안 제14조 제1항 제5호)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 제5호는 교육책임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로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을 제시하고 있음.
-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과 교사 사이에 평가에 대한 사전 논의를 거쳐 개개 장애학생의 요구가 수렴되어야 함. 예를 들어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하여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습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며, 수행평가에 있어서 장애유형과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적절한 교육방법의 제공과 관련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인이 많은데, 수어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한국농아인협회)
- 시험(평가) 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 미제공 사례는 국내에서 꾸준히 이슈화됨
- 국내 사례 : ① 수험생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 ② 손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뇌성마비 및 뇌병변 장애인에게 시험시간 연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 겪음. ③ 시각장애인은 수능시험 수학 과목에서 스크린리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 점자 문제지와 확대 문제지만 제공. 점자를 잘 읽지 못하는 중도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음. ④ 각종 영어시험 및 자격증 시험에서도 시각장애인에게 스크린리더 지원이 되지 않거나 장애인 수험생이 직접 스크린리더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스크린리더 지원 관련 어려움 많음.
- 공무원시험, 대학입시, 토익시험 등 다양한 시험에서 장애인차별 사례가 확인되고 있고, 이에 장애단체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은 시험(평가) 전반에 관한 차별금지(편의제공)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교육, 고용 등으로 규정할 수 없는 공무원시험, 각종 자격시험 등 다양한 평가과정에 반영 가능한 전반적인 시험(평가)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조항 필요”(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미국 사례 - 진단 및 평가 시 피검자가 종이, 연필 또는 계산기 등의 보조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어야 하고, 검사가 실시되는 물리적 위치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가령 검사는 탁자가 아닌 바닥에서 또는 검사실이 아닌 놀이방에서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검사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부모나 교사와 같이 피검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⁷⁾

7) McLoughlin, J. A., & Lewis, R. B. (2005) Assessing students with special needs(6th ed.). Upper

- 제14조에 명시된 교육 관련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에 대한 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미국장애인법(ADA) 42 U.S.C. §12189에서는 “시험 및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은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소 및 방법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해당 장애인에게 적합한 장소 및 방법을 통해 시험 및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홍콩 장애인차별금지법
 - ① 뇌성마비로 인해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이나 과제 완성에 부과되는 시간제한을 연장하거나 제거해 준다. 또한, 신체적으로 쓰기가 어려운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대신 그들의 반응을 오디오로 녹음해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⁸⁾
 - ② 청각장애 학생이 듣기 평가 시 화자의 입술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앉아 있지 않은 경우에 이 학생들의 진정한 수준을 알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을 화자의 입술을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앉게 하는 것은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⁹⁾
 - ③ 시각장애를 지닌 장애학생에게 시험을 볼 때 확대시험지나 점자도구를 제공한다.¹⁰⁾
- 개정방향 : 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또는 시행령 제8조에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소 및 방법을 통하여 교육과정 및 시험제공”과 관련된 규정 보완, 추가

○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4조(정당한편의제공의무) ①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14조(정당한편의제공의무) ①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접근 가능한 장소, 방법을 통한 평가방법의 제공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교육에서의 장애차별예방매뉴얼 57쪽에서 재인용

8) 홍콩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Ordinance: DDO). 17. Assessment. 교육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57쪽에서 재인용

9) 홍콩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Ordinance: DDO). 17. Assessment. 교육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58쪽에서 재인용

10) 홍콩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Ordinance: DDO). 17.5. 교육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58쪽에서 재인용

-3.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3.1. 제3절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의 영역에 관한 개정

- 현행법 제3절에서 '재화와 용역의 제공'의 영역의 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읽힐 소지가 있음. 동절에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범위는 제16조의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제17조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19조의 '이동 및 교통수단', 제24조의 '문화·예술활동', 제25조의 '체육활동'뿐이고, 통상적인 서비스업의 범주들, 예를 들면 숙박업, 요식업, 판매업, 오락시설, 사회복지시설, 공회당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법원 및 국가인권위가 제3절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제공자들도 '재화와 용역의 제공'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적극 해석하고는 있지만 그 영역의 명확한 범위에 대해 심의한 바 없어, 그에 대한 불명확성은 여전히 존재함.
- 최근의 법 개정안에서 관광활동을 재화와 용역의 제공 영역에 포함시키고 이 영역에서 현행 법상의 차별을 금지한 것은 그러한 불명확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상기의 맥락에서 제3절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의 영역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당해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면, 특정 재화와 용역의 제공 영역을 포함시키는 법개정은 더 이상 불필요해질 것임.
- 참고로, 우리 현행법과 달리 미국장애인법은 우리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 영역에 대략적으로 해당하는 '공중시설'(public accommodation)의 범위를 12개 범주로 열거하고 있고, 영국의 1995년 장애차별법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간략히 정의한 후 그 8개 범주를 예시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의 영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은 법 제3조(정의)에서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에 대해 간략히 정의하면서, 제3절에서 명시된 5개의 영역을 포함하여 추가로 3~4개의 영역을 더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그 영역을 예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미국처럼 열거 방식을 택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영역의 추후의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기 때문임.

현행	개정안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 (생략) <신설></p> <p>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분한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 (현행과 같음) 8.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이라 함은 공중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물자나 장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이동 및 교통수단의 제공, 문화·예술활동 관련 서비스의 제공, 체육활동 관련 서비스의 제공, 상품의 도소매, 숙박·오락·요식 서비스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단,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6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p> <p>9. “정보”라</p>

-3.2. 제3절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 영역에서 금지되는 차별 유형에 관한 개정

- 법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는 해당 영역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유형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못함. 제15조제1항은 그 문언에 ‘장애를 이유로’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서 직접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임. 제15조제2항은 특별히 어떤 유형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문언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구는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현행법이 금지하는 모든 차별을 포괄한다고 해석할 수는 있음.
- 그간 국가인권위 및 법원은 제15조가 재화·용역 등의 제공 영역에서 현행법이 금지하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적극 해석해 왔지만, 토지·건물의 매매 및 임대와 금융서비스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제16조 및 제17조의 문언이 직접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 등과 맞물려 그러한 적극적 해석의 근거가 취약한 것은 사실임.
- 따라서 제15조는 현행법이 금지하는 모든 차별이 재화·용역 등의 제공 영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또한 토지·건물의 매매 및 임대와 금융서비스 제공 영역에서 직접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제16조 및 제17조도 차체에 현행법상의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p>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모든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자는 그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현행	개정안
<p>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현행	개정안
<p>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3.3.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의 부과에 관한 개정

- 모든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영역에서의 모든 제공자에 대해 모든 유형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제3절을 적극 해석하거나 그러한 취지로 법개정을 하는 것은 제3절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에 관한 조항과 이의 위임을 받아 그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의 조항과 충돌할 소지가 있음.
- 기본적으로 현행법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자와 편의 제공 내역을 규정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 이를 일일이 적시하고 나아가서 그 제공 의무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그런데 모든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영역에서의 모든 제공자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편의제공 의무자의 범위의 단계적 적용 규정의 취지와 충돌하는 조치라 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제24조 및 제25조와 이와 관련한 시행령 조항은 규모별로 또는 유형별로 문화·예술·체육 활동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을 셋으로 묶은 다음 각 묶음별로 연차적(2010년,

2012년 및 2015년)으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결국 이 규정은 해당 묶음에 포함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그 묶음에 포함되지 않는 규모나 유형의 문화·예술·체육 활동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면제한 것임. 따라서 이들 면제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문화·예술·체육 활동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나 해석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단계적 적용에 관한 조항과 충돌함.

- 이와 같은 충돌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단계적 적용 조항이 없는 토지·건물의 매매 및 임대와 금융서비스 제공 영역은 물론이고 아예 제3절이 명시도 하지 않은 다른 서비스 제공 영역에서도 발생하는 것임. 비록 그간 국가인권위 및 법원이 모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것으로 법을 적극 해석해 왔다고 하더라도, 토지·건물의 매매 및 임대와 금융서비스 등의 명시된 영역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법이 자신들에 대해 문화·예술·체육활동 영역에서처럼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것을 법이 자신들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임. 이러한 해석이 부적절하다면, 결국 그들은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 받은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도 부적절함.
- 이러한 문제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 영역에서는 더욱 심각할 수 있음. 예를 들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영세 목욕업자 등에게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법 시행과 동시에 부과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
- 이러한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법 개정은 사실상 없음. 다만, 2015.년 4. 11.부로 재화 및 용역 제공 영역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단계적 적용이 완료된 것을 이제 그간 그 의무를 면제받은 작은 규모나 다른 유형의 서비스 제공자가 그 의무를 질 단계가 되었음을 함의하는 것으로 보면서, 그간의 국가인권위 및 법원의 적극 해석과 조화되게 이들에게도 제3조의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시점부터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설득력을 강화하려면 당해 모순을 야기하는 단계적 적용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로, 규모가 작은 서비스 제공자들은 새롭게 부과된다고 여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호소할 수 있겠으나, 편의제공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초래할 경우 이를 제공하지 않아도 차별로 보지 않는 차별예외 조항이라는 안전판이 있음을 주지시키면 될 것임.

- 한편,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에 관한 조항은, 이를 개정했을 때 관련 산업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하여 일단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유형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 제안함. 일단 시행령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문화·예술사업자의 유형을 각호로 예시함. 이때 [별표 4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에 열거된 사업자 유형을 나열함.
 -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나열된 정당한 편의가 예시로 임하도록 동 조항도 개정하고, 차제에 기존의 정당한 편의 목록 중에 정당한 편의가 아닌 것들은 삭제함.
 - 체육활동의 경우, 모법에 '단계적 적용' 조항은 없으나, 시행령에는 있는바, 이를 개정함.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체육사업자 또는 체육시설의 유형을 각호로 예시함.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나열된 정당한 편의가 예시로 임하도록 동 조항도 개정하고, 차제에 기존의 정당한 편의 목록 중에 정당한 편의가 아닌 것들은 삭제함. 정당한 편의를 열거할 때 [별표 5]의 편의시설들도 포함시킴.

-3.4. 시설물 접근·이용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규정¹¹⁾

- 정당한 편의제공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대상과 적용범위는 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2009. 4. 11. 이후 신축·중축·개축하는 시설물로 명시하여 '면적'과 '건축연도'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면적을 기준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받게 되어 예외인정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한편, 건축연도를 기준으로 예외를 인

11)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사단법인 두루 著) 참조.

정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경과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소급입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신뢰 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오히려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공중이용시설에 일률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 발생.

- 참고로, 미국의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은 신·개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법의 가이드라인(Accessibility Guideline)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법 제정 이전에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용이나 곤란 없이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는 (readily achievable)방식의 물리적 장벽 제거”를 요구하고 있음.
-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은 건물의 건축연도나 면적에 관계없이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이들에 비해 “상당한 불리한 지위(substantial disadvantage)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 독일의 23개의 연방법은 건물 규모에는 관계없으나, “배리어프리(barrier-free)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신축, 증축, 개축(보수가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해야함)된 경우에만” 적용함.
- 일본은 “일정 건축연도 및 규모의 범위에 속하는 시설에만” 장애인 접근권 보장의무를 부과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범위 밖에 있는 시설에는 접근권 보장 노력을 요구하고, 몇몇 도에서 자체적으로 법률보다 엄격한 의무부과 규정을 두거나, 접근권 보장을 권장하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두고있음.
- 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되, 2009. 4. 11. 이전에 설치한 시설물은 정당한 편의 내용 및 설치기준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음. 또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대안적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과하는 안을 마련하였음. 개정안에 따르면 2009. 4. 11.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시설주는 일률적으로 설치 의무가 부과 되는 것이 아니라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를 부담하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시행령 제11조를 수정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법률에 근거를 두는 편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법 제18조를 개정하고, 시행령 제11조는 삭제하기로 함. 다만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은 시행령 제12조에서 그대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으므로 법 개정안에서 이를 고려함.
- 시행령 제12조에 정당한 편의 및 시설물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

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별표2는 시설물 설치기준인 물적 편의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인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배제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개정안은 해석상 불분명하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법 제4조 제2항의 내용임을 명시하고, 위 별표2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중 시설물 설치기준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함.

현행	개정안
<p>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p> <p>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작용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p> <p>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로 한다. 다만 2009. 4. 11.이전에 신축·증축·개축·설치(실내건축에 의한 설치를 포함함)한 시설물에 관해서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⑤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의 접근,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대안적 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장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p> <p>⑥ 제3항, 제4항 단서 및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안
<p>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p>	<p>(삭제)</p>

현행	개정안
시행령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u>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u>	시행령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u>법 제4조 제2항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 중 시설물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u>

-3.5.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정

- 미국은 2010년 8월 21세기통신비디오접근성법(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을 발효하였음. 이 법은 웹접근성이 아니라 통신 및 비디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법으로서 특히 제101조에서 고급통신(“advanced communications”)을 VoIP, electronic messaging, video conferencing services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104조는 합리적인 노력과 비용으로 달성가능한 범위 내에서(as achievable with reasonable effort or expense) ㉠ 고급통신기기가 장애인에 대해 접근성을 가지거나 장애인이 보통 사용하는 기구와 호환성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접속이 장애인에 대해 접근성을 가지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우리 현행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웹사이트 이외의 소프트웨어(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차별행위에 대한 해석 규정이 불분명해짐.
 - 법 제20조제1항은 ‘개인 등’의 장애인 정보접근권 관련 직접차별 및 간접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21조제6항 및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정보제공자의 필요한 수단 제공 의무를 ‘웹사이트’만 규정하여 실제 의무화된 전자정보의 범위가 ‘웹사이트’에 한정되어 왔음.
- 이로 인하여 장애인이 웹사이트 이외의 소프트웨어(모바일 웹, 모바일 앱 등을 포괄하는 개념) 문제로 인한 정보접근권에 차별을 받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구제할 근거조항이 부재함. 특히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정보 접근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 이에,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참고로, 개정안에서 ‘웹사이트’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병기한 이유는 공식 명칭인 ‘소프트웨어’가 지나치게 해석의 범위가 넓은 용어인 점, 미래창조과학부고시(2016. 10. 국가표준)에서 채택한 용어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점을 감안한 것임.
 - 동 국가표준에서 의미하는 ‘모바일 기기’란 운영체제를 갖는 모바일 전화기 및 운영체제를 갖는 태블릿 기기를 의미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란 모바일 플랫폼 개발언어로 제작된 응용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의미함.

현행	개정안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u>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u> 등

- 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 등에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등은 동조제6항에 의하여 위임된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의 각 수단에 대하여 에 의하여 장애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동조제3항) 이내에 제공할 의무를 규정함.
 - 그러나 실제로 필요한 지원은 즉시 혹은 지체없이 제공되는 것이 유의미한 상황이 대부분임에도 해당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규정은 정당한 편의의 즉시제공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함.
 - 이에,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현행	개정안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u>지체없이</u> 제공하여야 한다.

-4.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잠정권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4.1. 제3항 : 공공기관의 직무수행에서의 차별금지 대상 확대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직무수행 및 권한행사에 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1) 허가, 신고, 인가 등 절차와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 및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절차 전체로 확대할 필요 있음. 적어도 (1)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이나 신고절차로 명시하고 행정지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개정안
<p>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p>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4.2. 제4, 5항 :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 신청권, 공공기관의 적극적 확인 의무, 정당한 편의제공의 예시내용 확장

공공기관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당사자가 장애인인 경우 해당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그에 따라 필요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거나 당해 장애인 등이 자신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맞는 편의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제 5항에서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서적의 제작 및 제공을 들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 있음

현행	개정안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조인력의 제공,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서식의 제공,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은 공공기관 등의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항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장애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그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4.3. 제6항 : 사법기관의 특례

(1) 의무 주체 확대

제6항에서는 장애 여부 확인 및 조력에 대한 고지를 사법기관에만 의무로 부여하고 있는데,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예: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보호를 명목으로 한 수용 등)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으로 의무의 주체 확대

현행	개정안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 또는 행정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 또는 행정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대상의 확대 : 형사사법절차에서 사법절차 일반으로

제6항에서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형사사법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법절차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개정안
<p>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사법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사법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4.4. 주체의 명확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와 제26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공공기관 “등”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언급이 없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거나 “등”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4.5.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금지 규정 신설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같이 국가재난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재난 관련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재난상황에 대한 특별한 규정 찾아보기 어려움

국가재난상황에서 장애인에 맞춘 행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장애인이 재난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큼. 예: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혼자 사는 중증 장애인에게 자택격리 조치가 내려져서 그 장애인이 결국 메르스 병동에 입원하게 됨. 재난 상황에서의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규정 신설 필요.

〈제27조 참정권〉

-4.6. 제27조 선거 참여 보장을 위한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 관련 규정 신설

-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접근가능한 투표소 선정은 가장 기본적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여전히 문제되는 곳들이 많음. 예: 엘리베이터 설치 안 된 지하 투표소, 엘리베이터가 좁아서 전동휠체어로 투표소

접근 불가, 수동휠체어 접근 불가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용 기표대 등.

- UN 장애인권리 협약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에서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
-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투표소를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 신설 필요.

-4.7. 선거방송 및 선거 홍보물에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추가

- 선거방송, 선거 관련 웹사이트, 선거 홍보물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비교해서 정보접근에 어려움이 많으며,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도 많은 차이가 있음
- UN 장애인권리 협약에서는 모든 장애인이 그들의 장애특성에 따른 정보접근을 보장하도록 규정. 4조(일반의무)는 신기술을 포함한 이동보조 및 장치 및 보조기술과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서비스 및 시설에 관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 제9조(접근성)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을 규정. 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에서는 일반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 적절하고 추가비용 없이 제공할 것을 권고.
- 선거방송, 선거 관련 웹사이트, 선거 홍보물에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 명시 필요.
- 시행령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예: 책자형 공보물과 같은 내용을 점자 및 음성공보물(점자를 읽지 못하는 다수의 시각장애인 고려)로 제작하도록 함. 후보자 홈페이지에 스크린리더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선거 방송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삽입. 발달장애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 및 투표 과정 설명과 관련한 자료제작 및 보급 등

-5.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 제5절(모·부성권, 성 등)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

-5.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확대(장애인차별금지법 제28조 제4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8조 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책을 마련할 의무주체로 규정하지 않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주체임.
-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의무주체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6.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 제30조(가족·가정, 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는 가정, 가족과 복지시설을 나누어서 구성하고, 특히 탈시설 지원에서의 차별금지 조항, 복지시설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됨
-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는 건강권의 개념, 의료정보 이외에 장비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접근권 등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으나 장애인건강권법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등 추후 논의가 필요
-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는 괴롭힘 내용(특히 혐오)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 총칙에 규정할 필요성, 온라인에서의 괴롭힘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3. 제3장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 등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장(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

-1. 수범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인으로 확대(장애인차별금지법 제33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고용 영역에서의 사용자, 교육 영역에

서의 교육기관을 수범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 밖에 재화·용역 제공자, 공공기관 등은 수범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장애여성 조항의 수범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여성과 장애남성의 공통된 주제는 장애여성 조항이 아닌 일반조항으로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3조 제2항·제3항)

- 임신, 출산, 양육, 가사, 보육 등은 모든 장애인의 문제이나, 이에 대한 내용이 장애여성 조항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 문제가 마치 장애여성만의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게 하고 있음.
- 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면서 전통적인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특정 성역할을 강조하는 것 또한 성평등에 반한다고 평가받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3조 제2항의 내용은 모·부성권을 규정한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직장보육에 관한 정당한 편의에 대하여 규정한 제33조 제3항 각호는 제11조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다중차별, 장애여성 역량강화 규정 필요(신설)

-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두 가지 사유로 인하여 차별을 겪고 있으며,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 장애남성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됨.
- 장애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장애여성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는 장애여성이 마주하는 다중차별, 장애여성 역량강화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여성 조항에 다중차별금지, 역량강화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여성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므로 총칙인 제1장으로 옮겨 규정되는 것이 필요함(이는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도 마찬가지임).

-4.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특수한 차별금지 규정(장애인차별금지법 제37조)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 상황을 반영한 것이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정신적 장애인의 성장한 권리 의식을 반영하여 정신적 장애인이 겪는 특수한 차별과 그 금지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4.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1. 법무부 시정명령 요건 완화

가. 문제점 및 개정의 필요성

법무부의 시정명령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필요한 때에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발하는 데에 소극적이고, 적절한 시정명령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시정명령의 요건 중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

현행	개정안
<p>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p>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2. 국가 및 지자체 산하 장애인차별 담당관 설치

가. 문제점 및 개정의 필요성

장차법 제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하고,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

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할 기관이 없어 실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 산하에 장애인차별 담당관을 두어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5조의2(장애인차별 담당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장애인차별 담당관을 둔다. ② 장애인차별 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집행 업무 지원 및 점검 2. 장애인 차별 관련 실태조사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 장애인차별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정책연구 6. 그밖에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장애인차별 담당관은 장애인차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각 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④ 장애인차별 담당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5.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1. 단체소송 제도 도입

가. 문제점 및 개정의 필요성

차별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개별적으로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단체가 대신하여 법원에 개별 피해를 당한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8조의2(단체소송의 대상등)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법원에 장애인 차별을 구제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정관에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주된 목적으로 명시하고,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50명 이상일 것 다. 주무관청 허가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한국장애인개발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인 이상의 장애인으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주된 목적으로 명시하고,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2. 법원의 관할

가. 문제점 및 개정의 필요성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관할이 행정법원인지 민사법원인지 불분명하여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현행	개정안
<신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등) ④ 이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민사법원으로 한다.

6. 제6장 벌칙

-1. 차별행위에 따른 벌칙 규정

가. 문제점 및 개정의 필요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이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에 관해 현행 장차법은 차별의 고의성·지속성 및 반복성·피해자에 대한 보복성·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전부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지나치게 엄격하다. 따라서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장차법 개정이 필요하다.

나.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악의성 판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데에 있어 '전부' 부분을 삭제

현행	개정안
<p>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p>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u>처한다</u>.</p> <p>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IV. 마치는 말

이상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았다. 이 발제문은 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것도 일종의 개별 법률 단위의 약진(躍進)을 도모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법 체계의 전체적인 재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당시에 논의했던 바와 같이

인권법 - 복지법의 2개 체계로 분류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기본법 - 인권법 - 복지법의 3개 체계로 분류 및 재정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해당 체계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제대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법 제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지나치게 간단한 개념 중심으로 법조문이 제정되고 해석상의 논란을 남기며 정부 주도의 시행령으로 인해 법의 정신이 훼손되거나 후퇴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법 현실을 반영한 수요자(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인권단체) 중심의 법령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영미법계의 전통을 도입하여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법 조문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상세 사항을 너무 쉽게 시행령에 위임하기 보다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 필요한 사항 등은 아예 모두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 관련 정부 부처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 빠질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향후에도 장애인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그동안 인권법으로서 한 축을 담당해 왔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그 역사적인 정신과 의미가 되살아나는 10주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2017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장차법 개정안 수렴 토론회

발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가야 할 길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가야 할 길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1.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야기

1) 우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든 이유

오랜시간 장애인에게 차별은 일상이었다.

명절이나 가족의 행사가 있는 날 조용히 숨죽이며 구석방에 숨어있어야 했고, 그렇게 20년 30년 씩 집안에서 생활하며 세상밖은 그저 창밖 풍경일 뿐이었다. 학교는 장애인에게 너무 먼 곳이었으며, 장애인을 받아주는 일터를 찾기는 하늘에 별따기였다. 누군가는 쉽게 건너는 육교와 도로의 높은 턱은 장애인에게 이 길로 다니지 말라고 막아섰다.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집을 떠나 시설로 보내져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죄를 지은것도 아닌데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나오는 길이 없는 곳이었다. 시설밖 사람들이 그곳의 삶에 관심이 없는 사이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다는 시설운영자는 불쌍한 장애인을 들먹이며 돈벌이를 했다. 그 사이 오히려 장애인의 삶은 험벗어가고 있었다. 폭행과 폭언에 신음해도 그러다 생명을 잃게되어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삶과 죽음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이렇게 지역사회안에서 시설안에서 어느곳에 있던 차별의 대상이 되었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장애인의 삶에 대해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의 활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운동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장애인복지법 개정운동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장애로 인한 차별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세상에 드러났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해 장애인 인권단체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상담건수가 1천건을 넘어섰고, 본격적으로 장애인 차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시작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전 주요차별사례〉¹⁾

- 장애를 이유로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 탈락,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원직복직안됨
- 수화 통역자가 없어 성폭력 당한 청각장애여성이 간통죄로 몰려
-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3층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장애를 이유로 불편할 것 같다며 혼자서 1층에서 일하도록 한 경우
- 시각장애인임을 알면서 직원 채용 면접시, 유인물을 읽어보라는 면접관
- 친척 형이 동생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고 도주하여 빗더미에 앉게 된 지적장애인
- 신변 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 학생을 거부하는 학교
-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밥과 빨래 등 집안일을 온통 맡아서 하는 여성
-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는 아예 보내지 않는 부모와 형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애인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을 때, 영국에 연수를 다녀온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입을 통해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이 전해지면서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3년 4월 15일 장애유형과 활동의 범위, 단체의 규모, 정치적 입장 등에 대한 차이를 모두 배제한 가운데 오로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목표아래 전 장애계 단체 58개가 참여하여 2003년 4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제정추진연대)”가 출범하였다. 제정추진연대는 단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하고 평등하게 의견을 내고 결정할 수 있는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 형태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길거리에서 157일간의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제정까지 출범시 58개였던 제정추진연대 참가 단체는 2007년 3월 전국 297개 단체로 확대되었다. 또한 법안

1) 장애인차별금지법 백서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 ① 51p 내용 중 발췌

제정촉구를 위해 2005년 12월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과 부산의 장애인 활동가 13명이 삭발식을 통해 법안 통과에 대한 결의를 다짐하기도 했다.

이렇게 2001년 초기 논의를 시작하고 제정추진연대를 구성하면서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은 6년여의 긴 시간을 보낸 후 2007년 3월 6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주요과정〉

■ 법안만들기

- ① 장애인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다
30~40명의 다양한 영역의 장애인이 매주 만나 라이프 스토리 형식으로 장애인차별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이러한 장애인당사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법률가들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념을 정리하고 기본 골격을 구성
- ② 2003년 6월부터 10월까지 9차례 연속공개토론회 진행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당사자의 차별경험을 모아 2003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매주 1회씩 분과별 논의를 통해 초안 작성
- ③ 2004년 5월 대규모 토론회 개최
100명이 1박2일간 참여 작성된 초안 검토
- ④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역순회 공청회 진행
지역별 의견 수렴을 위해 8개 주요도시 순회
- ⑤ 2004년 11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설명회 개최
법학자와 법조인들의 자문토론회를 거쳐 법안 마련

■ 입법발의 과정

- ① 2005년 3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홍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촛불문화제, 결의대회, 백만인서명운동 전개
- ② 2005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 진행
- ③ 2005년 9월 20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국회 발의
각 정당에 법안 발의 의사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 민주노동당의 답변을 받고 간담회와 토론회 진행후 발의 결정
- ④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결성
문화제 개최,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를 위한 전동휠체어 거리행진, 대표자 9인 삭발식, 지역별 촛불집회와 1인시위 등의 활동으로 법제정 촉구
- ⑤ 연대단체 82개 단체로 확대
- ⑥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통해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
- ⑦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대통령 자문 차별시정위원회의 제안으로 정부 12개 부처와 함께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논의 진행

- ⑧ 각 당의 법안 발의
 노회찬의원의 발의안을 기본으로 2006년 12월 18일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장향숙의원 대표 발의(총 54명 의원 공동발의 서명), 같은 날 한나라당 정화원의원 대표발의(총 38명 의원 공동발의 서명)
- 국회통과 및 시행과정
- ① 국회발의 3가지 법안 의견조정
 정당별 발의안 3가지에 대한 의견조정작업 추진, 쟁점사안인 ‘장애개념’, ‘시정명령권 명시’, ‘시정기구 국가인권위원회’ 등 내용 결정.
 - ② 2007년 3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 2007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③ 2007년 4월 10일 대통령 공개 서명식 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공포
 - ④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배제한 정부 단독의 시행령 마련 논의를 저지하고, 공동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시행령안 완성.
 - ⑤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시행을 앞두고 각 정부부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 ⑥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 우리가 걸어온 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삶을 바꾸었는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을 맞이하였다.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만 제대로 된 근거와 규정이 없었던 과거와 달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차별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를 우리 생활속에서 어떻게 잘 활용하면서 법의 실효성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으로 2009년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이하 상담전화)를 개설하였다. 8년째 운영되는 상담전화를 통해 한해 300여건 총 2400여건의 장애인차별사례가 접수되었고, 이 사례들의 대응을 통해 작게는 개인의 삶을 크게는 사회제도를 바꾸어내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의사소통조력 지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형사사법절차에서 인지와 표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은 그 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되었을때는 피해사실이 축소되고, 가해자가 되었을때는 가해사실이 확대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게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이 이러한 형사사법절차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제정당 시부터 의사소통조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조항에 대하여 장애인당사자도 경찰, 검찰, 법원 관계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법의 조항은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2011년 방화사건의 가해자로 재판을 받게 된 여성지적장애인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의사소통조력인 제도를 법원에 처음으로 요청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2.10.22.>

〈의사소통 조력 지원 사건개요〉²⁾

- 2011. 4. 11. 김00씨 방화사건 건 관련: 종로경찰서 강력2팀장, 유치소 김씨 접견
- **2011. 4. 15. 담당검사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 공문 발송함**
- 2011. 4. 19. ‘장애여성, 거리에서의 노숙생활 20년’ 성명서 뿌림
- **2011. 4. 22. 담당검사와 통화: 구속연장확인(정신 감정상태 확인 위함), 피의자 심문 조사시 ‘신뢰관계 동석자 배치’를 하겠다는 약속받아냄**
- 2011. 6. 14. 차혜령 변호사와 대책회의: 인덕원 서울구치소
- **2011. 6. 28. 김00씨 1차 공판: 재판부에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조력인 배치’를 요청함 // 재판부는 ‘장차법제26조제6항 정당한 편의라는 점을 근거로 확인하였음**
- **2011. 7. 6. 김00씨 2차 공판: 장추련이 ‘한국 형사소송’ 최초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조력인’ 역할을 지원함**
- 2011. 8. 2. 김00씨 대책회의 및 회의목적: 공판 진행상황 공유 및 대응방안 모색, 장추련 의견 서제출 및 탄원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김씨 향후 지원방안 논의//회의 참여자: 차혜령변호사, 장추련 사무국, 배복주(장애여성공감), 김영희(노들), 박문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비마이너 기자
- 2011. 8. 10. 김00씨 3차 공판: 검찰 측 증인 심문(00슈퍼 주인부부 증언, 119소방관) 검찰 측 ‘김00씨가 무고한 비장애인 슈퍼에 방화를 한 것으로’ 사건초점을 부각시키려고 함

2) 201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101p)

- 2011. 9. 2. 김00씨 4차 공판: 검찰 측 증인 심문(경찰관, 노점상) 출석하지 않음. - 2011. 9. 21. 김00씨 5차 공판: 검사가 교체됨/ 이번 검사는 00슈퍼에 찍힌 사건과 다른 화재현장에 찍힌 사건을 판별하고자 함/ 또한 김00씨의 정신감정을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감정한 정신과 의사>에게 재요청함
- 2011. 10. 5. 김00씨 6차 공판: 검찰 측 증인(경찰관, 노점상)출석함. 두 사람 모두 화재현장에 있지 않았고, 김00씨를 화재 현장에서 목격하지 않음/ 00슈퍼 화재 이후,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람들로부터 김00 씨일 거라는 추측형 말을 들었다고 함
- 2011. 11. 18. 7차공판, 재판부는 ▲검사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가 없는 상황에서(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없는 상황)의 진술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분노조절 등에 대한 훈련이 부재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일부 책임은 사회와 가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 현재 상황: 검사측은 1건의 방화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함. 우리측도 재판부가 <분노조 절훈련 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내린 치료보호 감호처분>관련하여 항소함.

이후 법안에만 명시되어 활용되지 않던 의사소통조력제도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점차 적용되어나가기 시작했고, 현재는 형사사법기관들이 절차에서의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지침을 가지고 의사소통조력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차별상담전화의 의사소통조력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월 3회 이상 경찰서와 법원 등에서 의사소통을 조력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당사자 역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직접 상담전화로 연락을 해오거나, 경찰에게 의사소통조력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2) 체육시설에서의 인적지원을 포함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2013년 시각장애인 여성이 00구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의 요가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보조인력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당시 해당 스포츠센터는 보호자동반시에 한해서만 가입을 허용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장애인당사자의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시설 이용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체육시설등은 프로그램 참여를 표면적으로는 제한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편의시설 및 보조인력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서 실제 참여는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조항에 따라 장애인차별 시정 구제청구소

송을 제기하였고, 2013년 11월 피고측이 원고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함께 따라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종결되었다.

〈해당재판의 조정합의 내용〉

- a.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프로그램제공 - 피고측은 원고가 차별받았던 요가, 헬스프로그램에 국한, 전 프로그램 참여시 보조인력제공의 어려움과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어렵다고 주장. 원고측이 하려고 했던 요가, 헬스프로그램에 참여시 탈의실, 샤워실 등 이용에 있어서 여성보조인력 1인 제공을 하기로 함(제공시기: 2014년 1월 1일)
 - b.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점자자료제공 - 피고측은, 웹사이트 홈페이지 비용이 7천만원 책정되어 있다고 함(제공시기: 2014년 12월), 점자자료는 향후 시각장애인과 단체의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정보만을 담아서 제작, 배포하는 방식으로 제공 하는 것으로 조정함(제작완료: 2014년 6월 30일까지)
 - c. 요가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필요한 보조인력제공. 원고측이 하려고 했던 요가, 헬스프로그램에 참여시 탈의실, 샤워실 등 이용에 있어서 여성보조인력 1인 제공을 하기로 함(제공시기: 2014년 1월 1일)
- ** 조정내용에는 도시관리공단이 미이행시, ‘피고들은 (가)항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항을 명시하겠다고 재판장이 얘기했고, 원고측은 피고측이 미이행시 간접강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환기시킴.

위 소송의 결과 해당 체육시설은 보조인력 배치 및 편의시설설치, 그리고 장애인에 정보제공을 위한 점자자료 등을 제작하였다.

이후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유사한 사건 발생시, 해당 조정판결을 판례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요청하여 사례를 진행하고 있다.

예) 2015년 경기도00시에서 위탁하는 체육시설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 이용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보조인력 배치 등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 당시 해당 판례와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 제시를 통해 탈의실과 샤워실의 구조변경공사를 진행하고, 미리 시간 통보시 보조인력을 배치 체계마련

3) 시험에서의 장애인차별 대응 및 변화

① 수험능력시험에서의 점자정보단말기 사용 요구

2013년 2년후 수험능력시험 응시에정인 전맹시각장애학생들이 수능시험에서 정당한 편의로 제공되고 있는 점자문제지와 녹음테이프 및 1.7배의 시험시간 연장 제공으로는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학생들은 어린시절부터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모의고사 및 수능시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2015년 모의고사에서부터 점자정보단말기 사용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② 공무원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범위 확대

2015년 1급 뇌병변장애인 윤00씨는 9급 세무회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서 인사혁신처에 개별 고사실과 계산과정에서의 대필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전까지의 시험과정에서 대필지원은 마지막 답안지 체크 과정에서만 제공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계산과정을 모두 암산으로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처음으로 계산과정에서의 메모대필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대필지원 요청에 대하여 시간연장과 답안지 체크 이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거절의 입장을 제시했으며, 차별상담전화는 당사자와 논의하여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과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였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계산과정대필지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처음으로 공무원시험에서 계산과정에서의 대필지원이라는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

이후 서울시공무원시험에서도 계산과정에서의 대필지원을 요청하였고, 위의 사례를 예시로 이후 시험에서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이후 계산과정에서의 대필지원과 별도고사실 등의 정당한 편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혀왔다.

4) 한눈시각장애인의 1종 운전면허 취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16년까지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단안시각장애인의 경우 양안시력을 측정하는 1종면허를 취득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각종 사고로 한쪽눈의 시력을 잃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많은 운전자들이 실제로는 운전이 기능함에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취업이나 직업선택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5년 12월 30일 국회 회기 마지막날 본회의를 통과하여 작년 11월 30일 본격적으로 시행이 시작되었다.

3. 우리가 가지 못한 길, 하지 못한 일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을 보내며, 우리는 그래도 크고 작게 많은 것들을 바꾸어왔다.

차별조항이 약하지만 근거가 되는 법이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의 사건들에 대응하면서 법과 제도과 사회를 우리는 하나씩 차근차근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하지만, 10년을 돌아볼 때 아직도 제자리에 있는 것들이 있다. 변화시켜보고자 끊임없이 고민해 왔지만 아직도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들, 10년이라는 시간속에서도 바꿀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때문이었을까?

1) 차별 시정기구는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법안이 만들어질 당시 장애계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 운영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결국 발의 과정에서 장애인차별시정기능은 인권위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주는 선에서 법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시정기구를 일원화하고자 했던 것은 실제로 차별을 당했을 때 좀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시정기구는 인권위로 일원화하고 시정명령의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법 제정당시 우려는 현재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다.

① 법무부의 장애인차별시정명령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안에서의 법무부의 시정명령은 현재 거의 그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2010년 뇌변변장애인 남성의 질병에 의한 직권면직 사건에 대하여 최초로 장애인차별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2012년 수원역 앞 지하도상가의 관리주체인 수원시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끝으로 5년이 될 동안 단 한건의 시정명령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의 시정명령 권한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달리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법 제정당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요청했던 것은 이렇게 이원화 될 경우 시정권고가 시정명령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결국 시정조치가 강제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현재 시정명령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율의 저하에 있다. 실제로 시정권고 건수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시정명령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 한가지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시정명령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나 섹션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에 있어서 강제력 있는 시정명령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업무 주요내용>³⁾

-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권고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내용 통보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에서 권고이 불이행, 정당한 사유,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심의
- 심의결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② 장애인차별시정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이다. 제정당시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규정한 것은 장애와 관련한 문제는 인권으로 바라보았을 때 가장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인용(권고)률은 10%선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은 권고율의 저하는 결국 위에서 언급했던 시정명령제도의 활성화를 막고 차별구제에 있어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정권고율의 저하는 현재 권고를 결정하는 인권위원의 구성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구성원중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와 관련한 활동을 했던 사람

3) 법무부 인권국 홈페이지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중

은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은 법조계 출신의 이력을 가진 사람들로 많은 사건들이 법리적 판단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상황에서 법리적인 판단은 결국 장애와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입장과 인권적인 관점을 담아내기 어려우며 결국 많은 사건이 장애가 고려되지 않은 채 기각 또는 각하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결정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구성원중에 장애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판단할 사람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정치적인 입장만을 담아서 결정되는 위원으로는 장애인차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시정을 권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상법 732조 폐지가 아닌 개정으로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2014.3.11.>

상법 732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초기부터 장애인을 보험가입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가장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계속 폐지를 요청해왔다. 732조 안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라는 표현으로 인해 많은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반복되게 보험을 거절당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계속되는 장애계의 요구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법무부는 폐지가 아닌 개정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개정의 내용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의사능력을 결정하는 권한은 역시 보험회사에 주고 있어 말만 바꾸었을뿐 내용은 변화가 없는 제자리걸음이 되었다.

4. 우리가 그래서 가야할 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당시 그동안 장애인을 복지과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법체계를 바꾸어보고자 만들어졌다.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을 가져가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장애인

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장 큰 기조로 삼았던 것은 결국 차별에 문제는 장애인당사자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그것이 복지와 시혜를 이야기하는 법으로 보장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이 있다는 것은 내가 차별받을 때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사회에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큰일을 해내고 있다. 오늘 우리가 법의 개정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행이 안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10년을 맞이하며 법의 모습을 바꾸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결국 그 모습안에 내용이 얼마나 장애인의 삶과 잘 연결될수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작은 장애인이었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 역시 장애인이 앞장서 나아가는 길이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당사자의 힘과 의지로 법이 우리 삶과 떨어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며 하는 바람이다.

제정 20년 쯤이 되는 해에는 장애인차별이 없어서 고민하는 세상이 되었으며 좋겠다. 언젠가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차별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그러한 세상이 될 때까지 만들어가자,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



2017장애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장차법 개정안 수렴 토론회

발제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10주년 진정사건 현황 및 분석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정책팀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10주년 진정사건 현황 및 분석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정책팀장)

1. 들어가며

2017. 4. 10.은 장애계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제정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16년말까지 총 10,320건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접수되었고, 그 중 위원회에서 처리된 사건은 10,077건이었으며, 이중 위원회의 조사대상 결정사건은 4,608건(46%), 조사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등이 된 사건은 5,469건(54%)이었다.

조사대상 사건으로 처리된 4,608사건 중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권고한 사건은 383건, 조사중 해결된 사건은 2,335건(이와 별도로 진정인이 진정 해결되어 취하한 사건은 645건임), 합의종결된 사건은 355건, 위원회 조정성립된 사건은 5건으로, 위원회 의결 조사대상 사건 중 3,078건(66.8%)이 차별시정이 이루어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 장애에 대한 인식 및 이해부족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행위들이 여전히 일상생활 도처에서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진정처리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를 살펴보면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각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 현실적으로 일정규모 이하나,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의 권리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조항과 위배되는 상충법률이 존재한다는 점 ▲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의 세부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그 동안의 사회·문화적, 기술적 급속한 변화에 따른 현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난 9년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리한 장애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가.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차별 진정사건 53% 증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 11. 25.) 이후 2016. 12. 31.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사건은 총 23,413건으로, 이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은 10,973건인 전체 차별사건의 46.8%에 해당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2008. 4. 11.) 이전 15.3%였던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비중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9년간 평균 53.9%로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장애인의 인권의식 제고와 신장에 큰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1〉 참조).

〈표 1〉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2001.11.~ 2016.12.)

(단위: 건, %)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총계	2001. 11.~ 2016. 12.	진정건수	23,413	12,440	10,973
		비율(%)	100.0	53.1	46.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2001. 11. 25.~ 2008. 4. 10.	진정건수	4,269	3,616	653
		비율(%)	100.0	84.7	15.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8. 4. 11.~ 2016. 12.	진정건수	19,141	8,824	10,320
		비율(%)	100.0	46.1	53.9

나. 연도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진정사건 10배 증가

2001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0,973건이며, 그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10,320건이다. 이를 월 평균 접수 건수로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월 평균 10건이 접수되었으나, 법 시행 이후는 월평균 93.2건이 접수되어, 법 시행 이후 약 10배 증가하였다.(<표 2> 참조).

〈표 2〉 연도별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6.12.)

(단위: 건)

연도(년) 구분	총	장차법 이전	2001(11~12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1~4.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시행 이후	2008(4.11~12월)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장애진정건수	10,973	653	13	20	18	54	121	116	256	55	10,320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6	1,492
월평균	60.3	10	6.5	1.7	1.5	4.5	10.1	9.7	21.3	16.5	93.2	67.2	60.4	141.3	73.8	111.6	109.3	94.9	95.5	124.3

다.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지체장애관련 진정사건이 전체사건의 33%, 시각장애인 진정사건 증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년 간 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을 장애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지체 장애인이 3,403건(33%), 시각장애인이 2,295건(22.2%), 발달장애인이 1,290건(12.5%), 청각장애인이 1,137건(11%), 뇌병변장애인이 741건(7.2%), 기타 장애유형(내부기관장애, 안면장애 등)이 976건(9.5%) 순으로, 지체장애인과 관련한 사건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3> 참조).

〈표 3〉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분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발달	언어	정신	기타	
전체	계	10,320	3,403	2,295	741	1,137	1,290	73	406	976
	비율	100.0	33.0	22.2	7.2	11.0	12.5	0.7	3.9	9.5

이는 2015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이 51.5%인데 비하여 위원회 진정사건은 33%를, 등록 뇌병변장애인은 10.1%에 비해 진정사건은 7.2%를 차지하고 있어 위원회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비율은 적다.

그러나, 시각, 청각, 발달장애, 정신장애 관련 사건은 등록장애인 구성비(32.6%)와 비교해 볼 때 보다 많은 비중으로 접수(50.1%) 되었다. 특히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환경의 대중화에 따라 시각장애인 진정이 등록 시각장애인 비율에 비해 2배(등록 시각장애인 비율 10.2%, 인권위 진정비율 22.2%) 이상 높았다.

라.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건이 전체 장애차별사건의 58.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년 간 가장 많이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은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6,081건으로 58.9%)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에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서비스,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등의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역별 사건비율은 재화·용역 일반이 15.2%, 시설물 접근이 12.3%,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이 15.1%, 보험·금융서비스가 6.5%, 이동 및 교통수단이 6.8%, 문화·예술·체육이 3.0%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소계	재화· 용역 일반	보험· 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 수단	정보 통신 의사 소통	문화 예술 체육			
전 체	접수	10,320	632	1,025	6,081	1,567	675	1,265	701	1,560	313	521	1,175	886
	비율	100.0	6.1	9.9	58.9	15.2	6.5	12.3	6.8	15.1	3.0	5.0	11.4	8.6

이를 장애차별 영역별 월평균 사건수로 살펴보면 ‘재화 및 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이 65.4건, ‘괴롭힘 및 기타’영역이 22.2건, ‘고용’영역이 6.8건, ‘사법·행정 및 참정권’영역이 5.6건, ‘교육’영역이 11건으로, 월평균 접수 건수 111건 중 고용과 교육영역의 진정사건이 많지 않음을 볼 수 있다.(〈표 5〉 참조).

〈표 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차별영역별 월평균 진정사건 증감 추이

(단위: 건)

구 분		2001. 11.25. ~ 2008. 4.10.	2008. 4.11. ~ 2008. 12.31.	2009. 1. 1. ~ 2009. 12.31.	2010. 1. 1. ~ 2010. 12.31.	2011. 1. 1. ~ 2011.1 2.31.	2012. 1. 1. ~ 2012. 12.31.	2013. 1. 1. ~ 2013. 12.31.	2014. 1. 1. ~ 2014. 12.31.	2015. 1. 1. ~ 2015. 12.31.	2016. 1. 1. ~ 2016. 12.31.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9년 (2008. 4~ 2015. 12.)
		합계	전체 건수	653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6
월 평균	8.5		67.2	60.4	141.3	73.8	111.7	109.3	94.9	95.5	124.3	111
고용	전체 건수	153	41	69	82	64	82	75	94	69	56	632
	월 평균	2	4.7	5.8	6.8	5.3	6.8	6.3	7.8	5.8	4.7	6.8
교육	전체 건수	122	61	49	55	62	96	45	66	55	536*	1,025
	월 평균	1.6	7.0	4.1	4.6	5.2	8	3.8	5.5	4.6	44.7	11
재화·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전체 건수	207	347	412	1269	487	808	706	677	733	642	6,081
	월 평균	2.7	39.9	34.3	105.8	40.6	67.3	58.8	56.4	61.1	53.5	65.4

구 분		2001. 11.25. ~ 2008. 4.10.	2008. 4.11. ~ 2008. 12.31.	2009. 1. 1. ~ 2009. 12.31.	2010. 1. 1. ~ 2010. 12.31.	2011. 1. 1. ~ 2011.1 2.31.	2012. 1. 1. ~ 2012. 12.31.	2013. 1. 1. ~ 2013. 12.31.	2014. 1. 1. ~ 2014. 12.31.	2015. 1. 1. ~ 2015. 12.31.	2016. 1. 1. ~ 2016. 12.31.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9년 (2008. 4~ 2015. 12.)
사법· 행정 /참정권	전체 건수	-	55	42	39	80	93	71	61	37	43	521
	월 평균	-	6.3	3.5	3.3	6.7	7.8	5.9	5.1	3.1	3.6	5.6
괴롭힘, 기타	전체 건수	171	81	153	250	193	261	415	241	252	215	2,061
	월 평균	2.2	9.3	12.8	20.8	16.1	21.8	34.6	20.1	21	17.9	22.2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과 ‘사법·행정 및 참정권’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해당기간 동안(2001.11.25.~2008.4.10.)의 사건 접수 건수를 모두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에 포함함.

* 2016년 발달장애인 단체에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504건을 집단으로 진정함.

마.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

- 지체장애인은 ‘시설물 접근’에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 뇌병변 및 지적·발달장애인은 ‘재화·용역 일반’에서, 정신장애인은 ‘괴롭힘 등’의 영역에서 가장 많은 차별 경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년간 지체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 상 버스 및 철도 이용, 도로 및 지하상가 이동 등 ‘시설물 접근과 이동’과 관련하여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사례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경우 웹 접근성 등 정보접근, 점자 및 음성서비스 관련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련한 차별사례가 많았다. 한편, 뇌병변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다거나 놀이시설이나 식당 등 특정 시설의 이용을 거절당했다는 사례가,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주변인 및 시설종사자로부터 비하적 발언, 폭행, 욕설 등을 당했다는 사례가 많았다(〈표 6〉 참조).

특히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관련 진정이 1,036건으로 전체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단위: 건)

사건유형	총합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발달	언어	정신	기타	
소계	10,320	3,403	2,294	741	1,137	1,290	73	406	976	
고용	632	229	67	50	102	48	12	36	88	
교육	1,025	429	81	54	57	327	4	13	60	
재 화 와 용 역 의 제 공 및 이 용	재화·용역 일반	1,567	513	328	181	128	232	11	57	117
	보험·금융	675	154	123	66	126	101	7	56	42
	시설물 접근	1,265	867	182	92	16	13	1	3	91
	이동 및 교통수단	701	367	118	54	23	40	5	2	92
	정보접근·의사소통	1,560	37	1,036	17	329	26	6	2	107
	문화·예술·체육	313	64	26	16	59	119	-	7	22
사범·행정	358	73	83	19	43	73	5	19	43	
참정권	163	58	29	7	3	8	-	3	55	
괴롭힘 등	1,175	305	69	115	208	224	12	138	104	
기타	886	307	152	70	43	79	10	70	155	

3.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세부 유형 및 주요 진정 사례

가. 고용 영역

■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고용차별의 비중 확대(공공부분에 비하여 2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년 간 접수된 고용차별 사건 632건 중에서는 ‘모집 및 채용’(38.8%) 분야의 진정 접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퇴직 및 해고’(22.3%), ‘임금·복리·후생’(13.1%)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공공영역은 211건, 민간영역은 421건으로, 민간영역이 공공영역에 비해 진정이 많아 향후 민간영역에서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표 7〉참조).

〈표 7〉 고용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접수 세부유형(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 분	고용영역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복리 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해고	교육	기타	
합계	합계	632	245	83	59	15	26	141	3	60
	비율	100.0	38.8	13.1	9.3	2.4	4.1	22.3	0.5	9.5
	공공	211	117	7	29	11	6	18	2	21
	민간	421	128	76	30	4	20	123	1	39

[주요 진정 및 결정 사례 : 고용영역]

〈사례 1: 채용 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

진정인은 청각장애2급 장애인으로, ○○회사가 신입사원 채용 시 토익점수 600점 이상의 지원 자격을 명시하여 차별을 당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청해시험에 전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독해시험에서 만점(495점)을 받는다하더라도, 600점 이상을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직무특성 상 외국인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어점수 자격 요건이 필수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기관이 채용하고자 하는 신입사원의 핵심직무는 IT사업 등의 기획 및 서비스 발굴, 신기술 개발,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운영으로, 영어 소통은 이를 원활하게 하는 부가적 기능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피진정기관과 유사업종인 ○○전자 주식회사의 경우, 건청인과는 별도로 청각장애인용 TEPS 시험점수(380점)만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경우, 5급 공채(행정직, 기술직, 외무직) 모집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점수를 제시하고 있는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지원자격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피진정기관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신입사원 채용 시 토익점수 600점 이상의 지원자격을 명시한 것은 피진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 신입사원 지원 자격으로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는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점수 기준을 적용할 것과, 인사 관련 부서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피진정기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사례 2 :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진정인은 지체장애2급 장애인으로, ○○○공단이 일반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을 직권 면직 시켰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내용의 판단 등과 같은 진정인의 직무감당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단순히 타 직원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위원회가 실시하는 장애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하였으나, 추후 법무부의 시정 명령을 받고 수용하였다.

나. 교육 영역

■ 수업·시험 등 편의 미제공 진정 다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년 간 접수된 교육차별 사건은 총 1,025이다. 그 중 ‘수업·시험 등 편의 미제공’(16.9%)과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12.4%)에 관한 진정이 높았고, ‘특수학급설치’(8.4%), ‘전·입학 거부 제한’(7.0%),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제한’(5.7%), ‘괴롭힘’(3.5%) 등의 순서로 나왔다(〈표 8〉참조).

〈표 8〉 교육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세부유형(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 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시험평가 편의미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계	합계	1,025	72	58	173	127	86	36	473
	비율	100.0	7.0	5.7	16.9	12.4	8.4	3.5	46.1
	공공	860	32	33	126	115	83	26	445
	민간	165	40	25	47	12	3	10	28

[주요 진정 및 결정 사례 : 교육영역]

<사례 1 :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진정인은 뇌병변1급 장애인으로, ○○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입학전형에 단독으로 응시하였으나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되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당시 전형위원회 위원장은 구술시험 시 진정인의 장애로 인해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서류를 근거로 심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전형위원 중 한 명이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새로운 자료 발굴을 해야 하나 진정인의 경우 언어장애로 인해 용이할 것 같지 않아 불합격 처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대학교가 구술시험 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평가방식을 운용함으로써 진정인이 구술시험에서 자신의 지적능력, 사고능력, 가치관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설령 신체적인 장애가 자료의 수집 및 발굴에 다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는 보조인 등의 활용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기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학교 총장에게, 진정인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제공하여 진정인이 재심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피진정인들에게 장애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학교는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사례 2 : 장애학생에 대한 수업 배제>

피해자의 부모인 진정인은,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같은 반 학생에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가 피해자의 의사를 시종일관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고 집에서 쉬라고 하는 등 장애학생을 차별하였다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은 동료 학생에 의한 피해자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매주 4시간 순회수업만 받도록 하고, 현장견학 및 외부활동 등에서 피해자를 배제시킨 후 임의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학업시수를 임의로 위반한 바, 위원회는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4항 및 제8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위반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이수할 것, 학교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할 것, 교육감에게, 피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소속한 학교의 장을 조사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 상기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학교 및 교직원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장애인차별예방 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기관에서는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다. 재화·용역 및 사법·행정 서비스 영역

‘재화·용역 영역’은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보험 및 금융 서비스 이용,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서비스 이용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접수율 또한 가장 높다. 세부 유형별로는 ‘재화·용역 일반’이 25.8%로 사건 접수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외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이 25.7%, ‘시설물 접근’이 20.8%, ‘보험·금융’이 11.1% 순으로 높았다(〈표 9〉참조).

〈표 9〉 재화·용역 및 사법·행정 서비스 영역에서의 진정(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 분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 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합계	합계	6,081	1,567	675	1,265	701	1,560	313	521
	비율	100.0	25.8	11.1	20.8	11.5	25.7	5.1	100.0
	공공	2,417	693	63	554	396	508	203	491
	민간	3,664	874	612	711	305	1,052	110	30

‘재화·용역 영역’과 ‘장애유형’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영역에서는 지체장애인이,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영역에서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문화·예술·체육’영역에서는 지적·발달장애인의 진정 비율이 높았다(〈표 6〉참조).

한편 ‘사법·행정·참정권’영역은 주민센터, 우체국, 경찰서, 투표소 등에서의 장애인 편의 미제공과 관련된 사건으로, 9년 간 진정접수 건수는 521건이었다.

[주요 진정 및 결정 사례 : 재화·용역 및 사법·행정서비스 영역]

■ 재화·용역 일반 영역

〈사례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 정당한 편의 미제공〉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5명은 8개 종합병원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환자 인쇄본만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등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결과, 위원회는 종합병원들이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알 수 있도록 사본 발급과 함께 그 내용을 점자자료화 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에 8개 종합병원장에게,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사본 발급 시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 또는 점자자료, 녹음파일 등을 함께 제공할 것, 진료기록부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상기 권고 이행을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할 것 등을 권고하였으며, 피권고기관들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사례 2 : 홈페이지 웹접근성 미보장〉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피진정기관이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기준에 미달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할 수 없다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장애인이 신체적·기술적 여건에 관계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기관이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아 장애인이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예 : 주차 이용신청, 주택가격 이의신청) 등을 이용하지 못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등에 명시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기관에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 등을 참고하여 홈페이지를 개편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진정기관은 이를 수용하였다.

〈사례 3 : 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구민회관을 방문하였으나 “여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시각장애인용

안내책자가 없었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담당자가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기관(지방자치단체)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에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피진정기관이 보조인력의 배치는 예산 등의 문제로 별도 채용할 수 없는 관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보조인력으로 제공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문화·체육활동을 위해 보조인력의 배치를 요구할 경우 피진정기관에서는 보조인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예산상의 문제로 보조인력의 배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피진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과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근거로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즉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에서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졌다.

〈사례 4 : 국어능력 인증시험 시 장애인 편의조치 소홀〉

진정인은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준비 요건으로 2012년 5월 재단법인 0000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에 응시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2년 6월경 편의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국어능력인증시험과 유사한 000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에는 장애 유형 및 경중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0000연구원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에게 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16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재단법인인 피진정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0000연구원이 국어능력인증시험을 주관·실시하면서 뇌병변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0000연구원 이사장에게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여 수용되었다.

〈사례 5 : 지적장애 및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진정인은 “A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 상담을 받았는데, A보험사에서는 진정인에게 지적장애이며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A보험사는 진정인의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심사를 하지도 않고 진정인의 지적장애와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검증된 통계 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장애상태 및 판단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A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특정 장애와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A보험사 대표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 건을 재심사 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 실시하고 위원회가 마련한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세부지침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한 A보험사에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심사를 진행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원회의 권고를 수요하였다.

■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영역

(사례 1 : 장애인등록증 점자 미표기에 의한 차별)

진정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에 점자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의 내용을 인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카드와도 구별이 어렵다며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장애인등록증은 다른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와 재질, 규격이 동일하여 촉각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여 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기를 하여 관리를 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존재하는 등 결과적으로 중증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여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장애인등록증에 점자 표기를 하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는 1~3급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스티커를 제작·교부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사례 2 : 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의 차별〉

피해자의 지인인 진정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가 집회 참가 후 체포되어 세 차례 가량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하였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변호인 조력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피해자 스스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뢰관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장애인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해서 이를 절차상 그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보호자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신청권의 행사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장과 피진정기관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정신적 장애인 또는 언어 장애인을 수사 및 심문함에 있어 의사소통가능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라 보호자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기관은 생활안전·수사·형사·경비교통과 등 수사 관련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권고 내용을 주지시킬 계획이라고 답변하는 등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 참정권 영역

〈사례 : 선거 시 접자투표용구 미제공〉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를 위해 투표소를 방문하였으나, 투표보조용구가 제공되지 않아 가족이 대리투표를 하였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은 당시 투표관리관에게 시각장애인임을 밝히고 투표보조용구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투표소에 투표보조용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부득이하게 동행했던 가족에게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며, 피진정인은 「헌법」 제24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7항에 따라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도는 비장애인의 선거권 행사가 보장되는 것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하는 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밀선거원칙에 반하여 장

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진정기관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라. 괴롭힘 등 영역

‘괴롭힘 등’ 영역은 매년 ‘재화·용역’ 영역,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영역, 다음으로 진정접수 비율이 높은 영역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년 간 괴롭힘으로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은 1,175건이었으며, 주요 피해자는 지체장애인(305건)과 발달장애인(224건), 청각장애인(208건) 그리고 정신장애인(138건) 이었다(〈표 6〉참조).

세부 유형별로는 모욕 및 비하(678건, 57.7%), 폭행 및 학대(193건, 16.4%), 금전적 착취(132건, 11.2%)의 순서로 접수율이 높았고, 민간영역이 피진정기관이 된 경우(1,011건)가 공공영역이 피진정기관이 된 경우(164건)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은 주로 모욕 및 비하 사건이 57.7%를 차지하고 있는바와 같이 친구나 가족, 지인, 고용주, 시설주 등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10〉참조).

〈표 10〉 괴롭힘 등 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세부유형(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 분	장애인 등에 대한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 학대	금전적 착취	장애인 모욕비하	기타	
계	합계	1,175	22	30	27	193	132	678	93
	비율	100.0	1.9	2.6	2.3	16.4	11.2	57.7	7.9
	공공	164	6	2	4	30	5	98	19
	민간	1,011	16	28	23	163	127	580	74

[주요 진정 및 결정 사례 : 괴롭힘 등 영역]

〈사례 1 : 장애인시설에서의 장애인 수급비 횡령 등〉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인 진정인은 피진정시설 입소 기간 동안 지자체로부터 월 5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퇴소 시 피진정인에게 받은 실수령액은 월 8만원에 불과하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입소생활인들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급비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와 장애수당을 매월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1인당 25만원씩을 생활비 명목으로 시설통장에 입금하고, 생활인들에게는 용돈으로 8만원씩을 지급한 후, 잔금은 현금으로 보관하며 회계증빙자료 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이와 같이 생활인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수급비를 임의로 사용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3항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 배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을 수사의뢰하는 동시에 피진정인에게 2008. 4.부터 2011. 3.까지 미지급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할 것, 해당 시장 및 구청장에게 피진정시설의 폐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하였고, 이후 해당 구청은 피진정시설에 행정처분 후 시설 회계업무 담당자를 교체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사례 2 : 장애인시설에서의 예배참석 및 현금강요 등〉

피진정시설의 전직 직원인 진정인은, 시설장인 피진정인이 생활인들에게 예배참석, 십일조 및 현금, 후원 등을 강요하고, 외출을 제한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예배참석을 이유로 생활인에게 외출을 제한하고 쉼터대회에 생활인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등 예배참석을 반강제적으로 강요하는 한편, 생활인들의 통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십일조, 현금, 후원금 등을 내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상기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침해는 물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행사 제한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자치단체 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해당시설에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후 해당 지자체와 관련시설기관에서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사례 3 : 장애인 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진정인은 “사회복지 법인 A대표이사 등이 장애인들을 폭행·체벌하였고 거주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제공, 의료조치 소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니 피진정인들을 조사 및 처벌해 달라”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제공 부분은 대량으로 후원 물품이 들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였고 관할 ○○시청에서 주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의료조치 소홀 부분은 거주인이 총 14회의 외래 진료를 받아왔고 수술을 예약한 사실이 있었으며, 부당한 노동 강요 부분은 물건을 차로 옮겨준 사실은 있으나 그 행위가 일회성 등으로 보여져 이들 부분은 각각 기각하였다.

그러나 거주인들에 대한 폭행과 과도한 체벌과 관련하여서는 A대표이사가 김○○ 등의 거주인들을 주로 CCTV가 없는 대표이사 방 등으로 데리고 가서 폭언하며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고 가슴과 머리를 세게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행사하며 과도한 체벌을 하였고, 법인 산하 공판장 B 사무국장은 김○○ 거주인을 CCTV 사각지대인 1층 사무실 옆 공판장으로 데리고 가서 폭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중증장애를 가진 거주인들을 폭행하고 과도하게 체벌한 사회복지 법인 A 대표이사 와 법인 산하 공판장 B 사무국장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형법」 제260조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감독기관인 ○○시장에게 적절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하여 관련시설의 폐쇄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었다.

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가.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년 간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된 4,608건(45.8%) 중 시정권고 383건, 조사중 해결 2,335건, 합의종결 355건, 조정 5건 등 모두 3,078건(66.8%) 차별 시정

위원회 설립 이후 15년간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은 총 10,973건이며(〈표 2〉 참조), 그 중 위원회는 총 10,695건(97.5%)을 처리하였다(〈표 11〉 참조).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로 살펴보면, 지난 9년 간 접수된 사건은 10,320건이며(〈표 3〉 참조), 그 중 위원회는 총 10,077건을(97.6%) 처리하였다(〈표 12〉 참조).

10,077건의 처리 사건 중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은 4,608건(45.8%)이고, 나머지 6,009건(54.2%)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¹⁾에 따라 각하된 경우(5,408건, 53.4%), 조사중지된 경우(16

1) 각하 대상인 경우는 ‘진정 내용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자 진정

건, 0.3%), 타 기관으로 사건이 이송된 경우(45건, 0.5%)이다.

4,608건의 '조사대상' 사건 중, 383건은 조사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행위로 판단되어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의 자발적 수용 등을 통해 조사 중 해결된 사건은 2,335건,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 합의하여 종결된 사건은 355건,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5건으로, 총 3,078건(66.8%)의 사건이 차별 시정되었다. 그 외 1,530건은 조사 결과, 차별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 처리되었다(〈표 12〉 참조).

〈표 11〉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6.12.31.)

(단위: 건)

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0,659	22	18	39	116	90	255	455	721	1,101	952	1,508	1,563	1,096	1,085	1,638

〈표 12〉 장애차별 진정사건 세부처리 현황(2008.04.11.~2016.12.31.)

(단위: 건, %)

처리건수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소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합계	10,077	4,608	3,078	383	5	355	2,335	1,530	5,408 (3,989)	16	45
구성비 (%)	100.0	100.0	100.0	12.4	0.2	11.5	75.9				
			66.8					33.2			
			45.8						53.4	0.3	0.5

-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임.
-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이 발생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과 같음.

나.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년 간 처리한 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66.8% 차별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 중 권고, 조정성립, 합의종결, 조사 중 해결 등을 통해 차별이 시정된 비율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고용영역이 35.7%, 교육영역이 74.6%,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이 72.7%, 사법·행정/참정권 68.6%, 괴롭힘 등 영역이 40.9%였다.

지난 9년간 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한 영역은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이었고 (308건), 이는 전체 인용(권고) 건수(383건)의 80.4%에 해당된다(〈표 13〉 참조).

〈표 13〉 차별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8.04.11.~2016.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승
		소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합계	건수	10,077	4,608	383	5	355	2,335	1,530	5,408 (3,989)	16	45
	비율(%)	100.0	100.0	66.8				33.2			
				45.7				53.7	0.2	0.4	
고용	건수	628	212	13	-	39	24	136	411 (329)	3	2
	비율(%)	100.0	100.0	35.7				64.2			
				33.8				65.5	0.4	0.3	
교육	건수	996	232	14	-	37	122	59	761 (713)	-	3
	비율(%)	100.0	100.0	74.6				25.4			
				23.2				76.4	0	0.4	
재화· 용역	건수	5,927	3,317	308	5	194	1,906	904	2,591 (1,956)	9	10
	비율(%)	100.0	100.0	72.7				27.3			
				56.1				43.7	0.1	0.1	

구 분	합계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증지	이송
		소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사법· 행정 /참정권	건수	512	250	23	-	4	145	78	261 (176)	-	1
	비율(%)	100.0	100.0	68.6				31.2			
				48.9					51.1	0	0
괴롭힘 등	건수	2,014	597	25	-	81	138	353	1,384 (815)	4	29
	비율(%)	100.0	100.0	40.9				59.1			
				29.7					68.7	0.2	1.4

-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임.
-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5. 장애 관련 직권조사 처리 현황

우리 위원회는 언론 모니터링 및 장애인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현안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기초조사에 착수하여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하였다. 기초조사 시, 즉각적인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에서 개선을 유도하여 즉각적인 구제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 장애인 단체로부터 직권조사를 의뢰받아 사건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위원회 설립 이후 장애와 관련한 직권조사는 총 26건이다.

〈표 14〉 직권조사 현황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1	10-직권-0001300	○○농아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	11-직권-0000200	○○학교 교사의 시각장애여학생 안마강요 등에 대한 직권조사
3	11-직권-0000700	선주의 지적장애인 괴롭힘(금전착취 등)에 대한 직권조사
4	11-직권-0001500	지적장애아동 괴롭힘 등에 대한 직권조사
5	11-직권-00017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6	11-직권-00023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폭력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7	12-직권-0000700	중증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8	12-직권-0000800	○○특수학교에 대한 직권조사
9	12-직권-0000900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폭행에 대한 직권조사
10	12-직권-0001000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1	12-직권-0001100	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2	12-직권-0001400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3	12-직권-0001700	장애인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4	13-직권-0000400	무연고 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5	13-직권-0000500	장애인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6	13-직권-0000600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7	13-직권-0002400	사회복지법인 ○○내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8	14-직권-0000100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19	14-직권-0001100	장애인 거주시설의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20	14-직권-0001700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1	14-직권-0001900	지적 장애인 시설 거주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2	15-직권-0001300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3	15-직권-0000900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4	15-직권-0001500	지적장애인 시설 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5	15-직권-0001800	장애인거주시설 내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26	16-직권-0001700	다수인보호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2017장애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장차법 개정안 수렴 토론회

토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이 필요한 때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이 필요한 때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2007년 봄.

장애인 차별은 일상생활 영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회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도 권리구제방법은 전무하였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두드릴 문이 없었다.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했던 사회에 울렸던 경종. 바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교육, 고용, 편의시설, 사법 행정절차,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정보접근, 장애인차별시정기구와 권리구제 등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명시되었고, 장애인차별에 대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세워졌음에 큰 의의를 두었다.

2016년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9년이 되어간다. 애니콜은 스마트폰으로, 데스크탑은 노트북과 태블릿에게 자리를 내주었으며 정권은 세 번 바뀌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와는 다르게 장애인차별금지법만은 여전히 2007년도에서 답보중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부터 제기되어 왔던 모순적인 장애정의,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조항, 법에 근거한 강제력 부재로 실효성이 실추되어가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필요성·시급성 있는 5개 부분의 문제점과 한계를 되짚어보고 향후 전면개정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발자취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입법, 뜻을 함께하는 시민단체들의 연대로 제정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지니며, 장애인을 복지의 시혜 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에 한정하는 데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음
- 제정 이후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의식도 크게 향상되었는데, 자신들이 사회로부터 단순한 배려의 대상으로 대우받을 것이 아니라 당연한 사회성원으로 지녀야 할 사회참여와 기

회 평등, 교육이나 이동 등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며 자립 의지와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하지만 장애의 정의개념과 별도의 차별시정기구의 독립적 존재,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수단 필요, 강제력 없는 법조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개진이 있었지만 개정된 사항은 없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차별이 실제로 줄어들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한계점들이 나타남

■ **실효성 의문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후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장애인차별 진정건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653건)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 6,540건으로 집계되어 국가인권회의 전체 진정사건의 53%를 차지하고 있지만 취소·각하율은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음
- 장애당사자가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느끼는 비중이 68.4%에 달해 우리사회에 여전히 장애인 차별이 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08년도에는 79.7%, 2011년도에는 78.3%, 2014년도에는 68.4%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는 여전히 높게 인식됨

〈표〉 장애당사자가 느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의식¹⁾

	매우 많다	약간 많다	보통이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계
2014	22.4	46.0	-	30.4	1.2	100.0
2011	30.0	48.3	-	20.0	1.0	100.0
2008	41.1	38.6	14.8	5.3	0.1	100.0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장애당사자는 2011년 8.6%에서 22.4%로 높아졌지만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선 모르거나, 알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91.4%, 2014년 76.4%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1) 보건복지부(2008, 2011, 2014). 장애인 실태조사보고서.

〈표〉 장애인당사자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 여부²⁾

	알고있다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알지못한다	계
2014	22.4	46.0	30.4	100.0
2011	8.6	24.1	67.3	100.0

- 위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당사자가 체감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의식 정도는 68.4%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차별을 법적으로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는 22.4%로 매우 낮게 나타나 법률에 근거한 대처 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쟁점 사항들을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함

[쟁점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개념, 법 취지와 부합하는가?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에 관하여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였음. 그러나 하위법령에 세부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결국 장애인복지법상의 개인적·의료적 관점의 장애인정의를 인용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인권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13-56호)은 단순히 손상의 정도에 기반하여 하였을 뿐 인권을 기반으로 적용하지 않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이를 근간으로 하여 정의하는 구조를 갖게 된 것임
- 제정당시 정부 각 부처는 대부분 장애개념을 넓히면 장애인에 관한 통상적인 관념과 지나치게 괴리되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개념과도 맞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법과 동일한 개념으로 삽입한 것임. 장애개념은 법 제정 당시부터 이후 꾸준히 개정될 제기를 제기한 부분이지만 여전히 답보중임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권법으로서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물리적 장벽과 같

2) 보건복지부(2011, 2014). 장애인 실태조사보고서.

은 사회구조적문제로 인식한 관점을 적용한 개정이 필요함

-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는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음
- 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에서 2008년 5월 발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장애인의 권리보장 문제를 국내법체계에만 국한하여 정의하는 것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개념과도 부합하지 않음을 의미함
- 따라서 장애개념의 인권적 관점에서 차별의 사유가 ‘장애’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단기간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 및 과거의 장애 경력도 포함하여야 함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 국가인원회의 장애에 대한 정의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두 법에 대한 장애인 정의를 통일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쟁점 2] 정보접근권,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가?

- 사회의 정보접근 방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서는 전자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나, 시행령에는 웹사이트만을 규정하여 빠른 기술발전예 따른 정보접근방식에 대해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사용률은 휴대폰 44.7%, 스마트폰 38.6%, 컴퓨터 32.0%, 인터넷 33.0%로 나타남. 2011년 조사에서 휴대폰과 스마트폰 사용률이 각각 70.1%, 7.2%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휴대폰 사용자의 상당수가 스마트폰 사용자로 전환되었음³⁾
- 하지만 스마트격차지수⁴⁾ 역시 전체국민의 49.2%수준으로 소외계층(장애인)은 일반국민과 똑같이 인터넷을 이용할지라도, 스마트 환경에서 다양한 가치창출과 양질의 디지털 삶 영위에 필요한 인터넷 응용 활용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⁵⁾

3) 보건복지부(2015).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고서. 273p.

4) 유무선 융합 다중매체 환경에서 모바일 스마트기기와 PC의 통합적 활용을 통해 양질의 디지털 삶 영위와 다양한 가치창출에 필요한 정보화 수준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하였음

- 실제로 정보접근에 대해 모바일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인하여 진정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행정전상망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공공기관에 진출한 많은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음⁵⁾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가진 수행대상자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용자, 노동조합 관계자,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정기적인 출판사업자,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자와 배급업자 등으로 제한하여 장애인권리협약과 모순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장애인권리협약에는 21조에서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한다는 규정과 함께 ①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②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③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④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미국의 경우에도,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법을 근간으로 단일정보통신에의 접근뿐만 아니라 연동되는 모든 매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 따라서 기술발전에 따른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웹접근성’에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닌 웹사이트·소프트웨어·인트라넷·모바일 등의 접근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 있음

[쟁점 3] 벌칙조항, 이대로 괜찮은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차별행위에 관한 벌칙조항은 ① 차별의 고의성, ②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③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④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전부’ 고려하여

5)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2013 신소외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6)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15).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강화와 개정 방향 모색. 31p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위 조항을 적용한다면, 차별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더라도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벌칙을 적용할 수 없는 형태임
- 사족과도 같은 '전부'라는 단어는 벌칙조항 적용의 경직성과 보수성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시정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는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현재까지 단 2건에 불과함
- 적극적 구제조치를 특정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거나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명령이라는 점을 법문상 더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경우와 사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의 특별법적 역할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과 더불어 피해자가 현실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 도입이 시급함

“차별행위자를 고소하거나 진정을 하여도, 차별행위는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중략)... 1차적으로 소송을 통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 또다시 다른 피해자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어도 차별행위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금전적 손익계산 때문이다.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배상금을 물고 말겠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⁷⁾

- 다수의 전문가들은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은 무척 어렵고 정신적 손해만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 입증하기 곤란하고, 입증한다 하더라도 소액에 그치게 되어 실익이 미비하고, 가해지는 패소하더라도 위반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음
-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일한 침해행위의 발생을 예방하며, 국가기관은 세금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므로 감사 및 국민의 감독을 받게 되어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

7) 국가인권위원회(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451p

[쟁점 4] 국가인권위원회,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가진 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시정권고권), 법무부장관(시정명령권)임
-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인차별시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다수의 장애계 전문가들의 비판이 존재함

...최근 인권위의 상황을 보면, 과연 인권위에 장애인차별시정을 맡길 수 있는 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신속하지도 못하고 장애인 감수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며 권한마저 솜방망이와 같다면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및시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_박종운변호사(법무법인 소명)⁸⁾

...그러나 그간 인권위가 장애인 차별해소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했느냐 하는 질문에는 비판적이다_이문희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⁹⁾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투명하지 못한 운영 때문”이라고 꼬집었다_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¹⁰⁾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비중은 전체 진정사건중 15.3%였던 반면, 시행 이후 6년간 평균 53.1%로 급증함

8) 국가인권위원회(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172p

9)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15).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강화와 개정 방향 모색. 31p

10) 월페이뉴스(2015. 9. 24.). 인권위 공동행동, 이성호 위원장과 면담자리서 혁신과제 제안.

〈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장애차별 진정사건 비중¹¹⁾

구분			차별사유		
			계	타 사유	장애
총계	2001. 11.~ 2013. 12.	진정건수	16,589	9,396	7,193
		비율(%)	100.0	56.6	43.4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2001. 11. 25.~ 2008. 4. 10.	진정건수	4,269	3,616	653
		비율(%)	100.0	84.7	15.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8. 4. 11.~ 2013. 12.	진정건수	12,320	5,780	6,540
		비율(%)	100.0	46.9	53.1

- 하지만 2010년~2014년까지의 장애 차별행위 진정처리결과는 총 7,284건의 90.5%인 6,591건은 각하되었거나 기각되어 실질적으로 처리된 것은 10%에 불과, 법률에 의거한 구제는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음

〈표〉 장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¹²⁾

(단위 : 건)

구분	합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계	7,284	644	10	2	1	323	2	306	6,635	3,516	32	3,075	12	5

- 각하·기각된 사유에 대해 가장 많은 이유는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가 36%,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29%에 달함

“아프리카TV(실시간인터넷 방송)에서의 장애인 비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콘텐츠가이드라인 제작에 관한 빠른 시정권고 내렸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 이후 아무런 움직임 없어..”¹³⁾

11) 국가인권위원회(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42p
 12) 국가인권위원회(2015). 2014 인권통계 제1부 국가인권위원회통계. 108p.
 13) 에이블뉴스 2016년 1월18일 기사. 발달장애인을 성범죄자로 모는 사회. <http://www.ablenews>.

- 인권침해 문제는 신속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조사기간만해도 몇 달, 길게는 1년~2년 이상이 걸리며 차별행위가 인정되어 권고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는 기간이 소요되어 자포자기로 사건을 기각, 취하하는 경우가 빈번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지 아니면 ‘국가인권무마위원회’인지라는 비판이 제기됨

〈표〉 장애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¹⁴⁾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6,591	3,510	756	17	91	60	101	8	41	2,355	75	6	6	3,075	397	735	1,943

- 또한 장애인차별에 대한 진정 비율은 인권위에 진정되는 전체 사건 중 4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예산은 전체 예산 6,517백만원 중 단지 3.5%인 375백만원에 불과하여 그 실행에 한계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¹⁵⁾ 장애인차별 해소 의지에 대한 인권위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총체적 난국인 문제점들은 인권위의 구조적 한계와도 관계가 있음. 장애관련 차별행위 접수현황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여 2014년도에만 총 1,139건임에도 해당 업무 담당부서는 22명뿐임. 4개 지역의 지역인권사무소 인원은 10명 이내의 소인원임. 대략적으로 1명의 조사관이 연간 50여건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감안할 때, 주당 약 1건의 진정 처리(조사-조정-보고)등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업무 상황이 만들어짐
- 따라서 급속히 늘어난 장애인차별 분야의 진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 분야의 인력 및 예산을 현실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기각·각하사유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신뢰도 있는 분석과 기준 적용을 통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대체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60104144507742194](http://www.humanrights.g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60104144507742194)

14) 국가인권위원회(2015). 2014 인권통계 제1부 국가인권위원회통계. 108p.

15) 2015 국가인권위원회 예산편성 현황. 인권위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05_sub/body01_6_10.jsp

[쟁점5] 복지부와 인권위의 시설물 접근 모니터링, 개선효과 있는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시설물접근'이용의 차별부분에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 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 의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하였음
- 이의 적용은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2009년부터 매년 분야를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효과성을 나타내기에는 매우 부족한 현실임
- 2014년 모니터링 항목별 분석 및 논의부분 중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요구 되므로 추후 개선 예정', '각 공공도서관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 '구체적인 점검 필요' 등의 미온적 평가가 주를 이루었으며, 각 공공도서관에서의 회신 역시 내용 미비로 평가자체가 불가능 하였거나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음' 등의 명확하지 못한 내용들이 주를 이룸
- 또한 총평에서는 '많은 공공도서관들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한다는 내용에, '각 공공도서관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는 소극적 평가만을 내고 있어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본 목적을 상실하고 있음
- 영화관 모니터링 역시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임. '배급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영극장 확대를 검토 중임', '공금업체에게 가능 여부 확인 중임', '위탁주의 협의가 필요'등의 회신과 함께 모 니터링 총평 역시 ' 각 영화관이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폭넓게 이해 및 유관단체 측과 협 조할 필요가 있다'는 소극적 결과만을 내어놓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재점검 결과부분임. 모니터링의 가장 큰 목적은 시행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미비점을 확인하여 개선함에 있으며, 재점검 시에는 지적항목들의 개선여부 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대다수의 대상기관은 충족률 0%, 미충족율 100%을 나타내었고, 심지어 일부기관에서는 비용문제 및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음이 나타남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에서도 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음. 공 공기관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약 45.0%대로 높지 않고, 내부시설 중 계단도 약 21.0%에

그쳤으며, 안내시설의 경우 점자블록은 14.7%에 그침

- 보건복지부의 재점검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공립 유치원 편의시설 개선율은 2%, 위생 시설 설치율은 3%에 그쳤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편의시설 개선율은 4%대로 나타남
- 이렇듯 예산 확보의 노력 없이 단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임을 주시시킬 필요가 있으며, 예산배정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일괄 지침을 전달하여 개선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편의제공은 별도의 시행령과 별표조항을 두면서까지 단계적 범위를 설정하였지만 이행율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남. 개선 미시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개선의지가 없는 기관은 시정명령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력히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에 별도의 강제조항을 두어 이행을 촉구해야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달체계 개선이 핵심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살펴본 바와 같이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사건 조사와 처리가 늦어져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는 점, 신속성이 필요한 차별사건에 기동성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 전달체계의 전면적인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
- 이에 대해 장애인과 밀접하면서 동시에 장애인의 특성까지 고려한, 빈발하는 장애인차별 사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민관차원의 장애인권리옹호제도(P&A: Protection and Advocacy)가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장애인 차별시정과 권리구제를 위해 법원을 전달체계로 하지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1. 한국형 P&A의 도입

- 장애인권리옹호제도(이하 P&A)란,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장애인을 보호하고 옹호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 P&A기관은 국가가 위임한 다양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P&A기관은 연방법에서 장애인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 장애인을 대신하여 법적, 행정적, 기타 적절한 구제책을 수행할 수 있음. 구체적인 역할로는 ①조사, 즉각적 접근, 소송(집단소송 포함) 및 원고적격¹⁶⁾ 등이 있으며, 지위 및 권한은 민간

16) 원고적격이란 구체적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며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

- 비영리단체,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장애인 권리침해를 조사하고 대리소송까지도 가능함
- 국내에서 P&A와 유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며 대상의 특성 접근방법에 따라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응급보호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중앙과 지역으로 나뉘어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됨
- 국내 P&A도입에 관해 다양한 토론과 제안들이 있음. 공통적으로 언급된 도입 방식은 ①국가기구위 권한 위임받은 민간단체가 P&A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보고하는 형태를 띄며, ②권리옹호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③장애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이 권리옹호를 받아야 하고, ④인권침해 뿐 만이 아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모든 영역에서의 권리옹호를 수행하며 ⑤조사권과 대리소송권을 명시하여야 함
- 장애계에서는 P&A제도 도입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제시가 이루어지며 제도권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음.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 또는 별도의 법령 제정 등 중 어느 법률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모든 장애인을 포괄하며 권리옹호 및 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삽입하는 것에 대하여 심도 있는 모색과 의견합의가 필요함

2. 법원이 직접 개입하는 장애인차별시정 전달체계 구축

- 인권위가 인권위원회에 장애인당사자를 배제하고, 장애차별판단에 대한 보수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시정권고’라는 수단만을 가지고 장애인차별을 해결하는 인권위보다는 법원이 더욱 효율적일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사법지원이 전제되어야 함¹⁷⁾
 - 법률 개정: 장애인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가 법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차법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무엇보다 소송법과 법원조직법 등 사법절차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권리협약 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부합해야 함. 대법원 규칙 또는 예규

는 정당한 자격, 쉽게 말하면 소송의 원고로 나설 수 있는 자격. 출처: 두산백과.

17) 임성택(2012).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정책연구. 법원행정처 연구용역보고서. 114쪽~169쪽. 연구자가 제안한 장애인의 사법지원 체계를 요약하여 제시한 내용임

- 를 만들어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의 방법과 내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함.
-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조직 구축: 법원행정처의 장애인정책 책임관 배치, 장애인 사법정책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용, 실무기구 설치 - 장애인 지원센터 또는 전담직원(코디네이터),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일반 절차 마련: 편의제공에 관한 사전 안내 절차 마련. 법원 규칙이나 예규에 반영하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절차는 ① 사전 안내, ② 장애 여부 확인, ③ 당사자의 편의제공 신청, ④ 편의제공에 관한 조사 및 검토, ⑤ 편의제공 여부 결정, ⑥ 편의제공, ⑦ 이의신청의 순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함
 - 장애인 전담재판부 구축: 장애인의 사법절차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물적, 인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고, 법원 구성원들은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함. 이를 위해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마련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거나, 사건 처리기준의 일관성 또는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특정 종류의 사건을 처리함.
 - 장애인 관사와 직원 확대: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법관과 직원이 늘어나는 것임.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법원의 관계자들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 감수성을 갖게 될 것임.
 - 소송구조와 법률구조: 장애인의 사법접근을 위해서는 소송구조 및 법률구조가 반드시 필요함.
 - 장애인에 대한 변호시스템 구축: 국선변호사제도 활성화, 장애인 권리옹호시스템 운영 등이 요구됨.
 - 장애인 관련 교육 실시: 신입법관 교육에 장애인 부분을 포함시키고, 경력법관들도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제정을 이루어냈던 연대와 협력, 전면 개정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을 때

- 법제정 당시, 사회적 차별과 편견, 문제의식조차 없었던 냉담한 사회 속에서도 뜻을 함께하는 다수의 장애계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처절한 투쟁과 항고의 끝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내었음
- 산고를 버티고 축하 속에서 태어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실효성 없는 조항들로 인해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음. 합리적이고 타당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타법과의 모순을 없애는 장애인

- 차별금지법, 필요할 땐 즉시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무엇보다도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와 요구를 담아낸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의 전면개정이 반드시 필요함
- 이제 다시 장애인당사자, 법조계, 장애인단체, 공공기관, 정부기관 모두 ‘즉시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임



2017장애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장애법 개정안 수렴 토론회

토론 2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문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편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느덧 올해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법개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집에 있는 분들의 면면이 우리나라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 오신 소중한 분들입니는 재론을 요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분들이 준비하신 개정안 역시 장애인 차별의 현 상황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여 나름의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권옹호 활동에 개입하지 않고 이론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의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검토할 때 출발점은 말 그대로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관행적 차별을 모두 없애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장애인이 직면하는 사회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가 없는 것'의 제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사회적 장애란 결국 사회의 다수 및 지배세력이 법, 제도, 문화 등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장벽으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을 소외시키거나 제외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의 다수 또는 지배세력 스스로 그 장벽을 무너뜨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애인에 대한 특혜, 특별한 우대를 고려하지 않거나 주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정치권력과 정치적 지배세력에 의해 억압되어 왔습니다. 여성, 아동, 노인, 이주민, 빈곤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소수의 정치권력이 만들어 놓은 제도의 희생자로 오랫동안 신음해 왔습니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 차별을 없애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지 장애인 중 일부에 특혜를 베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에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실에서 비롯되는 장애인차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도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기 위한 전시용의 법제도나 법개정은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장애인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국가의 재정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재산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은 우리(=국가)의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 특히 가장 힘 없고 나약한 사람, 즉 우리(=국가)의 도움 없이는 한 인간으로 생활하기에 힘에 부치는 사람에게 최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즉 제도개선도 이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 이들의 사회생활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은 장애인은 어떤 순간에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사람의 인간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스스로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지원을 하는 것, 그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의 핵심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힘없고, 가장 취약한 장애인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뇌병변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에 가장 많은 자원과 관심을 쏟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의 중핵이라고 믿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통해 실현해야 할 내용, 즉 당장이라도 없애야 할 장애인차별의 내용이 이 법에 과감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비교를 통한 형식맞추기나 구색맞추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사회의 장애인차별의 심각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내용이 민 낮으로 표현되는 법개정이어야 하지,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 법해석을 통해 현실에 적용되는 그런 법개정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차별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고, 이들은 힘없이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스러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려를 할 때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개정법에는 장애의 사회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는 모든 장애인, 노인 관련 법률과 시행령, 행정지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개정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에서 배제하는 동법 제15조, 치매환자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에서 배제하는 시행규칙 별표 등이 그 예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구분짓거나 차별하는 일체의 법률은 이 법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사회보장수급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의 행사는 장애인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신청해서 그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권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확정된 권리의 행사도 스스로 하는 것이 장애인 권리의 기본임을 천명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행하게 하는 일체의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는 것, 병원에서의 치료, 요양시설 입소, 거주시설 입소 등을 가족이 대행하는 것은 모두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장애인은 스스로, 자신이 정한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 그 권리행사가 어려울 때 그 행사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사회보장제공기관(병원을 포함)의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특히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는 매우 중요한데, 그 급여는 일반 의료보험상의 급여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료보험과 의료급여를 차등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임을 명문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장애인을 그의 동의 없이 인신구속해서는 안 되며, 특히 정신병원, 요양시설, 거주시설 등에서 일체의 자유구속적 조치는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제한하는 일체의 조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함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이 수만명의 비자의 입원환자, 수십만명의 비자의입소 장애인과 치매노인의 인권을 법률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현실에서 장애인에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다섯째,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로 인해 어떤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거나 권리행사를 박탈하는 일체의 결격조항을 즉시 없애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권리행사나 자격행사의 금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정당한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지속되는 기간에 한정해야 하며, 개인별로 파악해야 하며, 최소침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개정법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장애인 차별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별은 사회의 다수를 이루는 지배세력이 국가의 힘을 빌려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은 법률일 수도 있고, 행정처분일 수도 있고, 판결일 수도 있고, 기업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로부터 독립한 기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도 독립한 기관이 장애인을 위해 그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법률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해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문장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장애인이 곧바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것이 장애인이 겪는 현실의 차별이 부당하다는 것,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법률해석이 아니라 문자의 의미해석을 통해 쉽게 알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상의 내용이 장애인차별을 없애기 위해 최소한 해야 하고, 당장, 지체없이, 즉각 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실현시키고, 미래의 세대에게 우리의 각오를 각인시키기 위해 서라도 이런 내용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장애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장애법 개정안 수렴 토론회

토론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토론문

김정환

한동대학교 법학과 강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토론편

김정환 (한동대학교 법학과 강사)*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10주년을 맞이함을 기뻐하며, 살아 숨쉬는 법으로서 작동하기 위한 개정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토론을 진행하고자 함.

* 최근들어 장애인 관련 가장 주목할만한 입법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¹⁾, 한국수화언어법의 시행²⁾,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³⁾의 시행 예정 등이

* 법학박사, 현 한동대 법학부 강사

1)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본조신설 2015.6.22.]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3. 4. 5. 6. 7... 생략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2) 한국수화언어법 [법률 제13978호, 2016.2.3.,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라고 생각한다.

* 토론자는 제시된 발제문의 기본적 개정 방향에는 찬성하며 현재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타 법률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아래의 사항을 첨언하고자 함.

1. 자치사무로서의 장애인 차별금지과 권리옹호
2. 장애인 인권 교육의 법제화 - 특히 건강권과 관련하여
3. 한국수화언어법의 시행과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자치사무로서의 장애인 차별금지과 권리옹호

-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많은 영역에 있어서 그 차별금지과 권리 옹호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음. 즉 입법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차별 금지의 주체로서 구체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지방자치단체를 제8조에서 기본적 의무의 주체로 규정하고 개별조항에서는 구체적으로 13개 조항에서⁴⁾ 지방자치단체를 차별금지의 주체이자 적극적 복리사무의 집행자로서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 *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한다는 권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무는 일응 지방자치단체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2017.12.30.] [법률 제13661호, 2015.12.29.,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4) 예컨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장이 대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음.⁵⁾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복리사무의 주체라는 헌법적 당위성에 비추어볼 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각종 사무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큼.

- *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 금지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 등과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근거 규정 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
- * 따라서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행정조사등의 권한에 대해 규정이 없는바 향후 개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등에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한다 등의 근거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단일 주체로 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국가인권위를 감독기구로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기구의 권한을 확보해 주는 부분에 대하여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음.
-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관련한 예시는 아래와 같음

광역자치단체의 예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8조(실태조사)

- ①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의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시 및 구군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하지만 우리의 입법 현실에 있어 입법자가 특별히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를 구별하여 입법하지 않고 있으며 判例도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전국적인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구에 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 태도로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행정실무에서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게 운용되고 있는 현실임.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구·군 또는 관련기관에 개선조치 또는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기초자치단체의 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4조(정책개발)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3. 정당한 편의제공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개정 2012.11.23)
5. 장애인을 비롯한 주민참여 활성화 정책
6.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 (개정 2016.7.15.)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단체 등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제11조(설치)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

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단서 신설 2012.11.23, 개정 2016.7.15.>

제1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7.15.>

2. 장애인 인권 교육의 법제화 - 특히 건강권과 관련하여

- *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건강권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의사가 장애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⁶⁾ .
- * 따라서 보건의료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개선이 장애인들의 건강권 달성에 중요한 과제임.
- * 의대, 한의대, 치의대 교육 과정에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방안, 보수교육에서 장애인 진료교육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며 장애인권 교육을 의료기관 종사자의 필수 교육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 * 현행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기관 종사자의 경우 인권교육이 필수화 되어 있음.⁷⁾ 이의 내용을

6) 장애인 건강권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 연구용역보고서, 188면 참조.

7) 정신보건법 [법률 제13323호, 2015.5.18., 타법개정] 제6조의2 (인권교육)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참고하여 인권교육을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3. 한국수화언어법의 시행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 개정안 발제문의 “한국수어” 표현을 “수어”로 개정하지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함.
- * 「오스트리아 수화는 독자 언어로 인정된다. 법률로 자세한 사항을 정한다.」 2005년 오스트리아 헌법에 새로 신설된 조항임.⁸⁾ 이와 같이 이미 헌법으로 수화의 사용을 보장한 나라도 있으며 특히 유럽의 경우 수어의 사용은 당연한 언어의 사용으로 법률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 * 지금까지 수어⁹⁾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된 사안은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¹⁰⁾, 선거운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방법,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등 지정, 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8) 오스트리아 헌법 제8조 제3항 ((3) The Austrian sign language is recognized as independent language. Details are regulated by the laws.)
- 9) 오랫동안 수화로 불려왔던 손을 이용한 의사소통(sign language)에 대하여 이를 언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다는 의미에서 수어(手語)라는 표현의 사용이 전파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언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수화언어”라고 명칭 입법하였다. 현재 두가지 용어는 병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10) 헌법재판소 2013. 8. 29. 2012헌마840 결정요지 : 헌법에서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헌법조항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인정되려면 입법공백으로 인하여 선거권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청구인과 같이 보행성 장애가 없는 청각장애인은 투표소까지의 이동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점,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153조에 따라 투표소 위치, 투

동기간 중의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에 있어서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화통역의 방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이 청각장애 선거인인 청구인들의 참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¹¹⁾ 등으로 수화를 사용하여 다른 행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경우인지를 판단하는데 그쳐왔고 이마저도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결정이 반복됨으로서 농아인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었던 것이 사실임.

* 수화는 비장애인이 다수인 우리 사회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수공동체 언어. 따라서 수화를 언어로 공인하는 것은 단순히 음성언어와 동등한 언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표 시간, 투표 시 필요한 지침물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이 발송될 뿐만 아니라, 각 투표소에 장애인을 위한 다수의 투표안내도우미 등이 배치되어 있고 투표소 내에 각종 시각적인 투표안내 정보가 존재하여 기표행위를 함에 있어 수화통역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 투표 편의를 위한 기존의 입법 외에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 11)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6헌마285 결정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기본적으로 청각장애선거인들을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 점, 청각장애선거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수화방송 등에 의해서만 선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유인물 등 문서·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방식 등에 의해서도 선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들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청각장애선거인들을 위한 각종 행위의무와 차별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이 수화방송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취지는 수화방송 등이 원칙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방송사업자들의 시설장비나 기술 수준 등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아 수화방송 등을 적시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현 단계에서 수화방송 등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반드시 실시하여야만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심판대상조항이 수화방송 등을 할 수 없는 예외사유를 보다 제한적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참정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 입법자는 청각장애인들이 선거권의 실질적인 행사가능성을 보장받도록 선거방송의 수용과정에서 적어도 비장애인들과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차별방지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단순한 재량사항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적 명령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수화 및 자막 등의 방영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차별취급이 존재하게 되고 이는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차별의 효과와 이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되는 관련법익의 정도 및 부수되는 문제를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차별 정도에 관한 적절한 균형관계를 일탈하여 그 정당성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된다.

넘어 수화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공동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당위에 대한 확인이자 헌법 정신의 구현임.

- *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각장애인 310,307명 중 4.6%인 14,200여 명이 수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 현재 한국수화 사용 화자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음성언어인 한국어 사용 편향성 속에서 소수자 집단을 구성. 그러나 현재 14,200여명에 불과한 한국수화 사용자가 한국수화의 잠재적 수요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한국수화 사용을 지양하는 사회적 편견을 없애게 되면, 본질적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고 30만명이 넘는 청각장애인들 모두와 그들의 가족, 주변 동료들까지 수화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그들 모두 잠재적 수화 사용자.
- * 현재 상황에서 농아인들은 교육에서 자신의 모어인 한국수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외국어나 다름없는 제2언어인 한국어로 학습하는 상황이며 통합교육의 강조 추세로 인하여 이러한 상황은 더욱 가속화.
-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한국수어법의 실천법으로서 기능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수어 규정이 차별여부의 판단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를 바람.



2017장애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장애법 개정안 수렴 토론회

토론 4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수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수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 기관 확대가 완료되어 동 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법의 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소요를 파악하는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박종운 변호사님과 김성연 사무국장님 그리고 인권위의 정호균 팀장님의 발제문에서 장애인들의 완전한 권리 실현과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많은 분들의 깊은 고민을 느낄 수 있었다. 발제 일부에 대해 보충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

먼저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이 필요함에 공감한다. 다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이와 모순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지원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초·중등기관과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발제문 상의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책임자인 각급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에 필요한 자료, 의사소통기구, 의사소통 보조인력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법에서 의무부과 대상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발달장애인지원법상에서는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기관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차법상의 교육기관은 제3조 6호에서와 같이 매우 광의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다만, 초·중등기관과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모바일 접근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과연 정보통신기기가 새롭게 나올 때마다 새로운 기기에 대한 규정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정보접근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에서 새로운 기기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이 부분은 토론회 전에 개최한 간담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된 부분으로 앞으로 관련기관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와 관련해서 언급하자면, 법무부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시정명령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필요한 때에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발하는 데에 소극적이고, 적절한 시정명령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장차법 제43조 각 호의 권고 불이행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별피해의 정도와 공익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정명령의 요건이 엄격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명령의 건수가 적은 이유가 권고건수 자체가 많지 않은 점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여야 한다. 또한 인권위의 권고안을 차별행위자가 대부분 수용한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각 호에 해당하는 권고불이행 사례 자체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참고로 2016년에 인권위에 진정된 사건 1,638건 중 실제로 권고가 이루어진 것은 19건에 불과하며, 19건의 권고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차별행위에 따른 벌칙 규정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과 관련하여서는 벌칙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이더라도 차별의 고의성·지속성 및 반복성·피해자에 대한 보복성·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전부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악의성’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다만, 과연 벌칙이 적용되는 것이 매우 협소한 것이 악의성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를 통한 행정적 구제조치를 통해 많은 부분이 해소되기 때문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장차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된 상태다. 발의안의 내용 중에 발제안에 포함된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장애인의 관광활동에서의 차별금지 의무를 국가·지자체·관광사업자에게 부여하고, 국가·지자체가 장애인에 정당한 편의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노회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사업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관광활동참여를 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관광사업의 성격 상 개선이 어렵거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

홍익표 의원님은 정당한 편의에 기존의 규정·기준·관행 등을 변경하는 비물리적 조치를 추가하여, 편의의 범주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외에 비물리적 조치를 추가하여, 편의의 범주를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강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희 의원님은 49조의 벌칙규정에서 악의성 판단시 발제문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전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발의해 주셨다. 김세연 의원님은 21조의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에게도 영상물에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해 주셨다.

마지막으로 장차법상의 편의 제공은 아니지만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복지부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시험’의 범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시켜야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고등교육법 상에 규정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부와 적극 협의하여 진행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앞으로 복지부는 현재 발의된 의원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예정이며, 부처 협의도 지속해나갈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발전을 위해 여러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향후 반영할 수 있는 개정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발제자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토론자분들에게도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7장애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장차법 개정안 수렴 토론회

부록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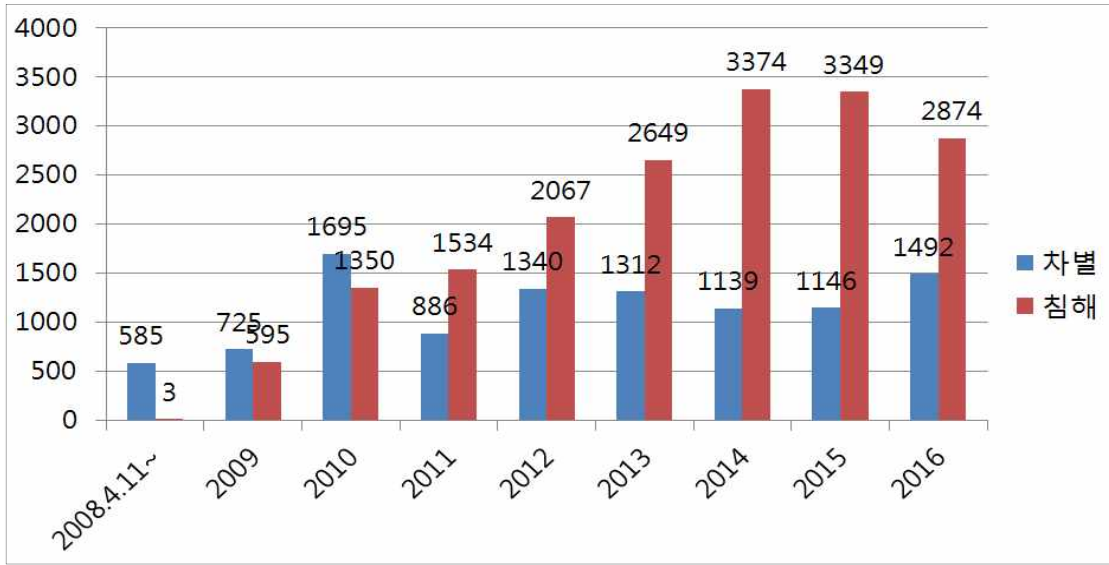


부록 1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I. 진정사건 접수 : 정신의료기관 사건과 장애차별 사건 접수현황

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분야 사건 접수 현황

연도	진정건수	장애분야		비고
		차별	침해 (정신보건시설)	
계	28,115	10,320	17,795	
2008.4.11.~	588	585	3	
2009	1,320	725	595	
2010	3,045	1,695	1,350	
2011	2,420	886	1,534	
2012	3,407	1,340	2,067	
2013	3,961	1,312	2,649	
2014	4,513	1,139	3,374	
2015	4,495	1,146	3,349	
2016	4,366	1,492	2,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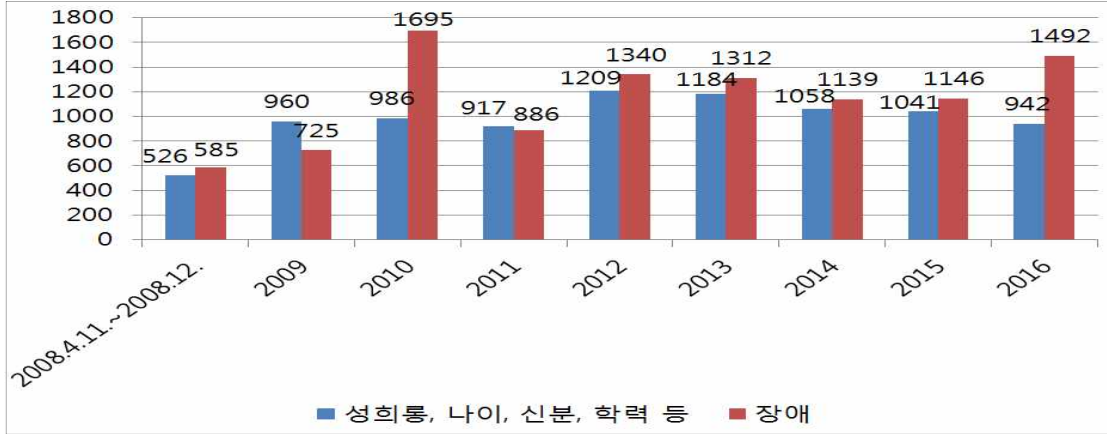
[그림 1] 장애분야 사건 접수 현황

II. 진정사건 접수 :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가.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2001.11.~2016.12.)

(단위: 건, %)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총계	2001. 11.~ 2016. 12.	진정건수	23,413	12,440	10,973
		비율(%)	100.0	53.1	46.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2001. 11. 25.~ 2008. 4. 10.	진정건수	4,269	3,616	653
		비율(%)	100.0	84.7	15.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8. 4. 11.~ 2016. 12.	진정건수	19,144	8,824	10,320
		비율(%)	100.0	46.1	53.9
	2008. 4. 11.~ 2008. 12.	진정건수	1,111	526	585
		비율(%)	100.0	47.3	52.7
	2009. 1.~ 2009. 12.	진정건수	1,685	960	725
		비율(%)	100.0	57.0	43.0
	2010. 1.~ 2010. 12.	진정건수	2,681	986	1,695
		비율(%)	100.0	36.8	63.2
	2011. 1.~ 2011. 12.	진정건수	1,803	917	886
		비율(%)	100.0	50.9	49.1
	2012. 1.~ 2012. 12.	진정건수	2,549	1,209	1,340
		비율(%)	100.0	47.4	52.6
	2013. 1.~ 2013. 12.	진정건수	2,496	1,184	1,312
		비율(%)	100.0	47.4	52.6
	2014. 1.~ 2014. 12.	진정건수	2,197	1,058	1,139
		비율(%)	100.0	48.2	51.8
	2015. 1.~ 2015. 12.	진정건수	2,187	1,041	1,146
		비율(%)	100.0	47.6	52.4
	2016. 1.~ 2016. 12.	진정건수	2,434	942	1,492
		비율(%)	100.0	38.7	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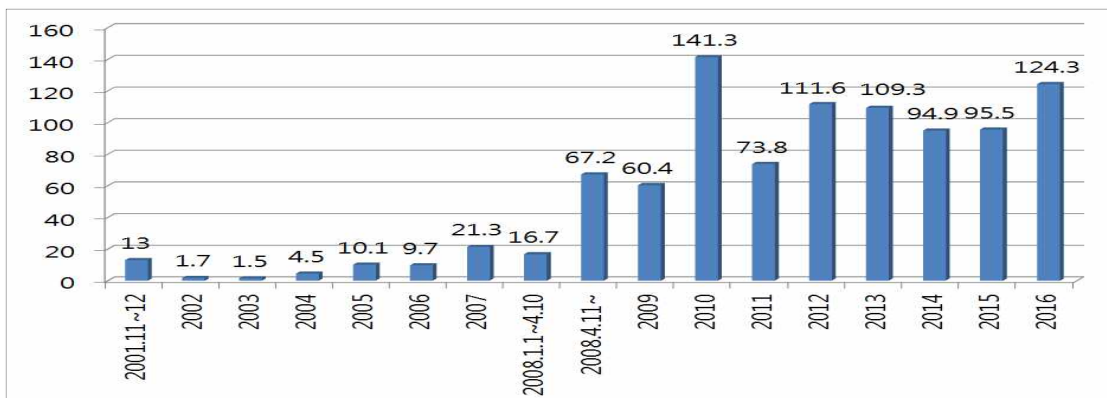


[그림 2]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

나. 연도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6.12.)

(단위: 건)

연도 (년) 구분	총	장차법 이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2001 (11~ 12월)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008 (1.1~ 4.10)	시행이 후	2008 (4.11 ~ 12월)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장애 진정 건수	연도별 10,973	653	13	20	18	54	121	116	256	55	10,320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6	1,492
월평균	60.3	10	6.5	1.7	1.5	4.5	10.1	9.7	21.3	16.5	93.2	67.2	60.4	141.3	73.8	111.6	109.3	94.9	95.5	1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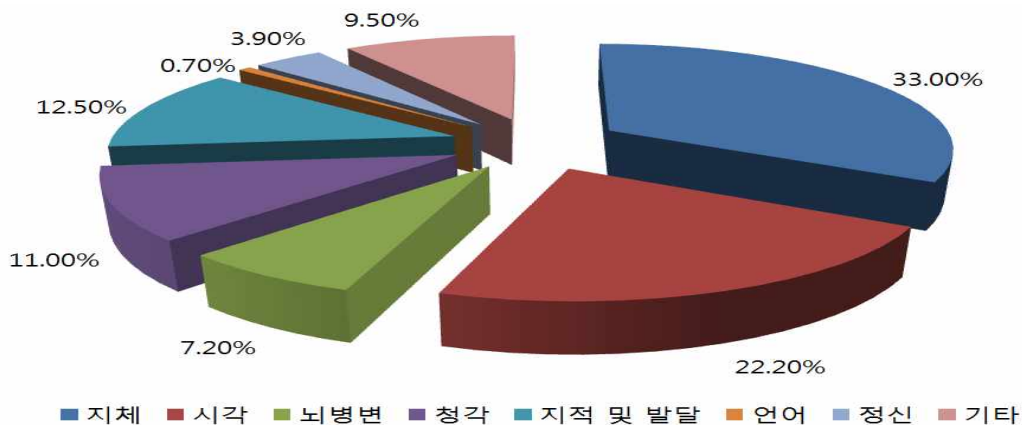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6.12.)

다.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분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발달	언어	정신	기타	
전체	계	10,320	3,403	2,295	741	1,137	1,290	73	406	976
	비율	100.0	33.0	22.2	7.2	11.0	12.5	0.7	3.9	9.5
2008	건수	585	72	85	35	45	29	1	15	303
	비율	100.0	12.3	14.5	6.0	7.7	4.9	0.2	2.6	51.8
2009	건수	725	288	91	69	46	70	11	44	106
	비율	100.0	39.7	12.6	9.5	6.3	9.7	1.5	6.1	14.6
2010	건수	1,695	508	427	136	275	181	8	73	87
	비율	100.0	30.0	25.2	8.0	16.2	10.7	0.5	4.3	5.1
2011	건수	886	297	142	57	72	214	8	48	48
	비율	100.0	33.5	16.0	6.5	8.1	24.2	0.9	5.4	5.4
2012	건수	1,339	492	193	87	142	231	13	47	135
	비율	100.0	36.7	14.4	6.5	10.6	17.3	1.0	3.5	10.0
2013	건수	1,312	380	299	71	251	115	7	50	139
	비율	100.0	29.0	22.8	5.4	19.1	8.8	0.5	3.8	10.6
2014	건수	1,139	402	290	92	112	104	13	55	71
	비율	100.0	35.3	25.5	8.1	9.9	9.1	1.1	4.8	6.2
2015	건수	1,146	334	440	93	101	100	5	30	43
	비율	100.0	29.2	38.4	8.1	8.8	8.7	0.4	2.6	3.8
2016	건수	1,492	629	328	101	93	246	7	44	44
	비율	100.0	42.2	21.9	6.8	6.2	16.4	0.5	3.0	3.0
등록 장애인 구성비 ¹⁾	인원 (천명)	2,490	1,281	253	251	250	211	19	99	126
	비율	100.0	51.4	10.2	10.1	10.0	8.5	0.8	4.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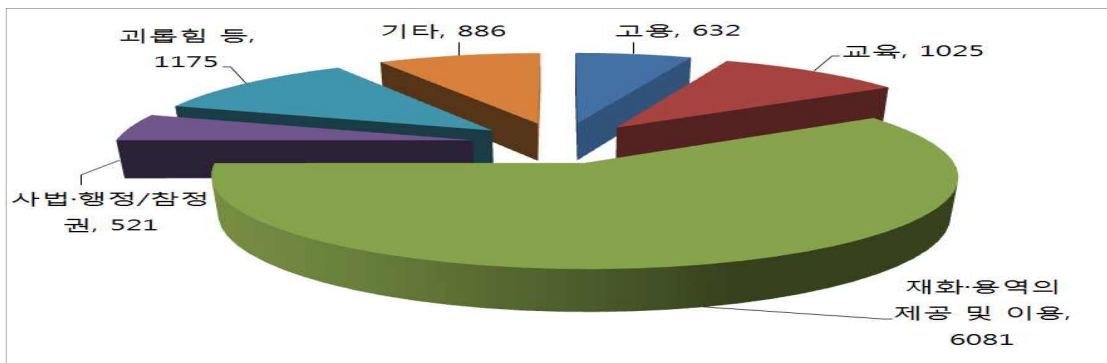
[그림 4]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6.12.31.)

1) 등록 장애인 구성비: 2015. 12.(보건복지부)

라.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소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 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예술 체육
전체	접수	10,320	632	1,025	6,081	1,567	675	1,265	701	1,560	313	521	1,175	886
	비율	100.0	6.1	9.9	58.9	15.2	6.5	12.3	6.8	15.1	3.0	5.0	11.4	8.6
2008 (4-12)	접수	585	41	61	347	37	49	78	128	35	20	55	42	39
	비율	100.0	7.0	10.4	59.3	6.3	8.4	13.3	21.9	6.0	3.4	9.4	7.2	6.7
2009	접수	725	69	49	412	153	91	93	49	13	13	42	105	48
	비율	100.0	9.5	6.8	56.8	21.1	12.6	12.8	6.8	1.8	1.8	5.8	14.5	6.6
2010	접수	1,695	82	55	1,269	296	65	263	103	506	36	39	176	74
	비율	100.0	4.8	3.2	74.9	17.5	3.8	15.5	6.1	29.9	2.1	2.3	10.4	4.4
2011	접수	886	64	62	487	179	70	67	67	45	59	80	105	88
	비율	100.0	7.2	7.0	55.0	20.2	7.9	7.6	7.6	5.1	6.7	9.0	11.9	9.9
2012	접수	1,340	82	96	808	188	153	252	40	42	133	93	111	150
	비율	100.0	6.1	7.2	60.3	14.0	11.4	18.8	3.0	3.1	9.9	6.9	8.3	11.2
2013	접수	1,312	75	45	706	154	55	128	49	307	13	71	303	112
	비율	100	5.7	3.4	53.8	11.7	4.2	9.8	3.7	23.4	1.0	5.4	23.1	8.5
2014	접수	1,139	94	66	677	180	62	142	108	166	19	61	123	118
	비율	100	8.3	5.8	59.4	15.8	5.4	12.5	9.5	14.6	1.7	5.4	10.8	10.4
2015	접수	1,146	69	55	733	129	82	125	99	286	12	37	121	131
	비율	100.0	6.0	4.8	64.0	11.3	7.2	10.9	8.6	25.0	1.0	3.2	10.6	11.4
2016	접수	1,492	56	536	642	251	48	117	58	160	8	43	89	126
	비율	100.0	3.8	35.9	43.0	16.8	3.2	7.8	3.9	10.7	0.5	2.9	6.0	8.4



[그림 5]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6.12.31.)

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차별영역별 월평균 진정사건 증감 추이

(단위: 건)

구분		2001.11.25. ~ 2008.4.10.	2008. 4.11. ~ 2008.12.31.	2009. 1. 1. ~ 2009.12.31.	2010. 1. 1. ~ 2010.12.31.	2011. 1. 1. ~ 2011.12.31.	2012. 1. 1. ~ 2012.12.31.	2013. 1. 1. ~ 2013.12.31.	2014. 1. 1. ~ 2014.12.31.	2015. 1. 1. ~ 2015.12.31.	2016. 1. 1. ~ 2016.12.31.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9년 (2008. 4.~ 2015. 12.)
합계	전체 건수	653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6	1492	10320
	월평균	8.5	67.2	60.4	141.3	73.8	111.7	109.3	94.9	95.5	124.3	111
고용	전체 건수	153	41	69	82	64	82	75	94	69	56	632
	월평균	2	4.7	5.8	6.8	5.3	6.8	6.3	7.8	5.8	4.7	6.8
교육	전체 건수	122	61	49	55	62	96	45	66	55	536	1025
	월평균	1.6	7.0	4.1	4.6	5.2	8	3.8	5.5	4.6	44.7	11
재화·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전체 건수	207	347	412	1269	487	808	706	677	733	642	6081
	월평균	2.7	39.9	34.3	105.8	40.6	67.3	58.8	56.4	61.1	53.5	65.4
사법· 행정 /참정권	전체 건수	-	55	42	39	80	93	71	61	37	43	521
	월평균	-	6.3	3.5	3.3	6.7	7.8	5.9	5.1	3.1	3.6	5.6
괴롭힘, 기타	전체 건수	171	81	153	250	193	261	415	241	252	215	2061
	월평균	2.2	9.3	12.8	20.8	16.1	21.8	34.6	20.1	21	17.9	22.2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과 ‘사법·행정 및 참정권’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해당기간 동안(2001.11.25.~2008.4.10.)의 사건 접수 건수를 모두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에 포함함.

바.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단위: 건)

사건유형	총합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발달	언어	정신	기타	
소계	10,320	3,403	2,294	741	1,137	1,290	73	406	976	
고용	632	229	67	50	102	48	12	36	88	
교육	1,025	429	81	54	57	327	4	13	60	
재 화 와 용 역 의 제 공 및 이 용	재화·용역 일반	1,567	513	328	181	128	232	11	57	117
	보험·금융	675	154	123	66	126	101	7	56	42
	시설물 접근	1,265	867	182	92	16	13	1	3	91
	이동 및 교통수단	701	367	118	54	23	40	5	2	92
	정보접근·의사소통	1,560	37	1,036	17	329	26	6	2	107
	문화·예술·체육	313	64	26	16	59	119	-	7	22
사법·행정	358	73	83	19	43	73	5	19	43	
참정권	163	58	29	7	3	8	-	3	55	
괴롭힘 등	1,175	305	69	115	208	224	12	138	104	
기타	886	307	152	70	43	79	10	70	155	

Ⅲ. 진정사건 접수 : 장애차별 영역별 세부 유형

가. 고용 영역(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 분		고용영역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복리 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 해고	교육	기타
합계	합계	632	245	83	59	15	26	141	3	60
	비율	100.0	38.8	13.1	9.3	2.4	4.1	22.3	0.5	9.5
	공공	211	117	7	29	11	6	18	2	21
	민간	421	128	76	30	4	20	123	1	39
2008	합계	41	19	5	6	1	0	8	1	1
	비율	100.0	46.3	12.2	14.6	2.4	0.0	19.5	2.4	2.4
	공공	18	11	1	2	1	0	1	1	1
	민간	23	8	4	4	0	0	7	0	0
2009	합계	69	30	12	6	2	1	16	1	1
	비율	100.0	43.5	17.4	8.7	2.9	1.4	23.2	1.4	1.4
	공공	20	11	0	5	1	0	2	0	1
	민간	49	19	12	1	1	1	14	1	0
2010	합계	82	27	12	13	3	3	15	0	9
	비율	100.0	32.9	14.6	15.9	3.7	3.7	18.3	0.0	11.0
	공공	30	11	0	8	3	1	4	0	3
	민간	52	16	12	5	0	2	11	0	6
2011	합계	64	23	10	4	1	0	17	1	8
	비율	100.0	35.9	15.6	6.3	1.6	0.0	26.6	1.6	12.5
	공공	14	8	0	0	0	0	2	1	3
	민간	50	15	10	4	1	0	15	0	5
2012	합계	82	33	10	5	1	5	20	0	8
	비율	100.0	40.2	12.2	6.1	1.2	6.1	24.4	0.0	9.8
	공공	34	18	4	2	1	2	4	0	3
	민간	48	15	6	3	0	3	16	0	5

구 분	고용영역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복리 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 해고	교육	기타	
2013	합계	75	28	10	6	1	1	17	0	12
	비율	100.0	37.3	13.3	8.0	1.3	1.3	22.7	0.0	16.0
	공공	29	15	1	4	1	0	2	0	6
	민간	46	13	9	2	0	1	15	0	6
2014	합계	94	38	11	11	3	5	22	0	4
	비율	100.0	40.4	11.7	11.7	3.2	5.3	23.4	0.0	4.3
	공공	24	16	1	4	2	0	1	0	0
	민간	70	22	10	7	1	5	21	0	4
2015	합계	69	20	8	3	1	9	14	0	14
	비율	100.0	29.0	11.6	4.3	1.4	13.0	20.3	0.0	20.3
	공공	18	11	0	2	1	2	0	0	2
	민간	51	9	8	1	0	7	14	0	12
2016	합계	56	27	5	5	2	2	12	0	3
	비율	100.0	48.2	8.9	8.9	3.6	3.6	21.4	0	5.4
	공공	24	16	-	2	1	1	2	0	2
	민간	32	11	5	3	1	1	10	0	1

나. 교육 영역(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 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 시험평가 편의미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계	합계	1025	72	58	173	127	86	36	473
	비율	100.0	7.0	5.7	16.9	12.4	8.4	3.5	46.1
	공공	860	32	33	126	115	83	26	445
	민간	165	40	25	47	12	3	10	28
2008	합계	61	9	14	14	7	6	3	8
	비율	100.0	14.8	23.0	23.0	11.5	9.8	4.9	13.1
	공공	34	6	7	5	5	5	1	5
	민간	27	3	7	9	2	1	2	3
2009	합계	49	16	2	8	13	1	3	6
	비율	100.0	32.7	4.1	16.3	26.5	2.0	6.1	12.2
	공공	28	7	2	4	8	1	2	4
	민간	21	9	0	4	5	0	1	2
2010	합계	55	4	10	12	6	4	7	12
	비율	100.0	7.3	18.2	21.8	10.9	7.3	12.7	21.8
	공공	35	0	1	6	5	4	7	12
	민간	20	4	9	6	1	0	0	0
2011	합계	62	10	6	7	1	3	0	35
	비율	100.0	16.1	9.7	11.3	1.6	4.8	0.0	56.5
	공공	43	6	5	1	0	3	0	28
	민간	19	4	1	6	1	0	0	7
2012	합계	96	9	2	13	3	51	2	16
	비율	100.0	9.4	2.1	13.5	3.1	53.1	2.1	16.7
	공공	79	3	1	9	2	51	2	11
	민간	17	6	1	4	1	0	0	5

구 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 시험평가 편의미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2013	합계	45	9	7	6	3	7	2	11
	비율	100.0	20.0	15.6	13.3	6.7	15.6	4.4	24.4
	공공	30	2	6	6	3	5	2	6
	민간	15	7	1	0	0	2	0	5
2014	합계	66	6	10	17	2	10	8	13
	비율	100.0	9.1	15.2	25.8	3.0	15.2	12.1	19.7
	공공	44	3	6	8	1	10	5	11
	민간	22	3	4	9	1	0	3	2
2015	합계	55	5	1	15	4	3	7	20
	비율	100.0	9.1	1.8	27.3	7.3	5.5	12.7	36.4
	공공	41	2	0	7	4	3	7	18
	민간	14	3	1	8	0	0	0	2
2016	합계	536*	4	6	81	88	1	4	352
	비율	100.0	0.8	1.1	15.1	16.4	0.2	0.8	65.6
	공공	526	3	5	80	87	1	0	350
	민간	10	1	1	1	1	0	4	2

*2016년 특수학교 관련하여 504건이 집단으로 진정됨

다. 재화·용역 및 사범·행정 서비스 영역(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 분	재화·용역								사범·행정 /참정권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 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합계	합계	6,081	1,567	675	1,265	701	1,560	313	521
	비율	100.0	25.8	11.1	20.8	11.5	25.7	5.1	100.0
	공공	2,417	693	63	554	396	508	203	491
	민간	3,664	874	612	711	305	1,052	110	30
2008	합계	347	37	49	78	128	35	20	55
	비율	100.0	10.7	14.1	22.5	36.9	10.1	5.8	100.0
	공공	140	9	5	26	83	9	8	54
	민간	207	28	44	52	45	26	12	1
2009	합계	412	153	91	93	49	13	13	42
	비율	100.0	37.1	22.1	22.6	11.9	3.2	3.2	100.0
	공공	154	66	7	33	36	4	8	41
	민간	258	87	84	60	13	9	5	1
2010	합계	1,269	296	65	263	103	506	36	39
	비율	100.0	23.3	5.1	20.7	8.1	39.9	2.8	100.0
	공공	762	211	6	181	71	269	24	35
	민간	507	85	59	82	32	237	12	4
2011	합계	487	179	70	67	67	45	59	80
	비율	100.0	36.8	14.4	13.8	13.8	9.2	12.1	100.0
	공공	212	80	4	23	34	26	45	79
	민간	275	99	66	44	33	19	14	1
2012	합계	808	188	153	252	40	42	133	93
	비율	100.0	23.3	18.9	31.2	5.0	5.2	16.5	100.0
	공공	353	83	9	119	27	15	100	90
	민간	455	105	144	133	13	27	33	3

구 분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 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2013	합계	706	154	55	128	49	307	13	71
	비율	100.0	21.8	7.8	18.1	6.9	43.5	1.8	100.0
	공공	175	52	7	39	28	45	4	68
	민간	531	102	48	89	21	262	9	3
2014	합계	677	180	62	142	108	166	19	61
	비율	100.0	26.6	9.2	21.0	16.0	24.5	2.8	100.0
	공공	224	67	8	49	43	48	9	48
	민간	453	113	54	93	65	118	10	13
2015	합계	733	129	82	125	99	286	12	37
	비율	100.0	17.6	11.2	17.1	13.5	39.0	1.6	100.0
	공공	188	38	8	38	35	65	4	35
	민간	545	91	74	87	64	221	8	2
2016	합계	642	251	48	117	58	160	8	43
	비율	100.0	39.0	7.5	18.3	9.0	25.0	1.2	100.0
	공공	208	87	9	46	39	27	1	41
	민간	433	164	39	71	19	133	7	2

라. 괴롭힘 등 영역(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 분		장애인 등에 대한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 학대	금전적 착취	장애인 모욕비하	기타
계	합계	1,175	22	30	27	193	132	678	93
	비율	100.0	1.9	2.6	2.3	16.4	11.2	57.7	7.9
	공공	164	6	2	4	30	5	98	19
	민간	1,011	16	28	23	163	127	580	74
2008	합계	42	0	0	3	5	7	26	1
	비율	100.0	0.0	0.0	7.1	11.9	16.7	61.9	2.4
	공공	2	0	0	0	0	1	0	1
	민간	40	0	0	3	5	6	26	0
2009	합계	105	1	4	6	19	16	53	6
	비율	100.0	1.0	3.8	5.7	18.1	15.2	50.5	5.7
	공공	18	1	0	0	4	0	12	1
	민간	87	0	4	6	15	16	41	5
2010	합계	176	3	10	2	40	23	77	21
	비율	100.0	1.7	5.7	1.1	22.7	13.1	43.8	11.9
	공공	32	1	1	0	6	1	16	7
	민간	144	2	9	2	34	22	61	14
2011	합계	105	4	4	0	22	16	50	9
	비율	100.0	3.8	3.8	0.0	21.0	15.2	47.6	8.6
	공공	19	0	1	0	4	1	12	1
	민간	86	4	3	0	18	15	38	8
2012	합계	111	4	4	1	22	18	50	12
	비율	100.0	3.6	3.6	0.9	19.8	16.2	45.0	10.8
	공공	17	1	0	0	2	0	13	1
	민간	94	3	4	1	20	18	3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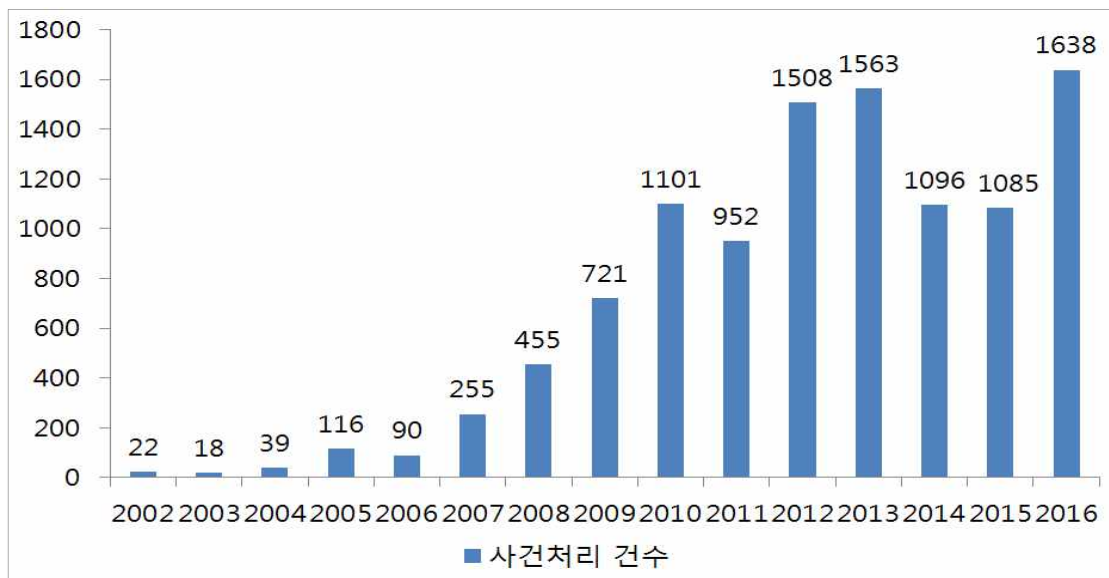
구 분		장애인 등에 대한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 학대	금전적 착취	장애인 모욕비하	기타
2013	합계	303	5	2	5	24	19	233	15
	비율	100.0	1.7	0.7	1.7	7.9	6.3	76.9	5.0
	공공	16	1	0	2	1	0	10	2
	민간	287	4	2	3	23	19	223	13
2014	합계	123	2	3	6	17	20	67	8
	비율	100.0	1.6	2.4	4.9	13.8	16.3	54.5	6.5
	공공	18	2	0	2	4	2	8	0
	민간	105	0	3	4	13	18	59	8
2015	합계	121	2	3	1	23	10	72	10
	비율	100.0	1.7	2.5	0.8	19.0	8.3	59.5	8.3
	공공	22	0	0	0	3	0	17	2
	민간	99	2	3	1	20	10	55	8
2016	합계	89	1	0	3	21	3	50	11
	비율	100.0	1.1	0	3.4	23.6	3.3	56.2	12.4
	공공	20	0	0	0	6	0	10	4
	민간	69	1	0	3	15	3	40	7

IV. 진정사건 처리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가.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6.12.31.)

(단위: 건)

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0,659	22	18	39	116	90	255	455	721	1,101	952	1,508	1,563	1,096	1,085	1,638



[그림 6]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6.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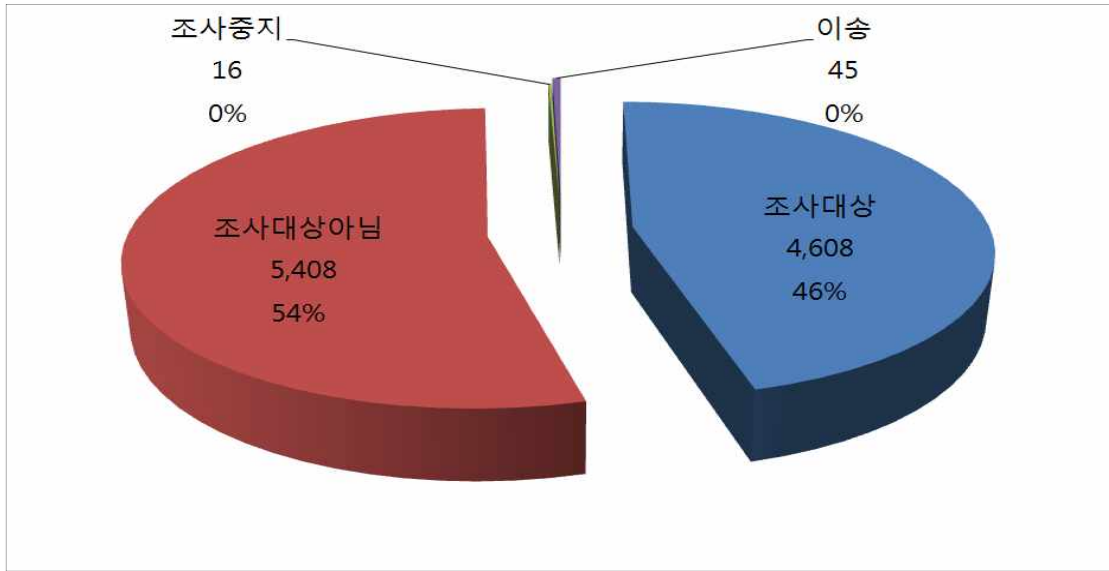
나. 장애차별 진정사건 세부처리 현황(2008.4.11.~2016.12.31.)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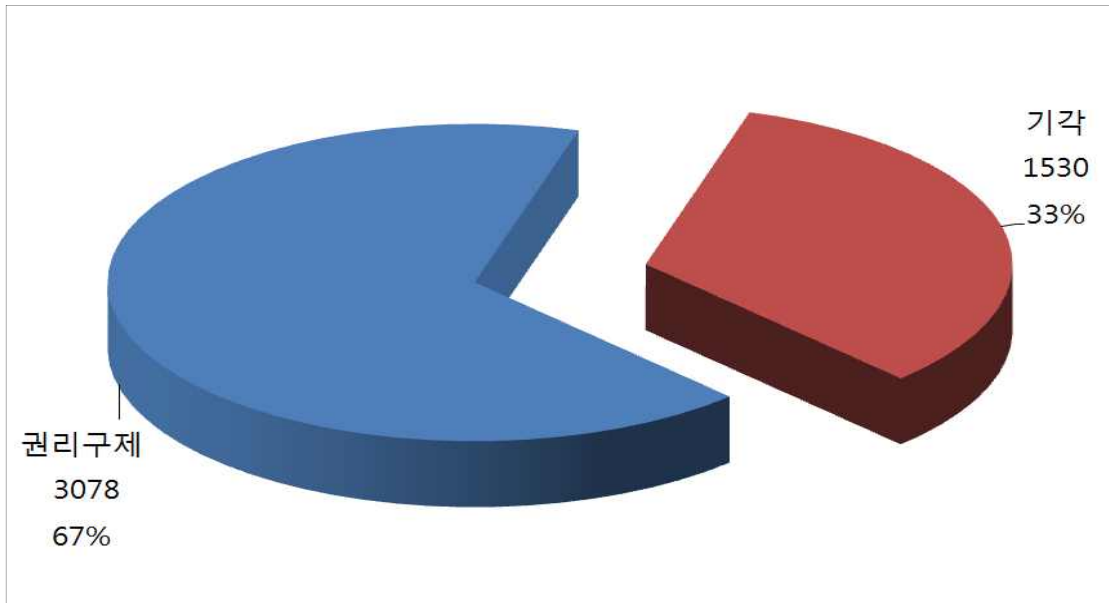
처리건수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소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합계	10,077	4,608	3,078	383	5	355	2,335	1,530	5,408 (3,989)	16	45
구성비 (%)	100.0	100.0	100.0	12.4	0.2	11.5	75.9				
			66.866.8					33.2			
			45.8						53.4	0.3	0.5
2008년	413	191	115	22	-	12	81	76	221 (139)	1	-
구성비 (%)	100.0	100.0	100.0	19.1	-	10.5	70.4				
			60.2					39.8			
			46.2						53.5	0.3	-
2009년	721	358	212	10	-	47	155	146	353 (238)	4	6
구성비 (%)	100.0	100.0	100.0	4.7	-	22.2	73.1				
			59.2					40.8			
			49.7						48.9	0.6	0.8
2010년	1,101	417	262	28	1	56	177	155	663 (369)	6	15
구성비 (%)	100.0	100.0	100.0	10.7	0.4	21.4	67.6				
			62.8					37.2			
			37.9						60.2	0.5	1.4
2011년	952	566	361	124	-	32	205	205	381 (228)	1	4
구성비 (%)	100.0	100.0	100.0	34.3	-	8.9	56.8				
			63.8					36.2			
			59.5						40.0	0.1	0.4
2012년	1,508	890	701	116	-	20	565	189	616 (495)	1	1
구성비 (%)	100.0	100.0	100.0	16.5	-	2.9	80.6				
			78.8					21.2			
			59.0						40.8	0.1	0.1

처리건수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소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2013년	1,563	807	643	29	-	79	535	164	755 (459)	-	1
구성비 (%)	100.0	100.0	100.0	4.5	-	12.3	83.2				
			79.7					20.3			
				51.6					48.3	-	0.1
2014년	1,096	528	319	17	1	61	240	209	560 (452)	3	5
구성비 (%)	100.0	100.0	100.0	5.3	0.3	19.1	75.2				
			60.4					39.6			
				48.2					51.1	0.3	0.5
2015년	1,085	417	216	18	-	19	179	201	662 (561)	-	6
구성비 (%)	100.0	100.0	100.0	7.9	-	8.8	83.3				
			51.7					48.3			
				38.4					61.1	-	0.6
2016년	1,638	434	249	19	3	29	198	185	1,197 (1,048)	-	7
구성비 (%)	100.0	100.0	100.0	7.6	1.3	11.6	79.5				
			57.4					42.6			
				26.5					73.1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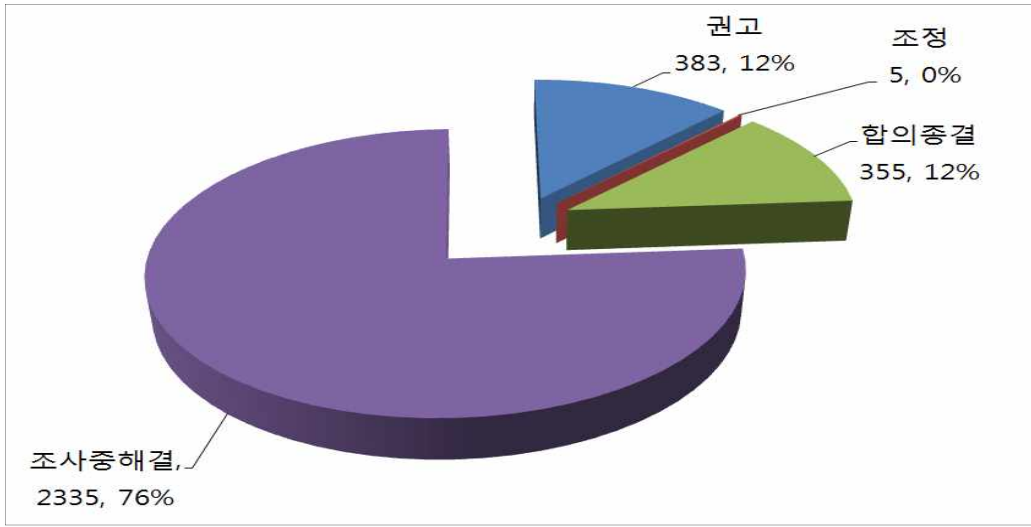
-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임.
-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그림 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사건의 조사대상 여부



[그림 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조사대상 사건 중 권리구제대상 현황



[그림 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권리구제 대상사건 처리 결과

다.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소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합계	건수	10,077	4,608	383	5	355	2,335	1,530	5,408 (3,989)	16	45
	비율(%)	100.0	100.0	66.8				33.2			
				45.7					53.7	0.2	0.4
고용	건수	628	212	13	-	39	24	136	411 (329)	3	2
	비율(%)	100.0	100.0	35.7				64.2			
				33.8					65.5	0.4	0.3
교육	건수	996	232	14	-	37	122	59	761 (713)	-	3
	비율(%)	100.0	100.0	74.6				25.4			
				23.2					76.4	0	0.4
재화·용역	건수	5,927	3,317	308	5	194	1,906	904	2,591 (1,956)	9	10
	비율(%)	100.0	100.0	72.7				27.3			
				56.1					43.7	0.1	0.1
사법·행정 /참정권	건수	512	250	23	-	4	145	78	261 (176)	-	1
	비율(%)	100.0	100.0	68.6				31.2			
				48.9					51.1	0	0
괴롭힘 등	건수	2,014	597	25	-	81	138	353	1,384 (815)	4	29
	비율(%)	100.0	100.0	40.9				59.1			
				29.7					68.7	0.2	1.4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라. 장애차별사건 시정권고 현황(2008.4.11.~2016.12.31.)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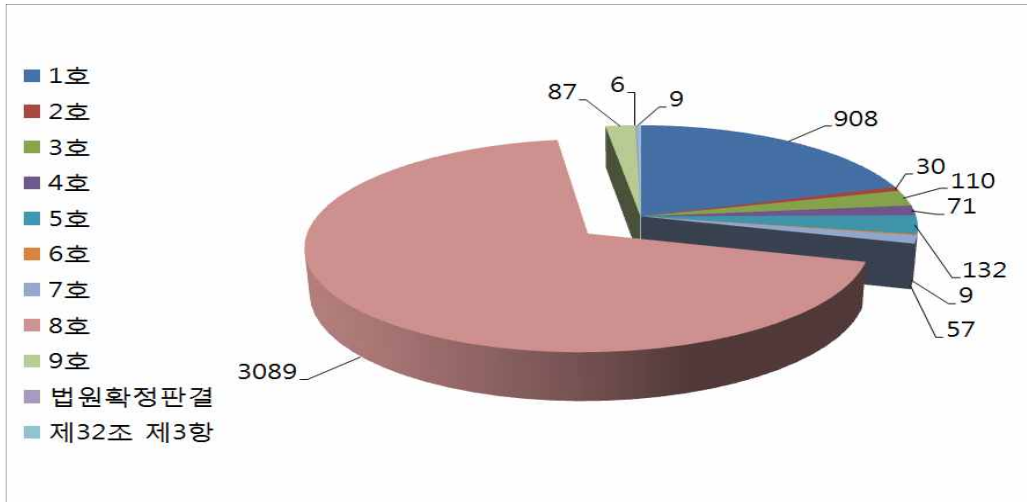
구 분	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권고 사건 수	383	13	14	308	23	25

V. 장애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현황

가. 장애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 현황 (2008.04.11.~2016.12.31.)

처리건수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법원확정 판결/ 헌법재판 소결정에 반함	제32조 제3항* *****	
합계	5,408	908	30	110	71	132	9	57	3,989	87	6	9
구성비(%)	100.0	16.7	0.5	2.1	1.3	2.4	0.2	1.0	73.9	1.6	0.1	0.2
2008년	221	54	1	6	11	2	1	2	139	5	-	-
구성비(%)	100.0	24.4	0.5	2.7	4.9	0.9	0.5	0.9	62.9	2.3	-	-
2009년	353	56	-	9	5	14	1	10	238	19	1	-
구성비(%)	100.0	15.9	-	2.5	1.4	3.9	0.3	2.8	67.5	5.4	0.3	-
2010년	663	227	2	10	19	16	-	6	369	13	1	-
구성비(%)	100.0	34.2	0.3	1.5	2.9	2.4	-	0.9	55.7	1.9	0.2	-
2011년	381	94	3	7	4	17	1	7	228	17	3	-
구성비(%)	100.0	24.7	0.8	1.8	1.0	4.5	0.3	1.8	59.8	4.5	0.8	-
2012년	616	62	3	14	9	16	4	9	495	3	-	1
구성비(%)	100.0	10.0	0.4	2.3	1.5	2.6	0.6	1.5	80.4	0.5	-	0.2
2013년	755	215	5	37	2	20	-	6	459	9	1	1
구성비(%)	100.0	28.5	0.7	4.9	0.3	2.6	-	0.8	60.8	1.2	0.1	0.1
2014년	560	52	3	8	11	17	1	2	452	10	-	4
구성비(%)	100.0	9.3	0.5	1.4	1.9	3.0	0.2	0.4	80.8	1.8	-	0.7
2015년	662	48	1	8	7	14	1	12	561	8	-	2
구성비(%)	100.0	7.3	0.2	1.2	1.1	2.1	0.2	1.8	84.6	1.2	-	0.3
2016년	1,197	100	12	11	3	16	-	3	1,048	3	-	1
구성비(%)	100.0	8.4	1.0	0.9	0.3	1.2	-	0.3	87.5	0.3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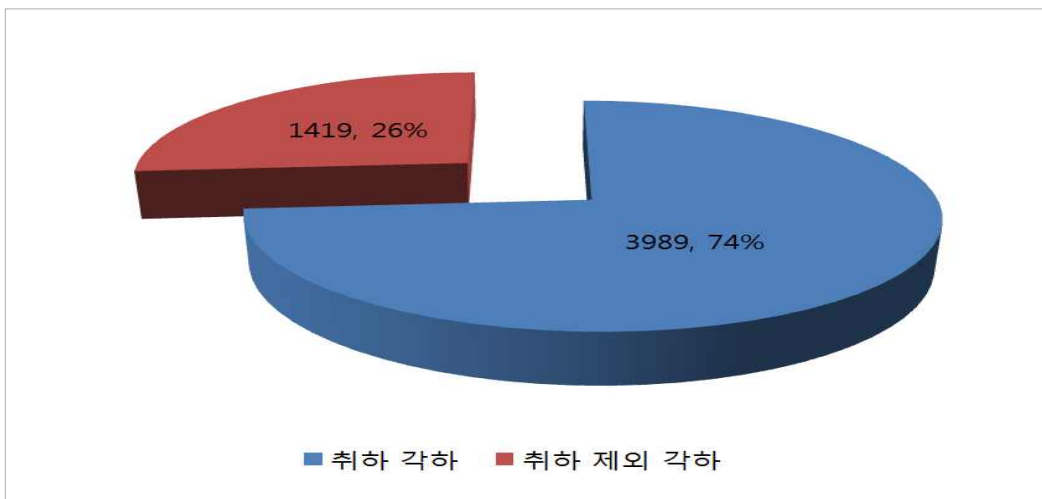
- * 1호 각하: 조사대상 아님
- ** 2호 각하: 거짓/이유없음
- *** 3호 각하: 조사를 원하지 않음
- **** 4호 각하: 1년 이상 경과
- ***** 5호 각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종결
- ***** 6호 각하: 익명/가명제출
- ***** 7호 각하: 적절하지 않음
- ***** 8호 각하: 진정취하/이중 진정이 해결되어 취하한 경우 645건
- ***** 9호 각하: 기각건의 동일사실 재진정
- ***** 제32조 제3항: 조사중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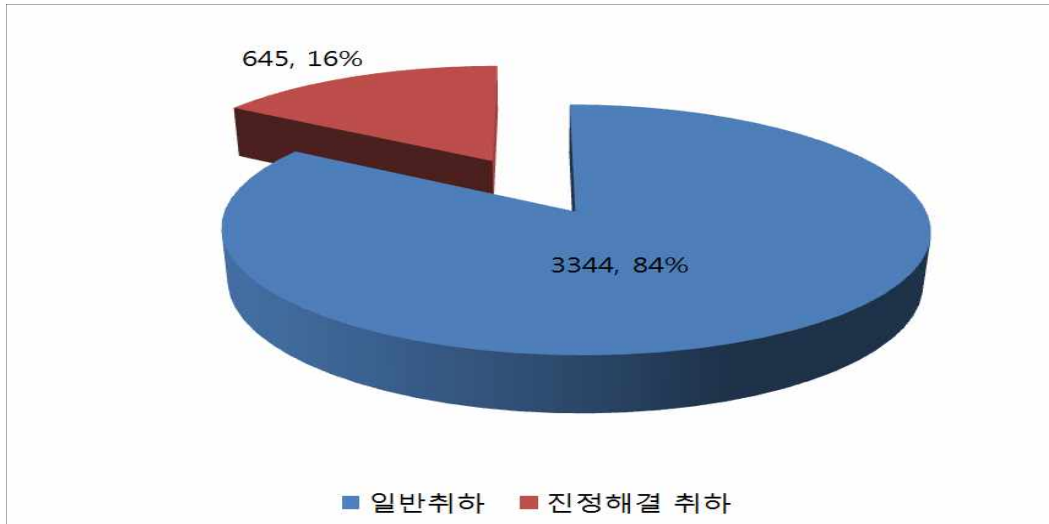
[그림 10] 장애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 현황(2008.4.11. ~ 2016.12.31.)

나. 각하사건 중 진정인이 진정이 해결되어 취하한 현황(2008.04.11.~2016.12.31.)

각하 처리건수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8호)		
	5,408	3,989	
취하 구분		일반취하	진정해결 취하
사건수		3,344	645
취하사건중 해결 %		84%	16%



[그림 11] 각하 사건중 당사자 진정취하 비율(2008.4.11. ~ 2016.12.31.)



[그림 12] 당사자 진정취하 사건 중 진정해결 비율(2008.4.11. ~ 2016.12.31.)

붙임 1 : 장애 관련 직권조사 처리 현황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1	10-직권-0001300	○○농아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	11-직권-0000200	○○학교 교사의 시각장애여학생 안마강요 등에 대한 직권조사
3	11-직권-0000700	선주의 지적장애인 괴롭힘(금전착취 등)에 대한 직권조사
4	11-직권-0001500	지적장애아동 괴롭힘 등에 대한 직권조사
5	11-직권-00017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6	11-직권-00023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폭력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7	12-직권-0000700	중증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8	12-직권-0000800	○○특수학교에 대한 직권조사
9	12-직권-0000900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폭행에 대한 직권조사
10	12-직권-0001000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1	12-직권-0001100	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2	12-직권-0001400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3	12-직권-0001700	장애인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4	13-직권-0000400	무연고 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5	13-직권-0000500	장애인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6	13-직권-0000600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7	13-직권-0002400	사회복지법인 ○○내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8	14-직권-0000100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19	14-직권-0001100	장애인 거주시설의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20	14-직권-0001700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1	14-직권-0001900	지적 장애인 시설 거주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2	15-직권-0001300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3	15-직권-0000900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4	15-직권-0001500	지적장애인 시설 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5	15-직권-0001800	장애인거주시설 내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26	16-직권-0001700	다수인보호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붙임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 관련 사업 및 정책 권고·의견표명 (2008년~2016년)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 기념 토론회 개최 (2009~2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법의 실효적 이행을 도모하는 계기 마련
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실시 (2009~2016)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차별영역을 중심으로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모니터링기관에 송부하여 즉각적인 개선 유도 및 정책과제 발굴
3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2009~2012)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의 이용, 사법·행정절차, 인적서비스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4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독점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2008)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자격 독점권 부여제도는 현존하는 차별로부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잠정적이고, 위급하고,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안마사업에 대한 시각장애인 독점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표명
5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간 및 정책권고 (2009)	정신보건시설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 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및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6	시각장애인 참정권 차별개선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2010)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 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의무화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의견 표명
7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중증장애인 개념 명시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을 부여할 것,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대상 및 서비스 인정시간을 확대하고 장애등급 심사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의견 표명
8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박은수의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모니터링센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태료 규정은 그 부과 주체 및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9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기술 내용이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하도록 장애인의 법적능력, 자립생활지원, 접근성 제고, 고용과 노동, 교육 등에 통계자료를 추가하고, 협약 이행의 문제점과 장애요소 등을 추가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0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1)	시설물 건축에 대한 건축절차와, 편의증진법과 건축 간의 관계 검토를 통하여 현행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등을 제공하고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보완점 등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1	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정책권고 (2011)	은행 시설물, 금융자동화기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금융위원회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10개 은행장에게 권고
12	중장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권고 (2012)	장애인 관련 주요 정부정책 및 법령 분석,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시정을 위한 분야별 정책 의제 발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새로운 인권적 요구에 부합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연차별 행동 계획을 마련하여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3	장애차별 보험 가이드라인 작성 및 권고 (2012)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보험가입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
14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 (2013)	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사건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키며,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해 가사조사관 등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사소송규칙」에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할 것 등을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5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권고 (2013)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에 기반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활성화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실화,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 「장애인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법」 등에 의거하여 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주택제공사업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보조금고용제도를 도입할 것 등을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
16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증진을 위한 「도로법」 개정 권고 (2013)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가 도로 점용허가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여 법령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개정하고,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 설치에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증진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도로법」 제42조에 근거조항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
17	법무사 자격시험 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개선권고 (2013)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은 약시인 시각장애인과는 달리 전맹인 시각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8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권고 (2013)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안정행정부장관에게 권고
19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3)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절차 및 계속입원심사를 일원화, 입원연장 3회 이상시 광역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강화, 공적기관에 의한 이송 의무화 및 위반 시 벌칙조항 신설, 격리, 강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정신건강증진시설 출입 및 환자 면담에 관한 사항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
20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내부 안전장치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2014)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한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휠체어 고정장치 및 휠체어 사용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의 구조·재질·안전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과 △특별교통수단 운행권자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해 안전사고 관련 사례교육, 안전장치 착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제반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
21	시각장애인 제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 관련 정책 개선 권고(2014)	최소 시력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
22	장애인관람석 설치기준의 장애인 관람편리성 제고 권고(201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의 “20.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의 가항을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다른 관람석 또는 열람석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곳에, 동행한 사람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2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2두20991)에 대한 의견제출(2014)	대법원에 계류 중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2012두20991)”에 대한 재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 대법원 2012두20991 사건(서울고등법원 2012누6836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의족 등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의족이 업무 중 파손되었을 경우, 의족은 생물학적 신체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
24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2014)	방송, 신문 등의 언론매체에서 장애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는 용어나 관용구가 사용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주의를 기울일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25	장애인 인권 상황 실태조사 실시 (2009-2016)	<p>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2009),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이행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2010),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실태조사(2010),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2011), 장애유형별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2011),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인적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분류를 기준으로 한 외국판례 연구(2011),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2012),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장애인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2012),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2),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적 자립생활 정착방안 연구(2012),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외국사례 및 정책 연구를 통한 선진모델 구축(2012), 정신장애인 차별·편견해소를 위한 실태조사(2012),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2013), 장애인노동권 보장을 위한 전달체계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2013), 공공조달을 통한 보편적 설계제품의 확산 연구(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증진 및 개선을 위한 연구(2014), 장애인주거지원제도 실태 및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2014), 특수학급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실태 및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2014), 중증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2014), 거주시설 종사자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4), 시설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2014)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5), 장애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5), 정신병원 격리·강박 피해 실태조사(201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실태조사(2015) 일정기준미만의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실태조사(2016),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6),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해외사례 비교연구(2016),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2016)</p>
26	각종 토론회 및 국제심포지엄 등 개최 (2009-2016)	<p>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 방안 토론회(2009),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토론회(2009), 장애인권리협약 한·일 국제심포지엄(2009), 아·태지역의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2010), 장애인권리협약 정보접근권 관련 국제심포지엄(2011),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토론회 및 편견해소 캠페인(2009-2012), 발달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2013),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컨퍼런스(2013),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 공청회(201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2014),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민사·가사재판 참여권 및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학술대회(2014), 장애인 건강권 증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2014),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2015), 시청각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2015), 장애인 권리옹호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2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2016),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제심포지엄(2016),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2016), 탈시설 세부이행 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2016), 장애여성 차별 시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016)</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27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발달장애인법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
28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
29	고속·시외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차별 관련 정책권고(20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및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함
30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의 교육기회보장을 위한 정책권고(2015)	교육부장관에게 학령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과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평생교육시설과 과정을 확충할 것을 권고함
31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5)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및 차별에 대한 대책으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참여 등 6개 과제, 교육부장관에게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활동강화 등 6개 과제,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특수교육교원 증원과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권고함
32	「장애인 시설 건립 반대」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직업센터 설립 반대 위원회가 지역 내 장애인 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서울특별시장과 동대문구청장은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33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개선 정책권고(201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을 「장애등급판정기준」 상의 ‘보행상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것을 권고
34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권고(201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교통부장관,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없는 공항에는 대체할 휠체어 승강설비와 필요한 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각 항공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항공기 탑승 시 진단서, 의사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2.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탑승교와 항공기가 연결되는 부분의 높낮이 차를 제거 3. 한국공항공사 사장, 여객탑승교를 설치할 수 없는 공항에 이를 대체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기 바람 4.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및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장애인 이동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 5. 각 국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관련 업무 담당 인권교육 실시, 휠체어 승강설비를 대여하며, 공항시설이용 등에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항공기 이용 관련 정보를 접근·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 항공사에 사전에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말고, 상반신 고정용 안전벨트와 기내휠체어를 비치하기 바람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35	정신병원의 격리 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권고(2016)	<p>보건복지부장관에게 1.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격리 및 강박 조치에 있어서 아래의 요소를 포함한 법령 강화. 격리·강박의 목적과 원칙/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지시/격리·강박 명부 작성과 비치 의무화/격리·강박과 관련된 구체적 조건과 절차(해제조건, 시간제한, 연장에 대한 절차, 이유 등의 고지, 관찰 등)</p> <p>2. 화학적 강박을 포함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약물투여 실태조사 실시</p> <p>3. 격리실의 구조와 설비, 강박도구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와 표준화된 격리실과 강박기구 활용 및 정착을 위한 노력</p> <p>4. 격리·강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프로그램 연구 추진</p> <p>5. 의료진 및 직원을 대상으로 격리·강박 관련 교육과 훈련 강화</p> <p>6. 보호사의 역할과 자격을 규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p>
36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개선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2016)	<p>1.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적극 행사하여 여객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잔교(浮棧橋)와 차도선(車渡船)의 차량진출입 갑판 등의 바닥표면 재질 및 설치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 지도·감독 실시하, 장애인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마련, 여객선 설계·건조·검사·운영 등의 과정에 걸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고려될 수 있도록 여객선 설계자, 제조자, 소유자, 운영자, 검사담당자, 해사안전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에 대해 교육,</p> <p>2.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의 여객선 승하선, 항만시설이용 등에 있어 필요한 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p> <p>3. 한국해운조합회장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향후 여객선을 건조, 개조, 수리, 용도 변경 등을 할 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를 강화하기 바람</p> <p>4. 국민안전처장관은, 가. 향후 새롭게 건조될 유선(遊船) 및 도선(渡船)에 대해 선박의 규모, 승선정원, 항해 예정시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선박 탑승편의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나. 유선 및 도선에 시각장애인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는 등의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바람 다. 향후 새롭게 설치될 유선장 및 도선장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p>
37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제도개선 정책권고(2016)	<p>1. 활동지원서비스의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급여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추가급여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바람</p> <p>2.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바람</p> <p>3.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를 다른 유사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바람</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38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6)	<p>보건복지부장관에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 공동생활가정 관련 공동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 3. 공동생활가정의 다양한 모델 개발 필요. 4. 인권교육을 강화 5.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p>광역시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 입소를 위한 신청 및 이용안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대체인력 지원, 교육사업,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사정에 적합한 종합적인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공동생활가정 지원방안 마련.</p>
39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2016)	<p>국민안전처 장관에게,</p> <p>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안전대책을 포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집행계획 작성지침에 반영하기 바람</p> <p>나.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p> <p>다.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장애당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p> <p>라.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경보·피난 설비를 널리 보급하고, 다양한 경보·피난 설비를 연구·개발하기 바람</p>
40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6)	<p>법무부장관이 2016. 8. 29. 입법예고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표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 대하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음. 나) 보호관찰 기간 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제33조 제2항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제52조 제1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치료감호 가중료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제34조의2의 최초 유치기간은 20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41	제주도 장애인 인권보장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의견표명(2016)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구제권한을 규정할 경우에 대한 위원회 유권 해석
4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2016)	<p>제29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같은 조 제2항의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p> <p>3-1. <추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실시하는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의 시험</p> <p>5-1.<추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선발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시험</p> <p>5-2. <추가>「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인정 시험</p> <p>제29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같은 조 제2항의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p> <p>3-1. <추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실시하는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의 시험</p> <p>5-1.<추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선발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시험</p> <p>5-2. <추가>「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인정 시험</p>

붙임3. 장애차별 진정사건 위원회 주요권고현황(2008.04.11~2016.12.31.)

□ 고용 영역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08진차0000945)	-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직권면직일부터 복직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	2009.8.28.	불수용 (시정명령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로 인한 채용차별 (08진차0001213)	- 진정인에게 2,4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	2009.11.6.	수용
3	권고 (위원회법)	채용면접시험 편의 미제공 (08진차0001093)	- 00청장에게, 향후 면접시험에서 장애우시자에게 편의가 제공된다는 점과 편의신청 절차를 사전고시하고 장애우시자가 자신의 장애특성에 맞게 편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0.2.5.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 (09진차0000490)	- 000000공사 사장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킬 것을 권고	2010.4.9.	불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군청의 부당인사로 의한 장애인 차별 (10진정0173300)	-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해당 과장 및 담당자에 대해서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 0000지사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9.10.	수용
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채용 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 (10진정0480200)	- 피진정인에게, 신입사원 채용 시 지원자격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는 그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점수 기준을 적용할 것과, 인사 관련 부서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1.9.27.	수용
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고용 차별 (13진정0889400)	- 피진정인에게, 향후 직원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 조건과 달리 중증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서류심사에서 일괄 탈락시켜 채용을 거부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및 장애인차별금지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과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공고문에 채용 예정 분야에 관한 직무세부기술서를 첨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2014.10.21.	수용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차별 (14진정0632700)	-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의 성과평가 시 장애인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뇌병변장애인 공무원시험에서의 편의미제공 (15진정0627300)	- 피진정인에게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5년도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피해를 비롯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메모대필을 허용하는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	2015.8.20	일부수용
1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모욕 등 (14진정0560200)	- 0000000중앙회장에게, 피진정인의 장애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과 소속 임·직원들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5.9.18	수용
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기준 요구 (14진정0826600)	- 00중앙도서관장에게, 향후 소속 공무원 모집 시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어 듣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청각장애인에게 영어 듣기 능력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2015.9.18	수용
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에서의 차별 (16-진정-0542500)	- 손가락 장애를 이유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차량 운전원 채용 및 모집에 -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과, 향후 직원 채용 공고시 공고문에 채용 예정분야에 관한 직무 세부 기술서를 첨부하여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2016.11.14	검토중

□ 교육 영역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08진차0000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 할 것을 권고 -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2008.12.22.	수용
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08진차0000648)			
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부고시에 규정에서의 특수학교 차별 (08진차00004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교육기관이 특수학교를 고시규정의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 	2008.12.26.	수용
1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학급에서의 장애학생 수업배제 등의 차별 (10진정0710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의 소속 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관리·감독 기관인 00광역시 교육감에게, 향후 관내 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2.1.10.	수용
1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75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시설의 재배치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2.6.13.	수용
1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80600)			
1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81100)			
2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미비 (13진정087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교내활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인문관의 지상과 지하의 모든 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고, 경사로를 정비할 것을 권고 	2014.8.20.	수용
21	권고 (위원회법)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강요 등 (14진정0309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학교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 할 것 - 교육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보완·개정 할 것 	2014.11.17.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22	권고 (위원회법)	장애특례전형 실기시험 시 장애인 차별 등 (13진정0787500)	- 00예술고등학교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개선할 것 - 경기도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2014.12.16	수용
2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육시설의 이용시 장애인차별 (14진정0870400)	-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장애인 차별예방교육을 실 시할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장애 인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실시할 것을 권고	2015.1.19	수용
2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학생에 대한 전학강요 (15진정0280500)	- 학교법인 00학원 이사장에게, 피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 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퇴학시킨 피진정인 1과 2에 대하 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 피진정인 1에게, 향후 유사사례 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을 권고	2015.9.18	일부 이행
2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폭행피해 장애인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15진정0860000)	- 사회복지법인 00원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 할 것을 권고	2016.2.17	수용

□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2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08진차0000281)	- 진정인의 보험청약 심사 개시 권고 - 상법 제732조가 삭제될 때 가지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 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 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2008.7.23.	일부 수용
2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426)	-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것을 권고	2008.8.27.	수용
2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454)			
29	권고 (위원회법)	시각장애인용 음성 촉각정보 미제공으로 교통수단이용 차별 (08진차0000392)	- 버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실질 적인 편의내용을 연구 검토하여 '00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	2008.10.1.	수용
3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로 인한 현금인출기 사용 제한 (08진차0000416 등 2건)	- 기존 ATM 은 업그레이드하고 향후 ATM 구입시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갖춘 ATM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영업점 마다 최소1 대이상의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ATM을 배치할 것을 권고	2008.12.3.	수용
31	권고 (장애인차별 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08진차0000844)	- 장애인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시 금지된 차별행위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 감독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09.6.12.	수용
3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08진차0000886)	- 피해자의 보험청약 재심사, 직원 인권교육,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 등 마련 권고 - 감독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09.8.7.	수용
33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08진차0000529)	-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것을 권고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 도록 00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09.9.18.	수용
3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출거부에 의한 차별 (10진정0004600)	- 피해자에게 대출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대출받기를 원 할 경우 대출심사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피해자에게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 감독기관인 00위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회사를 포함한 금융회 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 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권고	2010.7.19.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3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으로 인한 차별 (09진차0001012 등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은행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원할 경우 개인 또는 법 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원장에게 시중은행에서 시각장애 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 를 조속히 발급하도록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3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제한 (09진차0000231 등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접근·이 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00지하도'에 승강기를 새로 설치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3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건물 임대시 장애차별 (10진정035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0대표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 록 할 것을 권고 - 00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 고 	2010.8.9.	수용
3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하나뿐인 장애인 대형면허 시험장 운영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10진정0245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총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적으로 주요 거점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3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거부 (10진정0291000 등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에게 진정인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 족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즉시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줄 것, 신용카드 발급동의 확인 시 장애특성에 맞는 다 양한 방법을 이용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 행할 것을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원장에게 재금융회사에 대한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및 시 행할 것을 권고 	2010.8.25.	수용
4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보험가입 제한 등 (09진차0001552 등 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 000 대표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 여 피해자들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0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 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및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하 고,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9.10.	일부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4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55)	- 피진정인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지적장애 인의 보험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인권 교육 권고	2010.10.20.	일부 수용
42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60)		2010.10.20.	일부 수용
43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63)		2010.10.20.	수용
4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에 의한 차별 (09진차0001023)	- 00000위원장에게,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도 신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	2010.10.20	수용
4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수영시설 이용 제한 (09진차0001175)	- 00000청장에게, 당해 구청이 소유·지원하는 청소년 수 련관등의 수영장 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 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 고	2011.1.6.	수용
4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10진정0377600)	- 피진정인 00 대표이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 으로 인수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인권교육 권고	2011.3.8.	수용
4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 거부 및 인격권 침해 (10진정0532200)	- 00 대표이사에게, 「00중앙회 여성업무방법」의 지적장 애인에 대한 여신취급 시 유의사항 조항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 00000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 록 00중앙회를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011.4.26.	수용
4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 (10진정0736800)	- 피진정인 00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향후 장 애인의 보험청약건에 대해 인수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 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보험 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2011.4.26.	수용
4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10진정0470000)	- 00시립 00도서관장·00시장·00교육감에게, 휠체어 등 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0000시립00도서관에 조속히 승강기 설치할 것을 권고	2011.4.26.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5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버스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 문자 안내판 제공 (10진정0373100 등 13건)	- 000장관에게 2009. 3. 1. 이전부터 운행해 온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내부에도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의 [별표1] 및 [별표2]를 개정하고, 마을버스 운송업체들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버스 내부에 전자문자안내판을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1.4.26.	수용
5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접근권 침해 (10진정0140200)	- 00지사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1.4.26.	수용
5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철거 (10진정0765300 등 2건)	- 피진정인에게, 대상건물 주출입구에 설치되었던 경사로를 철거 전으로 원상복구 시킬 것,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00000 상가번영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거나 ‘관리단의 건물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권고 - 00000구청장에게, 대상건물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편의시설로 완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5.17.	일부 수용
5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10진정0378400 등 8건)	-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할 시에는 사본에 인쇄물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하여 제공하거나 사본의 내용을 점자화한 자료 또는 표준텍스트파일 등을 사본과 함께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000장관에게, 전국의 종합병원이 위에 제시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1.5.17.	수용
5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10진정0366100 등 25건)	- 피진정인에게, 00동 등 6개 우편취급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이 즉시 비치되도록 할 것과, 전국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확대경 비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치되지 않은 곳에는 조속히 확대경을 비치하도록 할 것,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6.30.	수용
5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부 (10진정02313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 00000장에게, 향후 보험회사가 진정인과 같은 청각장애인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함에 있어 「상법」 제644조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험청약자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를 통해 부담보 등 별도의 조건을 부가하여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6.3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5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 불편 등 (10진정0370410 등 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들에게,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할 것과, 실태 점검 후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역사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 설치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 - 국토해양부 장관과 0000시장에게,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 	2011.7.22.	수용
57	권고 (위원회법)	음식점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출입 제한 (09진차00012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을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 - 000청장에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편의시설 설치·점검 누락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과, 피진정인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 	2011.7.22.	수용
5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10진정0376701 등 3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구 관내 버스정류장에 즉시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00시 관내 버스정류장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1.7.22.	수용
59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에 따른 이동권 제한 (11진정0074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0000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1.8.22.	수용
6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하철역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미설치에 따른 장애인 차별 (10진정0371600 등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역사 내 환승통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역에는 경사로를, 000역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과, 관할하는 모든 역사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을 점검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교통행정기관인 00시장에게, 지하철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 	2011.8.22.	수용
6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단속미비로 인한 차별 (10진정0794800 등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시장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단속 취약시간대에도 신고 및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것,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피진정 백화점 및 대형마트 관리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객들에 대한 안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발견 시 관할 행정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을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민간에 의한 불법주차 차량 신고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011.11.1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6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법당 출입거부 (11진정031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사 주지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사찰 내 시설물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사찰 내 전체 스님 및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대한불교00종 총무원장에게, 종단 소속 사찰에 대해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접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법당 등 사찰 시설물에 승강기, 경사로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과,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종교계와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011.11.28	수용
6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11진정0063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이 00시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행정절차 및 서비스 등을 접근·이용하는 데 있어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11.28	수용
6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제한 (11진정0353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0000 상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상가 내 각 층 승객용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말뚝을 즉시 제거 조치할 것과, 향후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금지하기 위해 별도 대책을 수립·운영할 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 	2011.12.19	수용
6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사용제한에 따른 차별 (11진정0586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0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관리사무소)장에게,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토록 당 아파트 주차관리 내규 제12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 - 00구청장에게 00000 아파트를 포함하여 관내 아파트 입주민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이용에 대한 홍보와 위반 차량에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2.1.10.	수용
6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피해보상금 산정에 있어 장애인 차별 (10진정062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광역시 0000공제회 이사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공제 급여 심사과정에서의 하자과 90일이내의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 사정을 수용하고 재심사를 할 것, 담당자 인권교육 권고 - 교육과학기술부 및 00광역시교육감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2012.3.2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6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홈페이지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 (10진정0608110 등 2건)	- 00시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2012.3.23.	수용
6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거부 (11진정0194800)	- 00우체국에 진정인의 보험청약을 재심사 할 것과,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각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할 것을 권고 -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5.1.	수용
6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방송 웹사이트 장애인의 제공 미흡 (10진정0563400 등 93건)	- 해당방송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2012.5.1.	수용 (90건) 일부 수용 (2건)
7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11진정0074901)	- 00시장 및 00도시공사 사장에게, 00기념관 실내수영장에 승강기 또는 경사로와 입수보조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제16조 [별표5]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7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승강기 등 미설치로 인한 도서관 이용 제한 (11진정0371500)	- 00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서관의 자료실, 열람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7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10진정0375400)	- 00시가 소유·지원하는 수련관의 수영장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7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 차등 부과 장애인 차별 (11진정0555300)	- 003단지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타 세대에 비해 부당부과된 금액 총 47,990원을 진정인에게 환급 조치할 것과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승강기전기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피진정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할 것을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동주택 저층(2층 및 3층)에 거주하는 휠체어이용 장애인 세대에게 승강기 전기료 부과 시 타 세대와 균등하게 부과하는 내용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74	권고 (위원회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제한 (11진정0317900)	- 000구청장에게 장애인이 00보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2012.7.18.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7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편의 미제공 (11진정0527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항공 대표이사에게, 공항 여건상 항공기를 탑승교 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 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 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등을 구비·운영할 것을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 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2]를 개정하여 항공기 탑승편의 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할 것과, 저비용항공사 가 장애인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012.7.18.	수용
7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차별 (12진정0222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00보증보험 대표이사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 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직원에 대한 인권교 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향후 시각장애인 등이 금융상 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편의가 제 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 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 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2.7.18.	수용
7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과제빵 실기시험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11진정0699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00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제18 조를 청각장애인의 요청 시에 장애상태를 확인 후, 수 화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 	2012.8.22.	수용
7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티투어버스 장애인 탑승편의 미제공 (11진정0188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광역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00시티투어버 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티투어버스에 휠 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탑승편의시설을 갖추는데 필요 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8.22.	수용
79	권고 (위원회법)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이동권침해 (12진정0012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아파트 주출입 구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경사로를 설 치할 것을 권고 	2012.11.29.	불수 용
8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월정액주차 이용 거부 (12진정078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로부터 2개월 동안 징수한 총 주차비 1,100,600원중 2개월 간 월정액 주차비 300,000원을 제외한 총 800,600원 을 피해자에게 즉시 환급할 것,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인이 월정액 주차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에 월정액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것, 주차관리직원 전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 장애인전용주차구 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2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 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것을 권고 - 00구청장에게,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인 시설2에 장애인전 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 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향후 유사한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주차장에 대 한 지도 및 감독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2013.1.29.	일부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미제공 (12진정0653600)	- 00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및00구청장에게,시각장애인 도비장애인과동등하게홈페이지를이용할수있도록「장 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 제1항제1호의규정을준수하여조속히정당한편의를제공 할것과정당한편의제공전까지는대체방안을마련하여시 행할것을권고	2013.3.13.	수용
8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36400)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대학교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점 자안내책자 내지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책자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8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수화통역 미제공 등 차별 (12-진정-0643900 등 3건)	-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 하여 수화통역 및 보조인력, 보청기를 제공할 것과 탈 의실과 샤워실 냉·온수기에 점자를 표시하는 등 정당 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8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56900 등 2건)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 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유 도 및 안내설비 설치와 수영장내· 탈의실내 사물함·헬 스장내 운동기구·화장실 세면대 냉·온수기 등에 점자 블록 설치 또는 점자스티커 부착, 시각장애인용 안내책 자 제공, 시각장애인 등이 요구 시 체육지도자 및 체육 활동 보조인력 배치 등 즉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을 권고	2013.4.3.	수용
8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7700 등 2건)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 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 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점자 내지 음성으로 변환되는 안내자료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8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300)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문화체 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촉 지도식 안내판 설치, 점자 내지 음성으로 변환되는 안 내자료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8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7800 등 3건)	- 00구청장과 00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지도식 안내판, 점자블록 설치, 보조인력의 배치, 수화통역 제공 등 정당한 편의 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000 등 6건)	- 00구청장과 00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시각 또는 발 달,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 게 체육·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교재 제공, 축 지도식 안내판 설치, 장애인화장실에 광감지식 등의 세정 장치 설치, 그리고 샤워실에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 접이 식 의자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8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800)	- 00구청장과 00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장 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0시네&000센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등의 요구 시 문화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90	권고 (위원회법)	법무사 자격시험의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3진정0073700)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에 있 어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6.18.	수용
9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 및 정신과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13진정0388500)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 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 할 것, 보험심 사업무를 담당하는 관련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 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위원회가 권고한 ‘장애인보험 차별개선을위한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보험인수와 관 련한 세부지침 및 심사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 - 00위원회위원장에게,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한 피 진정인에게 관련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 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3.8.21.	수용
9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제한 (13진정0172300 등 2건)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석바위사거리 및 동인천역 앞 교 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설치 및 주변 보행 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013.11.12	일부 수용
9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의한 차별 (13진정0192700)	- 00도서관장에게, 주출입구 접근로의 안전성이 확보되도 록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2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 장애인 화장실 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	2013.12.13	수용
9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13진정0951100)	- 00마트점장에게, 주요 영업공간인 2~4층 매장을 휠체 어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상시 개방 할 것과 휠체어 이용자는 수평보행기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 화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엘리베이터 운행실 태를 현장점검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4.10.21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9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14진정0013000)	- 피진정인에게,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은 선천성 손가락 결손 장애인에게 적용될 인수기준을 마련할 것, 「장애 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당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소속 직원 및 각 영업지점의 보험모집원 모두에 대해 장애차별 금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4.11.17	수용
9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자판기에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4진정0341500)	-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명과 가격을 점자로 제공할 것을 권고	2015.3.30	수용
9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차별 (14진정0547800)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역 교차로에서 00교 사이의 중 양대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00광역시장에게 휠체어 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 리하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보행환경 정비 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015.3.30	검토 중
9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전용주차장 이용 불허 (15진정01463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이용 방해와 관 련하여 00장애인인권센터에서의 인권교육을 받을 것 을 권고하고, 00구청장에게, 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설치·운 영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올바 른 이용을 위한 안내판 설치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를 강화할 것을 권고	2015.7.23	일부 수용
9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원 수강 거부 (15진정0178400)	-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00광역시 00교 육지원청장에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5.7.23	수용
10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서울광장 배수로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 (13진정0917000 등 3건)	-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광장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로 덮개의 틈새를 좁히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10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하철역사 화장실 이용시 장애인 차별 (14진정09199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화장실을 안 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하거 나,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10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화장실 남여공용 설치에 의한 차별 (15진정02908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00시장에게, 00주민센터 장애 인 화장실 개선공사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을 권고	2015.9.18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0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6진정0338800)	-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체크카드와 동봉하여 발급하는 안내문을 발급함에 있어서 각장애인이 안내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알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특성을 감안하여 사본에 인쇄물 음성 변환바코드 생성처리하여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면서 동시에 사본 내용을 점자 자료화 자료 또는 녹음한 파일 등도 함께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산하기관의 점자체크카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2016.21.28	검토중
10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공항 내 이동권 제한 (15진정0919600)	- 항공보안검색 과정에서 전동휠체어 등 전동이동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해 향후 유사한 이동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검색 관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2016.12.28	검토중
10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폐지에 의한 장애인 차별 (15진정0349900)	- 00주공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재설치할 것을 권고함.	2016.10.5	검토중
10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5진정0546400)	- 피진정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2016.6.8.	수용
10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관광객 수송차량 휠체어 승강설비 미장착 (16진정0275500)	- 피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000자연휴양림의 관광객 수송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 설비 장착 등의 편의제공 방안 마련 - 00군수는 향후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시 장애인을 함께 고려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수립	2016.12.7	검토중
10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웹 접근성 이용시 시각장애인 차별 (16진정0746800)	- 피진정인에게 웹사이트 ‘00000에서 제공하는 본인 확인서비스의 보안문자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	2016.11.14	검토중
10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항공기 이용시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5진정0775200)	- 피진정인에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재장착 시 이를 훈련된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재장착 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6.12.7	검토중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1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차량렌탈 거부 (16진정0692300)	- 피진정인은 장애인용 운전보조 장치인 좌측페달을 구 비할 것과 진정인등 장애인 운전자가 요청해 올 경우 차량을 대여해 줄 것을 권고	2016.12.28	검토중
1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각장애인에 대한 접근권 제한 (14진정0887600) (14진정0887500)	- 피진정인에게, 모바일 환경에서 시각장애인이 본인확 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제공할 것을 권고	2016.4.22	수용
1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1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 철거 (16진정07956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 적이고 체계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	2016.11.14	검토중
1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식당이용 제한 (15진정0975900)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2016. 7.22.	검토중
1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주택 임대사 장애인 차별 (15진정0890200)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2016.2.17	수용
11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간식비 갈취 (15진정0890200)	-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장애인금 및 생계급여 중 증 빙하지 못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 - 00군수에게, 가) 피진정인이 반환해야할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 도록 조치하고 나) 수급관리자의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다) 유 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6.11.14	검토중
11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16진정0267000)	- 피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 - 00광역시장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 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00시립미술관에 접근·이용 할 수 있도록 피진정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바랍	2016.10.5	검토중
11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 이전 강요 (16진정0796200)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시설 이전을 강요하는 공문 발송 및 승강기내 공고문 부착행위를 중지할 것 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 할 것 - 00시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관할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	2016.12.28	검토중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1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이용 (16진정02227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1은 피진정인2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관리 및 폐기를 철저히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 피진정인2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방문 목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모든직원에게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관련 인권교육을 실시 	2016.5.13	수용

□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이용 차별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2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728)	- 점자로 인쇄된 보상협의안내문과 보상내역서를 진정인에게 즉시 송부할 것을 권고 - 향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08.8.8.	수용
121	권고 (위원회법)	진압시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분리 (08진차0000874 등 2건)	- 중증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분리하는 진압행위를 최대한 자제 하는 방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09.8.31.	불수용
12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의 차별 (09진차0000664)	-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라 보호자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 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2010.1.15.	수용
12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행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10진정0071400)	- 과도한 경찰장비 사용 및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과 관련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0.11.15	수용
12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장애인의 통행권 침해 등 (10진정0187800 등 4건)	- 00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000경비과장에 대하여 주의조치 권고 - 00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1.5.4.	일부 수용
12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활동도우미 부당해고 관련 감사결과 미이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11진정0677100)	- 0000지사에게, 특별감사결과를 이행할 것과 향후 이런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의무를 철저 히 하도록 관련 운영규정(조례·규칙 포함) 등 제·개정 권고 - 0000지사에게,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을 철저히 시킬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4.9.	수용
12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사법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10진정0484500)	- 00총장에게, 출석요구·조사·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2.7.4.	수용

□ 장애인 참정권 영역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2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17)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 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를 갖추어 줄 것을 권고	2008.12.3.	수용
12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19)	-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 권고	2008.12.3.	수용
12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920)	- 향후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비 밀선거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할 투표소의 선거관계 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선거구의 선거관 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08.12.3.	수용
13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21)	-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 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를 갖추어 줄 것을 권고 -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 권고	2008.12.3.	수용
13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평등권 침해 (14진정0160100 등 8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가. 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표 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할 것 나.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보조할 수 있 도록 기표대의 규격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투표 보조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다.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할 것을 권고	2014.4.22.	수용

□ 괴롭힘 영역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3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환경 열악 등에 의한 차별 (10진정0102600)	- 피진정인에게, 횡령한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을 즉시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검찰 고발 - 00000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0000시장과 00구청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00시장 및 00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0.6.3.	수용
13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행위 등 (10진정0611700)	- 피진정인 학대혐의로 검찰 고발 - 0000복지회 이사장에게, 엄중 경고 등 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0.11.15.	수용
13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행위 등 (10진정0572400)	- 000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11.15.	수용
13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현장시정지원단 교육 시 장애인 차별 (09진차0000938)	- 000시장에게, 향후 교육 시행 시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0.12.17.	수용
13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괴롭힘 (10진정0568000)	- 00시장에게, 피진정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00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엄중 경고조치할 것 등을 권고	2011.1.6.	수용
13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생활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노동 강요 등 (10진정0341700)	-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과 생활교사 검찰고발 - 00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장관에게,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1.6.	수용
138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괴롭힘 등 (10진정0728000)	- 피진정인 폭행혐의로 검찰고발 및 수사의뢰 - 00시장에게, 피진정시설 000에 대해 시설폐쇄 조치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00지사에게, 피진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00재단'에 대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 도내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2.14.	일부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3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횡령 등 (11진정009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 00시장 및 00시 00청장에게, 회계업무 담당자 교체를 포함하여 피진정인의 차별행위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피진정 시설을 포함하여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에게,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 각각 000씩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조치 할 것을 권고 	2011.6.7.	수용
14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11진정017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총장에게, 피해자의 임금 및 재산을 횡령한 피진정인 고발 -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대로 사용한 60,244,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속히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 피해자의 통장, 도장,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 	2011.11.10.	수용
14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아동시설 원장의 폭행 등 인권침해 (11진정0440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총장에게,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피진정인을 고발 - 00구청장에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들이 폭행과 학대를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00000터를 포함한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사회복지법인 000의 00000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 사회복지법인 000 및 소속 시설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11.10.	수용
14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예배 참석 및 현금 강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11진정0306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00이사장에게 거주 생활인들의 의사에 반한 종교 활동 참석 강요, 현금, 후원금 등의 납부 강요, 종교 활동 참석과 관련하여 외출을 제한하는 행위, 식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향후 유사한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광역시 00구청장에게 피진정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 	2012.2.13.	수용
14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교사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11진정0586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에게 직원인권교육수강, 법인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수립, 00구청장 및 00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12.5.25.	수용
14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부당노동강요 및 금전착취 (12진정0202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총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 금전착취, 노동강요, 성폭행혐의에 대하여 수사의뢰 	2012.6.1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4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어능력인정시험 시 장애인 편의조치 소홀 (13진정0519200)	- 피진정인에게, 국어능력인증시험시 뇌병변 장애인 등에게 안전행정부의 장애 유형별 편의 지원 내용 또는 KBS 한국 어능력시험, TOEIC 장애인 응시규정 등을 참고하여 시간 연장 등 필요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6.18.	수용
14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등 (13진정0177400)	- 00시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학교장 및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피진정인 1을 징계할 것, 피진정인 2를 주의 조치할 것,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 련할 것을 권고	2013.9.24.	수용
14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내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13진정0743000)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형법」 제260조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 - 00시장에게, 피진정인 1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사회복지법인 0000 대표이사에게, 법인 산하 시설 원장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3.11.12.	수용
148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감금과 강박 (13진정0733200)	- 피진정인에게, 간병의 편의를 위하여 환자의 신체를 억제하 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향후 유사 사례 재 발 방지를 위해 소속 종사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노인요양병 원 등에서 불필요한 신체 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 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4.7.7.	수용
149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 보호조치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 (14진정0271500 등 2건)	- 검찰총장에게, 00원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00요양원에서 발 생한 골절사고와 관련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 치상혐의로 고발 - 00시장에게, 가. 00원과 00원요양원의 「장애인복지법」 제59 조의7, 제60조의4규정에 반하여 거주인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태한 행위와 거주인간의 성추행에 대한 부주의한 행위, 00요양원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5]의 간호 사배치 등의 시설인력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 정조치를 취할 것 나. 모·부성권 보호와 성적 자기결정권 보 호를 위한 교육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 다. 거주인들의 권리 침해나 제약,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거주인 개 인별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리·감독을 강 화할 것을 권고	2014.10.21.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5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급 실무보조원의 장애아동 비하 발언 등 (13진정0841400)	- 피진정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00광역시 00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과 해당학교 교직원에게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과, 00광역시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5.6.30	수용
15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15진정06104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부합하도록 0000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이용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체험홈의 자립생활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피해자를 비하·모욕한 것과 관련하여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00시장에게, 피진정인과 진정외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보조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행정조치 할 것을, 00시장에게, 0000주간보호센터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5.11.19	검토중



2017장애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장차법 개정안 수렴 토론회

부록 2

2017년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2017년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이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여성공감

주 제		요 구 안
핵심과제		1. 장애등급제 폐지 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3.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의제별 과제	장애인 생존권 보장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 장애인 활동보조권리 보장 3. 장애인연금 확대 4. 중증장애인노동권 보장 5. 장애인 주거권 정책 강화
	장애인 사회권 보장	6. 장애인 이동권 보장 7.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 8. 학령기 장애인 교육권 보장 9.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 10. 장애인 건강권 보장 11.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보장 12. 국공립대학 대학원 장애학과 설치 13.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14. 중증장애인 의사소통권리 보장
	장애 특성별 권리 보장 및 전달체계 강화	15. 발달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지원 체계 강화 16. 장애아동 및 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 17.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대책 구축 18.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 19. 장애여성 권리보장 2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2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22. 국민기초생활보장 권리 강화

핵심과제 1. 장애등급제 폐지

세부 정책요구안

- 1 OECD 평균수준증액
 - ① 도입
 - ② 도입
- 2 마련
 - ① 결정
 - ② 구축
- 3 장애인소득보장
 - ① 장애표준소득도입
 - ② 장애수당
- 4 마련
 - ① 신설
 - ② 강화
- 5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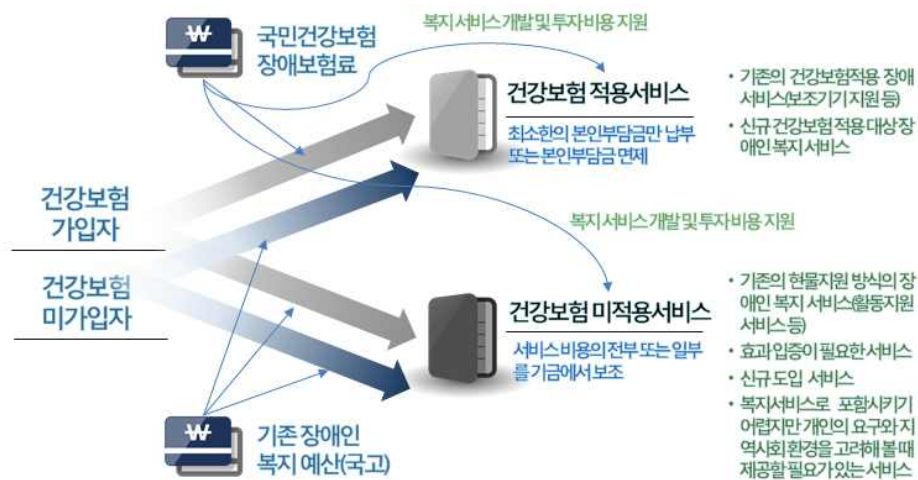
- 장애등급제는 1989년 장애등록제의 도입과 함께 시행되고 있다. 즉, 장애인이 국가가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장애인의 몸에 등급이 매겨져 판정받는 체계이다. 장애등급에 따라 모든 장애인사회복지서비스가 결정되고 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장애인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살인적인 제도이다.

세부정책과제 1 장애인복지예산 OECD 평균수준증액

- 2014년 기준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4%로 28개 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이며, OECD 평균 21.6%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장애인복지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은 0.49%로 2011년 OECD 34개국 중에서 멕시코 (0.06%)와 터키 (0.28%) 다음으로 GDP대비 복지예산이 가장 낮은 국가다. OECD 평균 1.79%의 1/4수준이다.
- OECD 평균으로 장애인복지예산이 맞춰진다면 2011년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 약 8000억원의 4배인 3조 2000억원은 돼야한다. 2015년 기준으로 각각 5000억원 수준인 장애인연금 예산과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최소 2배 가까이 인상된다면 OECD 평균(12.9%)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장애인가구의 빈곤율(33.1%)도 낮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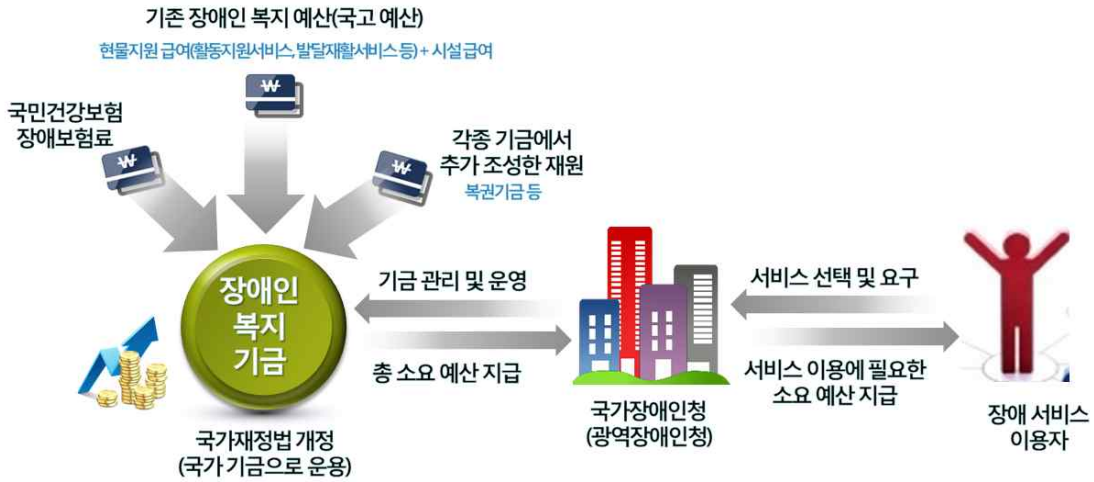
① 국가장애보험제도 도입

- 국가장애보험제도는 국민 중 누구든지 장애를 갖게 될 경우, 국가라는 믿을만한 곳으로부터 장기간의 지원을 걱정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장애인 복지 안전망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장애를 갖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안정적인 보험 급여를 통해 지급받게 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 국민건강보험 중 장애보험료, 기존 장애인 복지 예산 및 각종 기금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등을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국가재정법 개정), 이와 같은 기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행정청 설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림〉 국가장애보험제도 운영 개요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장애인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림〉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개요

② 사회복지세 도입

- 사회복지세에 대한 개념 혹은 정의는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에 누진적으로 부과되는 복지 목적세를 일컫는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의 분들은 더 내지 않게 설계될 수 있다. 중상위계층부터 누진적으로 사회복지세를 더 내게 된다.
- 과세 대상이 월 300만 원인 소득자는 지금 내는 소득세 월 3만원에서 1/5인 월 6천원을 더 부담한다. 월 500만원 소득자는 5만원을 더 내고, 월 1천만 원 소득자는 24만원, 월 5,000만 원 소득자는 330만 원을 더 내지는 것이다. 목적세나 누진세라는 용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면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세로 거둔 연 20조 원의 재원은 다른 데에는 쓸 수 없고 모두 복지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된다.

세부정책과제 2 개인별지원체계 마련

- 국가가 미리 복지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정해 놓고 장애등급제도 등 일정 기준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한 후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장애인이 자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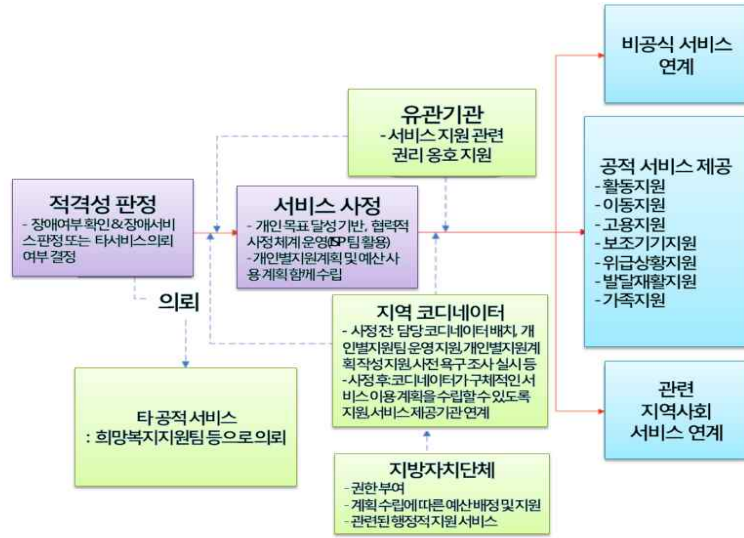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요구, 선택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개인별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① 장애인욕구기반 서비스예산 결정

- 장애인은 자신의 서비스 목표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개인에게 제공하고, 장애인이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인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율권 보장한다.
- 기존의 장애인 등록 및 장애 등급 심사 제도는 폐기하고, 장애서비스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를 갖고 있거나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모든 사람이 서비스 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적격성 심사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이 개인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 장애인 등록 및 장애 등급 심사 제도에 따라 운영되어 왔던 기존 공공 및 민간 부분 복지 서비스는 현재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는 계속 적용하되, 신규로 장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장애인 등록 관련 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 해소한다.

② 개인별서비스계획수립에 따른 공적복지지원체계 구축

- 개인별서비스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는 공적 복지 지원 체계 구축한다.
- 장애서비스 대상자의 선택과 요구에 따른 개인별서비스계획을 수립, 운영할 수 있도록 복지 코디네이터 배치한다.
- 서비스 사정을 통해 개인의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복지 환경에 기반해 개인별서비스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장애 서비스 이용 절차(안)

세부정책과제 3 장애인소득보장

- 2014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34.5%로 전체 가구 빈곤율(16.3%)의 두 배를 상회하며, 2009년 OECD국가 평균 장애인가구 빈곤율(12.9%)와 비교할 때는 세 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매월 164,200원에 이르는 등(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은 소득 불평등 및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이중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포함) 및 장애인연금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급여액이 평균 소득 대비 4.7%에 불과하여(이선우, 2015), 소득보전 장치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 수준 역시 실제 소요되는 평균 비용 16.4만원에 비해 지원 금액은 2~8만원에 불과하다.
- 기존의 장애인 소득 보장 제도는 장애인의 소득보전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선진 국가와 마찬가지로 형식상의 소득 보장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원 금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제2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이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전 및 추가비용 지급 급여 수준을 OECD 국가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및 장애인연금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소득 보장 제도를 하나의 단일 소득보장 제도로 통합하여, 사회보험상(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와 함께 제2의 공적 소득 보장 제도로써 그 보장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① 장애표준소득 도입

- 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중 소득보전에 관한 사항은 장애표준소득(비기여 연금)으로 통합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에 관한 사항은 장애수당으로 통합한다.
- 장애표준소득의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을 현재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의 2배 이상까지 인상하여, 최저생계비의 80%까지 보장하고, 개인소득(근로소득)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가입 대상 인원을 현재의 2배 이상 확대(수급률 현재 26.4% → 5년 후 50%)한다.
- 장애표준소득은 매년 고시되는 최저생계비의 80%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 금액을 설정한 후, 개인 소득과 연동하여 소득 보장 지원한다.
- 임금이 낮은 장애인도 장애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소득과 연계된 연금 지급 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 총소득이 모두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
- 1인당 평균 연금 지원 금액을 평균 소득 금액 대비 10% 수준으로 인상(현재 4.7% → 10%)한다.
- 근로 능력과 연동된 장애기본연금 지급 대상 자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모든 장애인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 대폭 확대한다.

② 장애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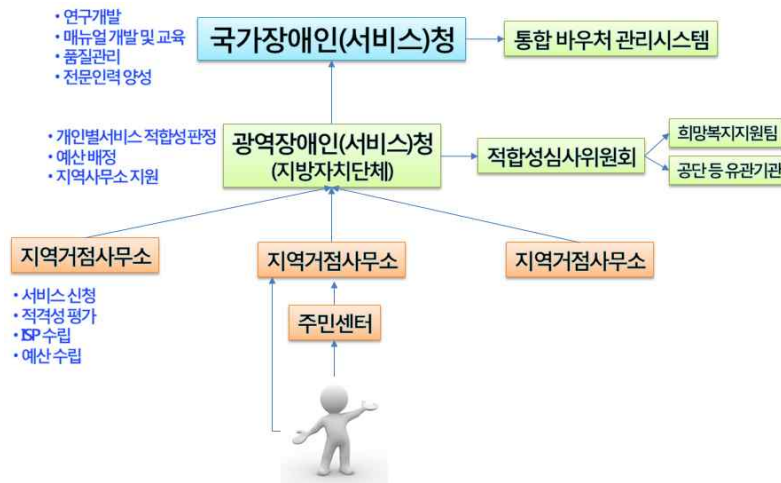
- 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중 소득보전에 관한 사항은 장애표준소득(비기여 연금)으로 통합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에 관한 사항은 장애수당으로 통합한다.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받하고자 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한다.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만 지급하지 않고, 장애로 인해 추가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한다.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급 금액을 현재(1인당 평균 월 2만원 ~ 8만원)보다 2배 이상 인상(최대 월 16만원)하여 추가비용이 개인 또는 가족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세부정책과제 4 공적전달체계 마련

- 장애 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과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장애 서비스를 총괄 지원하는 국가장애인청(독립적인 준정부기관) 및 광역장애인청을 설치하고, 장애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한다.
- 시장화 되어 있는 장애인사회복지서비스, 특히 활동보조서비스와 돌봄서비스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국가장애인청 신설

- 장애 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과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장애 서비스를 총괄 지원하는 국가장애인청(독립적인 준정부기관) 및 광역장애인청을 설치하고, 장애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한다.



〈그림〉 독립적 장애인청 운영 체계

- 장애인복지법 개정 또는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장애인청 및 그 하위 전달체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법제화 추진한다.
- 기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활동지원 서비스 인정 조사 등을 국가장애인청을 중심으로 통합 조정하고, 기존 장애인 복지 및 일반 사회복지 행정 지원 체계와 연계 및 협력 구축한다.

② 전달체계 공공성 강화

- 서비스제공에 들어가는 일정의 개인부담을 포함하지만 대부분의 재정을 공공재원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서비스 공급 주체의 경우 인해 대부분이 민간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통제기전의 경우, 시장의 민영화로 인해 인증제와 통합적인 통제기전이 존재하지 않으며, 제공자의 지위 또한 대부분이 민간지위로서 비정규직의 열악한 지위 및 종사자 처우를 유지하고 있다. 즉, 이 분야의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대안이 필요하다.
- 장애인활동보조기관도 148개에 1만 5천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 시설과 인력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부 시설의 직영을 넘어서 사회서비스의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하다.
- 민간의 약점을 보완하고,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공공부분이 최소한의 시설을 직영하고 이를 통해 기관운영과 서비스제공의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민간에 전파해야 하는데 이 기능을 '사회서비스재단'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즉, '사회서비스재단'의 기능은 단순히 공공사회서비스기관을 확충하여 직영하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사회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사회서비스기관의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의 직영이 필요하다. 즉, 양질의 균질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한계를 보이는 사회서비스의 대표적인 분야에서 '표준운영모델'을 공공부분이 마련하여 민간에 전파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보다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표〉 사회서비스재단의 공공운영방식과 민간위탁방식의 비교

	민간위탁방식	공공운영방식
재단운영형태	재단설립 후 민간기관 위탁운영	국가 혹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으로 운영
본부조직	위탁법인에 속한 조직	국가 혹은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산하 조직
본부인력	위탁법인 소속 직원	출연기관 소속 직원
재단 산하시설 운영방식	민간위탁운영	재단 직영
시설종사자	재단의 직원 혹은 개별시설 직원	재단직원

세부정책과제 5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순한 제도개선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패러다임의 문제이자 시스템의 문제이다.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보고서에서도 “장애인복지정책 수급요건인 장애등급제의 폐지 또는 개편은 장애인복지정책 수행 방식의 재편과도 맥이 닿아있다.”면서 “장애등급제의 개편은 필연적으로 현행 장애인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재편을 동반하게 된다.”가 지적한 바 있다.
- ‘장애등급제 폐지’는 박근혜정부가 도입하려는 ‘장애종합관정체계’와 같은 관정도구 개발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지난 20년 넘게 한국사회에서 기능해왔던 권리 은폐적 효과들을 바꿔내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복지구조의 전반적인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 따라서 ‘장애등급제 폐지’의 대안으로서 장애인복지구조의 변화를 법적·제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법률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그 법률은 바로 「심신장애자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넘어서 ‘UN장애인권리협약’의 협약정신에 부합되는 총체적인 대안을 담은 법률이어야 한다.
- ‘장애의 새로운 정의’, ‘개인별지원체계’, ‘권리옹호체계 도입’, ‘소득보장제도의 변화’, ‘탈시설 명문화’ 등을 원칙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

핵심과제 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세부 정책요구안

1 ☐☐☐☐☐☐☐☐ ☐☐☐☐☐☐☐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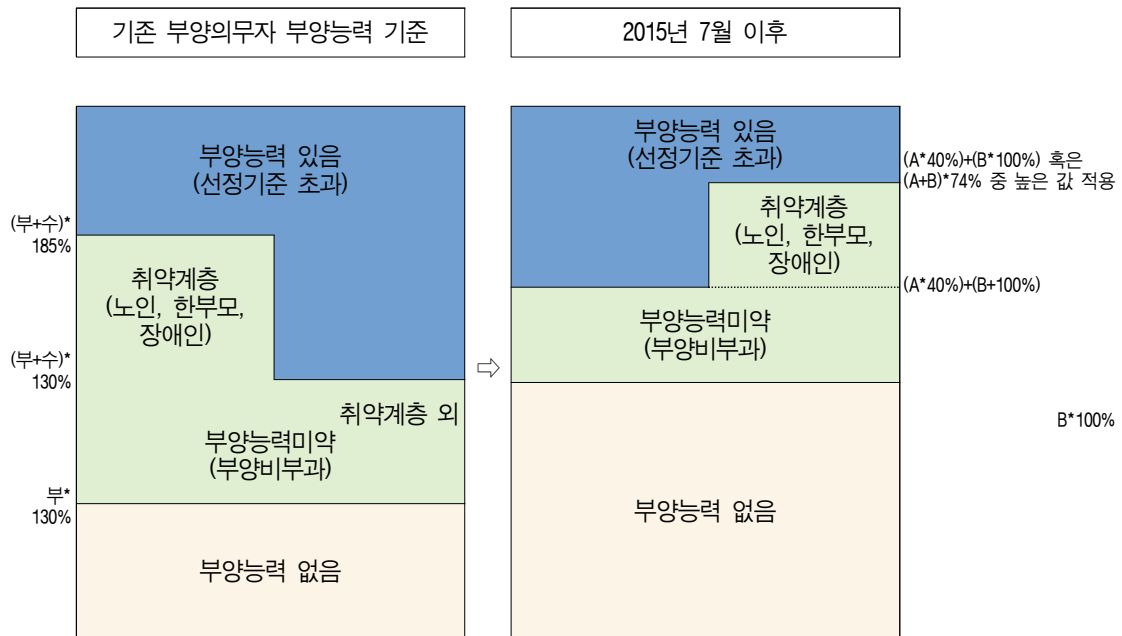
박근혜와 부양의무자 기준

- 국민행복시대라는 파격적 복지공약을 내세우며 당선된 박근혜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는 기초생활보장법의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완화로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다.
- 2013년 5월 1일,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실체가 공개됐다. 기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모든 급여를 제공하던 통합급여 방식에서 개별급여로의 전환,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소득 기준 일부완화, 교육급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제외를 검토한다는 내용이었다.
- 2013년 5월 24일,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었다. 이후 박근혜정부는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민 공청회 등을 동반해야 하는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꾀수 발의한 것이다.
- 유재중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 1)낮은 보장수준과 2)부양의무자기준을 포함한 까다로운 선정기준의 변화가 없는, 실질적 사각지대해소, 빈곤문제해결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질책을 받으며 국회에 통과되지 못했다.
- 2014년 2월 26일 송과에 살 던 세 모녀가 죄송하다는 편지와 공과금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박근혜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를 언급하며, “있는 복지제도도 활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12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송과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15년 7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다. 정부는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12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시행 1년이 더 지난 현재에도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통한 신규수급자 규모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 박근혜정부는 겉으로는 복지사각지대축소와 빈곤해결을 이야기하며 속으로는 복지수급권자에 대한 감시와 낙인을 강화했다. 기초생활보장법 꿈수 받기뿐만 아니다. 201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부정수급콜센터를 만들었다. 같은 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비정상적 정상화’라는 국정과제 그 목표 1호 핵심과제로 ‘복지 부정수급 근절’을 내걸었다. 2015년 5월에는 복지재정 3조원 절감을 목표로 하는 부정수급자 색출과 신고제 강화 및 포상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0월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다.

▽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내용



*부: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 *A: 수급가구 중위소득
*수: 수급가구 최저생계비 *B: 부양의무자가구 중위소득

부양의무자 기준의 역사와 개혁의제 제안 이유

- 대량실업, 빈곤의 확산, 새로운 형태의 빈곤출현을 가져온 1997년 IMF외환위기는 과거와는 다른 빈곤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당시 빈곤층지원 복지제도였던 ‘생활보호법’으로 포괄할 수 없었던 새로운 빈곤층을 포괄하기 위한 대책으로, 2000년 10월 시행됐다.
-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의 표현으로 권리성을 강화하고, 인구학적 기준을 삭제하는 등 수급권자의 범위확대, 선정기준의 합리화, 절차적 정당성을 꾀하며, 급여수준의 향상과 주거급여 항목을 추가하는 등 급여종류의 다양화를 도모했고, 자활계획의 수립을 추가하며 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사회 공공부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하지만, 생활보호법 상 존재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초생활보장법에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선정기준 및 방식비교〉

구분	생활보호제도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999년~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6년~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재)
인구학적 기준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기타 근로무능력자	폐지	폐지	폐지
자산기준	소득기준/재산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초공제액이 결정되지 않아 소득/재산기준 활용	최저생계비 기준 *02년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초공제액이 결정되어 최저생계비 기준적용	중위소득 기준 *02년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초공제액이 결정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기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 배우자 제외)
	판정 기준	보호대상자와 부양가구의 가구원 1인 소득과 가구당 재산액이 생활보호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중위소득의 100% 미만
선정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기준,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기준,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고 급여별 선정기준(중위소득 대비 %)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두고 찬/반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됨과 동시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소득·재산기준의 완화 역시 계속됐다. 하지만 2001년 인구대비 3.2%수준이었던 수급자 수는 2006년 3.2%, 2012년 2.7%, 2015년 2.6%까지 떨어짐에 따라, 완화에 의한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없거나 크지 않았다. 2003년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서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방안을 제외하고는 범위의 조정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 효과는 기대한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라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2016년 12월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한국사회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위한 좌담회에서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능후 교수는 “수요가 있지만 충족이 안 되는 대표적인 부분이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입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를 단계적, 지속적으로 축소시켜서 중국에는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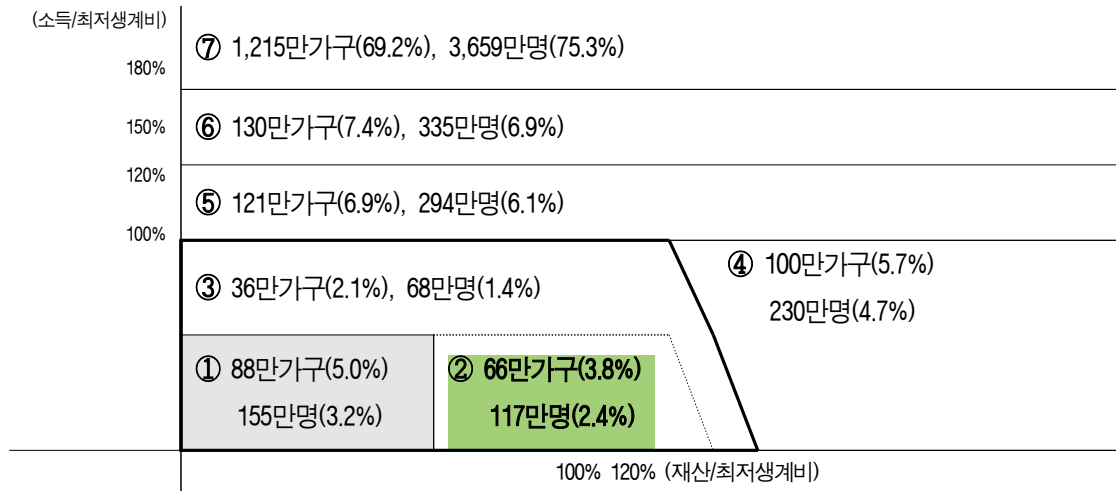
<부양의무자의 범위>

- : 2000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 2005년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 2007년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2015년 7월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 : 2000년 <B(부양의무자최저생계비)+A(수급가구최저생계비)>*120% 이상 “부양능력 있음”
- : 2006년 <B(부양의무자최저생계비)+A(수급가구최저생계비)>*130% 이상 “부양능력 있음”
- : 2012년 부양의무자의 가구가 노인, 장애인 등의 근로무능력자로 구성일 시 <B(부양의무자최저생계비)+A(수급가구최저생계비)>*185% 이상 “부양능력 있음”
- : 2015년 7월 B(부양의무자 중위소득)100%*A(수급가구 중위소득)40% 또는 <B(부양의무자 중위소득)100%*A(수급가구 중위소득)100%>*75% 이상 “부양능력 있음”

- 가장 최근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117만 명에 달한다.



△2010. 빈곤실태조사 결과 빈곤층 규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년 조사²⁾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0.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67.59%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탈락자 중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친지, 이웃에게 도움 받는 가구는 24.38%에 불과했다.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인원은 37,999명에 달했다. 이들은 실제 본인의 소득·재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다.
-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다.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수급신청 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에게 연락이 가는 것조차 부담스럽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류를 받을 수 없어 신청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빈곤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이미 해체되거나 복잡한 가족관계를 갖고 있는 이들에겐 수급신청조차 포기하게 하는 높은 장벽이다.
-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매해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급탈락을 비판해, 혹은 수급조차 받을 수 없는 빈곤상황에 좌절해 목숨을 잃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이며, 50%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 하루 몇 천원 벌기도 힘든 폐지 수집 노동에 노인들을 내 몬 한국 사회의 잔인한 단면이다.

2)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보건사회연구원

- 2010년 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장애를 갖게 된 아들의 수급권을 위해 자살했다.
- 2010년 12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을 받지 못하던 노부부가 동반 자살했다.
- 2011년 4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을 받지 못하던 김씨 할머니는 폐결핵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오가다 거리에서 객사 했다.
- 2011년 7월, 청주의 시설에서 생활하던 노인이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탈락 통보를 받고 시설에서 투신했다.
- 2011년 7월, 남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탈락 통보를 받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 자살했다.
- 2012년 2월, 양산의 지체장애 남성은 자녀의 소득으로 수급에서 탈락되자 집에 불을 내 자살했다.
- 2012년 7월, 거제 이씨 할머니는 사위 소득으로 수급에서 탈락하자 거제 시청 앞에서 음독 자살했다.
- 2013년 7월, 장애등급조정으로 수급탈락을 우려한 의정부의 박OO씨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유서를 남기고 주민센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2013년 9월, 신부전증을 앓아 온 50대 남성은 딸의 취업한 딸의 소득 때문에 수급권을 박탈당했다. 줄지에 매달 100만원의 의료비를 딸에게 요구해야 하는 그는 15일 간 외로운 고민을 마치고 세상을 등졌다.

***참고_ 민법과 기초법의 부양의무자기준**

- 국내법에서 친족간 부양의무에 대한 서술은 민법에 존재한다. 민법에서는 부양의무를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로 구분하고 있다. 1차적 부양의무는 부부간 혹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로 ‘부양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이다. 2차적 부양의무는 부모 및 성년 자녀, 기타 친족간의 부양의무로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격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 민법상의 기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는 2차적 부양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1차적 수준의 부양을 요구/강제하고 있다.
- 실제 제도 운영상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정당성이 미미한 임의적 기준에 따른 무형의 ‘부양받을 가능성’을 ‘간주부양비’라는 이름으로 실제 소득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실재하지 않는 부양비를 수급자에게 소득으로 부과하는 것은 민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법적 권리를 근거로 수급자에게 ‘부양받을 의무’를 강제한다.
- 즉, 부양의무자기준은 법리적 정당성도 없으며 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다.

***참고_ 해외 공공부조의 부양의무자기준**

- 해외의 경우 빈곤층지원 복지제도 수급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의무자 유무가 절대적 요건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가족 간 부양의무를 강조했던 전통사회가 붕괴되면서 부양의무자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제도 측면에서 가장 비슷한 공공부조를 운영해온 일본에서조차 부양의무자기준은 수급자 선정요건이 아니라 단순 순위고려 정도에 그친다.

세부 정책요구

-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를 ‘1촌 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이를 삭제하면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 현 20대 국회 뿐 아니라 19대, 18대, 17대 계속해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 2015년 7월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개별급여’로 변화되었다. 현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급여별 기준선을 각각 정해 운영하고 있다. 2015년 7월 이후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교육급여는 취약중인 가구원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멀다는 점에서 효과가 미미했다.
- 급여별 폐지를 계단삼아 완전 폐지로 나아가면 폐지에 따른 충격을 없애고, 사회적 통합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 폐지를 선언하고, 3년의 시기별로 3단계(1단계 주거급여, 2단계 의료급여, 3단계 생계급여, 3년 뒤 전체 급여에서의 완전 폐지)에 걸쳐 폐지하는 것이다.
- 폐지의 순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상황과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주거급여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가 되었으며, 조사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절차나 준비가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가장 많은 예산이 든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시 3조 1천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건보료조차 채납중인 빈곤가구의 상황, 가족의 병 때문에 가족 전체에 금이 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숙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계급여는 타법과의 조율 등의 시간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한다.
-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예산 3,552,804백만원(118만명, 82만가구), 의료급여 4,799,164백만원(152만명)으로 8,351,968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시 보건복지부는 2014년 기준, 6조 8천억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렇게 전면폐지 될 시 필요한 6조 8천억을 현재 예산인 8조 3천억과 합하면 15조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1%다. 부양의무자기준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1%를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으며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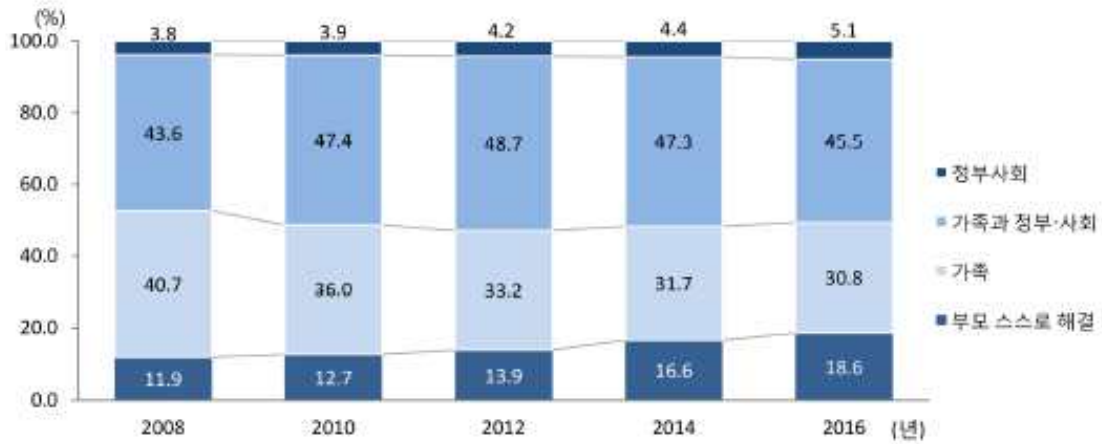
- 부양의무자 대상 범위에서 일부 제외안 (보건복지부, 2014)

완화 내용	소요예산	신규보호
부양의무자기준 전체 삭제	6조 8천억원	94만명
부양의무자기준 삭제하되, 1촌 직계혈족에게 보장비용징수	5조 3천억원	94만명
사위, 며느리 부양의무 면제	1조 4천억원	21만명
사위, 며느리 부양능력 평가기준 완화	6천억	9만명
65세 이상 노인인 부양의무자 부양의무 면제	5천억	7만명
중증장애인 수급자 시설퇴소 시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56억원	0.5만명

- 급여별 부양의무자 제외안 (보건복지부, 2014)

완화내용	소요예산	신규보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3조 1천억원	94만명
교육급여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440억원	42만명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 부양인식의 변화는 이미 법을 앞지르고 있다. 조사³⁾에 따르면 부모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6년 30%로 2008년 40%에서 대폭 하락, 정부나 정부와 가족이 함께, 부모 스스로 해야한다는 의견은 모두 늘어났다. 특이한 것은 부모 스스로 해결이 11.9%에서 18.6%로 늘

3) <2016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2016. 11. 15)

어났는데, 개인주의적 경향과 사회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을 살해하고 동반자살하는 실풍경한 일이 한 해에도 수차례 거듭되는 이유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 사회와 복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행정절차를 간편하게 만들고, 수급자의 낙인감을 줄인다. 지금도 최일선의 사회복지공무원과 종사자들은 엄청난 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조사업무에 드는 시간과 노력 중 많은 부분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와 변동에 따른 급여 조정이다. 이는 수급자에게도 큰 낙인감과 불안감을 주고 있다. 더 이상 창피 주는 복지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복지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

○ QnA

1)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 부정수급자가 늘어날까?

- 부정수급자는 그 자체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님. '나태한 수급자가 대거 발생한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음. 이는 너도나도 수급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가정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정말 그런지 생각해봐야 함. 서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가구(개인이 아님을 주의)의 기본재산액은 5천 400만원에 불과함. 만약 상당한 자산가가 있다면 단지 수급을 받기 위해 자녀나 타인에게 5천 400만원을 제외한 재산을 완전히 양도할까? 그리고 이미 이런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5년간의 처분재산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며, 이 때문에 거대한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것과 같음.

2) 가족이 해체되고 '효' 사상의 퇴보를 가져올까?

- 가난한 이들은 오히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해체되고 있음.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받아 수급자가 된 경우에 혹여나 가족들과 연락을 하면 수급에서 탈락할까봐 연락조차 기피하게 됨.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라 할지라도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수급비가 깎이기도 함.
- 이럴 경우 빈곤층은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이 심화됨. 오히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 가족들이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고, 가난 때문에 약해진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음.
- 중산층도 이렇게 높은 수준 (중위소득 초과소득의 30%를 부양비로 산정)의 부양을 하지 못하

고 있음. 하물며 빈곤층 가구에겐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환상임.

3) 소득이 없는 부유층, 독립 청년세대 등이 대거 유입되는 사태가 있을까?

- 이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런 일들을 가능하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를 기준으로 운영됨. 개인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이상이 되면 수급자가 될 수 없음.
- 특히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살더라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별도 가구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즉, 소득이 없는 청년세대가 따로 집을 얻어 산다고 하여도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부모님과 같은 가구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이 수급자가 아니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임.

4)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나라가 어려움이 빠질까?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생계급여 기준 118만명으로, 절대빈곤층의 절반도 포괄하지 못하는 상태임. 2014년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될 시 97만명의 신규 수급자가 진입, 7조 8천억의 예산이 발생한다고 함.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을 고려할 때 총 15조 가량의 예산이 연간 필요함. 이는 국내총생산량인 GDP의 1%에 불과함.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수 있다면 총생산량의 1%를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고 봄.

5) 당신은 가난에 빠진 당신의 가족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우리나라의 빈곤상황은 심각함. 상대적빈곤은 16%로 드러나지만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5년간 한번이라도 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전체의 35%였음. 즉, 빈곤상황에 지속적으로 빠져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빈곤과 탈빈곤을 오기는 가구는 세 가구 중 한 가구에 이르고 있음. 우리 사회의 현재 상황은 사적으로 부양책임을 강제할 수 상황이 아니며, 공공부조와 공적연금 등 사회적 제도를 개선해야 함. 연금 등의 제도가 개선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빈곤한 이들을 돕기 위한 공공부조의 대폭적 확대는 필연적임.

핵심과제 3. 탈시설-자립생활권리보장

세부 정책요구안

- 1 수용시설정책폐지! 탈시설-☐☐☐☐☐☐ 명문화
- 2 '탈시설-☐☐☐☐ 정책' ☐☐☐☐ ☐☐
- 3 ☐☐☐☐☐ ☐☐☐☐☐☐ ☐☐ ☐☐☐☐☐☐☐☐ ☐☐ 운영
- 4 ☐☐☐☐☐☐ ☐☐ ☐☐
- 5 ☐☐☐☐ ☐☐☐☐ ☐☐☐☐ ☐ 현실화
- 6 ☐☐☐☐☐☐☐☐ ☐☐☐☐ ☐☐ ☐☐☐☐☐☐☐☐
- 7 ☐☐☐☐☐☐ ☐☐☐☐ ☐☐☐☐☐☐☐☐☐☐☐☐☐☐☐☐ 실시

박근혜와 탈시설

- 실패한 박근혜 정부, 실패한 장애인수용정책-

-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전부터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겠다.”
- 누가 한 말일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장애인수용시설 ‘인강원’에서 원장이 거주인을 폭행한 사실로 세상이 떠들썩해지자 2014년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을 지시하며 내 뱉은 말이다. 과연 그 후로 시설범죄는 사라졌는가?
- 박근혜 정부 하에 발생한 시설범죄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벅차다. ‘인강원’, ‘송전원’, ‘해바라기’, ‘자립원’, ‘한우리의집’, ‘구미SOL복지재단’,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 ‘마음건강복지재단’, ‘향림원’, ‘마리스타의집’, ‘남원평화의집’, ‘금장학원’, ‘대구시립희망원’... 시설명만 다를 뿐, 폭력, 체벌, 감금, 노동착취, 장애수당과 정부보조금 횡령이라는 죄목은 항상 같다.

- 끊임없이 발생하는 시설문제는 무엇 때문인가? 박근혜정부의 장애인정책의 철학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 시설범죄의 원인을 해당 장애인거주시설 혹은 시설종사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애써 외면했다. 시설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전예방'만을 강조하며 시설 내 CCTV설치, 인권보호강화대책만을 고집한 참담한 결과물이다.
- 사실, 장애인수용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폐기되고 있는 정책이다. 다른 국가들도 역시 수많은 시설범죄를 마주했으며, 이러한 원인이 장애인거주시설자체의 구조적 모순과 한계에 있음을 간파했다. 다른나라 국가들은 시설이 개인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단체생활로 인한 억압적이고 계급화된 관계와 강제적인 규칙, 그리고 폐쇄성에 그 문제점이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궁극적으로 장애인수용정책은 동정과 시혜라는 이유로 장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배제할 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고 참여하며 자신의 삶을 꾸릴 기회를 박탈시키는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했다.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생활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은 본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들이 다른 이들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장애인들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 통합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박근혜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수용정책으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 왔다. 장애인수용시설은 2012년 553개 25,932명에서, 2016년에는 626개에 수용인원은 26,785명으로 늘었다. 신고시설 외 개인운영시설, 미신고시설은 규모조차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이렇듯 지역사회통합정책은 전무하고 오히려 장애인시설수용정책만 강화되고 있는 모습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보이다.
- 수용정책은 적폐이고 탈시설은 혁명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가인 우리나라는 범세계적인 장애정책의 흐름을 주시하고 이에 따를 책임과 의무가 있다. 중간 공급자 역할의 축소와 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에 따른 장애인복지정책의 핵심은 바로 장애인수용시설 폐기와 장애당사자 주거선택의 권한 확대이며 이것이 바로 '탈시설'이다. '탈시설'의 핵심은 수용시설 예산의 축소와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가 핵심이다.

〈표 1〉 최근 5년간 장애인수용시설 인권침해범죄 사건 주요사례

	
<p>▲ 2012. 7 자립복지재단</p>	<p>▲ 2014. 3 인강원</p>
<p>전·현직 원장의 지적장애인 성폭력사건</p>	<p>시설장애인폭행 및 학대, 금전착취, 국가보조금횡령</p>
	
<p>▲ 2014. 4 송전원</p>	<p>▲ 2014. 5 마리스타의집</p>
<p>시설장애인 폭행 및 학대 성폭력</p>	<p>집단적 성폭력사건</p>
	
<p>▲ 2014. 12. 해바라기</p>	<p>▲ 2016. 1. 청암재단</p>
<p>시설장애인 의문사 및 폭행, 성추행,방임</p>	<p>장애인사망-상해사건, 강제정신병원입원, 인권침해 및 노동력착취금전착취보조금유용</p>

	
<p>2016. 5 평화의집</p>	<p>▲ 2016. 8 대구시립희망원</p>
<p>시설장애인 폭행 및 학대</p>	<p>사망조작, 폭행, 학대, 불법강금, 강제노동, 보조금횡령</p>

*사진_ 비마이너, 연합뉴스

수용시설 역사와 탈시설 개혁의제 제안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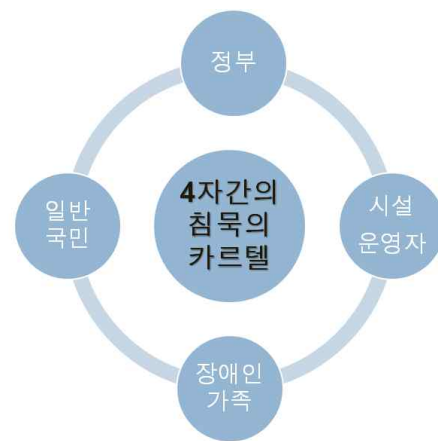
배제와 감금 장애인수용시설정책 폐지하고 탈시설-자립생활정책 즉각 수립하라!

1. 감금과 배제의 공간 장애인수용시설

-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한국전쟁 이후 외원단체를 기반으로 한 민간구호시설의 설치로 출발한다. 당시 국가는 일부의 부식비만 지원할 뿐 구호시설운동을 책임지진 못했다. 그러나, 1960년대 말 국가는 외원단체 철수에 따른 민간재원 확보와 구호시설에 대한 관리제도가 필요했고, 민간복지사업자들은 재산축적과 사업 확장이 필요했다. 그 결과,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제도화를 이루어내며 시설서비스라는 명목하에 수용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만들어졌다.
- 사회복지법인들은 제도적 특혜와 복지이라는 명분으로 1970~1980년대 급격한 재산 축적과 사업 확장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복지재벌과 비리 법인들이 양산됐다. 1990년 후반 이후 시설운영예산은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여겨 족벌운영과 세습으로 이어졌다. 반면 국가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통제는 허술했고, 퇴임 공무원들이 법인 임원 또는 시설장으로 가서 일하는 등 담합과 유착관계가 형성되면서 시설범죄에 대해 침묵했다. 국가가 복지의 책임을 민간과 거래한 결과는 참혹했다.

2. 수용시설 존속은 침묵의 카르텔

- 시설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존재하는 한, 그곳에 수용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 한다. 2000년 대 초반부터 진행된 전국의 시설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은 시설을 존재하게 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 공고한 카르텔이 감금과 배제의 복지를 존속시키는 가장 큰 이유이다. “정부는 거액의 예산을 들이거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고서도 장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설의 인권침해문제를 외면한 채 침묵하며, 일반 국민은 손쉽게 별다른 부담도 없이 장애인들을 우리 주변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한다. 시설운영자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관심과 지원이 없는 어려운 상태에서 그나마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해왔다는 동정론에 기대며, 장애인들을 영리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장애인의 가족은 국가의 지원이나 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장애인가족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한다.”⁴⁾ 이러한 침묵의 카르텔이 존재하는 한, 장애인의 시설수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태생적으로 시설이 갖고 있는 운영방식은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림 침묵의 카르텔〉

3. 반복되는 시설범죄, 반성 없는 국가

- 1980년대 형제복지원, 수심원, 양지마을, 소쩍새마을 등의 사건은 사회적으로 대대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일부 관련자만 처벌했을 뿐 사회복지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는 조명되지 못한 채, 시설거주인만 머물 곳 없이 떠돌다 거리에서 쓸쓸히 죽어갔다. 이후에도 한국자립원, 무장애육원, 대전종합복지원, 신망애, 신아원 사건 등 시설거주인의 인권유린과 법인의 비리·횡령은 반복되었으나 국가는 관망자에 그쳤고 2017년 현재에도 시설범죄 사건들은 진행 중이다.
- 장애인수용시설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들은 구조적 원인에 접근하지 못한 채 개별 사건으로 취급되었으며, ‘가해자 처벌’과 ‘시설장 교체’로 끝난 해당 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인권침해 피해자인 장애인들은 여전히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다.

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양성화된 조건부신고복지시설을 중심으로』(2005.12).

4. 자유와 인권이 멈춘 수용시설에서의 삶

- 세상의 시야에서 지워진 폐쇄적인 시설구조와 비민주적인 운영은 비리·횡령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시설거주인들의 인간다운 삶 또한 보장할 수 없다. 아래 <표 3>에 나와있듯 시설거주인은 ‘집단생활’을 이유로 엄격한 규율아래 통제받으며, 강제 입소부터 열악한 의식주와 환경, 프라이버시권 침해, 외부통신권 침해, 자기결정권 침해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 수용시설은 배제와 감금의 기제가 매우 강하게 작동되는 공간으로 수용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다.

<표 2> 시설 거주인에 대한 권리영역별 인권침해 주요 내용들

번호	권리영역	침해내용	근거
1	거주이전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 입소 및 장기 입소 ▶ 퇴소방해 행위 (탈시설의사를 가족에게 알려 방해, 퇴소하지 못하도록 거짓정보를 제공) ▶ 탈시설권리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거나 탈시설과정을 지원하지 않음 	헌법 14조, B규약 12조 1,2,4항, 13조
2	의식주 생활 전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권, 환경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의식주와 환경 ▶ 의식주 전반에 걸친 자기결정권 침해 	헌법 10조, A규약 전문, B규약 전문, 헌법 34조 2,3,4,5항, A규약 9,10조, B규약 23조 1,4항, 헌법35조 1,3항
3	문화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생활에 대한 지원 없음 ▶ 시설내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 환경이 없음 	A규약 15조1항 a,b, 2,3,4항,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제7조
4	외부와의 소통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출제한 ▶ 면회시 직원 동석 ▶ 서면왕래 금지 ▶ 핸드폰 사용 금지 및 검열 ▶ 인터넷금지 및 검열 	헌법 12조, 17조, 18조
5	교육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 미준수 ▶ 교육기관(학교)을 이용하지 않고 순회교육으로 대체(비통합적 방식) ▶ 의무교육의 개인의 기호에 따라 교육기회 제공 없음 	A규약 13조 3,4항, 헌법 31조, A규약 13조,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제5조
6	노동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강요 ▶ 무임금 또는 무임금과 가까운 저임금 ▶ 장시간노동 	헌법 32조 1항, A규약 6조 1,2항, A규약 7조 a,b,c,d호, 10조 2항,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제6조
7	의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적 방치, 방임 	헌법 36조 2,3항, A규약 12조 1항

번호	권리영역	침해내용	근거
8	참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표현의 자유 없음 ▶ 선거권 침해 	헌법 21조 1,2항 헌법 24조, 25조, 13조 2항, B규약 25조
9	가족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입소로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자체가 박탈 	헌법 36조 1항, 한국장애인인권선언 제8조
10	종교의 자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행위의 강요(예배, 헌금) ▶ 타종교행위에 대한 금지 및 지원 미제공 	헌법 19조, 20조, B규약 18조, 헌법 124조
11	프라이버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의 자유 없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없음 ▶ 통신의 비밀과 자유 없음 ▶ 화장실 등 개인공간이 개방되어 있음 ▶ 원하지 않는 거주인 여러명이 한방에서 생활 	헌법 16조, 17조, 21조 4항, 헌법 18조, B규약 17조 1항, 2항
12	경제적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수당 갈취 ▶ 보호작업장 등 수당 갈취 ▶ 장애인수당으로 기업 등에 커미션 왕래 	헌법 23조, 13조 2항 22조 2항,
13	신체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학대, 사망, 성폭력, 감금 ▶ 체벌목적의 굶김, 통제 목적의 약물과다복용, 관리목적의 강박과 격리 ▶ 잔소리 등 언어폭력 ▶ 일상의 통제와 관리 	헌법 12조, 13조, 27조 4항, 28조, B규약 7조, 8조, 9조, 10조, 11조, 14조, 15조 1항
14	진정절차 및 시설운영에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미제공 ▶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절차 및 운영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제13조
15	안전할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지진 등에 대한 안전대비 없음 ▶ 단체생활로 전염성 질병에 대한 대책 없음. (음 등의 피부병은 다수 발생) 	헌법 12조, 13조, 27조 4항, 28조, B규약 7조, 8조, 9조, 10조, 11조, 14조, 15조 1항
16	성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재산에 대한 권리 고지 없음 ▶ 의무적인 성교육만 시행 ▶ 개인의 성생활에 대한 보장 없음 	
17	국가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 미비 	헌법 34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수용시설의 수는 <표4>와 같이 늘어만 가고 있다. 2006년 288개소 (20,590명 수용)이었던 대형시설은 2016년 626개소(26,785명 수용)로 확대 되었다. 법적 거주 시설 유형으로 포함되는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포함하면 총 시설수는 2016년 기준으로 무려 1,484개소(31,222명 수용)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시설확대가 아니라 31,222명의 삶이 사회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표 3〉 장애인거시시설 현황표, 201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계	인원	20,598	21,709	22,250	23,243	24,395	25,345	30,640	31,152	31,406	31,222
	시설수	288	314	347	397	452	490	1,348	1,397	1,457	1,484
(단기 공동 제외)	인원	20,598	21,709	22,250	23,243	24,395	25,345	26,442	26,954	27,056	26,785
	시설수	288	314	347	397	452	490	553	581	607	626
지체 장애인	인원	22,81	2,283	2,292	2,230	3,673	2,102	2,057	1,978	2,208	1,666
	시설수	30	33	33	38	40	39	40	39	44	39
시각 장애인	인원	824	792	784	760	873	787	786	770	632	628
	시설수	15	14	14	14	14	15	16	16	15	16
청각언어 장애인	인원	728	521	546	519	386	361	335	320	270	628
	시설수	12	11	11	11	10	9	8	8	7	7
지적 장애인	인원	8,408	9,325	9,192	9,539	14,338	10,788	11,748	12,001	12,136	12,369
	시설수	122	131	144	172	196	226	278	293	309	321
중증 장애인	인원	8,038	8,345	8,981	9,728	4,813	10,798	11,006	11,412	11,344	11,314
	시설수	102	116	136	153	182	191	201	216	223	233
장애 영유아	인원	319	443	455	467	312	509	510	473	466	541
	시설수	7	9	9	9	10	10	10	9	9	10
단기거주 시설	인원							1,438	1,432	1,495	1,548
	시설수	(69)	(76)	(84)	(91)	(103)	(119)	128	131	137	141
공동생활 가정	인원							2,760	2,766	2,855	2,899
	시설수	(358)	(400)	(450)	(531)	(589)	(637)	667	685	713	717

5. 탈시설을 향한 시설거주인들의 목소리

- 우리나라도 최근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확산으로 수용시설생활이 아닌 지역사회 탈시설-자립 생활에 대한 장애인당사자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2009), 부산시(2009), 광주시(2010), 대구시(2012), 인천시(2012) 등 지역마다 이루어진 탈시설자립생활육구조사는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⁵⁾ 조사결과 탈시설 육구는 서울시 57%(주거 및 서비스 지원 시 70.3% 자

5)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학술연구(서울시정개발원, 2009), 부산생활시설거주 장애인 복지실태 및 육구조사(부산복지개발원, 2009), 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시설 실태조사 및 자립 생활육구조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지소, 2010), 중증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방안(대구 경북연구원, 2012), 장애인생활시설이용자 복지실태 및 탈시설 육구조사(인천발전연구원, 2012).

립희망), 광주시 41.3%(주거 및 서비스 지원 시 42.2% 자립희망), 부산시 57.6% 자립희망, 대구시 58.6%(주거 지원 시 70.5%), 인천시 30.0%으로 50% 이상이 자립생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2012년 전국적으로 실시한 시설거주인 자립욕구 조사⁶⁾ 결과에 따르면, 57.5%가 자립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고,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시 62.1%가 자립희망이라고 응답했다. 자립생활의 어려움을 설명한 후에도 53.4%가 자립을 희망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자립 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집, 생활비, 일자리, 활동보조를 꼽았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정부가 장려하는 반강제적인 시설입소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임을 반증한 조사였다.
-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차원의 탈시설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는 '장애인 시설서비스 이용권 보장과 전국적인 거주시설의 균형배치를 위해 시·군·구별로 거주시설(1개소이상) 필요한 장애인거주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함'이라고 써있을 뿐,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자립에 관련한 내용은 전무한 상황이다.

6. 탈시설로 둔갑한 시설소규모화정책

- 2011년 3월,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끊이지 않는 시설범죄의 해결책으로 신규 시설 정원을 30인 이하로 제한하는 시설소규모화정책을 추진했다. 마치 시설의 인원을 줄이면 비리·횡령과 인권침해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 냈던 해결책이었으나, 기존의 대형시설은 적용대상에서조차 제외된 채 그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전히 똑같은 시설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51인 이상 대형시설은 163개로 전체 676개의 시설 중 27%를 차지하며 수용인원은 14,429명으로 53%에 육박한다.
- 복지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탈시설정책수립요구에 대해 시설소규모화정책이 탈시설화정책의 일환이라는 설명을 해왔다. '탈시설'의 의미를 기존시설의 거주환경을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탈시설화'⁷⁾라며 오히려 탈시설의 철학과 의미를 왜곡하는 데에 이르렀다.

6) 시설거주인 거주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조한진 외, 2012), 국가인권위원회.

7) 2015년 10월 8일 '서울시 탈시설 5개년 계획 중간평가 토론회'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박준구 담당사무관 발표자료에서 발췌

- 미국 발달장애인조단체 연합회에 따르면 시설은 규모가 크기, 거주인의 수, 환경적인 조건보다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시설에서 지역 사회 및 가족과의 교류가 없는 폐쇄적이고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자기 삶에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삶을 살 수 있는 '탈시설-자립생활'정책이 절실하다.

<표 4> 발달장애인이 말하는 시설(미국 발달장애인조단체 연합회)

시설이란

- 장애인만이 사는 곳
- 세 명 이상 자기들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사는 곳
- 거주인이 침실이나 욕실을 잠그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곳
- 운영진이 정한 식단과 취침시간을 강요하는 곳
- 개인의 종교나 신앙생활을 강요하거나 제안 하는 곳
- 나를 보조할 사람을 내가 고르거나 바꿀수 없는 곳
- 성적기호나 활동을 제한하는 곳
- 내가 받는 보조나 스테프가 싫으면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곳
- 전화나 인터넷의 사용을 제한하는 곳
- 지역사회 생활이나 활동을 제약하는 곳

7. 시설수용정책에서 탈시설-자립생활정책으로의 전환

“밥을 먹으려면 밥을 먹고, 자라면 자고, 먹을 때 먹고, 스스로 인간이라는 것을 망각했어요. 장애인은 마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던 어느날,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들면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자유가 없었어요. 답답하죠.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감옥...난 아무것도 못하고 수용시설에서 있다가 죽어야 되는건가? 엄마 아빠를 참 원망했더랬어요.”

- 위와 같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로 자립한 당사자의 증언처럼 수용시설 안에서의 삶은 끔찍한 인권침해가 아니더라도 폐쇄성, 집단성, 통제와 규율, 방임, 방치로 인해 무기력한 일상임을 알 수 있다. 왜 시설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가? 누가 시설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수용시설의 문제를 접해야 할 것이다.
-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삶을 선언했다. 이는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시설에 갇혀사는 게 아니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수용시설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존재하는 한, 그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수용될 것이다. 이제는 시설확대나 개선이 아니라 탈시설과 자립생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춰 장애인복지의 근본적인 철학과 설계가 바뀌어야 할 때이다.

세부정책과제 ① 수용시설정책폐지! 탈시설-자립생활정책 명문화

(1) 현황

- 탈시설은 서구 복지국가들이 1950년부터 제기 되어 1980년대에 이미 추진된 정책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수용시설에 의존하며 거주와 개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으로 수용시설 확대를 우선시 하고 있으며 이는 <표5>를 보면 알수 있음. 장애인 수용시설은 2006년 288개소(20,590명 수용)이었던 대형시설은 2016년 626개소(26,785명 수용)로 확대 됨.
- 또한, ‘시설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해야 해야 한다는 입장, 공적서비스로서 수용시설 입소를 장려하고 있음. 매년 수립하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 속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확대를 독려하며 ‘장애인 시설서비스 이용권 보장과 전국적인 거주시설의 균형배치를 위해 시·군·구별로 거주시설(1개소이상) 필요한 장애인거주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지역사회로의 자립에 대한 정책내용은 전무함.
- 허나, 1990년대 진행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탈시설운동,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등에 의해 장애인 자립생활관련 법률의 제·개정,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개선, 지자체별 탈시설정책 등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음.
- 그리고 무엇보다, 수용시설 생활이 아닌 지역사회 삶을 원하는 장애인 당사자 요구가 나타남. 서울시(2009), 부산시(2009), 광주시(2010), 대구시(2012), 인천시(2012) 등 각 지역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을 일대일 면접을 하면서 탈시설자립생활욕구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매우 유사함. 조사결과 탈시설 욕구는 서울시 57%(주거 및 서비스 지원 시 70.3% 자립희망), 광주시 41.3%(주거 및 서비스 지원 시 42.2% 자립희망), 부산시 57.6% 자립희망, 대구시 58.6%(주거 지원 시 70.5%), 인천시 30.0%으로 50% 이상이 자립생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법률상에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명문화하고 공식화하여, 중앙정부가 수용시설정책 폐지,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표 5〉 전국 시설 수와 시설거주 장애인 인원 추이

(단위: 명, 개소)

		2009 말	2010 말	2011 말	2012 말	2014 말	2015 말
전국	시설 수	397	452	490	553	607	626
	현원	23,243	24,395	25,345	26,442	27,056	26,785

(2)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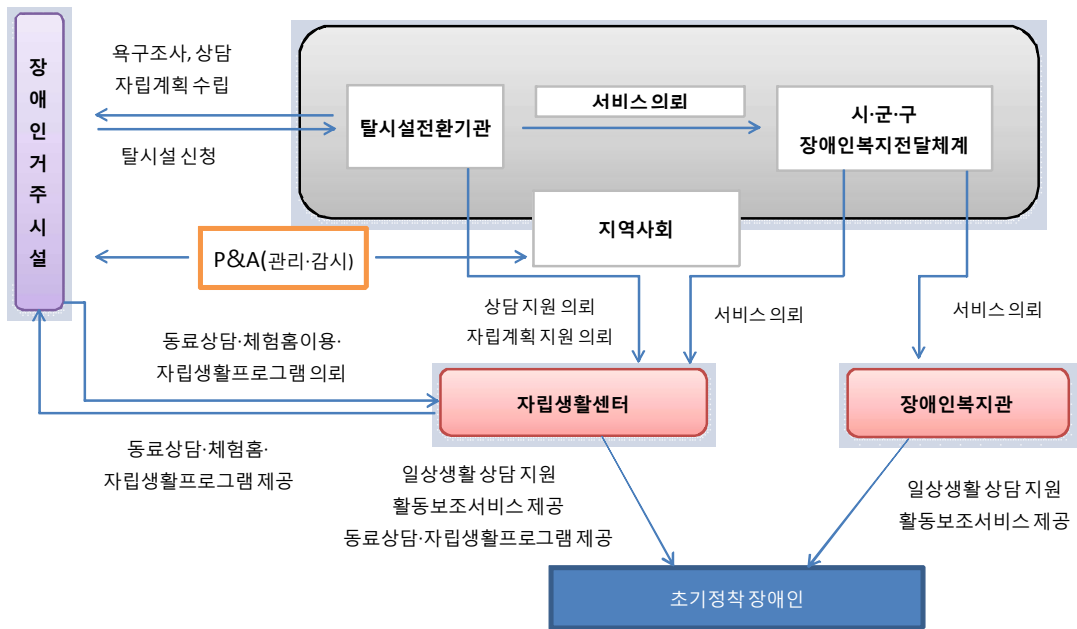
- 수용시설정책폐지! 탈시설-자립생활정책 명문화!

세부정책과제 ②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국가계획 수립

(1) 현황

-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천명하면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및 제19조)
-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UN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견해에서 위원회는 “37.(위원회는) 장애인 시설 및 거주자 수의 증가에서 나타나듯이, 탈시설화 전략이 효율적이지 않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정책(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지원서비스)이 부족함을 우려한다,” 38.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권고함.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권고(2013. 11. 7)’를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그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상에 자립생활 원칙 명문화 및 탈시설 전환 관련 정보고지 의무화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계획 수립 ▲초기 자립정착금 지원 ▲임시거주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초기정착 주거공간 확대를 각 권고함.
- 이는 ‘자립생활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탈시설

- 전환 시스템 구축을 강조한 것이며, 탈시설 정책의 분명한 목표 제시가 필요함을 밝힌 것임.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가로서 가지는 당사국의 의무를 다하고,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입법과 행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함.
 - 아래 <그림2>와 같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탈시설전환기관을 포함한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그림 2>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 (안).⁸⁾

(2) 요구사항

-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국가계획 수립

세부정책과제 ③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산하 탈시설자립전환과 설치 운영

(1) 현황

- 현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에는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서비스과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8)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거주인 거주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보고서 내용 발췌

-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애인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에서 ‘시설 소규모화 추진을 통한 탈시설 및 지역사회정책 욕구가 있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촉진 필요’가 있음을 밝히며 정책과제로 추진 중임. 하지만 ‘탈시설-자립생활’정책의 계획이나 예산반영을 위한 전담부서의 부재로 인해 지난 5년간의 탈시설의 성과는 극히 제한적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역할을 맡기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협약에는 장애인의 시설 수용은 최후의 선택이며 자립생활의 보장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지만, 시설거주인이 시설 수용을 거부하고 나왔을 때 길거리에 나왔거나 시설에 재입소하는 길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하고 살 수 있도록 기존에 민간 중심으로 진행하던 탈시설 지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책임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음. 탈시설전환 체계는 중앙단위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내 탈시설전환환과를 설치하여야 함.
- 탈시설자립전환과의 역할은, 시설거주 장애인의 정기적인 상담, 자립 계획 수립, 지역사회 자립 정보 제공, 주거공간 연계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하는 기관임. 탈시설 자립생활을 상담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로서 필요함.
- 탈시설자립전환과 설치를 통해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고 동시에 별도의 예산 책정으로 탈시설전환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요구사항

-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산하 전담부서 탈시설자립전환과 설치 운영!

세부정책과제 ④ 전환주거정책 수립 시행

(1)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권고(2013. 11. 7)’에서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하게 될 경우, 가장 시급한 지원체계”에 관한 설문에서 “나가서 살 집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고, 이는 시설거주인의 ‘탈시설-자립생활’에서 주거지원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 자립생활가정은 운영주체가 시설이며, 예산 또한 거주시설 기능

보강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당사자는 시설에서 퇴소하지 않았으므로 개별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기초생활수급비)를 전혀 이용 할수 없는 한계가 있음. 수용시설 개선에 그치는 시설소규화 정책임.

-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공간은 시설에서 나오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일차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시설에서 나오기가 어려움. 시설에서 곧장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 기관 현실적으로 힘들고, 시설거주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 후 곧바로 자립생활을 위한 거주지를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임. 개인의 노력만으로 집을 구해서 지역사회로 자립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중간단계로서 임시 거주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체험홈이나 자립주택과 같은 ‘전환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전환주거’로서 수용시설장애인이 시설을 퇴소한 뒤, 무상으로 공적주택을 제공하고 이후 지역사회의 개인주택으로 이전하는 완전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거주 지원 기능을 함. 또한, LH공사와의 연계를 통한 임대주택 등 국가의 매입, 당사자와 각 지자체 직접 거주지계약, 1가구 3인 이하, 1인 1실 활동지원서비스제도 이용, 장애인자립생활 이념과 비전이 명확한 운영사업자 위탁이 핵심임.
-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서 2010년부터 탈시설장애인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2016년 신설된 발달장애인자립주택모형인 자립생활주택 ‘다’형의 경우 24시간 상주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연 6,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법」 제5조의2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주택제공 사업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의 장애인 주거정책은 미비하며, 거주 시설에서 나오려는 장애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음. 따라서 2-30년 시설에서 거주하던 사람에게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택마련의 돈과 정보 등을 보존하고, 또 안전한 주거를 확보할 때까지의 ‘전환주거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2) 요구사항

- 전환주거정책 수립 시행!

9)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자립 전환을 위해 필요한 주거공간이라는 의미로 ‘전환주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역마다 체험홈, 자립홈, 자립주택, 자립생활가정 등 그 쓰이는 형태와 의미 등은 각기 조금씩 다르다.

세부정책과제 ⑤ 탈시설 정착금(지역사회 정착금) 제도화 및 현실화

(1) 현황

- 시설퇴소 후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할 시 임대료부터 세간 구입까지 많은 초기비용 필요함. 하지만 시설거주인이 시설생활 중 모은 연금만으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움.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이 안정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임대료, 물가를 비롯한 장애인의 소득구조 현실을 고려한 탈시설 정착금 지원이 절실함.
- 현재 이동시설의 경우 퇴소시 자립정착금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음.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에게도 확대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되었지만 현재 정책에 반영되지 못함.
- 중앙정부 정책이 없는 사항에서 현재 지자체별로 시설에서 나와 탈시설한 당사자에게 지역사회 정착금이라는 이름으로 실시 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실시 유무와 금액의 편차(최소 200백만원~1천200백만원, 1인기준)를 보임.
- 따라서 ‘탈시설정착금’의 개념을 장애인거주시설 유입 차단까지 확대하여 원가정에서 독립하고 자하는 재가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지역사회정착금’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중앙정부차원의 단일한 지역사회정착금제도 및 현실화 방안을 고려해야함

(2) 요구사항

- 탈시설 정착금(지역사회 정착금) 제도화 및 현실화

세부정책과제 ⑥ 장애인수용시설 해체를 위한 국가계획 수립

(1) 현황

- 기존 장애인수용시설은 지역사회에 크게 동떨어져 폐쇄적이고 고립된 모습을 띄고 있음. 현재 장애인복지의 세계적 추세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당사자의 자립지원이 우선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 시설에 대한 폐쇄추진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스웨덴은 국가정책으로 ‘시설폐쇄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시설을 폐쇄하고, 시설에 투여되던 예산을 지역사회 인프라구축에 투자하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탈시설정책수립과 동시에 장애인수용시설폐쇄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예산을 축소하고 장애인지원체계와 지역사회인프라 구축으로 예산을 전환하여야 함.

(2) 요구사항

- 장애인수용시설폐쇄 5개년 계획 발표

세부정책과제 ⑦ 범죄시설 폐쇄 및 거주인 탈시설자립생활전환 시범사업 실시

(1) 현황

- 2016년 8월,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침해범죄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하였음. 희망원은 1958년 설립되어 1980년부터 천주교법인에 수탁운영되어 현재 희망원(노숙인재활시설), 라파엘의집(노숙인요양시설), 성요한의집(정신장애인요양시설), 글라라의집(장애인거주시설) 4개 시설로 운영되며 1,150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사회복지시설임. 2년8개월 동안 시설내 거주인 129명이 사망, 전체 거주인 중 10.6%에 달하는 사람이 사고사로 처리됨. 시설안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범죄사건이 그리하듯 희망원 역시 이 거대한 사망자 수 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폭행과 학대, 불법 감금, 사망조작, 강제노동, 부식비 횡령, 불법비자금 조성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온갖 인권침해 범죄와 비리(횡령)로 36년간 운영됨.
- 이런 대형시설의 경우 시설폐쇄와 이후 수용인들에게 대한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 인프라 부족등을 이유로 사건 해결에 매우 소극적임. 수용인들을 다시 타시설로 전원조치 해버리는 선에서 그침. 과거 인권침해범죄시설의 경우 거주인 대다수가 본인의 욕구와 상관없이 원가정으로 보내지거나 타시설로 전원되어 버렸음. 이에 중앙정부에서 대구시립희망원을 대상으로 시설폐쇄 및 거주인탈시설자립전환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범죄시설에 대한 모범적인 해결모델을 제시해야함.

(2) 요구사항

- 범죄시설 폐쇄 및 거주인 탈시설자립생활전환 시범사업 실시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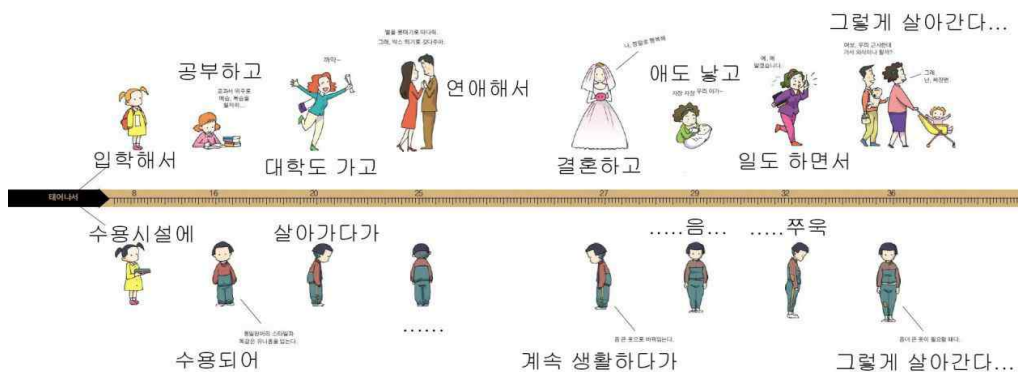
(1) 탈시설이 뭔가요?

- 우리나라에는 복지정책 중 장애인수용시설정책이 있습니다. “장애와 가난”을 이유로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 들어가게 되지요. 하지만 시설은 배제와 격리의 공간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동떨어진곳에 위치한 곳, 외부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집단생활이라는 명목하에 통제와 규율, 반복적인 일상의 삶, 내일 꿈꿀 권리가 사라지는 곳이 바로 시설이죠. 그래서 탈시설은 장애인수용시설에서 집단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웃이자 주체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동네에서, 지역에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시설에서 나와야 겠죠.

“장애인은 다 시설에서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33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지하철을 타본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날은 시설에 들어간 날과 시설을 나온 날뿐이에요.”
 “참! 좋다 내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고,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탈시설 당사자 이야기-

위 내용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탈시설당사자자의 이야기입니다. 갇힌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것이죠. 아래 지역사회와 수용시설의 다른 생활이라는 그림을 보게 되면 수용시설에서의 삶이 얼마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통제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일상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지역사회와 시설수용의 다른생활



출처: <왜, 만날 반말이야! 글 김정하, 그림 이상윤> 중

<그림 2> 지역사회와 시설수용의 다른 생활

(2) 장애인은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시설이 안전하지 않나요?

- ‘보호’는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스스로에게 “나는 나를 보호해야해”라는 문장을 쓰지 않잖아요. ‘보호’라는 단어는 ‘부모는 아이를 보호한다’ 등의 문장으로 돌봄의 주체가 대상에게 쓰는 단어인데, 장애인에게는 무척 자연스럽게 쓰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장애인이라는 개인의 정체성이 보호라는 시혜적인 단어와 아무런 이질감 없이 짝을 이루는 사회에서 장애인을 시설에서 살게 하면 안전할 거라 생각은 당연하게 연상되기도 해요, 현대 비장애인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살지 않는 것처럼, 장애인의 공간이 시설로 제한되는 상황을 ‘안전’이란 이유로 당연하게 여기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시설은 시설 밖에서 언뜻 생각하기와는 다르게 인권침해의 온상일 때가 많아요. 영화로 만들어진 공지영님의 소설 ‘도가니’에서 다뤄진 시설 범죄와 인권침해는 꼬리의 꼬리를 물고 반복되고 있어요. 작년 남원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발차기에 맞는 시설 이용인의 영상이 방영되어 사회적 아우성이 일어나기도 했고, 대구에서는 12년부터 14년까지 2년의 시간동안 100여명이 사망했는데, 아직도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언급하니 시설은 오히려 위험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3) 장애인이 시설에 살지 않는다면 어디서 어떻게 살수 있나요?

- 과거 장애인 문제의 근원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장애인을 재활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문제해결은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대규모 시설이나 집에서 외출을 피한 채 폐쇄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장애인의 삶이었습니다.

자립생활 이념은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강제적 환경과 대상화로부터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주도적 입장으로 장애인의 삶을 가로막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사회참여를 권리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자립생활 이념으로 생겨난 것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동료상담, 권익옹호 활동, 자립생활기술훈련,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며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지원을 위한 체험홈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두고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삶에

적응하고 독립된 자신의 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최장 7년) 주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가 주목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앞으로 확대·개선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살지 않고 나와서 살려면 그만큼 국가세금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 현재 우리나라 시설에 쓰이는 예산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은 운영비, 인건비를 모두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린 해마다 뉴스에서 시설의 비리 횡령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직접 지원하는게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 예산구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설운영자를 지원하는게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시설을 더 많이 만드는게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지속가능하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설사 국가세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을 위해 마땅히 나눠야할 사회적 비용이 아닐까요? 장애인의 탈시설에 투여되는 국가세금은 장애인의 삶의 변화만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새로운 서비스체계가 만들어짐에 따라 새로운 직업군이 탄생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사회와 단절된 시설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장애인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삶에서 벗어나 장애인과 평등한 관계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인권적인 노동환경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을 위한 사회적 비용, 함께 나눠요!

의제별 과제. 장애인 생존권 보장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세부 정책요구안

-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3 장애인권리보장법 도입
- 4 장애인권리보장법 구축
- 5 장애인권리보장법 구축
- 6 UN 장애인권리보장법 구축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필요성

- 2012년 대선 당시 현 박근혜대통령은 장애인 정책공약 1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을 약속함. 2013년 6월에 진행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2016년까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후 정부 차원의 논의는 전무함.
-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순한 제도개선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장애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문제이자 시스템의 문제임.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보고서

에서도 “장애인복지정책 수급요건인 장애등급제의 폐지 또는 개편은 장애인복지정책 수행 방식의 재편과도 맥이 닿아있다.”면서 “장애등급제의 개편은 필연적으로 현행 장애인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재편을 동반하게 된다.”가 지적함.

- 하지만 2015년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장애등급제 개편 1차 시범사업’은 장애인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재편이 아니라 전달체계 상의 일부 변화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계가 반대했던 등급제의 ‘중·경 단순화’를 추진함으로써 장애등급제 폐지를 단순한 제도개선의 문제로 한정 짓고 있음. ‘장애등급제’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나란히 공약에 포함시킴으로서 장애등급제 폐지가 장애인복지정책 전반의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이후 박근혜정부는 장애등급제의 껍데기만 바꾸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장애등급제 폐지는 2017년 하반기부터 박근혜정부가 도입하려는 ‘장애종합관정체계’와 같은 관정도구 개발만의 문제가 아님. 또한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되었던 전달체계 개편만의 문제도 아님. ‘장애등급제’가 지난 20년 넘게 한국사회에서 기능해왔던 권리 은폐적 효과들을 바꿔내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복지구조의 전반적인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
- 따라서 장애등급제 폐지의 대안으로서 장애인복지구조의 변화를 법적·제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법률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그 법률은 바로 「심신장애자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넘어서 ‘UN장애인권리협약’의 협약정신에 부합되는 총체적인 대안을 담은 법률이어야 함.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원칙과 방향

하나. 기존의 의료적 관점으로만 머물렀던 장애 정의를 국제사회의 추세에 부합되게 사회적 관점이 반영된 정의로 변화시켜야 한다.

- 2014년 10월 UN장애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본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이 의료적 장애모델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협약에서 옹호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의 접근방식과 조화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15개의 장애유형과 6등급으로 협소하게 정의해놓았음. 그 결과

OECD 평균 국가의 장애출현율이 인구의 13.8%(2000년대 후반)인데 반해 한국의 장애출현율은 6.0%에 불과함. 또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장애등급심사를 통해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비율은 2010년 4.9%(163,945명 중 7,997명)에서 2011년 17.3%, 2012년 17.6%, 2014년 16.2%에 이르는 등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등록장애인 수의 증가추세는 2010년 이후 급격히 감소되었음.

- 의료적 손상만을 절대시하는 한국의 협소한 장애 정의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애등급제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UN장애인권위원회의 지적처럼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해내고 있음.

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장애인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개인별 지원체계 방식의 전달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 현재의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당사자의 환경과 욕구보다 오로지 의료적 손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등급이 같으면 필요한 서비스도 같은 것처럼 규정되고 있음.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등급 판정과 서비스 연결 체계가 미흡하고 통합되어 있지 못 함.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권과 통제권을 갖지 못 하는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의 문제도 가지고 있음.
- 핵심은 바로 개인별지원체계. 장애인의 서비스 신청과 서비스의 사정, 그리고 연계와 제공 및 이후 모니터링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가 옹호될 수 있어야 함.

셋. 인권침해와 차별에 노출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장애인권리옹호체계를 도입하여야 한다.

- ‘염전노예’등의 사건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듯이 장애인의 다수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옹호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우며, 그렇기에 적극적인 권리옹호 시스템이 필수적이라 할 것임.
- 권리옹호체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학대방자나 처벌 등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는 서비스 전 과정을 포함한 장애인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넷. 탈시설화의 선언과 탈시설 전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탈시설은 서구에서 1950년부터 제기되고 1970년대부터 탈시설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한국은 아직도 공식성을 갖지도 않고 구체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도 부재한 상황임. 일부 지자체에서 탈시설 전환체계를 만들어내고 시행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부재하여 한계가 많음.
- 법률상에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명문화하고 공식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탈시설 및 거주전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강제하여야 함.

다섯. 소득보장권리가 명시되고 소득보장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 의학적 손상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장애등급제가 가장 은폐시켜온 영역이 바로 소득보장 영역임. 장애인연금과 같은 소득보장제도에서 수급요건과 수급정도를 결정하는데 장애의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빈곤의 정도가 중요한 것임. 장애가 경한 사람이 중한 사람에 비해 급여를 적게 받을지는 몰라도 제도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데, 현재의 장애인연금은 의학 적 손상만으로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그 결과 2009년 기준 한국의 장애인가구 빈곤율은 33.1%로 OECD국가 평균 12.9%의 3배 가 까운 수준임. 2011년 기준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 지출 비율은 OECD평균 1.79%인 데 반해 한국은 0.4%에 불과함.
- 장애인의 적정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보장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관련 조항에서 실현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여섯.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다양한 권리항목의 규정과 실현방안의 조율이 필요하다.

- UN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일반원칙’에서는 ‘①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 ② 차별금지 ③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 및 통합 ④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 ⑤ 기회의 균등 ⑥ 접근성 ⑦ 남성과 여성의 평등 ⑧ 장애이동의 발전적인 역량의 존중과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의 존중’을 선언하고 있음.

- 협약의 일반원칙은 물론 전 생활영역에 이르는 권리협약의 내용을 근거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명확히 선언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것이 선언적 나열로만 그치지 않도록 그 의무와 실현방안이 구체적인 조항과 조응하도록 법률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장애인 활동보조권리 보장

세부 정책요구안

- 1 ☐☐☐☐☐☐☐☐ ☐☐ 개정
- 2 ☐☐☐☐ ☐ ☐☐☐☐☐ ☐☐ ☐☐☐☐ 폐지
- 3 ☐☐☐ ☐☐☐☐ ☐ ☐☐☐☐☐ ☐☐ ☐☐☐☐ 보장
- 4 ☐☐☐☐☐☐☐☐ 폐지
- 5 ☐☐☐ ☐☐ ☐☐☐ ☐ ☐☐☐☐☐ ☐☐☐ 보장
- 6 ☐☐☐☐ ☐☐☐☐ 개편

세부정책과제 1. 장애인활동지원법 전면 개정

(1) 현황

-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2007년 4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
-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 2008년부터 시행. 노인요양보험법 제정 당시 국회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장애인도 노인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2010년 6월까지 보고하도록 부대결의 (2007년 4월).
- 2010년 장애계가 반대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날치기 법제정.
- 201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안 발의되었으나, 복지부의 반대로 법개정 실패.
-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의해 기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항목이 포함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됨.
- 장애인의 자신의 바우처 급여액 한도 내에서 활동보조 이외에도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 가능. 그러나 바우처 급여액이 늘어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 장애인의 서비스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틀의 제도가 통합된 것에 지나지 않음.

-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과 제도시행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부담금이 크게 인상되고, 심야 또는 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장애인의 바우처에서 할증결제를 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개악됨.
- 2012년 10월 고김주영활동가와 파주장애남매 등이 부족한 활동지원제도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24시간 활동지원 쟁취를 위한 치열한 투쟁 전개.
- 2013년 3월부터 최중증 취약환경의 장애인에 대해 급여량 일부 확대. 그러나 근본적 문제들은 여전히 개악되고 있는 상황.
- 2014년 3월 17일 송국현 씨는 중복장애 3급으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혼자 체험함에 있다 화재로 사망.
- 2014년 4월 16일 오지석 씨는 호흡기를 사용하는 1급 장애인으로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어머니가 집으로 오던 사이 인공호흡기가 빠져 사망. 연이은 죽음으로 활동보조 24시간 투쟁 등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구.
- 2014년 11월 12일 장애계의 요구를 대폭적으로 수용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
- 2015년 6월 장애 3급까지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 확대.
- 2017년 현재 조배숙·남인순 의원 등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임. 또한 몇몇 의원들은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음.

(2) 요구사항

- 장애등급 및 연령제한에 의한 대상제한 등 장애인활동지원권리보장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활동보조서비스 수가 방안 등 활동보조인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전면 개정

세부정책과제 2. 장애등급 및 연령제한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

(1) 현황

-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1~3급 장애인에게만 신청자격을 제한적으로 부여함. 당초 1급

장애인으로 한정된 것을 2012년 김주영씨와 과주장애남매의 사망사건과 이에 분노한 장애인계의 강력한 투쟁으로 인해 2013년부터 2급으로 확대되었고, 2014년 송국현씨가 사망하고 또다시 장애인계의 분노가 터져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부터 3급으로 대상이 확대됨.

- 문제는 많지만 별도의 인정조사표 판정체계가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장애등급제한은 전혀 필요없는 2중의 장벽이라는 것은 수없이 제기된 내용임.
- 서비스신청자격에 등급제한을 없애는 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조치임. 별도의 인정조사표 판정체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등급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받으면 될 것이고, 서비스가 필요없다면 1급이라도 결과가 안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활동보조서비스에 등급제한을 폐지하면 하루아침에 3급부터 6급에 해당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신청하는 대혼란이 일어날 거라는 보건복지부의 두려움은 환상에 불과함. 등급재판정 없을 때에도 신청자격 있는 1급 장애인들의 신청폭주는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었음..
- 또한 현행 제도는 만64세까지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65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서비스 신청권조차 없으며, 심지어 기존 서비스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만65세가 되면 강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됨.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인 경우 일단 서비스는 자동으로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을 신청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알지 못해 65세 전에 노인성 질환으로 장애를 입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함. 국가의 홍보부족으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모르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다라도 65세 전에 장애를 가졌음에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역차별임. 근본적인 문제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기준이 활동지원제도보다 엄격하고 급여량이 극히 적다는 것임.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연령차별과 일방적 폭력행정을 '자립생활지원제도의 취지를 감안'한 것이라는 입장이며, 이는 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적 발상이기도 하지만, 사실 본질은 어디까지나 예산문제임.
-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장애인출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매우 높은 19%에 이르며,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과 달리 강력한 투쟁이 없었던 탓에 여전히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에 때문에, 연령제한을 폐지할 경우 당연히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절대다수가 장기요양이 아닌 활동지원제도를 선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임.

(2) 요구사항

- 활동보조서비스 내 신청자격 3급 제한 폐지 및 전 등급 확대, 만 65세 서비스이용 연령제한 폐지

세부정책과제 ③ 서비스 상한폐지 및 예산확대를 통한 생활시간 보장

(1) 현황

- 서비스 상한 제한과 생활시간 보장은 결국 급여량의 문제이고, 급여량에 관한 개선대책은 다양한 전략이 가능함.
- 가장 근본적 대안은 정해진 예산을 나누는 현행 예산집행방식을 바꾸어 개인의 필요에 따른 서비스관정이 우선되게 하는 것임. 급여관정의 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 개선이 요구됨. 스웨덴의 경우 자기관리원칙에 의하여 본인이 활동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을 기술하고 그것을 사회복지사가 판단하는 과정 등으로 사정이 진행되며, 영국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가 관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의사의 진단서는 참고 정도에 불과함. 그 외 많은 나라들이 신체적 기능이 아닌 장애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서비스 양을 결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에서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개선 논의는 진행된 것이 별로 없고, 그동안 수차례 인정조사표 개선에 관한 매우 세부적 논의와 연구가 있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만들지 못함.

〈표 1〉 기본급여 월 한도액 변화

(단위: 천원, 시간)

분류		2011.10.5	2013.2.1	2013.2.27	2013.8.1	2015.2.1	2016.3.14	2017.1.1
1등급	월 한도액	860	886	919	1,010	1,040	1,063	1,091
		520						
	제공시간	104	104	108	118	118	118	118
		63						
2등급	월 한도액	690	711	738	810	834	852	869
		350						
	제공시간	83	83	86	95	95	94	94
		42						
3등급	월 한도액	520	536	556	610	628	642	657
	제공시간	63	63	65	71	71	71	71
4등급	월 한도액	350	361	374	410	422	430	435
	제공시간	42	42	44	50	50	47	47
시간당 서비스 단가(원)		8,300	8,550	8,550	8,550	8,810	9,000	9,240

- 주1. 해당 연도 및 날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일임
 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1.10.5)의 기본급여 월 한도액은 연령에 따라 ‘18세 이상 수급자’와 ‘6세 이상 18세 미만 수급자(1~2급만 해당)’로 나뉨
 3. 제공시간은 ‘월 한도액/시간당 서비스 단가’로 계산하였고,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출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재구성

〈표 2〉 추가급여 월 한도액 변화

(단위: 천원, 시간)

분류				2011.10.5	2013.2.27	2013.8.1	2015.2.1	2017.1.1	
1인 가구	인정점수 400점 이상			월 한도액	664	2,163	2,341	2,411	2,523
				제공시간	80	253	274	274	273
	인정점수 400점 미만	인정점수 380~399점	월 한도액	166	171	684	705	740	
			제공시간	20	20	80	80	80	
		인정점수 380점 미만	제공시간	20	20	171	176	185	
						20	20	20	
취약 가구	취약가구 (인정점수 상관없음)	인정점수 400점 이상	인정점수 400점 이상	월 한도액	83	2,163	2,341	2,411	2,523
			인정점수 380~399점			171	273	273	273
		인정점수 400점 미만	인정점수 380~399점	제공시간	10.0	253	80.0	80.0	80
			인정점수 380점 미만			20.0	274	274	185
						20.0	20.0	20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월 한도액	684	684	684	705	740
				제공시간	80.0	80.0	80.0	80.0	80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월 한도액	166	171	171	176	185
				제공시간	20.0	20.0	20.0	20.0	20
학교에 다니는 경우				월 한도액	83	86	86	89	93
				제공시간	10	10	10	10	10
직장에 다니는 경우				월 한도액	83	86	342	352	370
				제공시간	10	10	40	40	40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월 한도액	-	171	171	176	185
				제공시간	-	20	20	20	20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 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	-	624	624	643	675
				제공시간	-	73	73	73	73
시간당 서비스 단가(원)				8,300	8,550	8,550	8,810	9,240	

- 주1. 해당 연도 및 날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일임
 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1.10.5)의 기본급여 월 한도액은 연령에 따라 ‘18세 이상 수급자’와 ‘6세 이상 18세 미만 수급자(1~2급만 해당)’로 나뉨
 3. 제공시간은 ‘월 한도액/시간당 서비스 단가’로 계산하였고,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출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재구성

〈활동지원등급 및 급여 현황〉

구분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기본급여	급여	43만5천원 (47시간)	65만7천원 (71시간)	86만9천원 (94시간)	1백9만1천원 (118시간)
	본인부담금	심신상태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에 의한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산정			
추가급여	급여	1인가구, 출산·취약가구, 학교·직장생활 등 수급자의 생활환경에 따라 산정 (9만3천원~252만3천원, 10시간~273시간)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면제 차상위 초과 : 소득에 따라 2~5% 차등부과 (1천800원~12만6천100원)			

-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위 표는 문제가 있음. 기본급여에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급여 월 109만1천원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18시간임. 추가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급여는 월 252만3천원으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237시간임. 두 급여를 더하면 복지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는 월 361만4천원이고 시간으로 환산하면 391시간이지만 이것은 의도적인 사실 왜곡임. 심야와 공휴일은 서비스 수가를 1.5배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수가’는 ‘통상 수가’인 9,240원보다 훨씬 높게 산정해야 해야 함. ‘할증 수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의 40%가 된다면 ‘평균 수가’는 최소 1만1천880원 이상이 되므로 기본급여는 월84시간 수준에 불과하고 최대 추가급여도 월195시간 수준에 불과함.
- 상한제한 폐지와 생활시간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 신체적 기능에서 탈피하고 장애인의 권리 기반에 입각한 장애인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 확대 또한 수반되어야 함.

(2) 요구사항

활동보조서비스 상한제한 폐지하고 생활시간 보장

세부정책과제 4 서비스본인부담금 폐지

(1) 현황

-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법에서는 급여액의 최대 15%로 규정하면서 상한액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액(A값)의 5%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본급여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추가급여는 상한액 없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실질적 상한액은 없는 상태임.
-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본인부담금을 완전 폐지하고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함. 그러나 일부 장애인단체들조차 도덕적 해이 우려와 소비자주권 등의 논리를 대며 본인부담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존재함. 이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권리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여전히 활동보조서비스 등 복지서비스가 동정과 시혜 차원으로 여겨지는 때문임.

가) 2017년 활동보조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 분		본인부담율	4등급 (430천원)	3등급 (642천원)	2등급 (852천원)	1등급 (1,063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656천원 이하)	6%	26,100	39,400	52,100	65,400
	100%이하 (5,312천원 이하)	9%	39,100	59,100	78,200	98,100
	150%이하 (7,968천원 이하)	12%	52,200	78,800	104,200	105,200
	150%초과 (7,968천원 초과)	15%	65,200	98,500	105,200	105,200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5,2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2017년 활동보조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 분		본인 부담율	93천원	185천원	370천원	675천원	740천원	2,523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	-
차상위계층		면제	-	-	-	-	-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	1,800	3,700	7,400	13,500	14,800	50,400
	100%이하	3%	2,700	5,500	11,100	20,200	22,200	75,600
	150%이하	4%	3,700	7,400	14,800	27,000	29,600	100,900
	150%초과	5%	4,600	9,200	18,500	33,700	37,000	126,100

- 본인부담금의 문제점은 다양함. 무엇보다 자립생활 지원의 목적을 운운하면서도 부양의무제를 적용하여 가구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임. 따라서 법개정 방향에서 우선적인 내용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개인소득기준으로 전환을 하는 것임. 또한 상한액 없이 서비스를 많이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장애인일수록 더욱 많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라는 '수혜자부담'의 자본주의 질서를 강요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
- 현행 본인부담금 제도는 서비스의 제공형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인요양보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음. 현행 본인부담금 제도는 급여량에 따라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서, 급여량 확대 없이 서비스 수가만 인상되어도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사태가 발생함. 실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환되면서 급여량 확대는 미미한데 반해 본인부담금은 크게 인상됨. 2009년 최대 월4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최대 월8만원으로, 그리고 2011년에는 최대 월12만원 이상으로 본인부담금이 인상되었지만 급여량확대는 거의 없었음. 급여량 확대가 있었던 2013년에 본인부담금은 최대 월20만원 이상으로 폭등하였고 올해는 23만1,300원까지 장애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 장애인이 다른 방식으로 본인부담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음. 일부 지자체에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금지한 사례도 있음. 이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권리를 통제하고 자신들의 질서를 강요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과도한 본인부담금은 현장에서 부정수급 발생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근본적 제도개선 대책없이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 본인부담금이 예산의 문제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함. 예산에 기여하는 비율은 4.4%에 불과하며, 보건복지부가 사용하지 못해 남기는 불용처리 예산보다 적은 액수임.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의 권리통제 이념과 전략의 문제임.

(2) 요구사항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세부정책과제 ⑤ 서비스 수가 현실화 및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

(1) 현황

- 2007년의 장애인활동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꾸준히 확대되어 지금까지 서비스 이용자 52,197명, 활동지원기관 953개소, 활동보조인력 45,034명으로 확대됨.
-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는 여전히 급여량 부족과, 지원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수급 어려움, 과도한 본인부담금 확대, 활동보조인은 낮은 서비스 단가로 인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근로의욕 저하, 서비스 제공기관은 과도한 기관평가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 법령 위반 등 위법한 기관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태임.
-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방관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힘들고,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활동보조인은 생활하는데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 이용자를 구하기 어려우며, 활동지원기관은 노무분쟁의 문제 등 이용자도 노동자도, 제공기관도 모두 갈등과 불신의 관계를 만들고 있는 현실임.

최저임금 인상 대비 활동보조 수가 인상

(단위: 원, %)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최저임금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인상률	8.3	6.1	2.8	5.1	6.0	6.1	7.2	7.1	8.1	7.3
활동보조 수가	7,000	8,000	8,000	8,000 (8,300)	8,300	8,550	8,550	8,810	9,000	9,240
인상률	14.2	0	0	0 (3.7)	0	3.0	0	3.0	2.2	2.6

- 2011년 활동지원법 제정 이후 올해까지 최저임금은 약 50% 인상된 반면 활동보조 단가는 15.5%인 1,240원만이 인상됨.
- 활동지원 기관이 2017년 활동보조인 임금을 최저임금 포괄임금 방식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려 노력을 한다고 해도 활동지원기관의 적자는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활동보조인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활동보조인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위법이 토착화, 상시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에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합산 평균치로 활동보조수가가 인상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되었을 것임.

현재 활동보조 수가 대비 최소 임금인상률(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적용 수가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현 활동보조 수가(원)	8,000	8,000	8,000	8,000 (8,300)	8,300	8,550	8,550	8,810	9,000
최소 임금인상률 반영 수가(원)	7,399	7,820	8,266	8,737	9,235	9,762	10,318	10,906	11,298

- 2017년 그간 반영하지 않았던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적용 수가 차액분 수준(11,298원 이상)까지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할 것며, 향후 2~3년 이내에 실질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대폭적인 수가 인상방안이 필요함.

(2) 요구사항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가를 현실화
- 생활임금 수준의 활동보조인 임금을 보장

세부정책과제 6. 활동지원 인정점수 평가체계 개편

(1) 현황

-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에 국한됨. 수급자는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활동지원등급(1~4등급)을 구분하여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에 따른 차별과, 인정점수별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의 차등 두 가지의 불합리적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 개별적인 활동지원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조사항목 및 인정점수 산정방법으로 신체 중심적 평가인 인정조사 내용과 현행 ADL(일상생활동작), IADL(수단적 일상생활동작)위주의 인정조사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주거특성 또는 사회참여 정도 등 사회적 환경까지 내용을 넓힌 것이라고는 하나 인정조사 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급여량이 정해져 있고 서비스 종류도 3가지로 선택에 한계가 있음.
- 현 인정조사 항목은 여전히 장애인 이용자의 필요욕구 보다는 의료적 기준과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 시간과 서비스 유형이 개인의 활동지원 필요성에 따라 인정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서비스 선택권은 여전히 배제되어 서비스가 계획되고 제공되고 있음.
- 인정등급 판정을 위한 기본 조사 항목은 총3개 영역,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일상생활동작(ADL)영역(7항목: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잠자리에서자세 바꾸기, 옮겨 앉기, 걷기, 화장실 사용하기),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영역(8항목: 전화사용하기, 물건사기, 식사준비, 집안일, 빨래하기, 약 챙겨먹기, 금전관리,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장애특성고려영역(5항목: 휠체어 사용, 청각, 시각, 인지, 정신 기능)등으로 구성되어 있음(국민연금공단, 2014). 그러나, 현행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음.

〈표〉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조사항목 및 인정점수

구분	현행	점수 배점
일상생활동작영역	옷갈아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잡자리에서 자세 바꾸기, 옮겨앉기, 걷기, 화장실 사용하기	260점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	전화사용하기, 물건사기, 식사준비, 집안일, 빨래하기, 약 챙겨먹기, 금전관리,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125점
장애특성 고려영역	휠체어사용, 청각기능, 시각기능, 인지기능, 정신기능	60점
사회환경 고려영역	사회활동참여, 위험상황대처능력, 장애인보조기구 사용능력, 단어나 문장을 보고 이해하기	25점
총점		470점

- 인정조사에 대한 의의 신청 절차 또한 구조적으로 장애인이 이견이나 불만을 해결하는 구제 기관이 서비스 지급결정을 내린 기관과 동일해 구제 심사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근본 취지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체장애 위주로 구성된 인정조사 항목개선, 지적 및 발달장애 대상의 인정조사 항목필요, 신장, 정신, 간질 장애인 등 장애 전 영역 포함되도록 인정 조사와 기준변경 필요하며, 특정 장애와 개인별 욕구 및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인정조사 개편이 필요함.

(2) 요구사항

- 이용자 개인별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 활동지원 인정조사 전면 개정

3. 장애인연금 확대

세부 정책요구안

- 1 ☐☐☐☐☐ ☐☐ ☐☐ 확대
- 2 ☐☐ ☐☐☐ 확대

세부정책과제 1.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확대

(1) 현황

-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 장애등급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1,2급 장애인과 중복3급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수급대상자는 35만1천명. 전체 등록장애인 중 14%에만 해당되는 보편성이 결여된 소득보장 제도.
- 2009년 기준 OECD 국가의 장애인가구 평균 상대빈곤율은 12.9%인데 반해 한국의 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은 33.1%에 달함. 2011년 기준 OECD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 지출 비율은 1.79%이지만 한국의 장애인복지 현금급여 지출 비율은 0.40%임.
- 전체가구의 상대적 빈곤율과 비교해도 장애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배 이상을 보이고 있음. 2014년 기준 전체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8.9%인데 반해 장애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1.5%에 달함.
- 장애등급기준으로 인한 대상제한은 정부의 예산절감을 위한 임의의 기준에 불과함.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한다는 목적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제도의 취지와도 결맞지 않는 것임.

- 2008년 기준 한국의 장애급여 수급율은 1.6%로서 OECD 회원국 평균인 5.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2) 요구사항

-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에서 장애등급제한 폐지.
- 단기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성격의 부가급여는 소득하위 70% 기준을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소득기준 폐지.

세부정책과제 2 연금 급여액 확대

(1) 현황

- 2015년 기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최대 202,600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부가급여의 경우 최대 8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음.
- 2014년 기준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중증장애인(1~3급)의 경우 215,900원, 경증장애인(4~6급)의 경우 120,500원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성격의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경증장애인의 대한 장애수당 역시 1/3 수준에 불과함.
- 주요 선진국의 비기여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와 비교해보았을 때 한국의 평균소득대비 장애인연금의 비중은 6.3%로 비교대상 국가의 1/4에 불과함.

〈표〉 주요 선진국의 비기여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 비교

구분	기초연금		조건부 기초연금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제도명	Gruppensjon (uførepensjon)	Wet arbeidsongeschiktheidsvoorziening jonggehandicapten (Wajong)	Grantiersättning (sjuk-och aktivitetsersättning)	Työkyvyttömyyseläke		
장애 기준	근로능력손상 50% 이상	17세 전에 발생한 장애로 25%이상의 근로능력손상	최소 25%이상 근로능력손상	적합직종에서의 영구적 근로무능력		
자산 조사	종류	안함	기여연금소득 (장애인)	기여연금소득 (장애인)		
	범위					
급여 수준	지급액	6,601크로나 (1,292천원)	1,446.60유로 (2,109천원)	983유로 (1,433천원)	608.63유로 (887천원)	
	평균 소득 대비	18.0%	25.8%	16.9%	20.0%	
재원	조세+연기금	조세	조세	조세		
구분	사회연금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제도명	Fortidspension	Disability Allowance, Blind Person's pension	Pensione d'invalidità civile(assegno mensile di assistenza)	障害期初年金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장애 기준	어떤 종류의 유급고용에 종사할 수 없을 만큼 영구적인 근로능력상실	적합직종에서의 근로불가능(등록시각 장애인)	최소 74% 이상의 장애율	20세전 장애발생자로서 1, 2급	1, 2 및 3급 중복	
자산 조사	종류	소득+재산 (장애인, 배우자)	소득 (장애인)	소득 (장애인, 배우자)	소득+재산 (장애인, 배우자)	
	범위					
급여 수준	지급액	17,075크로나 (3,337천원)	752유로 (1,096천원)	278.1유로 (405천원)	88천엔 (1,052천원)	200천원
	평균 소득 대비	50.8%	24.0%	13.5%	19.8%	6.3%
재원	조세	조세	조세+연기금	연기금	조세	

[출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별 적용가능성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 요구사항

- 기초급여액을 최소 평균임금소득대비 10% 이상 비중으로 인상.
- 부가급여액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수준으로 인상.

4.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세부 정책요구안

- 1 폐지
- 2 연장
- 3 확대
- 4 실질화
- 5 인상
- 6 도입
- 7 2~3 확대
- 8 직무개발
- 9 마련

현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16년 1월에 발표한 2015년 4/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에 따르면 구인수와 구직자수는 2014년 4/4분기에 비해 20.9%, 17.5%가 증가하였지만, 취업자수는 전년 동분기에 비해 19.1%나 감소했다.
-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2015년 12월에 발표한 「2015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률은 전년 39.6%에서 37.7%로 1.9%포인트 감소했고, 실업률은 6.6%에서 7.9%로 1.3%포인트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37%에서 34.8%로 2.2%포인트 감소했다. 동보고서의 장애정도별, 성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중증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4%, 실업률 9.1%, 고용률 12.8%로 열악하다. 실업률로만 따져보면 중증남성장애인이 12%로 가장 높다.

- 그리고 장애인임금노동자 중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이유 중 “전일제로 일자리를 원해도 구할 수 없어서”라고 대답한 장애인이 24.3%로나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장애인임금노동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비율이 27.7%이고, 49만원 이하도 14.3%로나 차지하고 있다.

세부정책과제 ①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1) 현황

- 현행법상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고용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의 효력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따라서 법을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고용주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2105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월평균 임금은 3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적용제외 인간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의 임금 지급 기준마저 전무한 상태이다. 좁은 노동시장, 높은 실업률, 열악한 근로환경과 상식 이하의 임금에 시달리는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장애인들을 더욱 빈곤하게 만든다.

(2) 요구사항

- 장애유형이나 직종에 상관없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

세부정책과제 ② 장애인고용장려금 최저임금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1) 현황

- 장애인노동자의 직업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의무고용률 2.7%를 초과한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중증 남성장애인이 근무한 기간이 만 5년을 초과한 경우나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나 지원금이 40만원이고, 중증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근무한 기간이 만 5년 초과한 경우나 입

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나 지원금이 60만이다. 대기업에 취업하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취업하게 되는 중소기업임을 고려한다면 중소기업 자체의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황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수준은 미미하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장애인노동자의 임금이 고용장려금에 의존할 경우가 크다.

(2) 요구사항

-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수준을 최저임금으로의 인상과 지급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세부정책과제 ③ 근로지원인서비스 시간 및 예산 확대

(1) 현황

-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취업한 직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핵심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근로지원서비스는 현행 제도에서는 월 100시간 이내에서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근로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자부담이 시간당 3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하루 4시간, 월 100시간으로 환산하면 자부담은 30,000원이다.
- 먼저 월 100시간은 하루 4시간에 불과하다. 보통 하루 근무를 8시간을 계산하면 4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하루 최소 6시간은 확보되어야 안정적인 근로지원이 가능하다.
- 또한 자부담 300원을 폐지 해야 한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에게 자부담은 근로지원서비스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

(2) 요구사항

- 근로지원인서비스 월 150시간으로 확대, 자부담 폐지

세부정책과제 ④ 지원고용제도의 실질화

(1) 현황

- 취업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 직무지도원의 도움을 받아 구인업체에서 3-7주간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취업 전 제도이다. 훈련 기간 동안 사업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직무지도, 직장동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지원, 상담 등 중증장애인 훈련생들의 안정된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원고용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 훈련생에게 대한 훈련수당,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사업장에 배치하는 직무지도원에 대한 직무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해서 결정·공고하게 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전무하다.

(2) 요구사항

- 훈련수당, 보조금, 직무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세부정책과제 ⑤ 장애인의무고용률 인상

(1) 현황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고용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미 준수 시에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2016년을 기준,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의무고용비율은 3%이다. 고용노동부가 예고한 바에 따르면 2018년에는 3.2%로 되어 있다. 그리고 민간사업주와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의무고용률은 2.7%이다. 또한 의무고용 미 준수 시 기관과 민간기업이 내야 하는 고용부담금은 부담기초액 757,000원이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260,270원, 1/4미만 고용 시에는 984,100원, 1/4이상 1/2미만은 908,400원, 1/2이상 3/4미만은 832,700원으로 되어 있다.

(2) 요구사항

- 의무고용률 - 공공기관(5%) / 민간기업(3.5%)

- 고용부담금 - 부담기초액(1,260,270원),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1,763,540원), 1/4미만 고용 시(1,487,370원), 1/4이상 1/2미만(1,400,670원), 1/2이상 3/4미만(1,335,970원)으로 인상

세부정책과제 ⑥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도입

(1) 현황

-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란 중증장애인 친화적인 영역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비영리 민간부문에서 매해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정 규모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급여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5년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인턴제를 통해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2개소에 중증장애인인턴들이 채용되어 9개월간 근무하는 공공고용제 모델을 안착시켰다.

(2) 요구사항

- 현재 서울시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전국 13개 광역시도로 확대하고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장애인복지관,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민간부분으로 확대

세부정책과제 ⑦ 중증장애인 인턴제 기간 2~3년 확대

(1) 현황

-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중증장애인인턴제의 경우 인턴기간이 1년미만으로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진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진행하는 중증장애인인턴제의 경우 인턴기간이 6개월이며 그뒤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임. 중증장애인의 경우 6개월~1년간의 단기간으로 업무습득이 어려우며, 인턴기간이 종료되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턴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다수임. 업체에서는 인턴기간이 좀 더 늘어나 업무를 모두 습득한다면 채용하고 싶으나 짧은 기간동안 교육 및 평가로 채용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커 채용을 꺼린다고 함. 중증장애인이 업무습득이 이루어지려면 최소 2~3년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용업체에서의 답변.

(2) 요구사항

- 중증장애인인턴제 기간을 확대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함.

세부정책과제 ⑧ 뇌병변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직무개발

(1) 현황

- 2015년 장애인통계(한국장애인고용공단)를 살펴보면 장애인 경제활동상태를 장애유형별로 비교했을 시 안면장애 52.5%, 지체장애 43.7%, 간장애 40.4%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호흡기장애 14.1%, 정신장애 11.9% 뇌병변장애인 10%로 장애유형별 취업취약계층이 존재한다.
- 2015년 장애인통계(한국장애인고용공단)를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 의사는 있으나 채용하지 못했던 주된 이유로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부족, 직무를 찾지 못해서”가 42.5%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해서” 부분이 30.6%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위가 있다면 채용을 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 70%가 넘는다는 의미이다. 취업률이 낮은 장애군부터 직무를 개발하여 점차적으로 장애유형 별 맞춤형 직무를 개발 및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 고용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요구사항

- 취업취약계층 장애유형을 중점으로 직무 개발 및 맞춤형 교육 진행.

세부정책과제 ⑨ 공공기관 내 장애인의무고용 확대 및 강제이행 대책 마련

(1) 현황

- 현재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 미준수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작년 2015 국감 자료 중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2개의 공공기관중 27개 기관이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고용률이 2%미만 기관도 있다고 발표했다.

-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의무고용률 미달 공공기관의 경우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의무를 면피하고자 하고 있다.

(2) 요구사항

- 공공기관에서 먼저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시 고용부담금 납부 및 더 강제적인 이행 방법으로 장애인 채용을 유도.

5. 장애인 주거권 정책 강화

세부 정책요구안

- 1 ☐☐☐☐☐☐ 확대
- 2 ☐☐☐☐☐☐ ☐☐ 확대
- 3 ☐☐☐☐☐ ☐☐☐☐ ☐☐☐☐ ☐☐ ☐ 제도화
- 4 ☐☐☐☐☐☐☐☐☐ ☐☐ ☐ 제도화
- 5 ☐☐☐ 장애인(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 지원주거()☐☐ 시행
- 6 ☐☐☐☐☐☐☐☐☐☐ ☐☐ ☐☐☐ ☐☐ ☐ ☐☐☐ ☐☐☐☐ ☐☐ ☐☐ 수립
- 7 ☐☐☐☐ ☐☐☐ ☐☐☐ ☐☐☐☐ ☐ ☐☐☐☐

세부정책과제 1. 공공임대주택 확대

(1) 현황 및 요구사항

-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주요 공공정책 중 주택정책은 가장 기본이며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가장 기본적인 방법임. 전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은 이상, 주택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주택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삶의 질은 개선될 수 없음
-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의 원칙을 통해 해당 당사국은 적절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로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장애인권리협약」 제 28조)

- 공공임대주택 물량확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은 5.5%에 불과함. 이는 주요 선진국 덴마크, 네델란드는 20%이상, 프랑스, 영국은 11~20%, 독일, 벨기에, 뉴질랜드 6~10%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중임(2011년 OECD주택관련보고서)
- 장애인은 낮은 소득, 편의시설 부재, 장애차별 등 안정적인 주거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장애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수준으로 전폭적으로 확대시킴과 동시에 장애인을 우선순위 선정으로 실질적 주택공급확대가 유일한 해결책임.

세부정책과제 2. 장애인주거비 지원 확대

(1) 현황 및 요구사항

- 2009년 장애인거주실태조사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 비중(19.2%)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주거비 지출은 19만원으로 주거비가 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에 달해 일반가구(8.9%)에 비해 부담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출금 상환 및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생필품을 줄일 정도라고 답변한 비중(21.1%)이 일반가구 응답비율(7.4%)의 3배에 달하는 심각한 현실이며, 주거비 보조(38.5%)에 대한 욕구가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 현재 주택임대형태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월 임대료의 부담감이 증대되는 추세임. 2015년 7월부터는 개별급여로 주거급여가 시행되고 있으나. 보장수준이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인정액 제도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주거급여 대상의 확대 및 주거비 현실화가 절실한 시점임

(2013년 저소득 주거실태조사 결과)

-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비수급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총 10,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는 1인가구(68.6%), 노인가구(58.5%), 장애인가구(21.4%)의 비율이 높았다. 장애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저소득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은 7.8년으로 일반가구 12.5년에 비해 짧게 나타나 일반가구에 비해 주거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무주택기간도 일반가구는 16.2%인 반면, 저

소득가구는 21.4%로 높게 나타났다. 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7.2%인 일반가구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37.3%로 높게 나타났다.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득대비 생활비 및 주거관리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주거개선의 여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보조를 받는 경우,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64.0%가 임대료에 활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가구에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주택정책은 ‘주거급여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서비스 확대’, ‘전세자금 대출 확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정책과제 3.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확대 및 제도화

(1) 현황 및 요구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권고(2013. 11. 7) 중 세부권고로 장애인의 주거권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법」 제5조의2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주택제공 사업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
- 장애인 전세주택제공 사업은 서울특별시에서 1996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¹⁰⁾을 보건복지부와 공동사업으로 시행 되었으나 1997년 서울시사업으로 변형되어 우리나라 유일의 전세주택제공사업임.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사업은 전세주택 보증금(최대 8,500만원)을 무상으로 최장 6년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총 543가구를 지원함.
- 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의 전국적 확대는 전세조차도 못 구하고 있는 장애인들뿐만이 아닌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장애주거권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필수적인제도임.
- 따라서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제도화가 절실함.

세부정책과제 4.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 및 제도화

(1) 현황 및 요구사항

-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현재 살고 있는 집 구조에 대해 느끼는 편리성을 비교했을 때 ‘매

10) 서울시 2015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추진계획

- 우 편리하다.'고 답한 경우가 전국 평균 21.2%로 에 불과하며, 특히 지체장애 및 중추신경계 손상 장애자들은 적응을 위해 주택을 개보수할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드러남.
-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 및 제도화의 필요성 2009년 장애인거주실태조사의 주택유형에서 명확히 드러남.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47.4%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단독주택의 특성상 장애인의 이동 및 편의성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비주거용 건물*(1.5%) 및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1.1%) 비율은 2.6%에 달하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일반가구가 19.2%인 반면, 장애인가구의 경우 24.2%로 높게 나타나 이동 및 편의가 아닌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필요성을 나타냄.
 -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집 구조에 대해 느끼는 편리성에 대해 '매우 편리하다.'고 답한 경우는 21.2%로 에 불과함.
 -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 및 제도화를 통한 장애인권과 삶의 질 향상이 절실함.

세부정책과제 5. 정신적 장애인(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주거(supported housing) 정책 시행

(1) 현황 및 요구사항

-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약 3만명의 장애인 중 7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며(김성희 외, 2014), 정신요양시설과 정신병원에 수용된 정신장애인도 8만명에 이르고 있음. 우리나라의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주거 정책은 주로 수용형 집단시설과 병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곳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하지만, 도가니로 유명해진 광주인화원, 사회복지사의 날려차기로 공분을 자아낸 남원 평화의 집, 강압이나 과도한 약물투여로 의심되어 의문사를 남긴 인천 해바라기, 대구 희망원 등 수많은 시설내 인권침해 사건들이 더 이상 정신적 장애인의 주거모델로 기능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¹¹⁾.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여년 이상 동안 탈시설 운동이 전개되어 왔으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대안적인 주거 모델 개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박숙경, 2016).
- 영국의 경우 2003년에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Supporting People Programme)을 도입하면서 주거와 각종 서비스(보건, 사회복지서비스, 보호관찰 등 7개 부문)의 재원을 합쳐서 지원주택이라

11) 김기룡 외,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모델 개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2016.

는 통합적 주거서비스를 설계함.

- 미국의 경우 2010년 ‘Frank Melville Supportive Housing Investment Act’가 제정되어 기존의 Section 811 프로그램이 개정됨으로써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에게 특화된 서포티브 하우스(Supportive Housing)이 더욱 강화되었음. Section 811의 서포티브 하우스 프로그램은 저소득과 극빈층의 성인 장애인에게 영구적인 주택 임대보조금을 지급하고 주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자립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서포티브 하우스 프로그램에 따른 자립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개발하는 비영리 사업자에게 무이자 현금 선불로 지원하고(40년 거치까지 가능), 사업자는 이 예산을 사용하여 자립주택, 콘도미니엄 등 장애인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여 장애인에게 저렴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운영하고 있음. 전체 임차비용과 장애인의 한 달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비용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 따라서, 독립적인 주거의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개인독립생활가정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 방식의 주거서비스가 필요함. 지원주택은 기존 모델과 달리 정신적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통제에 기반하고, 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서비스의 형태로, 주택계약을 당사자가 직접 체결하고, 개인별주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주거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함.
- 지원주택 정책은 기존의 집단수용과 격리방식의 복지모델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발달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으며, 장애가족이 지고 있는 과도한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제개정과 더불어 정신적장애인의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거점센터와 개인별주거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추진할 인력이 요구됨.

세부정책과제 6. 장애인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이행력 강화 및 장애인 주거지원 국가계획 수립

(1) 현황 및 요구사항

-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최근까지 주택정책에서도 배제되고 있었음. 1980년대 후반부터 공공 임대주택에 장애인분양 순위가 시행되었으며,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주거분야가 포함되고,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주거실태조사가 실시됨. 2012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해 2015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두 번째 실시함. 각 제도마다 보충적 형태로 장애인주거복지정책 접근을 했을 뿐, 장애인주거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은 전무함.

- 장애인 주거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함. 2013년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18.0%는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로 나타났으며, 이중 영구임대 거주 가구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비율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러나 장애인 입주 자격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으로 입주 한 경우가 대다수임.
- 2009년 장애인주거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주거현실의 참혹함을 드러내고 있음.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인 가구 비중이 71.2%에 달하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4.2%로의 심각한 상황임. 또한, 대출금 상환 및 임대료 부담이 생필품을 줄일 정도라고 답변한 비중 (21.1%)도 일반가구 응답비율(7.4%)의 3배에 달하는 현실임.
- 이는 장애인 주거정책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주거정책에서 장애인의 위치는 주거취약계층의 일부로서 파편적인 제도개선사업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냄.
- 따라서 장애인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장애인 주거정책 국가계획 수립이 필수적임.

세부정책과제 7. 관련부처 협의체 구성과 전담부서 및 인력배치

(1) 현황 및 요구사항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장애인 주거정책을 위해 관련 부처간 공조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지만,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는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에 장애인주거를 담당하는 전담부서 및 인력배치를 통해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주거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를 추진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 함. 장애인을 위한 주택 정보망을 구축하고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한 주거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의제별 과제. 장애인 사회권 보장

6. 장애인 이동권 보장

세부 정책요구안

1.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2. 장애인 이동권 보장 100% 도입
3. 시외버스, 고속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4.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5.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국비, 지원

세부정책과제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

(1) 요구사항

- 세부정책과제 ②~⑤을 담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

세부정책과제 2. 모든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 저상버스 100% 도입

(1) 현황

- 시내 저상버스는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07~’11) 기간 동안 전국시내버스의

31.5% 도입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13.9% 도입에 그쳤으며, 2013년 말 기준으로 16.4%에 불과함.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2~'16)에서는 목표치를 낮추어 2016년까지 41.5% 도입을 계획하였으나 이 역시도 달성하지 못 함.

[표] 시내 저상버스 연차별 도입계획과 실제 도입 비교('06~' 11)

(단위: 대,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획	대수	592	304	624	2,240	2,685	2,685
	누적보급율	2.0	3.1	5.2	13.0	22.2	31.5
실적	대수	669	327	509	977	846	689
	누적보급율	2.2	3.4	5.1	8.6	11.5	13.9

[표] 시내 저상버스 연차별 도입계획과 실제 도입 비교('11~' 16)

(단위: 대,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획	대수	3,899 (누적분)	903	1,412	1,847	2,412	3,020
	누적보급율	12.0	14.8	19.1	24.7	32.2	41.5
실적	대수		821	618	629	649(계획)	
	누적보급율		14.3	16.4	18.7	20.7(계획)	?

- 현재 시내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 정부는 스스로가 정한 5개년 계획상의 도입계획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음. 현재의 법률은 시행령에서 저상버스 도입기준¹²⁾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버스운송사업자의 면허 우선순위와 관련된 조항일 뿐임. 지난 10년여 간의 시내 저상버스 도입 결과가 증명하듯이 현재의 법률 조항만으로는 도입 이행을 강제하기가 어렵기에 보다 강제성이 있는 조항이 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차량 제한에 따른 대폐차 문제 있어서도 정부의 국비지원 없이는 저상버스로의 교체가 아닌 일반버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만 함.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201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보고서 '제6장 저상버스 운영실태 및 이용활

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에 특별시와 광역시는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1/2, 그 외 시와 군은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1/3.

성화 방안'에서 지적하고 있음.

- 시내 저상버스는 교통약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중에 하나이며,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의 최소 기준이어야 함. 그 기준을 이행해나가기 위해서 시행령과 정부의 5개년 계획으로 명시하는 것이 아닌, 연한에 따른 버스 대폐차 교체 모두를 저상버스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로 서울시는 2002년부터 서울시내버스를 경유에서 천연가스(CNG)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국비와 매칭펀드로 진행하였으며, 2014년 4월에 100%의 전체 시내버스(누적 8,750대/운행대수 7,485대)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였음.

(2) 요구사항

-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의 차량 연한에 따른 대폐차를 저상버스를 교체하라.

세부정책과제 3.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 저상버스 도입 및 접근권 보장

(1) 현황

- 현행법에는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조항 등을 통해 시외·고속버스를 포함한 노선버스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내 노선버스로만 한정되어 도입되어왔고 이로 인해 지역간 이동이나 생활동선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시외·고속버스 및 마을버스의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함.

(2) 요구사항

-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접근권을 보장하라.

세부정책과제 4. 특별교통수단 정의 및 도입기준 개정

(1) 현황

-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회피하기 위해 장애인이동봉사차량이나 임차택시 등을 특별교통수단으로 허위보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고 실태조사도 하고 있지 않음. 이는 정부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근본적으로 방기하는 것으로서, 즉각적인 시정이 요구됨.

- 2010년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되어, 특별교통수단 법정 의무도입대수 기준이 1급 및 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로 변경되었음. 기존의 전체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한 것 보다,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변경이라 할 수 있지만, 200명당 1대라는 기준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임의의 기준일 뿐임. 현재 서울과 경남 등 법정 도입대수를 달성한 지역에서도 장애인의 대기 시간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

(2) 요구사항

- 특별교통수단의 정의 및 대수 산정기준에 대하여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탑승장비가 설치된 차량으로 명확히 규정.
- 특별교통수단 도입기준을 1급 및 2급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로 개정

세부정책과제 5.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국비, 도비 지원

(1) 현황

- 현행 법률에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이 시장, 군수의 책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도입과 운영이 극히 저조한 상황임.
- 또한 지자체 별로 각기 상이한 운영방식 등으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간 이동 등은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법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도지사의 책임을 묻는 장애인들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상남도와 경기도 등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와 도비와 시비 메칭 등의 개선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

(2) 요구사항

- 법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에 도비와 국비 지원 근거를 명시.
- 특별교통수단의 도차원의 도입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 운영을 하도록 지원.

7.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

세부 정책요구안

- 1 ☐☐☐☐ ☐☐ ☐ ☐☐☐☐☐ ☐☐ ☐☐☐ 부여
- 2 ☐☐☐☐☐☐ ☐☐☐☐☐☐ ☐☐ ☐☐☐☐ ☐☐ 개정
- 3 ☐☐☐☐ ☐☐☐ ☐☐☐ ☐☐ ☐☐

※ 정책요구개요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정, 2008년 시행되면서 사회적으로 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왔다. 그리고 2017년 장애인당사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사회적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10년이라는 시간속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현실적 반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제정 10년간의 법의 실효적 효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현재 사회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어 장애인의 생활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세부정책과제 1. 구제조치 강화 및 처벌조항에 대한 강제력 부여

(1) 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당시 차별 전반을 규정하는 법제정에 대한 경제계 등의 반발로 법의 많은 부분이 실제 처벌과 벌칙으로 이어지기 어렵게 규정되어 있음.

- 장애인차별에 대한 구제조치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하며 진정에 대한 시정권고를 통해 이루어짐. 그러나, 시정권고는 강제성과 법적 규제가 없는 권고조치일 뿐이며 이런 상황에서 시정권고를 통한 실제 차별구제는 가해자의 판단과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임.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무부의 구제조치인 ‘시정명령’의 경우 권고가 아닌 명령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동안 단 두건의 ‘시정명령’만이 내려진 상황으로 현재 거의 사문화되어가는 조항임.
- ‘시정명령’의 경우 시정권고에 대하여 피진정인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진정인 또는 처분을 내린 인권위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모두가 실질적인 시행과 적용에 대하여 무관심한 상황.
- 법원의 임시조치와 차별구제청구소송의 경우, 현재 재판부가 장애인차별 사안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는 기존의 익숙한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또한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는 변호사 선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차별피해자인 장애인당사자들이 스스로 도움없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
- 차별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과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악의적 차별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준으로 처벌할 수 없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상 구제조치 및 처벌에 대한 주요 규정〉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2) 요구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법원 등의 장애인차별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방향의 법개정
-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자체를 처벌받을 수 있는 벌칙조항에 대한 개정
- 제43조 시정명령 조치에 대한 범위 확대와 세부적 적용을 위한 개정
- 제49조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규정 필요, 모든 차별행위로 차별행위

에 대한 범위 확대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의 법개정

세부정책과제 2.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 추가 및 세부규정을 담은 법 개정

(1) 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당사자의 실제 차별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서 법의 기초를 구성.
- 언어적 소통과 표현이 용이한 지체장애와 시각장애인의 경우 필요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법 안에 담아낼 수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자신의 차별사례에 대한 증언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에 대한 내용은 미흡
- 하지만, 현재 장애인차별상담기관의 상담사례 통계결과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관련 사건 중 발달장애와 정신장애에 대한 사건의 비중이 높은 비율을 차지
- 이에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정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기반 마련.
- 발달장애인법은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로 발달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규정하고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 필요

(2) 요구사항

- 제2장 차별금지 내용 중 제1절 고용, 제2절 교육, 제3절 재화용역, 제4절 사법행정 등 분야별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세부내용을 담아내는 규정 필요
-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생활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부규정 및 처벌을 위한 법기반 필요

세부정책과제 3.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률 개정

(1) 현황

-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사회환경과 10년이 지난 현재 사회 정서적 물리적 환경

은 많이 변화한 상황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구의 종류안에 현재 사용이 보편화되어있는 보장구의 종류는 규정되지 않음으로 현실적인 보장구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 발생
- 정보통신기기의 발전으로 현재 웹사이트에서의 접근성만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으로는 모바일 앱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에서의 접근성을 강제하기 어려움
- 장애인의 교육과 취업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공무원시험 등 다양한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는 장애인의 수 확대, 관련 자격시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장애유형에 맞게 세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자격증 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적용에 어려움 발생.

(2) 요구사항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 중 물리적 편의에 대한 세부규정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장구의 종류를 확대 규정 (예: 광학스캐너, ACC 의사소통기기 등)
- 웹사이트에서의 접근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통신기기에서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
- 공무원 시험을 비롯한 각종 자격증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위한 강력한 법 근거 마련

8. 학령기 장애인 교육권 보장

세부 정책요구안

1. ▣▣▣▣ ▣▣▣▣ ▣▣ 개선
2. ▣▣▣▣ 내실화
3. ▣▣ ▣▣▣▣▣▣▣▣ ▣▣▣ 강화
4. ▣▣▣▣ ▣▣ ▣▣ 개편
5. ▣▣▣▣ ▣▣▣▣ ▣▣ ▣▣ ▣▣▣▣ ▣▣ 구축

제안 취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 후 10여년이 지났으나, 유치원 의무교육 수혜율 30%, 장애학생의 취업률 40% 등 전반적인 교육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65%(일반 초등학교 91%), 230개 시·군·구 중 특수학교 미설치 지역 100개 등 특수교육 지원 여건도 열악한 실정임.
-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것처럼, 우리 나라의 통합교육이 물리적 통합에만 그치고 있으며, 교육과정적 또는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진정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한편,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예산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27,016천원이지만, 장애성인 1인당 연간 평균 장애인평생교육 예산은 1,780원에 불과(교육부, 2016). '16년 6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법률 시행에 필요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이 추진되어야 함

세부정책과제 1. 장애아동 특수교육 여건 개선

- 특수교육 예산 확대
-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2016년 현재 65% 수준) 및 정규직 교사 채용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학급 배치 방식을 폐지하고,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보조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마다 개별적으로 인력 및 지원 시간 배정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학교에 배치
-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의료, 복지, 상담 등의 지원 강화
- 미래 핵심역량을 고려한 장애학생 교육과정 전면 개편(특수교육 교육과정 전면 개편)
-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지원 환경 격차 해소

세부정책과제 2. 통합교육 내실화

- 통합교육 원칙의 (재)천명 및 실질적인 통합교육의 실현,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실질적인 통합 추진
-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대한 특수교사 지원,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에 대한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 통합학급에서의 교수-학습 지원 다양화 등 시행
- 대규모 특수학교의 해체 및 소규모 특수학교 확충. 기존의 특수학교를 학교급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기능을 세분화하고, 유휴 공간을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적극 활용. 일반학교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유형별 및 학교급별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지원

세부정책과제 3.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책무성 강화

- 학교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립 특수학교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사립학교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를 개정하고, 기존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사립 특수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한 회계 감사 실시 및 책무성 확립을 위한 제반 교육 실시

세부정책과제 4. 특수교사 양성 과정 개편

- 장애유형별 특수교사 자격 및 양성 제도 도입 방안 마련
- 기존의 특수교사 양성 체제를 “4+2 체제(사범대학 내 특수교육전문대학원 설치)” 또는 “대학

원 중심의 양성과정(일반교육(학사)+특수교육(석사))”로 전환 추진

- 일반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여, 일반교육에 대한 전문성 증대 및 일반교육 환경에서의 특수교육에 대한 주도권(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정책과제 5. 장애학생 학부모를 위한 종합 정보 지원 체계 구축

- 전국장애인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학부모를 위한 장애아동 양육 정보, 진학 정보, 각종 특수교육 정보, 개별화교육계획 참여 안내 등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장애아동 학부모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가정 내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 학교 내 자녀의 교육권에 대한 권리 옹호 기술 등 학부모 대상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세부정책과제 6. 국가 수준의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저변 확대 및 기반 구축을 위한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
- 지역 사회 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보급을 위한 거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성인이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일상생활훈련, 사회성훈련 및 의사소통훈련 등 기존의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별도의 발달장애인평생특수교육기관 설치·운영
- 일반 평생교육시설 내 장애인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보조기기 보급 및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제공
- 중도·중복 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을 위한 방문형, 소그룹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온라인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야학 양성화,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학력인증 프로그램 운영

9.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

세부 정책요구안

1. ☐☐☐☐☐☐☐ ☐☐☐☐ ☐ 예산확보
2. ☐☐☐☐☐☐☐☐☐ 운영비, 프로그램비, 인건비, ☐☐☐☐☐ ☐☐ ☐☐ ☐☐
3. ☐☐ ☐☐☐ ☐☐☐ ☐☐☐☐ ☐☐ 강화

정책요구개요

- 2016년 5월 29일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음. 평생교육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에 근거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평생교육법 제20조의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변경하여 이관되었고 예산지원근거 역시 ‘지원해야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축소되어 변경됨.
- 이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이후 진행될 시행령, 시행규칙제정과 국가장애인평생교육홍센터 설치, 장애인평생교육 관련예산확보에 관한 장애인평생교육 정책 및 예산 수립에 있어 관계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논의를 요청 하였고, 2월말부터 평생학습정책과의 관할(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민간단체 포함) TFT이 제안되었음.

세부정책과제 1. 장애인평생교육 정책수립 및 예산확보

(1) 현황

- 특수교육법 제34조에 근거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평생교육법 제20 의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변경하여 이관되었고 예산지원근거 역시 ‘지원해야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

다로 축소되어 변경됨에 따라 성인장애인의 학력지원을 위한 유일한 법적시설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변경되었고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명기되지 않을 경우 성인장애인의 저학력현상을 해결한 교육시설이 사라지는 상황.

- 장애인의 학력 수준은 국민교육수준에 비해 낮아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필요하며, 중졸이하 약 56.6%, 무학 11.6% ('14, 보건복지부) 의 전국 장애인 250만여 명 중 140만여 명이 중졸이하학력이라는 심각한 학력소외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장애인평생교육예산에서의 특수교육예산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평생교육예산으로 나뉠 경우 1인당 연간 지원예산이 1,780원에 불과함.)

〈표 1〉 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예산,특수교육 예산 및 전체 교육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2009 (A)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B)	B-A	연평균 증가액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C)	1,863	2,772	3,076	4,274	3,571	2,926	3,699	4,435	2,572	367
특수교육 예산	1,545,753	1,667,641	1,966,284	2,138,496	2,245,781	2,153,125	2,227,638	2,376,062	830,309	118,615
전체 교육 예산 (D)	38,698,867	38,595,975	41,618,722	45,752,654	49,643,947	49,986,533	50,325,564	51,225,453	12,526,586	1,789,512
전체교육예산중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비율 (C/D)×100	0.005%	0.007%	0.007%	0.009%	0.007%	0.006%	0.007%	0.009%		

자료: 김기룡, 교육부(2009 ~ 2016). 연도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재구성

(2) 요구사항

- 장애인평생교육예산은 각 지역 교육청에서 자체편성하는 예산과 국립특수교육원의 연구예산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것이 현재의 현실. 140만명이상의 장애인이 중졸이하학력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정책도 부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평생교육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만 함.

세부정책과제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프로그램비, 인건비, 공간지원에 대한 기준 마련-
 중앙정부, 지자체, 시도교육청간의 명확한 권한과 역할 정립

(1) 현황

- 전국장애인아학협의회 소속 28개 단체 예산지원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지자체의 1개소당 평균 연간지원예산은 25백만원이었으며, 시도교육청의 지원예산은 37백만원이었음. <표2>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역별로 지원예산의 불균형이 심하고 지원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향후 지원예산기준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지역간 장애성인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

〈표〉 전국장애인아학협회 소속단체 예산지원현황

(단위 : 천원, m²)

사도	기관명	프로그램비 및 운영비		면적	공간지원	
		지자체	교육청		임대료지원	보증금지원
서울	노들장애인아학	-	300,000	330m ²	110,000	-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35,400	-	123.37m ²	-	-
부산	장애인참배움터	-	50,000	316.61m ²	-	100,000
대구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50,000	100,000	286.9m ²	-	50,000
인천	작은자야학	39,150	-	214.5m ²	-	200,000
	민들레장애인야학	38,580	-	193.76m ²	-	180,000
	바래미야학	39,305	-	249.5m ²	-	200,000
광주	디딤돌장애인야학	-	80,000	350m ²	-	-
	실로암장애인평생교육원	-	80,000	272.92m ²	-	-
대전	모두사랑장애인야학	60,000	30,000	462.8m ²	-	-
	대전장애인배움터 한울야학	-	-	82.5m ²	-	-
울산	다울성인장애인학교	56,000	30,000	224.70m ²	108,400	-
	동그라미장애인학교	-	30,000	163.5m ²	-	-
경기	솔모루장애인학교	25,000	30,000	144.5m ²	-	-
	에바다장애인평생학습학교	25,000	30,000	132.23m ²	-	-
	나무를심는학교	25,000	30,000	73.6m ²	-	-
	화성장애인야학	30,000	30,000	112m ²	-	-
	오산성인장애인씨앗학교	25,000	30,000	165.28m ²	-	-
	두드림장애인학교	25,000	30,000	330.57m ²	-	-
	함께배움장애인야학	25,000	30,000	67.86m ²	-	-
	수원새벽빛장애인야간학교	25,000	30,000	153m ²	-	-

사도	기관명	프로그램비 및 운영비		면적	공간지원	
		지자체	교육청		임대료지원	보증금지원
강원	반딧불장애인야학	14,000	21,840	268m ²	-	300,000
	아우름장애인야학	14,000	-	132.23m ²	-	-
	강릉하슬라장애인야학	23,320	20,000	82m ²	-	-
충북	다사리장애인야학	80,000	40,000	293m ²	-	90,000
	평생열린학교	10,000	18,000	198m ²	-	-
	해뜨는학교	14,100	-	65m ²	-	-
전북	사)다운복지센터 부설 다운학교	33,000	7,000	86.79m ²	-	-
계	28개소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출처: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2016). 내부자료.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소속단체의 1개소당 평균면적은 199m²(약60평형)으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최소면적인 49.5m²교실 1실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특성과 교육수준을 고려한 수업진행을 위해서는 훨씬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있음.
- 그러나 28개소중 임대료를 지원하는 곳은 2곳, 보증금을 지원하는 곳은 7곳에 불과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야학의 안정적인 공간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임. 학교형태의 장애인교육시설에 명확한 역할과 기능, 기준을 정립하며 공간에 대한 지원이 함께 병행되어야만 할 것임.
- 지자체별로 시·도가 지원할 것 인지 교육청이 지원할 것인지 부처간의 책임회피와 교육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예산지원기준과 발전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매우 상이함.

(2) 요구사항

- 평생교육법 하위법령제정과정에 대한 민관합동 논의테이블을 마련해야 함. 특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제20조의 2의 경우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편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원체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와 어떻게 확대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 시행령을 통해 기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지원하던 학력보완교육외의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지역사회 내에 확대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양질의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할 것임.

- 더불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형태를 하나로 국한하지 말고 학교형태, 종합형태, 장애유형에 따른 특화형, 프로그램형 등으로 시설을 다양화하여 성인장애인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한 교육욕구에 따라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세부정책과제 3. 국가 수준의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강화

(1) 요구사항

-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저변 확대 및 기반 구축을 위한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
- 지역 사회 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보급을 위한 거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성인이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일상생활훈련, 사회성훈련 및 의사소통훈련 등 기존의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별도의 발달장애인평생특수교육기관 설치·운영
- 일반 평생교육시설 내 장애인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보조기기 보급 및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제공
- 중도·중복 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을 위한 방문형, 소그룹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온라인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야학 양성화,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학력인증 프로그램 운영

10. 장애인 건강권 보장

세부 정책요구안

- 1 ☐☐☐☐☐☐ ☐☐ 강화
- 2 ☐☐☐☐☐☐☐ ☐☐☐ 증대
- 3 ☐☐☐☐ ☐☐☐☐ ☐☐☐ 확대
- 4 ☐☐☐☐ ☐☐☐☐ ☐☐ 확대

세부정책과제 1. 장애인주치의 제도 강화

(1) 현황

- 보건복지부가 2014년에 발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큰 건강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보고됐다. 장애인인 인구 251만 명 중 77.2%가 만성질환자이다. 이에 비해 건강검진 수진율은 비장애 국민은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은 여전히 낮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장애인의 건강은 개인적인 요인보다 사회·환경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개인의 의지와 노력, 단순한 보건의료 자원의 배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전문의료진과 의료검진기구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간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형편이다. 장애인들의 이동, 소득, 건강정보의 어려움과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2차 장애발생 위험이 높은 상태에 처해 있다.

(2) 요구사항

- 6개월에 한 차례 담당 주치의를 통해 장애관련 의학적 처치 및 수술이 필요한지, 보장구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활서비스는 필요한지를 평가해 문제가 있으면 이를 바로잡아 주는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강화 되어야 한다.

세부정책과제 2. 장애인건강검진 수혜율 증대

(1) 현황

- 보건복지부가 2014년에 발표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무에 있어 질환을 앓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5.8%로 나타나 장애와 관련이 있거나 장애 외에 다양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심장, 뇌전증, 호흡기, 신장, 뇌졸중, 호흡기, 신장 장루·요루장애와 함께 정신장애, 뇌병변장애의 경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다. 그리고 2015년 11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다빈도상병 1위는 등통증(목, 허리 통증 포함)으로 20순위 내 8개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전체 인구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 이환율이 높다. 또한 본태성 고혈압(2순위), 만성 신장질환(3순위),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5순위), 뇌경색증(16순위) 등으로 전체 인구에 비해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이 상위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건강검진 수검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속해져 있는 건강보험 형태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대상은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건강검진 기회가 대단히 낮은 형편이다.

(2) 요구사항

- 건강검진 수혜 대상을 만 20세로 낮추어야 한다.

세부정책과제 3.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확대

(1)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에 펴낸,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에 관한 연구」 결과, 자신의 신장을 모르는 장애인은 15.9%이고, 몸무게를 모르는 장애인은 1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후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한 사보험에 '가입한 것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56.8%이다. 응답자 중 52.9%가 정기적 진료나 치료 검사를 '받아본 바 없다'고 답했다. 또한 병원 이용 및 진료를 받는데 가장 불편한 점은 의사들의 장애특성 이해 및 배려 부족이 34.8%로 경제적 부담 33% 보다 높았다. 그리고 병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이 26.8%, 장애인 전문 재활 병원 및 전문의사 부족이 19.6%,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의 어려움이 14.1%, 마지막으로 긴 대기시간이 12.7% 등이었다. 이러한 통계를 놓고 보면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은 여전히 높은 장벽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요구사항

- 병원의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설치, 의료진들에 대한 장애 이해 교육과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11.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보장

세부 정책요구안

- 1 ☐☐☐☐ ☐☐ ☐☐ ☐☐ ☐☐☐ ☐☐☐ ☐☐ ☐☐ ☐☐☐ 개정
- 2 ☐☐☐☐☐☐☐ ☐☐ ☐☐ ☐ ☐☐ ☐☐ 편성
- 3 ☐☐☐ ☐☐☐☐☐ ☐☐☐ ☐☐ ☐☐☐ ☐☐☐☐ 의무화
- 4 ☐☐☐ ☐ ☐☐☐☐ ☐☐☐ ☐☐☐ 확대
- 5 시·☐☐ ☐☐☐☐☐☐ ☐☐☐☐ ☐☐ 마련
- 6 여행,☐☐☐☐ ☐☐ ☐☐☐ ☐☐☐☐ 의무화

※ 정책요구개요

- 정보의 홍수속에서 점점 더 많은 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미흡,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보에서의 소외는 바로 일상 생활에서의 전반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면서 장애인의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이 모든 정보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적인 정책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확대 되면서 사회전반에 문화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장애인의 참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배제되고 있으며, 사회 변화속에서도 여전히 장애인의 삶을 의식주를 해결하는 시혜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그 외의 문화향유와 여가생활에 대한 권리는 근본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권은 이제 너무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로 장애인에게도 반드시 보장될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정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부정책과제 1. 정보통신 제품 등에 대한 접근권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1) 현황

-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통신 제품 개발 및 보편화
- 전화, 컴퓨터 등 정보통신을 위한 기기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개발은 미비
- 외국의 경우 정보통신 관련 제품 개발시 시청각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이에 국내 업계 역시 수출용 제품의 경우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한 제품으로 개발 제작.
- 국내 시각장애인의 대부분이 외국의 이동통신 제품을 사용
- 업체는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보다는 비장애인 중심의 제품개발에만 집중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조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2) 요구사항

- 정보통신 제품 판매시 장애인 접근성 미확보 제품에 대한 규제 필요.
- 모든 정보통신 제품의 경우 개발당시부터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한 제품으로 개발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물책임법, 제품안전기준법 등 제품의 개발과 제작 판매 및 관련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

세부정책과제 2.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보장 및 예산 할당 편성

(1) 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문화 예술활동의 차별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 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도록 규정
-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누구나 자신의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다수의 정책이 시행중임.

- 하지만, 인식부족으로 비장애인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 속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미비 등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활동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국가의 장애인정책 역시 의식주 중심의 기본생활보장만을 주요 기조로 삼으며, 여가생활을 위한 사회적 문화생활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요구사항

- 지자체의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위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책정 필요
- 국가의 장애인 당사자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책정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책 필요.

세부정책과제 3.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1) 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2015년 4월부터 스크린 300석 이상 영화관의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
- 국내 영화산업 2014년 기준 2조 276억원 매출
- 인구 1인당 연간 4.19회 영화관람횟수 기록 세계최고수준을 자랑
- 미국의 리갈사 등 3대 메이저급 영화사 모두 시청각장애인을 고객으로 인식하며, 자체적으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시적인 영화관람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화면해설과 자막 미제공으로 영화관람이 어려운 상황.
- 2012년 도가니 영화 개봉당시 청각장애인들의 자막설치 요구하는 집회와 1인시위 등을 통해 강력하게 문제제기.
- 문제제기 이후 한달에 2~3회 '장애인관람데이'라는 행사성 이벤트를 통해 시청각장애인에게 배리어프리 영화제공.
- 장애당사자들 장애인관람데이의 경우 영화와 시간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행사라고 문제제기 하고 있음.
- 장애인단체 등이 2016년 2월 대형극장 체인점을 상대로 영화관람권 소송 제기

(2) 요구사항

- 영화진흥법 등 관련법에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필요
- 영화배포 및 영화관 사업자에게 의무로 규정할 수 있는 법 내용 필요.

세부정책과제 4. 소극장 등 문화공간 장애인접근성 확대

(1) 현황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극장 등 문화시설에 대하여 가능한 출입구가 있는지만을 규정.
- 장애인당사자가 문화공간을 찾았을 경우, 공연장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있지만, 실제 장애인을 위한 좌석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단이나 공연장 구석 등 관람권을 확보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
- 문화공간에 대한 장애인접근성 미확보로 인해 선택권 침해.

(2) 요구사항

- 문화공간 등에 대한 장애인접근성 규정 강화
- 소극장의 경우 장애인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필요
-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에 대한 문화공간 관계자들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세부정책과제 ⑤ 시·청각 중증장애인의 정보접근 환경 마련

(1) 현황

- 21세기 정보화 시대 속에서 각종 정보통신 및 미디어의 발달로 매일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
- 방송매체 등 미디어와 인터넷, 개인휴대전화 어플 등을 통한 정보제공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수화 정보, 중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접근 방식이 확보되지 않아 다수의 장애인의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있음.

- 기술로 발달로 제작되고 있는 가전제품 등 각종 제품의 접근성에 있어서도 장애인당사자 소외되는 경우 다수 발생.
- 예를 들면 제품 등의 터치식 작동방식 증가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제품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려움.

(2) 요구사항

- 모든 사회적인 정보제공시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해 동등한 정보접근권 확보를 규정 의무화
- 제품 설계 및 제작시 장애인의 기기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 의무화
- 정보통신 관련 법에 장애인의 동일한 정보 수신을 위한 의무조항 필요
- 정보제공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장애인정보접근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기준제시를 위한 법제정 필요

12. 국공립대학 대학원 장애학과 설치

세부 정책요구안

- 1 ☐☐☐☐☐ ☐☐☐ ☐☐☐☐ ☐☐ ☐☐ 운영
- 2 ☐☐☐ ☐☐ ☐☐ 수립

(1) 현황

- 1980년대 이후 여성 관련 교양과목 개설, 여성학과 신설, 여성 관련 전문연구소 설립 등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성장해 온 ‘여성학’의 발전과정은 현재 선진 장애학자 및 장애인단체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대학 내 독자적인 학문분과로서의 ‘장애학(Disability Studies)’ 프로그램의 신설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애학 연구센터’의 설립 필요성의 주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줌.
- ‘여성학’의 제도화가 여성운동의 성장이라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의 필요성을 대학에서 인식하게 된 것에 연유한 것처럼, ‘장애학’이 대학 내 새로운 학문적 분과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은 장애인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회적 차별 구조에 대한 학문적 분석뿐만 아니라 장애학적 관점에 근거한 장애인의 전문능력 개발, 장애 인지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장애 관련 이슈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의 모색 등 현재 한국사회에서 폭증하는 사회적·학문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절실함.
- ‘여성학’이 성차별 구조에 대한 사회의식 확대, 기존 학문 영역에서 여성문제를 다루어왔던 방식과 이해에 대하여 여성학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새로운 실천적·정책적 과제들을 제기함으로써 여성의 권익 향상과 성 평등적 사회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학’은 기존의 교육과 연구의 근저에 놓여 있던 장애 편견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장애를 둘러싼 이슈들을 장애인 소수만의 문제로 혹은 협소한 의료·재활·복지의 영역으로 간주해 왔던 것에서 벗어나 모든 학문 영역에 적용되는 교육, 사고방식, 정서들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등 장애 이슈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학문임.

-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장애 이슈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분리되어 행해져 왔던 학문 연구의 경향을 넘어서 학제간의 소통을 도모하고 장애학적 관점에 기초한 새로운 인식론과 방법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대학 내 프로그램과 장애학 연구센터의 설립 및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라 할 수 있음.

※ 장애 연구 관련 해외 동향

① 장애학 연구 동향

- 1980년대부터 ‘장애학’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대학 내 독자적 학문분과로 성장해 옴.
- 해외 장애학 발전의 공통적인 특성 중의 하나는 장애 이슈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전통적인 의료·재활 패러다임 혹은 협소한 임상복지실천에서 벗어나 인문학적·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하여 장애 이슈에 대한 다층적인 분석을 꾀하고 있다는 점임.
- 이러한 접근 방식의 변화는 장애 이슈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발생한다는 복잡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과 그것이 발생하는 이유가 단순히 신체적·인지적 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역사적 환경 등에 의해서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임.
- 따라서 해외의 장애학적 연구 활동은 본질상 다학문적·학제간 연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② 해외 장애학 연구 프로그램의 주요 역할

- 장애학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학술활동을 강화
- 장애학 강의 개발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장애학적 관점에 대한 의식 제고
- 장애 현안에 대한 콜로키엄, 학술심포지엄, 강연회 등 지속적인 학술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감.
- 장애학적 관점에 근거한 장애인의 전문능력 개발 및 역량강화에 기여
- 기존의 재활학, 사회복지학,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내의 다학문적·학

제간 연구를 촉진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장애 이슈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지평을 넓힘

- 장애 관련 연구자와 장애인 당사자 그룹간의 상호 협력 촉진
- 신진 장애학자(박사 후 과정 등)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 지원

(2) 요구사항

- 서울시립대 대학원 장애학과 시범 설치 운영
- 국·공립대 대학원내 장애학과 단계적 확대 설치

13.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세부 정책요구안

- 1 ☐☐☐☐☐☐☐ ☐☐☐☐☐☐ **비준**
- 2 ☐☐☐☐☐☐☐☐☐ ☐☐☐☐☐ ☐☐ ☐☐☐☐☐ ☐☐ ☐☐☐☐☐ **마련**

(1) 현황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은 유엔 당사국들이 모여서 전세계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마련한 국제적인 조약으로서 현재 전세계 153개 국가가 비준하였으며, 한국은 지난 2008년 12월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 2009년 1월부터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현재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협약 제35조에 의거하여 한국 정부는 국내이행에 대한 최초 국가보고서를 2011년 6월에 제출하였으며, 한국장애포럼(Korean Disability Forum)을 비롯하여 국내외 시민사회 단체는 정부의 이행 상황에 위원회의 정확한 심의를 위하여 국가보고서에 대한 분석, 추가정보 제공 및 장애인의 인권신장을 위한 제언을 담은 민간보고서를 제출함.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14년 9월 17일과 18일, 제12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및 시민사회계의 민간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정부와의 대화를 통하여 심의를 하였으며, 9월 30일에 심의 결과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하여 정부에 대한 권고 사항을 마련함.
- 위원회는 전체 66개 조항에 국내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행 장애등급제의 폐해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해 재검토하고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를 비롯하여 위원회의 직

권조사를 가능케 하는 선택의정서 비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 문제,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 현행 성년후견제의 대체의사결정 기능으로부터 조력 의사결정 기능으로의 개선 등 조항별 세부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함.

- 협약은 제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 제3항에서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감독 절차에 충분히 개입하고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을 대변하는 단체를 포함하지 않음. 이에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들과 그들을 대변하는 기관이 본 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데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 조항을 채택하도록 권고함.
- 한국장애포럼은 지난 2014년 10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용익 의원을 비롯하여 전체 11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하여 조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5일자로 홈페이지 자료실에 <장애인 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심사 최종견해> 국문번역본을 게재한 것 이외에는 최종견해 이행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발표하지 않음.
-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협약 이행을 주관하는 정부 내의 전담부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시민사회단체의 모니터링에 대한 수렴을 위한 공식적인 기구 및 시스템이 부재함.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와 같이 국내 장애인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협약의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이행 감독에 대한 참여를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한국 정부는 지난 2012년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 ESCAP)의 고위급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면서 제3차 아태장애인10년(2013-2022)의 채택과 협약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한 행동전략인 ‘인천전략’수립 및 이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옴. 현재 정부는 인천전략기금 운영사무국을 국내에 두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인의 권리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정부가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 실현 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국내 및 대외 정책 수행에서의 일관되지 않은 태도로서 국내 장애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임.
- 따라서 정부가 협약 이행에 대한 근본적인 의지가 있다면 협약 이행에 대한 국내 구제조치를 모두 활용하고도 개인의 권리 침해가 구제되지 않았다고 느낄 경우에 위원회에 개인이 직접

청원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함.

(2) 요구사항

①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 선택의정서는 정부가 협약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국내법의 모든 절차를 이용하였지만 장애인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았을 경우,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대변하는 개인이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접 상소하여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구제절차인 개인청원 제도임.
-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협약의 모든 조항에 대해 유보 없는 완전한 비준과 개인청원 제도인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거쳐 유엔에 비준을 통보할 것.

②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 수립

-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국 정부는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정부 공무원과 국회의원, 해당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교육계, 의료계 및 법조계의 전문가, 그리고, 언론인 등의 전문가 그룹들에게 전달하여 이를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 또한 정부는 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범국민적인 소통을 통하여 수립할 것.

14. 중증장애인 의사소통권리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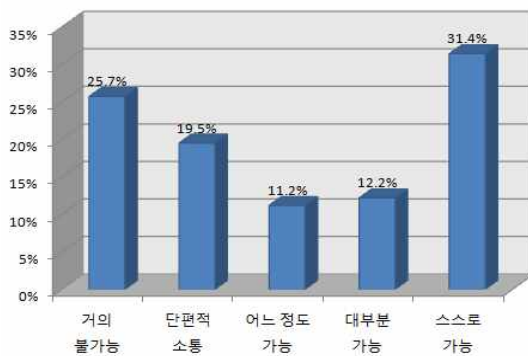
세부 정책요구안

- 1 AAC ☐☐☐ ☐☐ 제도화
- 2 AAC ☐☐☐ ☐☐ ☐☐ 확충
- 3 ☐☐☐☐☐ ☐ ☐☐☐ ☐☐☐ AAC ☐☐☐☐ 구축
- 4 ☐☐ ☐ ☐☐☐ ☐☐☐ AAC ☐☐ ☐☐☐☐☐☐ 마련

세부정책과제 ① AAC 지원을 위한 제도화

(1) 현황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 303명의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조사에서 25.7%가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정바텔지수 점수에 따라 알아본 결과 중증 집단이 의사소통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병변장애인 지원서비스 현황분석 및 지원정책 방향 연구/2015.12 , 박희찬>

- 소통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겪는 뇌병변장애인은 약 45.2%(단편적 소통가능 포함)로 약 절반 이상이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5년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서비스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의 자료에서는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잠재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약 313,690명의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뇌병변장애인은 최대 약 10,860명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지적과 자폐를 동반한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교육, 지역사회 고립, 노동시장의 접근성이 떨어져 자립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 요구사항

- 복지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국내현황에서 기타 장애영역(발달 장애인법 제10조 - 의사소통지원)에서만 의사소통권리가 인정되는 추세이다. 이에 중증 중복 장애로 인해 다양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행정적 불편함과 예산의 증액 때문에 의사소통권리는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뇌병변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확보 및 표현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세부정책과제 ② AAC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1) 현황

- 현재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지원은 의사소통보조기기의 보급만 하는 대표적인 행정적 처리의 보여주기 식의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

보조기구 지원제도 <국가>

구분	대상	지급품목	지원
정보화 기본법	1. 등록 장애인 2. 기초생활수급권자 3. 기타경제, 지역, 신체, 사회적 제약으로 정보이용이 어려운자	특수키보드 등 총 78개 품목	·기기구입 가격80% 지원, ·본인부담 20%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 재활법	1. 등록장애인 중 근로자 2. 직업훈련생	점자정보단말기 등 총 300여 중 (맞춤 제외)	·무상임대 - 고가의 상용 보조공학기기 1년 단위로 무상임대 - 저가(100만원 미만)의 상용 및 맞춤 보조공학기구

(2) 요구사항

-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인 제약이 따르는 중증의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에 따른 보조기기적용(발마우스, 스위치, 스피커, 거치대)이 우선시 되어야 구어를 대체할 보완대체의사소통(AAC)사용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진단과 평가 → 보조기기 적용 → 교육 → 사후관리 형식의 전문적인 의사소통권리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전문가 집단의 팀 접근(보조공학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에 따른 인력배정과 기기 보급부터 이 후 사후 관리 까지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개별화된 정부적 차원에서의 지원체계의 틀을 구축할 예산의 편성을 요구한다.

세부정책과제 ③ 장애유형별 및 연령별 맞춤형 AAC 지원체계 구축

(1) 현황

- 중도·중복장애인의 경우 생애 주기별로 근력의 약화, 관절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호흡 문제 뿐 아니라 안면 근육의 부적절한 움직임이 발성을 어렵게 한다.(박은혜, 김정연,2013). 이에 구어(발성)를 대체할 수 있는 보완대체의사소통보조기기(AAC)가 대두되었다. 하지만 뇌병변 장애의 특성상 신체의 부자유를 겪고 있는 대상자가 많으며, 이에 따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입출력 보조기기(스위치, 터치스크린, 화면키보드, 스피커)의 사용이 다른 장애 유형보다 다양하여 개인의 기능에 따른 보조기기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
- 또한 이러한 보조기기의 적용이 어린 시절부터 이뤄져야 보완대체의사소통에 대한 사회적인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고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참여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 2011년 뇌병변장애인실태 및 욕구 조사에선 응답자의 14.2%만이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알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여전히 교육기관과 가정에서 필요한 대상자에게 AAC 보급 및 지원은 미미한 상태이다.

(2) 요구사항

- 보완대체의사소통(AAC)에 대해 수용적이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와 비장애인의 태도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Beukelman and Mirenda, 2005). 생애주기별로 사용자에게 적용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지원 서비스

가 제공 되어서 장애 진단시기부터 장애특성, 의사소통특성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연령별로 사용하는 용어는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들이 각기 다르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육에 맞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성년기의 경우에는 직업에 맞는 용어들을 사용한다. 이에 연령별로 맞는 교육들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세부정책과제 ④ 교사 및 공무원 임용시 AAC 이수 교육프로그램 마련

(1) 현황

- 현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을 활용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
- 대민업무창구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경우에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이용하는 경우 없음.

(2) 요구사항

- 교사 및 공무원 임용시험시 AAC(보완대체의사소통)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교육이수 프로그램 마련

의제별 과제. 장애특성별 권리 보장 및 전달체계 강화

15. 발달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지원 체계 강화

세부 정책요구안

- 1 ▣▣▣▣▣▣ ▣▣ ▣▣ ▣▣▣ ▣▣ ▣▣▣ **제공**
- 2 ▣▣▣ ▣▣ ▣▣▣ ▣▣▣▣ ▣ ▣ ▣▣ ▣▣ ▣▣ ▣▣ **구축**
- 3 ▣▣▣▣▣▣▣ ▣▣ ▣▣▣▣▣▣▣ ▣▣▣▣ ▣▣▣▣ ▣ ▣▣ ▣▣ ▣▣ **구축**
- 4 ▣▣▣▣▣ ▣▣▣▣ ▣▣ ▣▣ **구축**
- 5 ▣▣▣▣▣ ▣▣▣▣ ▣▣ **구축**
- 6 ▣▣▣▣▣▣ ▣▣ ▣▣▣▣ ▣▣ ▣ ▣▣▣▣▣ **도입**
- 7 ▣▣▣ ▣▣▣▣▣▣ ▣▣ ▣▣ ▣▣ **구축**

제안 취지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및 인지적 제한이 있는 뇌성마비와 같은 발달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하고 인지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며 인권 침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왔음(보건복지부, 2012; 조홍식, 박희찬, 이준영, 강상경 등, 2012).
- 발달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의사소통기술 및 사회성기술의 부족으로 학대나 폭력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김유리, 2010).
- 발달장애인은 고용률, 월평균 소득수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이용률 등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김성희 외, 2014),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복지 및 인권 증진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11월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고용, 평생교육, 의료·재활, 소득, 주거, 낮 시간 활동·돌봄 등 발달장애인을 위

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인권 침해를 당한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등의 서비스가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이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발달장애인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후속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세부정책과제 ①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전면 실시
-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을 위한 서비스조정자 배치 확대

세부정책과제 ② 보호가 아닌 활동을 중심으로 한 낮 시간 활동 지원 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보장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유형 확대
-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 제공 시간 확대를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 개정

세부정책과제 ③ 선훈련후배치가 아닌 선배치후훈련 중심의 직업훈련 및 고용 지원 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을 사업체에 우선 배치하고, 사업체 현장에서 직접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직종 개발, 사업체 개발, 사업체 현장 내의 직업훈련(인턴십) 지원, 일자리 연계 및 취업 후 적응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 설립

세부정책과제 ④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체계 구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및 제21조를 개정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에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구’를 포함시킴으로써,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구를 모든 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발달장애인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된 정책 자료 개발 및 보급 사업 추진
-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구 및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 방안 마련

세부정책과제 ⑤ 발달장애인 행동지원 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의 자해 및 공격행동 등의 도전적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광

- 역사치단체별로 1개소 이상 우선 설치·운영하고, 기초자치단체별로 연차적 확충
- 행동지원 전문가 양성 및 자격 관리 체계 구축

세부정책과제 ⑥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및 신탁서비스 도입

- 발달장애인의 미래 생활 대비를 위한 저축성 예·적금 및 연금보험 등 자산형성 사업 추진
- 부모 사후에 발달장애자녀에게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특화 신탁제도 도입

세부정책과제 ⑦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모든 복지 서비스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력 및 보조 기기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의료적 지원, 돌봄 지원, 주거 생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제공의 원칙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16. 장애아동 및 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

세부 정책요구안

- ① ▣▣▣▣▣▣▣▣ ▣▣ 강화
- ② ▣▣▣ ▣▣▣▣▣ 강화

제안 취지

- 모든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이 필요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재활치료)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하여야 함
- 장애아동의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숙원과제로서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와 통합교육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함
- 더불어, 계속되는 장애인 가족의 자살과 가족해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장애의 조기발견 시기부터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정책과제 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

- 서비스 이용자격을 현행 6개 장애유형(지적, 자폐성, 뇌병변, 언어, 시각, 청각)에서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
- 서비스 이용을 위한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을 폐지하고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이용자격을 부여하는 보다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판정체계 수립
- 서비스 지원금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현실화
- 발달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판정에 따라 성인기에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대학교 중심의 치료사 인력양성 체계 구축

세부정책과제 ② 장애인 가족지원 강화

- 취약계층 장애 아동 가정 및 위탁가정 지원 대폭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장애영유아 부모에게 종합적인 의료, 복지, 교육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조정자 배치
- 뇌병변장애 등 중복·중증 장애인의 가족을 위해 호이스트 설치 및 주택개조수리 지원
- 부모 동료상담 지원 체계 구축
- 언제 어디서나 장애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온라인 양육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충 및 예산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보장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유형 확대
-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 제공 시간 확대를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 개정

17.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대책 구축

세부 정책요구안

- 1 각 시도 1개소씩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 2 시도별 뇌병변장애인 지원센터 마련
- 3 시도별 뇌병변장애인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지원 마련

(1) 현황

- 2014년말 현재 등록된 뇌병변장애인의 수는 251,543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10.1%를 차지
- 뇌병변장애는 뇌졸중, 외상성뇌손상, 뇌성마비, 파킨슨증후군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뇌병변장애인은 신체적, 지적, 언어적, 감각적, 장애를 수반하는 중증중복장애인. 이러한 복합성 때문에 서비스제공을 기피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전문성이 결여됨.
-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와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돌봄, 치료, 의사소통기구, 보조공학기구, 자립생활, 인권 등의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새로운 서비스의 형태가 필요함.
-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각 연령대별로 가족의 고통과 부담도 각기 다르다. 영유아, 아동기에는 양육 및 치료등의 어려움, 성인기에는 치료 및 중도장애의 수용에 따른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른 가족지원 대책이 필요함.

(2) 요구사항

-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적절한 치료나 지원서비스 부족으로 장애가 더 심해지거나 2차 장애가 수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강과 통증이 관리되어야 함. 아울러 의사소통기기 제공과 훈련, 주간보호와 돌봄 등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따라서 물리적 공간적 접근이 보장될 16개 광역시도에 1개 이상의 전문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함.

- 중증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아동기에는 부모님들의 돌봄과 양육에 많은 부담을 겪고 있고, 장애아동에게 집중되어 돌봄이 필요한 시기의 형제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중도 장애의 경우 산재처리나, 보험 관련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고, 장애의 경험이 가족들에게 심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상담, 법률, 경제적 지원 등 가족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자립생활지원센터, 활동보조인서비스, 장애아동 바우처 등에서 중증뇌병변장애인이 소외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서비스모델 개발, 기관 간 연계 및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건강권확보,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 장애연금 인상 등에서 뇌병변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18.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

세부 정책요구안

- 1 ☐☐☐☐☐☐ ☐☐☐☐ ☐☐☐☐☐☐ ☐☐
- 2 ☐☐☐☐☐☐ ☐☐☐☐ ☐☐☐☐ ☐☐ ☐☐ ☐☐ ☐☐ **추진**
- 3 ☐☐☐☐ ☐☐ ☐ ☐☐☐☐☐☐☐ **수립**, ☐☐ ☐☐☐☐ ☐☐ ☐☐ ☐☐

세부정책과제 1. 정신보건법의 비인권적 강제입원제도 혁신

(1) 현황

- 정신보건법 제정된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신의료기관 병상이 폭발적 증가해왔음. 1980년 (2,238병상)→1996년(21,513병상)→2013년(83,001병상)로 37배 증가함(2014 서울정신보건지표).
- 심각한 것은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중 10명중 7명 이상은 강제입원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임. 한국의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비자의입원)비율은 2013년 기준 73.5%에 달하나 유럽의 경우에는 3~30%에 불과함(2014 서울정신보건지표).
- 강제입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는 ‘가족 의 동의와 해당기관 정신과전문의 허락’ 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 문제는 한 사람의 인신을 강제로 구속하는 일을 외부의 공적인 관정 절차 없이 가족 등 주변 이해당사자의 판단으로 언제나 손쉽게 정신장애인을 감금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임. 정신장애가 없어도 재산 등 분쟁해결의 수단으로도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할 만큼 반인권적인 제도임.
- 장기입원문제도 심각한 수준임. 정신의료기관 평균입원기간은 한국이 2013년 평균 176여일에 달하는 것에 비해, OECD 국가 대부분은 10일에서 35일 수준에 불과함(2014 서울정신보건지표).

※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강제입원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에 관한 심리가 진행 중임. 2016년 4월 중 공개변론이 예정되어 있음.

(2) 요구사항

- 현행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비인권적인 강제입원제도 혁신안 마련(입원요건·입원절차·입원기간·입원심사주체의 공공성 강화)
- 일반병원 응급의료체계 강화
- 일시안정화기관의 설치·운영
- 호송단 인권침해 근절

세부정책과제 2. 지역사회중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복지 입법 추진

(1) 현황

- 현재 수많은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지원체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입원’ 상태에 놓여 있음. 10명 중 3~5명은 정신과적 증상 때문이 아니라 ‘살 곳이 없어’ 입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지역사회지지체계의 취약성을 알 수 있는 퇴원 후 30일 이내에 입원하는 재입원율은 19.4%로 OECD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상황임.(2014 서울정신보건지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이 56.3%(전체장애평균 16.9%, 15개 장애유형 중 상위2위)에 이를 정도로 타 장애유형에 비해서도 매우 취약한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하지만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생활지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입은 역기능적인 상황임. 2013년 정신병원에 지급된 의료급여 진료비는 1조1,020여억원이며, 그 중 입원진료비가 9,445여억원으로 8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반면 중앙정부의 지역사회기반 정신보건사업 예산은 400여억원에 불과한 상황임. 그마저 자살 등 예방사업이나 대규모 수용을 위한 정신요양 시설에 대한 예산임.
- 지역사회생활지원의 법적 토대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장애인을 배제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은 무기력한 상황임. 장애인복지법은 제15조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음. 정신보건법은 입퇴원 절차 중심의 의료법적 성격이며, 구체적인 지역사회생활을 위한 지원의 내용은 턱없이 미비함.

(2) 요구사항

- 거주, 심리지원 및 일상활동보조, 퇴원 및 지역사회이행지원, 평생교육, 여가·문화·체육, 직업과 소득보장, 가족지원, 자조활동 및 자조단체지원, 정책결정과정에서 당사자참여보장, 사회서비스이용권 등 포괄적인 복지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
- 지역사회 보건복지통합 모델 및 전달체계 구축
-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기능 개편 및 운영주체의 공공성 강화
-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을 정신의료기관 입원중심에서 지역사회 지원중심으로 전환

세부정책과제 3.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체계 수립,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1) 현황

-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과도한 약물치료, 폭력적인 환경과 처우, 폐쇄공간에서의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는 한 사람의 건강한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미래에 대한 절망을 심화시키는 사회적 죽음을 낳게 하고 있음. 하지만, 치료 및 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감독은 너무나 미비함.
- 현재 인권침해 논란이 끝이지 않는 것이 정신장애영역임에도 장애인 권리옹호제도(P&A) 구축에 대한 제반 논의에서 소외되어 있음.
- 또한 약 120여개의 법률에서 정신질환 관련 자격제한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부분 근거 없는 자격제한들임(정신질환 차별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2012년, 보건복지부).
- 언론, 방송 등 각종 매체에서 끊임없이 유포되는 근거 없는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책도 동반되어야 함.

(2) 요구사항

-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행동제한, 격리, 강박, 진료 및 투약, 물리적 환경, 서비스 기준 및 감독 강화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지역사회 개방성 강화 및 소규모화
- 정신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P&A)체계 수립
- 정신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자격제한 등 각종 법·제도적 차별에 대한 조사 및 개혁
- 정신장애 편견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인식개선사업의 추진

세부정책과제 1. 장애여성의 다중차별 철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 정부는 ‘장애인’이나 ‘여성’이 아닌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간의 정체성을 단일한 것으로 환원할 수 없으며 또한 장애 여성은 경제적 상황, 생애주기, 가족 형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다중차별의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장애여성의 인권현실을 변화시킬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으로 장애여성의 다양한 삶의 조건 속에서 일상적이며 반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욕, 괴롭힘, 혐오 등의 차별을 검토하고, 적극적이고 구제할 수 있는 방식을 살펴야 한다.

세부정책과제 2. 장애여성 관점의 탈시설/ 독립생활 지원정책 수립

- 2017년 1월 국회입법조사처의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수는 총 1484곳, 거주인은 3만 122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장애인 인구의 성비(6:4)를 고려했을 때 약 1만3천명의 장애여성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기존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등에서도 장애여성의 탈시설/독립생활 현황은 별도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장애여성이 독립과정에서 경험하는 젠더차별과 폭력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서 인권, 고충 상담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또한 장애여성 관점의 경제적 지원,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주거지원을 통해 탈시설/독립생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1) 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소득 기준의 수급권 기준 마련

- 2015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2.6%로 장애 남성 취업률 40.6%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여성의 대부분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족으로부터 약간의 용돈을 받아가며 생활하는 경우가 다수다. 발달장애 여성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 노동에 월 10만원 이내의 저임금으로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장애남성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률이 더욱 낮은 장애여성의 경우 경제적인 자립의 어려움은

독립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 중 하나이다. 장애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철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가구단위로 수급권이 선정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체계 안에서도 장애여성이 수급권자 되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특례로 수급권을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복잡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이 또한 장애여성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가구단위의 선정방식의 특례조항이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아닌 수급권 신청자 개인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권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일상생활지원 및 쉼터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장애여성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1~3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만6~60세까지의 연령제한이 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하여 실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거주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급여를 제외하곤 추가급여를 제공받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선정 기준인 인정조사는 환경적 상황이나 실생활의 필요도가 아닌 오로지 신체적 장애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족과 생활하는 장애여성 및 발달장애여성과 정신장애여성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독립생활을 계획하기 어렵다.
- 또한 가족내 젠더폭력으로 위기 상태인 장애여성이 임시 거처로 일반 쉼터에 입소해야할 때도 활동지원의 문제가 발생한다. 쉼터를 거주시설로 간주하여 활동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대피처로서 쉼터에 입소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다시 원가족으로 복귀하여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쉼터 등의 시설에 활동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쉼터내에서의 일상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장애여성의 주거문제

- 독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거공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시설생활인을 제외하면 공공주거서비스가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독립생활도 불가능한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공간 확보가 시급하다.

세부정책과제 3. 장애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필요

- 장애여성은 장애남성에 비해 교육수준, 취업률 등이 낮은 현황이며 이에 따라 장애여성에게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에 전국적으로 20여개소의 장애여성 어울림센터를 지정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에서부터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연계(직업훈련, 건강·의료, 법률, 취업알선 등) 및 사후관리 등 장애여성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2015년 보건복지부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예산문제를 비롯한 젠더관점의 장애여성 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장애여성계의 평가이다. 특히 기존 정책에선 장애와 젠더라는 통합 프레임으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장애여성의 사례를 어울림센터는 종합상담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7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여성계와의 협의없이 여성장애인교육사업으로 재편되어 장애여성의 삶을 지원하는 것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 앞으로 여성장애인교육사업 및 역량강화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장애여성에게 대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이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능은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을 주목하여 장애여성 역량강화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업개발이나 개별화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세부정책과제 4. 여성폭력 피해에 노출된 장애여성 피해자 지원 강화

- 장애여성은 장애로 인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발달장애여성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인지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여성은 그 장애특성상 판단력과 대처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폭력에 저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정보를 잘 모르거나 신고가 되더라도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한다.
- 장애여성 가정폭력은 가족 안에서 보호를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폭력에 노출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 공간을 탈출하기 힘들다. 그리고 탈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갈만한 쉼터나 지원기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국에서 장애여성 가정폭력상담소는 2곳, 장애여성가정폭력 쉼터는 3곳 밖에 없어 그 지원체계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여성의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활동보조를 고려하지 않아, 입소에 제한을 겪기도 한다.

- 장애여성 성폭력은 발달장애여성이 전체 피해자의 60%가 넘고, 가해자는 그 장애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하며, 최근의 추세는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만난 상대에 의한 성폭력이 다수이다.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는 전국에 27여개소가 있으며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도 10여개소가 있다. 하지만 상담이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후속지원체계가 전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컴퓨터퇴소 후 재피해가 다수 발생한다.
- 장애여성 성매매는 현재 별도의 지원체계가 없으며, 성매매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장애여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여성폭력 피해에 노출된 장애여성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를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세부정책과제 5. 장애여성에 대한 안전 재난 대책 강화

- 2015년 메스르 사태시 활동보조인의 보조를 받아야 일상생활이 유지되는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자가격리 방침으로 활동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일상의 보조가 필요한 이용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적 재난 발생시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고려한 대응 메뉴얼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현재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인법인광장은 감염병 발생을 포함한 재난상황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책임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취지의 “감염병 기본계획 및 표준매뉴얼에서의 장애인차별 손해배상 및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올해 9월 제기하였다.
- 지진, 사건사고, 감염병 등 안전과 재해 대처에 장애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 금이법 위반이며, 장애특수성이 반영된 감염병 기본계획 및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세부정책과제 6.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

- 재생산권리는 성적 행위, 임신과 출산 등 성과 재생산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된, 자유롭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자유와 관련된다. 또한 다양한 재생산 건강관련 정보, 재화, 시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 장애여성은 재생산권리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한국사회에서 1970년대 국가발전을 위한 가족계획이 국가주도로 일어나면서 피임과 불임 등을 강권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소위 생산적인 인구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장애를 가진 이들은 재생산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국가의 시책을 담아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었고, 형법상 낙태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한계가 명시되었다. 이법 14조 1항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은 장애를 가진 본인과 배우자의 재생산권리를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왔다.
-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많은 장애여성들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 정보제공, 기회의 확보, 정보와 서비스의 접근성을 박탈당한채로 살아왔다. 나이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임과 불임을 위한 시술을 강요받았으며 이는 장애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성과 재생산권리를 박탈당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배제되는 문제로 긴밀하게 이어지고 있다.
- 모자보건법 폐지 혹은 전면 개정하여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고 낙태를 전면 비범죄화해야 한다.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별 철폐가 중요하다. 기존의 공공 서비스와 정보에 장애여성이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차별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성과 재생산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에 따른 행위의 결과로 차별과 폭력, 빈곤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2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세부 정책요구안

- 1 시·군·구 5개소 1개소 설치
- 2 확대
- 3 5개소 수립

(1) 현황

- 2000년 최초로 2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운영되어 2005년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10개 센터가 정부보조금 지원되기 시작하여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센터가 확대되었음.
-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제4장 54조에 센터지원 법적근거 마련함.

장애인복지법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 센터의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정부에서는 센터지원에 대한 시행령 등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10년 이상 운영비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며 시범사업 공모사업 형태로 운영하였고, 2009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2011년부터 지원사업 내용도 장애영역별 자립생활유사사업까지 확대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공모사업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또한 동결되어 정부의 예산지원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현황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장애당사자 운동단체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출발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사업과 동료상담과 자립생활교육 등 복지서비스 전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자립생활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립생활센터의 요구들을 또 하나의 장애인단체의 단순 민원 정도로 대우하고 처리하는 경직된 사고 등은 자립생활센터의 열악함을 더욱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
- 일정기간 동안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현재 방식(이는 국비지원 기관이든 지자체 자체 지원기관이든 동일하다), 일반 복지사업 기관과의 동일한 양적 평가 등의 잣대는 자립생활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독려하기보다, 기존의 획일화된 복지 전달체계 내로 자립생활센터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 그러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전히 명확한 위상을 인정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운영조차도 안정화되지 못한 곳도 적잖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전국 200여개 이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곳은 2017년 현재 62개소에 불과하며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센터는 71개소¹³⁾가 있으나, 예산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고 있어 자립생활센터 운영 안정화를 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시작. 중앙 6천만 지방정부 9천만으로, 지난 10년 동안 1억5천만 예산 동결 상태임. 지원 개소 수는 2005년 10개소에서 2017년 62개소로 확대됨.

년도	2005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비센터개소수	4	16	17	21	25	31	56	61	61	62	62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6년 1월 현재, 전국 214개(보건복지부 통계). 이중 국비지원을 받는 곳은 62개소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시군구 단위 최소1개 이상, 장애인구수 5천명당 1개소 이상 양적확대와 운영비를 확대가 되어야 한다.

13)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실태조사연구, 2014.

○ 중앙정부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체계 5개년 계획 수립

- 자립생활센터가 생겨나고 활동한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로서 센터 육성과 지원에 대한 전략과, 종합적인 지원방안 계획을 단 한 번도 수립한 적이 없다. 정부의 자립생활센터 지원 로드맵의 부재와 무관심은 복지부의 복지사업안내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정도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 정부는 이미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자립생활센터가 사실상 현재 한국에서 유일한 탈시설 지원 기관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센터의 양적 확대와 질적 지원방안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의 자립생활센터지원과 육성에 관한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일부

(1-4-1)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능 강화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스템 구축	- 장애인자립생활지원개소수 연차별 확대 <table border="1"> <thead> <tr> <th>'13년</th> <th>'14</th> <th>'15</th> <th>'16</th> <th>'17</th> </tr> </thead> <tbody> <tr> <td>40개</td> <td>45개</td> <td>50개</td> <td>55개</td> <td>60개</td> </tr> </tbody> </table>	'13년	'14	'15	'16	'17	40개	45개	50개	55개	60개										
'13년	'14	'15	'16	'17																		
40개	45개	50개	55개	60개																		
(1-4-2)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 이용자 중심으로 시설기능 재정립 - 시설기준 개선 및 이용요건 완화 (소득수준 제한 없이 시설서비스 이용) - 시설 소규모화	-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제고 - 100인 이상 대규모시설 비율을 축소 개선 (17.8, '12년) <table border="1"> <thead> <tr> <th>'13년</th> <th>'14</th> <th>'15</th> <th>'16</th> <th>'17</th> </tr> </thead> <tbody> <tr> <td>15.6%</td> <td>14.6%</td> <td>13.8%</td> <td>13%</td> <td>12.2%</td> </tr> </tbody> </table>	'13년	'14	'15	'16	'17	15.6%	14.6%	13.8%	13%	12.2%										
'13년	'14	'15	'16	'17																		
15.6%	14.6%	13.8%	13%	12.2%																		
(1-4-3) 장애인 전세·구입 자금 및 주택개조비 지원 확대	- 장애인가구 임대금리 제공 - 구입, 전세자금 융자시 금리 우대 - 주택개조비 지원가구 확대	- 장애인 전세·구입자금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13년</th> <th>'14</th> <th>'15</th> <th>'16</th> <th>'17</th> </tr> </thead> <tbody> <tr> <td>854억원</td> <td>900억원</td> <td>950억원</td> <td>1,000억원</td> <td>1,050억원</td> </tr> </tbody> </table> - 주택개조비 지원가구 <table border="1"> <thead> <tr> <th>'13년</th> <th>'14</th> <th>'15</th> <th>'16</th> <th>'17</th> </tr> </thead> <tbody> <tr> <td>1,000가구</td> <td>1,350가구</td> <td>1,500가구</td> <td>1,750가구</td> <td>2,000가구</td> </tr> </tbody> </table>	'13년	'14	'15	'16	'17	854억원	900억원	950억원	1,000억원	1,050억원	'13년	'14	'15	'16	'17	1,000가구	1,350가구	1,500가구	1,750가구	2,000가구
'13년	'14	'15	'16	'17																		
854억원	900억원	950억원	1,000억원	1,050억원																		
'13년	'14	'15	'16	'17																		
1,000가구	1,350가구	1,500가구	1,750가구	2,000가구																		
(1-4-4)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 실시 - 장애인주택 특별(우선) 공급 지속 추진 -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 확보	- 국민주택 임대물량의 장애인 우선 공급 달성률 <table border="1"> <thead> <tr> <th>'13년</th> <th>'14</th> <th>'15</th> <th>'16</th> <th>'17</th> </tr> </thead> <tbody> <tr> <td>수도권 5%, 기타 3%</td> <td>수도권 5%, 기타 3%</td> <td>수도권 5%, 기타 3%</td> <td>수도권 5%, 기타 3%</td> <td>수도권 5%, 기타 3%</td> </tr> </tbody> </table>	'13년	'14	'15	'16	'17	수도권 5%, 기타 3%	수도권 5%, 기타 3%	수도권 5%, 기타 3%	수도권 5%, 기타 3%	수도권 5%, 기타 3%										
'13년	'14	'15	'16	'17																		
수도권 5%, 기타 3%	수도권 5%, 기타 3%	수도권 5%, 기타 3%	수도권 5%, 기타 3%	수도권 5%, 기타 3%																		

(2) 요구사항

- 시·군·구 단위 장애인인구 5천명당 1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하라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 확대하라
- 정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체계 5개년 계획 수립하라

의제별 과제.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2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세부 정책요구안

- 1 ☐☐☐ ☐☐☐☐☐☐ ☐☐ ☐☐ 중단
- 2 ☐☐☐☐☐☐☐ 제26☐ 개정

(1) 경과

- 박근혜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1년 2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 법은 이듬해 1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1월부터 전면 시행. 당시 ‘박근혜복지법’이라고도 불리었으며 박근혜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2차 TV토론을 통해 ‘한국형 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한 법임을 강조.
- ‘맞춤형 복지’와 ‘사각지대 없는 복지’등 5대 중점사항을 내세우며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였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복지정책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음. 2015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지자체 사업 조정’등을 통해 3조원 재정 절감을 골자로 하는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을 본격함으로서 이른바 ‘복지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음.
- 특히 2015년 8월 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아래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을 확정짓고 전체 지방자치단체 1,496개 약 1조원의 사업을 정비대상 사업으로 지목. 정비대상 사업의 대부분이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충적 사회보장제도였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했으며 사회복지계를 비롯한 각계의 반대가 이어졌음.
- 이 모든 것의 논의 및 결정을 담당하였던 것이 바로 ‘사회보장위원회’였으며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와 동시에 현재까지 박근혜식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던 곳이라고 할 수 있음. 사회보장위원회는 유관 부처 간 업무를 통할·조정하는 것에 더해 재원조달과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운영까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 제도'의 최종 권한까지 가지고 있음.

- 박근혜정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추진한 정책들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한국사회 사회보장제도의 절대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하는 정책. 중앙정부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통해 683억원 규모의 재정절감을 추진했고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방안'을 통해 지자체의 복지축소에 명분을 더해줬으며, 심지어 '협의·조정'에 응하지 않는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삭감'조치까지 단행하였음.
-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20대 국회 개원 이후 복지축소를 야기하고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협의·조정제도' 개정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상황.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도 사회보장위원회는 박근혜정부의 복지 기조에 따른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14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2040년대 중반에야 OECD 평균치에 도달하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논의하기도 하였음.
- '박근혜복지법'이라고 불리는 현재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과괴'법이라 할 것이며,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된 악질적인 정책들의 근거이기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 또한 2013년 이후 4년간 무려 1,130건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을 중단시키고 '불승인' 처리된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임.

(2) 현황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한 문제점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문제로 '① 서비스 대상 제한 ② 서비스양의 절대적 부족 ③ 과도한 본인부담금 ④ 전달체계 시장화로 인한 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이 이어지고 있음. 2007년 제도 도입 시기부터 장애계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으나 모두 중앙정부 예산과 연동되는 문제이기에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음.
- 장애계는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이라는 생존권적 요구를 제기해왔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음. 그러나 2017년 현재 최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은 중앙정부 기준으로 하루 약 13시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독거이거나 취약가구가 아니면 서비스 수급시간은 크게 제한됨.

-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와 절대적인 양의 부족 때문에 장애계는 중앙정부 투쟁과 함께 지방 자치단체 투쟁을 통해 지자체 활동지원 추가지원을 확대시켜 올 수밖에 없었음. 장애인활동 지원 지자체 추가지원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지원 기준과 부족한 양에 대한 ‘보충적’ 추가지원임이 명확하다고 할 것임.

‘협·조정제도 운영 부적정’으로 지목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2014년 지방선거를 거치며 장애계는 지자체장 후보자들을 상대로 중앙정부가 보장하지 못하는 장애인 활동보조 권리 보장을 요구했음. 이때 대구지역에서 2014년 하반기 현 대구광역시장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 활동보조 보장’이 중앙정부와의 협의 끝에 불수용 처리되는 일이 발생함. 이후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등 지자체 추가지원 확대가 가로막히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함.
- 이는 2014년 7월 28일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이 확정된 것과 시기상 맞닿아 있었음. 이후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제도’는 보다 강화되어 2014년 전체 81건 중 단 33건만이 ‘수용’되는 결과를 낳기도 함.
- 한편 2015년 1월부터 2개월간 감사원은 ‘재정누수 차단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복지사업 재정지원실태(복지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시행하였는데, 감사원의 감사내용 중에는 ‘신설·변경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 운영 부적정’이 언급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장애인활동지원 지자체 추가지원’이 지목되었음. 그 내용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시행일인 2013년 1월 27일 이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2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음.
- 특히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 추가사업’을 표본으로 선정, 21개 지자체를 조사하여 앞서 언급한 대구광역시는 협의·조정을 거친 이후 시행되지 않았기에 나머지 지자체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을 통보함. 또한 보건복지부와의 미협의 상태로 지자체 추가지원을 실시 중인 33개 지자체에 대해 ‘과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음.

지자체 추가지원의 축소·폐지 등 본격적인 복지축소의 진행

- 2015년 8월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방안’이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자체사업 총 230개 사업(예산액 181,365백만원)이 대상사업으로 지목되었음. 이중 활동지원 지자체 추가지원 사업은 37개 사업이었으며, 광역지자체 15곳에서

시행 중인 17개 사업과 기초지자체 20곳에서 시행 중인 20개 사업이 지목되었음.

- 아래 표는 앞서 언급한 감사원 지적 지자체 추가지원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으로 지목된 37개 사업 중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이 삭감된 지자체 목록과 예산 규모임.
- 지자체 추가지원이 완전히 폐지된 곳도 2곳이나 되며, 최종중장애인에 대해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을 이미 지원하고 있던 인천광역시는 대상자 3명에 대한 지원을 작년부터 전면 중단한 상황임.
-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된 지자체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이 동결된 지자체의 경우에도 이미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지자체 추가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역시 후퇴되고 축소된 것이라 봐도 무방함.

(3)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사항

- 현재, 제26조 협의조정 관련한 개정안이 8건, 제21조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에 관련하여 2건이 발의된 상황.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발의 총괄표〉

번호	발의일	발의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상정	주요내용
1	2016.07.18	윤소하의원등11인	2016.10.31. 소위원회부	협의조정 관련 개정
2	2016.08.02	위성곤의원등10인	2016.10.31. 소위원회부	협의조정 관련 개정
3	2016.08.16	기동민의원등23인	2016.10.31. 소위원회부	협의조정 관련 개정
4	2016.08.30	권미혁의원등12인	2016.10.31. 소위원회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개정
5	2016.09.06	전혜숙의원등11인	2016.10.31. 소위원회부	협의조정 관련 개정
6	2016.09.08	박인숙의원등10인	2016.10.31. 소위원회부	협의조정 관련 개정
7	2016.09.09	오신환의원등10인	2016.10.31. 소위원회부	협의조정 관련 개정
8	2016.10.21	김상희의원등12인	2016.10.31. 소위원회부	협의조정 관련 개정
9	2016.11.22	박주민의원등13인	2017.02.14. 소위원회부	협의조정 관련 개정
10	2017.02.02	강창일의원등10인	전체회의 미상정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개정

(4) 요구

-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추진을 중단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개정

22. 국민기초생활보장 권리 강화

세부 정책요구안

- 1 ☐☐☐☐☐ ☐☐☐☐☐ ☐☐☐ (☐☐☐☐☐ ☐ ☐☐☐☐☐☐ 개선)
- 2 ☐☐☐☐☐☐☐ ☐ 조건부과, ☐☐☐☐☐☐ ☐☐☐☐☐☐☐☐ 폐지
- 3 ☐☐☐ 권리보장

- 1999년 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처한 누구라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아무런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있다.
- 박근혜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후 2016년 5월 전체 수급자 수가 167만명으로, 개편 전 132만명에 비해 27%(35만명) 증가했다고 자찬했다. 그러나 이는 보건복지부가 개별급여 개편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던 75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2009년 156만 9천명과 400만명이 이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숫자다. 또한 교육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어 2016년에만 24만 4천명의 신규 수급자를 발굴했으나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표와 다소 거리가 먼 급여내용과 수준을 갖고 있어 이를 기초생활수급자 확대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이를 제외하면 의료급여 수급자(143만 2천)를 기준으로 볼 때 제도개편을 통해 늘어난 수급자 숫자는 11만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통한 12만명의 신규진입자에도 미달하는 숫자다. 제도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사각지대의 문제는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

세부정책과제 1.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현실화(재산기준 및 소득인정액 개선)

(1) 현황

①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현실화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은 2015년 7월 시행된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중위소득 대비 %를 따르고 있다. 맞춤형급여로 개편을 통해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급여를 제공,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목표로 도입된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개별급여 도입과 상대적 빈곤선 도입’이라는 슬로건은 ‘최저생계비 인상을 통한 선정기준/보장수준의 현실화’라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 2015년 최저생계비(제도 개편 전)와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선정기준(제도개편 후)을 비교해보면 중위소득으로 변경이후에도 선정기준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차상위 계층조차 정책대상으로 삼지 못하는 선정기준이다. 기초법 개정 이후에도 송파 세 모녀가 여전히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는 제도개편이 효과가 없었던 결정적 이유다.

		1인	2인	3인	4인	5인
2015년 6월까지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최저생계비120%(차상위)	740,737	1,261,257	1,631,625	2,001,994	2,372,364
	최대 현금급여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2015년 7월부터	중위소득 40%(의료)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중위소득 43%(주거)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최대 생계급여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② 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 소득인정액 개선

-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을 결정하는데에는 기본재산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 그리고 실제 소득이 작동한다. 문제는 기본재산공제액이 2008년 이후 바뀐적이 없으며, 가구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실제 소득이 아닌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지나치게 높으며, 실제소득이 아닌 ‘가짜 소득’마저 실제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밑줄 친 내용은 실제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큼. 확인소득의 경우 지침이 개선되었으나 재산소득은 지나치게 높은 환산율을 갖고 있으며, 부양비는 실제 부양비를 지급하는지에 대한 조사 없이 실제 소득으로 잡기 때문임.

〈기본재산 공제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근로능력자가구	5,400	3,400	2,900
근로무능력자가구	8,500	6,500	6,000
부양의무자가구	22,800	13,600	10,150

〈재산의 소득 환산율〉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수급(권)자	1.04%	4.17%	6.26%	100%
부양의무자	1.04%		4.17%	

※일반재산으로 보는 자동차 (월 4.17%로 환산하는 차)

①차령 10년 이상 1600cc이하의 자동차/ ②질병, 부상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③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 ④2000cc미만 4-6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 ⑤1600cc 미만 생업용자동차

※1~3급 장애인 소유의 2,000CC 이하의 자동차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1-3급 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 보유한 경우 산정 제외, 그 외에는 일반재산 환산율

〈주거용재산 한도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 제도의 연착륙과 최저주거보장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기본재산액은 조금씩 완화되어 왔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나 처분하여 현금화 할 수도 없는 일정 기준 이하의 집과 자동차 등이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과 재산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에서 탈락되는 것의 대안으로 도입되었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4.17%는 기본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2년 동안 소진한다는 논리로 설정되었으며,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6.26%는 재산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일반재산보다 1.5배 높게 설정되었을 뿐이다. 어떤 이론이나 논리적 설득력을 갖는다고보다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었다. 더욱이 자동차의 경우 소득환산율100%는 소득환산율의 도입 당시인 2003년도 국민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초했다. 하지만 이는 16년이 지난 현재에 시대·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도입 당시와 같은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늘리고 있다.

(2) 요구사항

- 주거급여의 경우 주거빈곤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준임대료를 상향시키고, 자기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
- 의료급여는 의료사각지대와 건강보험 체납가구 등을 포괄할 수 있을만큼 커져야 하며,
- 교육급여와 출산·장제급여의 보장수준도 현실화 되어야 한다. 현재 출산급여는 60만원, 장제급여는 75만원인 반면, 2015년 소비자 보호원에 따른 평균 장례비용은 1,200만원이다.
- 기본재산액의 현 시대·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
- 2003년 도입되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높은 수준에 고착된 소득환산율도 완화되어야 한다.

*참고: 기초연금의 기본재산액 및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56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공제: 상시근로소득에서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사업 및 재산(이자연금)소득,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 12개월 + ㉓
 ─ ㉓: (3000cc이상 혹은 4천만원 이상) 고급자동차 및 골프, 콘도, 요트 등의 회원권에 대한 가액

○ 기본재산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세부정책과제 2. 근로능력평가 및 조건부과,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 폐지

(1) 현황

① 조건부과, 강제근로 폐지

- 현행 기초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능력평가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을 통해 <의학적 평가+활동능력 평가> 실시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능력평가는 필수조건이다.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조건불이행”으로 수급권이 박탈된다.
- 기초법은 제2조에는 시민권에 기반을 둔 수급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현재 최저생계이하로 살아가고 있다면 누구든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기초법 제9조에는 근로연계의 ‘조건부 수급’조항을 두고 있어 모순적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과 자활을 지원하는 두 가지 권리적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의 자활은 권리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수급권을 운영하는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는 실제 근로능력여부나 의욕과 무관히 단순한 평가지표의 합만으로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내리고 있다. 의학적 평가 역시 단순한 현재수준의 처방만을 담고 있어, 이를 토대로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 의사들의 일반적 견해다. 억지스러운 근로능력평가를 고집하기보다 적절한 자활지원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급여

지위 확보를 통해 수급자가 일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급자의 급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로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②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폐지 즉시 철회

- 2016년 개정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에게 보장해왔던 자활장려금이 폐지되고 EITC가 도입됐다. 2016년 2월부터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주거급여를 박탈당하게 됐다. 이들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며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도 상반된다. EITC는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빈곤의 완화와 근로유인 제고가 목적이며, 자활장려금은 자활사업에 참여자가 자활급여를 제외한 기타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에서 제외되는 것을 예방하고, 자활 참여 의욕을 높이는 제도이다.

③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 폐지

-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으로 자활관련 일자리사업에 (재)배치하는 대상자 전원을 고용센터에 의뢰하게 되었다. 이는 수급권자의 자립과 자활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시장취업을 유도, 압박하는 것으로, 수급자들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수급권을 박탈당할지 모른다는 불안함에, 고용센터는 시장취업 연계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취업우선지원사업이 전국 확대 시행되며 시범사업 당시에 있던 “개인가구 여건상 당장 취업이 곤란한 자를 제외” 하며 사실상 취업가능성이 떨어지는 수급자들도 시장취업 대상으로 전략화 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¹⁴⁾에 위반한다.
-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한 종류다. 그러나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사업에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은 약화¹⁵⁾되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빈곤층의 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공공부조안에 있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낙인화, 형벌화로 수렴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15) “자활경로 설정 방식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센터로 대상자 분류권한이 이동하게 됨을 의미함. 고용센터 담당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자활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참여하는 진단회의에서 자활경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고용센터에서 수행한 취업준비도 평가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고용센터의 주도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음.”,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중 외 3명, (2015. 8)

될 수 있다.

(2) 요구사항

- 조건부과, 강제근로를 폐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 중단해야 한다.
- 자활소득공제와 자활장려금 폐지를 철회하고 조건부수급자에게 주거급여 등 추가적 급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일상복귀, 다양한 근로형태를 지원해야 한다.

세부정책과제 3. 수급자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 제도 개선

(1) 현황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신청을 하면 신청일에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신청을 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간 뒤 필요한 목록을 전달받고, 서류를 준비해 다시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수급자가 제출할 수 없을 시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을 서류미비로 보고 수급신청을 거절한다.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올 수 없는 경우에도 보장기관이 우편발송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청서류를 접수조차 하지 않는다. 이 절차에 2달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 신청을 한 이후에도 동주민센터의 초기조사, 구청의 방문조사, LH공사의 방문조사를 받아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연금공단의 활동능력평가를 요구받기도 한다. 이러한 조사를 기다리고 받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과정은 그 자체로 수급신청을 포기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낙인감을 경험하게 한다.
- 2009기초생활수급가구 실태조사¹⁶⁾에 따르면 수급신청과정에서 서류가 복잡하다는 답변이 47.4%로 가장 많았고, 수급확정 이후에도 응답자의 24%가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요지, 급여의 종류 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

16) 광정숙의원,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이 주최한 토론회(‘10.10.15)에서 발표한 실태조사이고, 조사대상은 수급가구 및 신청탈락과 중도탈락을 경험한 가구로서 일반수급가구와 조건부과수급가구를 모두 포괄하여 2009년 7월부터 2009년 8월까지 2개월에 걸쳐 수행한 것으로 빈곤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설문은 가가호호 방문 또는 지역자활센터 등을 찾아 면접 조사함. 591부 회수 중 539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됨.

난 바 있다. 또한 수급확정 이후에 발생한 수급내용 변경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도 약 50%가 변경 내역을 통보받지 못하거나 정보를 알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2014년 비수급 빈곤층 중 수급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 탈락한 사유에 대한 조사¹⁷⁾에 따르면 응답자의 18.3%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수급내용에 대한 변경 통보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급여별 주무부처가 달라졌다. 과연 수급자들의 신청권, 이의신청권, 알권리 등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장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심각한 격무상황 역시 심화될 것이다.
-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수급자들의 신청방식은 종전과 변하지 않으나 이의신청을 각 부처에 전달하는 일은 다시 전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가 되었고, 각 부처는 이의신청 결과를 상호간 공유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복잡한 제도 설계와 전달과정은 수급자의 접근권을 떨어뜨리고, 이는 결국 빈곤당사자, 수급자들과 전담공무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2) 요구사항

- 수급권자의 알권리, 신청권, 이의신청권 등의 권리를 구체화를 위해, 수급신청과 이의신청기간동안 급여를 우선보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 복잡한 제도를 정비해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 수급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수급자의 보장기관 평가제를 도입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배석해야 한다.

17) 문진영 외,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4)

2017장애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장차법 개정안 수렴 토론회

| 인 쇄 | 2017년 4월

| 발 행 | 2017년 4월

| 발행인 |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967 | F A X | (02) 2125-0924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ISBN 978-89-6114-543-5 93330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